

月刊 建築士 1994년 5월호
 통권 301호 (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5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사)라~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May 1994



기획진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회원

인찬

J

식웅

사파

540.5

E

서울

대 92.7

동 합동청사/김상경

서귀

대 92.7

미금

301c.3

건축

고전적 상징의 건축 표현/이범재

일하며 생각하며

이제 더이상 경관공해는 용납될 수 없다/윤여욱

기고

건축신고제 전환에 따른 관계법의 개정방향/김우성

중국의 풍수페턴에 대하여/한동수

회원광장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 대한 관계조사/조현균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제언/박순중

건축기행

인도에서 르 · 꼬르뷔제와 루이스칸을 찾아서/민현식

현상설계

김제청소년수련관, 건설경영연수원

기획연재

영국의 건축(3)/김용승

5

MAY

發行人: 吳雄錫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俊憲
 委員: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毅, 金宗植
 編輯・取材: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園, 李善模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 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 話: 代表 (02)581-5711, 581-5712 ~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94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회사/吳雄錫

12

치 사/金佑錫

14

기획진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16

입법예고 주요내용, 건축사협회 의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렇게 생각한다/

崔燦煥/尹汝郁/曹泰鍾/元鍾一

회원작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張錫雄

26

사파정동 주민회관/許正道

32

서울도봉구보건소 및 번2동 합동청사/金相景

38

서귀포시청사/韓奎峯

44

미금시청사/林長烈

50

건축비평/미금시청사

고전적 상상의 건축 표현/李範宰

56

기획작품

중국 베이징 국제 레저클럽「柳園」/趙仁淑

60

스케치

역삼동 L빌딩 계획안/金錫桓

64

일하며 생각하며

이제 더이상 경관공해는 용납될 수 없다/尹汝郁

66

기 고

건축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른 건축관계법의 개정방향/金宇成

68

회원광장

건축사업부 정지명령에 대한 판례조사/趙顯君

74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朴淳鍾

76

건축기행

인도에서 르·꼬르뷔제와 루이스 칸을 찾아서/閔賢植

80

현상설계

김계 청소년 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90

건설경영연수원

96

기획연재

영국의 건축(3)/金龍昇

104

특별기고

중국의 풍수패턴에 대하여/韓東洙

110

통 계

1994년 3월분 전국 도서신고현황

114

협회소식

116

법 령

120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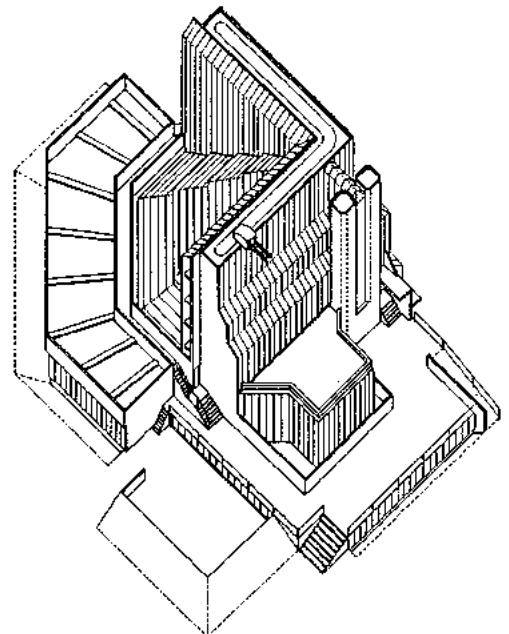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건축사사무소1603-55, 581-5715~8, 서대문문화/서대문구문화동169-25, 333-6411, 관악문화/관악구신원동1422-17, 882-6744, 도봉문화/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문화/영등포구영선동3781, 532-2143, 강동문화/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강서문화/강서구화곡동1105-05, 604-7368, 성동문화/성동구구하동252-16, 445-5244, 동대문문화/동대문구신암동101-5, 923-0158, 중도문화/중도구수정동40-18, 735-0905, 이포문화/이포구상산동275-1, 833-3251, 송파문화/송파구송파동90-12, 423-9158, 송구문화/송구동2749-11, 279-1415, 용산문화/용산구원효로1가129-22, 217-5607, 서초문화/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은평문화/은평구녹원동79-32, 388-1486, 동작문화/동작구사당동206-5, 815-9026, 강남문화/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노원문화/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양천문화/양천구신장동1027-9, 653-2892, 중랑문화/중랑구민복동166-46, 437-7356, 성북문화/성북구삼선동57410, 922-5117, 구로문화/구로구구로동86-4, 63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본천동647-18, 28 (051)634-4973~9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27H-8, (053)753-8980~5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현1동566-1, (032)437-3381~4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84-10, (062)521-0025~6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동동487-1, (042)256-9360~4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안로371H24-5, (031)47-6129~30, 직할문화/경기도시원시매안로371H24-5, (031)43-6662, 7072, 안양문화/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무원문화/무원시중구원미동88-1, (032)564-1554, 성남문화/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의정부문화/의정부시외정동182, (031)876-0158, 수원문화/수원시서정동313-22, (031)566-6153, 고양문화/고양구원당동교38동165호, (034)63-8902, 구리문화/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이천문화/이천시이천읍리192-1, (0339)635-0645, 평택문화/평택시월산동220-2, (02)694-5845, 안산문화/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시흥문화/시흥시시흥동604, (031)694-4121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목련동39-5, (0361)54-2442, 원주문화/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20, 강릉문화/강릉시성내동6-11,

'94 The 1ST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Opening Address/Oh, Woong-Suk	12
Appreciate Address/Kim, Woo-Suk	14
FOCUS/As To Enforcement Regulation for Housing Promotion	16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 notice/KIRA's Opinion	
This is What I think Reform Bill of Enforcement Regulation for Housing Promotion/Choi, Chan-Hwan/Yoon, Yeo-Wook/Cho, Tae-Chong/Won, Chong-Il	
WORKS	
Incheon Culture and Art Center/Chang, Suk-Woong	26
Sap'ajeong-dong Resident's Hall/Heo, Jeong-Do	32
Health Center and Town-Block Office, Seoul/Kim, Sang-Kyung	38
Seogwip'o City Hall/Han, Kyu-Bong	44
Migum City Hall/Lim, Jang-Yul	50
CRITICISM / Migum City Hall	
Architectural Expression of Classical Symbol/Lee, Peom-Jae	56
PROCESS WORK	
Beijing the Willows Premier International Leisure Club/Cho, In-Souk	60
SKETCH	
Yeok Sam Dong L-Building/Kim, Suk-Hwan	64
ESSAY	
We Can't Tolerated a Public Scenery Nuisance Any More/Yoon, Yeo-Wook	66
FEATURE	
The Direction of Revise on Architecture Laws and Ordinances/Kim, Woo-Seong	68
PLAZA	
Judicial Precedent Research in Suspense Injunction of Architect's Duty/Cho, Hyun-Goon	74
My Opinion o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Culture/Park, Soon-Chong	76
ARCHITECTURAL TRAVEL	
Looking for Le Corbusier & Louis I, Kahn In India/Min, Hyun-Sik	80
COMPETITION	
Youth Training Center & Gymnasium, Kimje	90
Construction Management Training Institute	96
REPORT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In Britain/Kim, Yong-Seung	104
SPECIAL FEATURE	
Geomancy Pattern of Chinese/Han, Dong-Su	110
STATISTICS	
KIRA NEWS	116
LAWS & ORDINANCES	
	120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 / Lee, Joo-Hoon /
 Yang, Hae-Yoon / Choi, Tae-Yong /
 Lee, Bok / 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l (Cheong Moon Printing
 Co.)



(0391)41-7371 · 속초문화/속초시도청동466-63, (0392)33-5081 · 삼척문화/삼척시청동55-43, (0394)31-8708 · 영월문화/영월군청동영월1리960-12, (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67-3, (0431)56-2752, 53-7342 · 충주문화/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문화/제천시외동8-8, (0443)43-6253 · 옥천문화/옥천읍옥천읍안리222-205,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문화/천안시관파동160-1, (0417)551-4551 · 홍성문화/홍성읍홍성읍오촌리239-1, (0541)32-2755 · 부여문화/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53)835-2217 · 대천문화/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서산·(0495)9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청주시서도청동605-5(대우빌딩506), (0552)87-6007~8 · 이리문화/이리시남충동17177-22, (0553)52-3796 · 군산문화/군산시신창동35-4, (0654)43-3816 · 남원문화/남원시106-2, (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63-238(추진회관), (062)346-7567, 33-9944 · 목포문화/목포시대안동, (0631)72-3349 · 순천문화/순천시강천동51-11(0661)743-2457 · 여수문화/여수시광문동441번지, (0662)652-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신천4동336-1, (053)742-8317~8 · 포항문화/포항시북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문화/경주시동원동901-4, (0551)2-4710 · 구미문화/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문화/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문화/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문화/영주시하림3동341-12, (0572)34-5560 · 청주문화/청주시중암동280-3, (0581)53-6677 · 상주문화/상주시남성동36-7, (0532)32-5588 · 경산문화/경산시광명동859-5, (053)812-6721 · 달성문화/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천문화/영천시장곡동26-10, (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47, (0551)46-4530~1 · 울산문화/울산시남구신정동585-5, (0522)74-8836 · 진주문화/진주시본성동7-20, (0551)745-6403 · 통영문화/통영시서호동163-18, (0537)645-7420 · 김해문화/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문화/밀양시내동292-1, (0527)355-4848 · 거창문화/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문화/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문화/거제군신협읍고원리39-2, (0558)635-3432 · 삼천포문화/삼천포시동문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문화/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협회의 위상정립에 총 매진을...



會長 吳 雄 錫

오늘 94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우석 건설부 장관님, 역대 회장님 이하
대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으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현
시국은 우리 역사의 한 장을 여는 귀중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되었던 법령과
제도들이 문민시대에 걸맞는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의 역할도
다각도로 변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건축 관련법의 개정
논의를 비롯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업무
강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령인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문제 등은 모두 변혁의
시대적 흐름에 대처키 위한 노력의 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소형 건축물의 시공자
등록제도는 작년 입법화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건설부의 배려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착공계 및 사용검사원에
시공자 및 공사관리인을 정하여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감리의 대상인을 제도화하고
현장시공과 준공후의 하자 책임까지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작년 말에 인가되어 시행중에 있는
건축사 업무와 보수기준 현실화는 우리
건축사업무의 새로운 발전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더
우수하고 충실한 설계를 이룩하여 이 나라 건축
문화를 향상시키고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에게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나마
18년만에 어렵게 마련한 이 보수기준의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실 것과
아울러 당연한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4천여 모든 회원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헤쳐간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건설업체들이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하에 국민제안 형태를 빌어 행정쇄신위원회에 제기한 문제의 안을 건설업체가 국내에서까지 건축사업무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실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 사회 실정으로 보아 결국 건축설계를 시공의 부수된 수단으로 전락케 하여 건축문화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건축사를 건설업자에 종속시키게 되어, 결국 우리 건축문화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이윤만 추구하는 건설업자의 탐욕에 의해 업무가 주도되어 나가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점차적인 국제 개방정책에 대처하여 제도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있겠으나, 현 국내의 사회 및 건축사업계의 실정으로 보아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해외업무로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 감리권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문제는 민간투자부문에 대하여는 당연히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사무소에서 설계자 우선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 운영을 이원화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안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건설부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속단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는 새로운 차원의 생존 전략과 대응책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방위에서 밀려오는 국제화, 개방화,

자유경쟁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4천여 건축사는 과거 행태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과 조직적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겠습니다.

본 협회 역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위상 정립을 위해 총 매진하겠습니다. 피동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뚜렷한 목표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의 업무와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협회는 각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사무처에는 기획부를 신설하여 협회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행케 했으며, 홍보부를 확대 개편하여 신문 발간과 더불어 협회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주력케 함과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와 과학적인 감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재시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건축사는 과거의 타성과 안이함을 떨쳐 버리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건축문화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외면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건축문화, 나아가 세계의 건축을 선도하겠다는 확고한 자신감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무한 경쟁에 당당히 도전하여 기필코 승리하여야겠습니다.

꿈을 품고 가꾸는 자만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험난한 변혁의 파고를 거침없이 헤쳐나갑시다.

끝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오늘의 이 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우석 건설부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3월 29일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雄錫

국제 경쟁력 강화와 부실공사 척결에 선도적 역할을...



長官 金 佑 錫

오늘 대한건축사협회의 94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오웅석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공사 현장에서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건축사 여러분과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각 분야에 걸쳐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으며, 밖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개방의 파고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물의 설계관련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선진 외국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건축설계기법의 현대화를 기하고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의 전문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길러나가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해와 금년초에 연이어 발생된 건설현장의 부실과 대형 구조물에서의 사고발생은 부실공사라는 후진국적 병폐가 아직도 추방해야 할 숙제로서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실공사의 추방을 위하여 지난해 건축사의 설계·감리보수를 현실화하고 그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금년에는 시공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실시공자를 발본색원하고, 공사감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술인력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금년이 「부실공사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나아가 공무원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기술개발의 유도 등을 통하여 국내업계를 보호·육성함과 아울러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과 건축관련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설계와 성실한 감리, 그리고 견고한 시공을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요식행위에만 그치는 업무처리의 관행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과거의 무사안일한 태성과 적당주의를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직업윤리를 확립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오명을 씻어버리고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가 어느 분야보다도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결의를 다짐합시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건축사협회 및 건축사 여러분의 업무수행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야말로 직자생존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변화되는 환경과 시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되고 이에 슬기롭게 적응해나가는 자만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 !

오늘 우리가 결의를 새롭게 하면서 건축사 4천여 가족이 힘을 합해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노력을 배가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설계 분야는 분명히 경쟁력있는 선진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총회가 건축사 여러분과 협회의 백년대계를 논하고 무한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모임이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4천여 건축사협회 가족 여러분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장이 되어서 각 건설현장에까지 그 의지와 노력이 이어져 부실공사를 뿌리 뽑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격려와 치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1994년 3월 29일

建設部長官 金佑錫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As to Reform Bill of Enforcement Regulation for Housing Promotion

건설부에서 지난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 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담당하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건축사협회 입장을 알아보고 아울러 건축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건축사협회 의견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이렇게 생각한다/
최찬환, 윤여욱, 조태종, 원종일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1. 현재 주택사업자는 실적 및 사업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취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택사업협회가 실적과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2.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전에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제를 시장·군수 등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100가구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경우 사전결정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6개월~2년간 소요되던 사업승인기간을 2개월~3개월로 단축하였고,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등과 같이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그 개발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전결정절차 없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이 촉진되도록 하였으며,

3. 현재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면적 50% 이상이며 100가구 미만의 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부 지구에서 주택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업용도가 50% 이상이며 200가구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지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제한을 받도록 하여 주택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중·소형 주택의 건설이 확대되도록 하였음.

4. 현재는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은 건축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시사용 승인절차를 별도로 명시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5. 현재는 공동주택의 감리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감리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감리자격 300가구 미만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
300가구 이상 :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감리방법: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자격있는 자가 상주감리

6. 현재는 국가와 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과 이번에 신설된 사전결정, 임시사용승인,
감리지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음.

7. 기타사항으로

—현재는 재건축의 경우 잔여택지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건축처분계획을 환지계획으로 보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성실상 유사한 재개발사업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하여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안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은
20호 미만이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재건축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대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미동 의자에 대하여는 재건축조합이 법원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주택조합원의 수가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로서
사망, 해외이주의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사망, 해외이주, 전산확인
등의 사유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결원보충 범위안에서 조합원교체나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면적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각각 독립된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주택건설지정업자 지정기준이 자본금
30억원(지방 15억원) 이상이고 연평균 주택건설실적
100가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개정안은 자본금규모를
지역구분 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택건설실적도
연평균 3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여 지정업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음.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지방 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1조 제1항(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협회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건축사법 제4조 제2항(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의
공사감리자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등록기준)

—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정의)

—“책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2. 검토사유

가. 법제상의 문제점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규정으로
공동주택의 민간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며 법의 남용으로
타법의 침해가 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민간공사의 감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②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입시켜 감리자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문민정부의
행정간소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국민에게(민간주택 건설업자) 고통을 주는 것이다.

나. 설계자에 의한 설계감리제도 배제상의 문제점

—설계의도의 단절에 대하여

■ 건축사협회 의견

1. 법적근거 및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제1항(주택의 감리등)

—건설부장관은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① 공동주택 세대규모가 커질수록 주거환경 및 단지내 시설 등에 관련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인 바, 설계자에 의한 설계감리가 무시된 품질 및 시험확인 등의 시공성 감리만을 중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 여겨진다.

② 시공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부 설계상의 문제점 또는 발전적인 설계의도의 변경은 설계자의 감리과정에서 스스로 보완하여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 경험을 토대로 설계자의 기술축적 사항으로 기록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 부실공사 방지상의 문제점 및 대책

① 2,700여개소(4,400여명)에 이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협력없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업체의 제한된 소수의 인력만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는 불가능하며,

② 본 건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제34조 6 제1항(감리자의

지정등)이 시행되었을시 많은 수의 건축사사무소 근무자의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며,

③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업체는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실적순위 100위 중 약 30%, 300위 중 20% 미만에 불과하므로 등록된 업체보다도 더 많은 민간사업에 치중하여 온 건축사사무소가 등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 새로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 절차없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④ 본 협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하여금 감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시험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공인건설시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설계자의 의도가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 부분에서 보완 연속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3. 건축사협회 의견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안)	본 협 회 의 건	개 정 사 유
신설	제34조의 6(감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미만의 주택 건설사업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제34조의 6(감리자의 지정등) ①법 제33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감리자로 지정한다. 단,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2. 삭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규정으로서 민간부문인 공동주택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일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는 설계자의 책임있는 감리제도가 더욱 정착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리업무의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의 보완대책으로는 현행 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감리토록 하되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감리는 시공성 감리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하여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사료됨.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이렇게 생각한다

일시적 방편의 법개정은 지양해야

We are Apposed to Expedient Reform

崔燦煥/서울시립대 교수

by Choi, Chan-Hwan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를 지향하고 국내적으로는 개혁과 변화의 큰 흐름속에서 건축계에도 많은 변화의 조짐이 있다. 중앙집권적 건축행정이 지방자치제와 함께 업무 및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와 규제완화라는 정책하에 여러분야에 걸쳐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불법, 부실, 비리에 따르는 여러 복합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부에서도 三不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건축제도 주요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여건에서 93년도에는 건설업이 설계권을 가지겠다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로 한동안 큰논란이 야기되었고 아직도 분명하게 그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94년 3월 26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의 하나인 주택건설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자격과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인하여 또하나의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건축사의 고유업무이며 이를 위해서 건축사가 자격/면허/등록이라는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이원화 내지는 업역의 갱탈전으로 까지 비쳐질 수 있는 전문분야별 경쟁과 상호 이해 다툼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이번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기존법규를 개정하는 경우로서 현재 주택사업자가 건설실적과 사업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취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던것을

주택사업협회가 건설실적과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전에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 등의 시장·군수가 임의로 운영해오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경우 사전결정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승인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어 현재 (6개월-2년)보다 훨씬 단축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과 같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별도의 사전 결정절차없이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다.

그런데 절차간소화는 그 기본개념이 불필요하고 번거롭거나 중복되는 과정을 없애고 줄이는 것이지 필요한 것을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건설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게되며 이는 절차간소화와는 무관하다.

큰 규모의 건축물에만 사전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건물도 마찬가지이다. 큰것은 모두 중요하고 적은 것은 모두 하찮게 생각하는 식의 양(量)중심의 행정이나 사고의 발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주로 분양가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대하고 세대수는 늘려 완화하는 등의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며 분양가 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없이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본다. 공공이 민간개발에 선행해서 치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적합한 민간개발을 유도 또는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이나 민간이 함께 공생의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진정한 절차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다. 뚜렷한 방향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나 절차의 간소화란 명분에 밀려 없어져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지않고 누구든지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신고하여 건축하는 것은 규제완화, 절차의 간소화, 주민들의 편의도모 등 수많은 명분을 앞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준낮은 건물을 줄속으로 짓게 되어 개인이나 국가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내용없는 절차의 간소화는 줄속행정이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주·상 복합주택 건설 활성화

현재 상업지역에서 상업용 면적이 50%이상이고 100세대 미만의 주택을 주·상 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상업용도가 50%이상이고 200세대 미만으로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도 적용하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제한을 받도록 하여 주택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중·소형주택의 건설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는 주거기능이 축출되어 도심공동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상복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이 업무, 판매, 서비스 등 상업용도로 채워지게 되어 주야간 인구의 격차, 교통혼잡, 상주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문제, 야간에 시설의 유휴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상업용의 면적 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업기능이 주거기능보다 강도가 높고 우세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적절한 구성을 할 수 있다. 상업용도가 50% 이상으로 되어 대규모 상업용도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도심 상업지역이나 간선도로변에도 저층부는 상업기능을 가진 주·상복합건물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상당한 주거가 도심지에 있어 건전한 도심활동 기능과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층수에 따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거와 상가를 분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간선도로변에 저층일부를 상업시설로 하고 그외는 주거기능으로하는 주·상복합이 쉽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논리상 우위기능인 상업시설의 확대는 규제하되 주거기능의 확대는 장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규제되고 있어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분양가를 통제받지 않고 주택시장에 따라 거래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이 그나마 건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또 우리나라는 대형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위면적에 대한 건설비용은 소형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은 오히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은 대부분 대형주택을 건설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한 일부의 폐단이 있으므로 건설부령으로 규모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상복합용도의 공동주택은 대체로 규모경제성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규모 주택을 넣기가 어렵다. 현재 대규모 주호를 넣고 분양가도 시장가격에 의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면서 규모제한을 경직스럽게 할 경우 경제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지역, 세대수확대 등은 바람직하나 상업용도의 면적구성비를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리고 일정한 기업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경제논리에 따라 행해지는 경제활동의 일부인 주택분양에서 가격, 규모 등이 강제적으로 통제될때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은 큰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문제는 그 원인에 대한 근원적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며 부분적, 일시적, 그리고 편의적인 조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 공동주택 공사감리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특정한 분야나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복합적이고 근원적 문제에 연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감리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준용하여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고 있다.

개정령시안에는 감리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로 300세대 이상은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도록 이원화하고 있고 감리방법도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격있는 자가 상주감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전국 185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준공한 후 평균 4.3년이 지나면 벽체 및 바닥에 균열이 생기며 5년정도 경과하면 건물 여러부위에서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기능도 떨어져서 첫번째 보수 이후 1.2년, 1.5년의 간격으로 보수공사를 계속하였고 난방 및 급탕설비는 준공후 6.5년 전기공사 6.6년 승강기설비 5.9년 급배수 설비 5.7년이 경과하면서 수리공사를 했던것으로 조사되어 부실시공이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감리보다는 건설공사의 최저가 낙찰과 댐핑수주, 아파트 분양가의 통제와 분양여건 등 시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된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경제논리를 도외시한 채 공사감리자의 자격과 요건을 강화하여 공사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첫째, 법 논리에 대한 문제이다.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인데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리회사에 이원화(二元化)함으로써 법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건축법 및 건축사법과는 상충된다. 둘째, 설계자가 배제된 공사감리는 곤란하다.

설계와 시공을 연결하는 공사감리자 제3자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책임소재와 한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으며 책임을 상호 전가 할 수도 있다. 설계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건축 또는 종합)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설계와 공사감리가 분리되게 되므로 설계의도의 전달, 현장설계의 보완작업 등으로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수준높은 감리가 가능하다. 설계자와 건축주 및 시공자가 관련된 소규모 건축공사의 위법, 불법사항을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분리하여 왔으나 공사감리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94년부터 설계와 공사감리를 일원화하도록 하였던 점을 상기하고 이와 같은 실증적(實證的) 경험을 살려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셋째, 공사감리는 공사감리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감리를 위해서 감리업체의 업무구분이나 통제 보다는 감리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건축사가 배제되므로 결과적으로 인력의 활용, 업역의 혼란 등에서 큰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소수의 감리회사가 다수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독점하게 되면 현재보다 업무가 과중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회사로 이중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공사감리를 위해서는 설계자와 기술자가 공동참여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공사별 필요에 의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으며 유동적인 업무를 고정적인 조직체로 대응함으로써 오는 비합리적 문제가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한 감리이며 당초 고려하지 않았던 일반 민간 건설공사까지 포함시켜 공사감리 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시공자가 수준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부단히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공사감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며 기술인력의 부족, 공사감리자의 처벌 등 끊임없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위기에 빠뜨리다

Bring to a Crisis

尹汝郁/종합 건축사 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어 온갖 동·식물과 자연을

치리하라 하시며, 사상(思想)에 있어서는 자유선택권을 부여 하셨는데, 다만 한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금기를 정하였다 한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는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금단(禁斷)의 열매까지도 따먹겠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결국 원죄를 저지르게 된다. 아담과 하와 이래 인간은 서로를 질시하고 비방하며 살인까지도 서슴치 않을 정도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라는 시비곡직의 논란과 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상호부조 하며 상리공생을 취하기 보다는 뱀새 눈을 뜯쳐 혈투으며 니전부구 하다보니, 남의 손에 쥐고 있는 떡은 크게 보이고 제가 들고 있는 떡은 작게 보이는 무량한 착시현상은 온통 욕심으로 마음이 채색된 결과이고, 금기야는 진실한 삶의 방법을 헤아리는 혜안이 차폐된 줄도 모르고 오로지 달면 삼기고 쓰면 뱀은 아집과 편견 및 독단의 병리속에 정신없이 살아온 추한 일상의 편린을 접하게 된다. 심지어 인간 스스로가 규정하고 미화한 지고한 삶의 가치인 문화까지도 꺼리낌이 없이 유린하며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모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안타까움으로 접어 두면서도 참모습 되찾기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전 94년3월26일자 관보에 입법 예고된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서 이해당사자인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건축문화의 발생과정

건축은 건물을 설계하는 예술이고, 건축설계는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활동에 있어서 기본단계가 되는 기능상의 실용적인 면과 조형적인 미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도면상에 표시하는 예술적 기술적 행위과정을 말한다.

문명이 시작된 때부터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듯이 자연적인 토굴에서 부터 풍·우·상·설을 피하기 위해 돔, 흙, 나무 등을 이용하여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집짓기는 문화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섬세하고 안락한 주거생활 패턴으로 까지 계승 번천되어 왔다. 그런데 극히 한정적인 인간들 만의 사회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주거문제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한정된 토지, 제(譜) 문명시설과 조화를 이루게 하다 보니 통제의 필요성을 느꼈고 바로 그것이 법이라는 이름의 틀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법이란 무엇이나? 법을 연구하고 이해할 때에 맨 처음 부딪치는 문제이면서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난해한 문제이다. 수 많은 법학자들이 법의 정의를 내렸지만 완전무결한 법의 정의는 없기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써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강제의 뒷받침인 것이다. 여차피 작은 크든 집단을 질서있게 움직이려면 주먹구구식의 막연한 힘의 논리보다는 만인에게 공평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스려야 하기에 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간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건축과 관련한 법에 있어서 근본

제층의 다양화와 하는 임의 차별에 따라 법의 갈래가 여럿 있지만, 건축과 관련된 법을 따로 떼어내어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를 근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별표1참고) 건축법을 필두로 건설기술관리법까지 시대적 상황과 욕구에 따라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별표 1)

제 명	공포일자 및 법령번호
건축법	1962. 1. 20 법률 제 984호
건축사법	1963. 12. 12 법률 제 153호
건설업법	1971. 1. 19 법률 제2290호
주택건설촉진법	1977. 12. 31 법률 제3075호
건설기술관리법	1987. 12. 24 법률 제3934호

무슨 일이든 근본이 서있어야만 제반조건이 결정되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법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축법이 시발이고 모태가 됨을 보게 된다. 각 이해집단의 생성과 파생으로 근본에서 부터 떨어져 나가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각자의 영역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근본을 잠식코자 하는 시도가 술하게 있어 왔고 때론 정치적 입김에 따라 기형적인 모습으로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어 시행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의 완전무구와 옹고를 주장하기에는 시대의 변천과정이 급속하여 법의 모양새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이끌어 내지만, 그렇다고 어느 일방의 주장에 따른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경박한 손질을 하는 것은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택건설의 실태

정부 주도로 88년에서 92년까지 주택건설 200만호에 이어 해마다 60여만호 주택을 건설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92년말 기준으로 주택부족률은 20%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량이 신도시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기존의 시내 불량주택지구가 산재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토지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상황을 보면(별표2참고) 재건축사업이 부진함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재건축사업 시행절차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시행기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별표 2)

(93. 4. 현재)

구 분	인가필(조합)	사업승인필	착공	준공
아파트·연립주택	85	41	11	10
단독주택	30	5	2	—
계	115	46	13	10

재개발기법을 준용하거나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3년2월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과년수 20년미만의 공동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현실타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재건축사업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택지난 해소와 물량공급에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안)의 대강내용과 이해

건설부에서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중에서 주요골자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설 제34조의6(감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 건축사업에 의하여 감리자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설부(안)에 대한 우리협회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신설 제34조의6(감리자의 지정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감리자로 지정한다. 단 그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1~2삭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이미 전장에 기술된 건설부(안)과 협회(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본 필자로서 몇가지 주장을 펴려하자면, 첫째, 설계와 감리부분은 면적의 대·소에 상관없이 건축사에게로 귀일되어야 한다. 지난번 분리감리를 시행하다 폐지하였는데 이번에 또 다른 모습으로 분리감리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남의 영역을 조금씩 침탈하겠다는 저의마져 느낀다. 적어도 설계와 감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한 건축사가, 더욱 새로운 첨단기법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밀려오는 뉴라운드에 대비하여야 할 시급한 시점이고 이는 곧 국가간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설계감리든 시공감리든 감리에 관련한 건축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보다 확실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지와 책임감이 두터워져 주인의식을 갖게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란 단어를

머나먼 과거의 장으로 덮어버리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둘째, 건축문화의 예술성은 영속하다는 말처럼 예술적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인간들의 혼이자 정신인 것이다. 혼이 없는 육체는 마네킹이라 할 수 있고 인간이라고 할 수 없듯, 문화예술성을 상실한 건축물은 회색빛을 띤 채 사라질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감리가 분화되었을 경우 개별회사의 속성상 실리추구로 치달아 상업성의 패단에 건축문화는 도말되고 미는 문화의 암흑기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 설계작가의 구도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설계와 감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작가는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구상하고 삭제하는 숭한 작업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고, 그러한 애정은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아니 완성된 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쏟을 수 있기에 예술적으로 품격있는 훌륭한 작품을 이루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맺음

시간은 물의 흐름처럼 단절됨이 없는 항구적인 것이며 과거는 무한한 미래와의 만남을 알리는 전령이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는 촉매인 것이다. 과거는 어제의 오늘이며 미래는 내일의 오늘이듯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하나의 띠로 유대를 맺어 인류역사를 채워 나가는 것이다. 과거를 망각하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미래를 막연하게 동경하는 것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건축도 긴 안목을 지니고 조감해보면 건축 관계법령에 분산된 감리부분을 건축법내지는 건축사법으로 통·폐합하여 근본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항은 령,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귀착되어야 왕성한 건축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94년 3월 26일자로 입법 예고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안)의 고갱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러하다.

감리는 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구별되는 이분법보다는, 기왕에 개정될 바에는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정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옛부터 구전되어온 이야기를 끝맺음으로 갈음한다.

옛날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개구리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연못가에서 개골 개똥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해염도 치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길 가던 두세명의 아이들이 연못에 이르자 한 아이의 제의로 돌을 던져 물 징검다리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드나 내기를 하고 일제히 던졌는데... 그 중의 한개가 개구리의 머리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온다.

거시적 안목에서 공동주택 감리는 설계자에게

Common Housing Supervision is Architecture Designer's Own Duty

曹泰鍾/종합건축사사무소 마당

by Cho, Tae-Chong

우리는 흔히 건축활동의 본질이 무엇이나고, 물을때마다 예술과 공학이 결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조형예술과 공학적 경제성이 내포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 위치, 사용년한, 규모 등에 따라 부가지 내용이 적절히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세월과 현재까지 건축활동의 본질을 두고 갑론을박한 단편들을 잠깐 살펴보자.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건축사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 1980년대초까지만 해도 모든 건축관련분야에서 지휘자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자만에 빠진결과 그 이후로는 전문화된 기술분야들의 활약으로 인해 우리들의 모습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외부적으로는 전기, 설비, 구조, 교통, 조경, 토질 또는 토목기술사들에게 업무영역을 침해당했고, 내부적으로는 소규모건축물의 조사및 검사업무 대행을 감리업무와 분리시켜 대행수수료를 받고자 했으나, 그 결과는 결국 받지도 못할 대행수수료 규정을 만들게 해 우리의 업무 영역을 분리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침해방법을 스스로 조장하기까지 한적도 있었다. 또한 창작예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법적책임을 피하려는 풍토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고, 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적인 입장보다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 감리를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 그리하여 부실건물이 발생되면 모두 건축사의 책임으로 호도되어 건설기술관리법이 탄생되고 감리전문회사가 생겨나 시공 감리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이 만들어짐으로써 설계와 감리를 설계자의 창작 의도대로 이끌어가야하는 건축활동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개정된 건축법의 규정에는 부실공사를 직접 원인제공한 시공자를 처벌케되어 있어 그만큼 건축사의 부담이 줄게 되었고, 또 94년도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및 감리가 동일하게 됨으로써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그 설계의도와 설계기술을 시공과정에 전달하고 설계의 현장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활동의 본질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건축사들의 활동이 무릇 새봄을 맞는 재도약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또한 UR에 대비하여 새로운 건축사상을 탄생시켜야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70년대후반까지 지어진 강남, 서초지역의 주거공간과 80년도 후반에 지어진 올림픽및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주거공간을 비교해보자.

현재 쾌적한 공동주택단지가 되어 살기 좋은 동네로 알려진 곳의 경우 감리가 철저히 잘 되어서 최상의 주거공간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설계자인 건축사의 창작의도가 충실히 반영되고 설계와 시공분야의 분업 전문화가 잘 조화된 결과일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6년후 켜이면 대학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적어 대학들이 지방생을 찾아나서게 될 것이다 한다. 이제는 우리의 주거문화도 이미 기술경쟁시대에 접어들었고 하자가 발생되고 주거공간 및 환경이 열악하면 팔리지 않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논란은 시대변화에 따라 자연히 해결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사업시행자가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을 창출할 의지를 가지고 그 의도를 건축사인 설계자가 전문지식을 통해 조형예술과 공학경제성을 결합시켜 주거공간을 만들고, 시공자와 감리자는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소비자의 기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설계자에 의한 설계감리 및 기술지도가 무시된 품질 및 시정확인증의 시공성 감리만을 중시하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하는 것은 설계자의 창작의도를 확인할 수 없게하는 결과를 낳게돼, 어쩌면 스스로 새로운 서어비스정신을 발휘하고 분업화, 전문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공존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아오던 공동주택감리에 대해 300세대를 기준으로하여 그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전문회사에게 그 미만은 건축사사무소에게 감리를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다.

우선 법적인 면에서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의 시공감리는 공공공사에 국한된 감리규정이므로 민간공사인 공동주택에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건설기술 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철회되어야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감리를 철저히 잘 하므로 대규모 단지의 감리를 맡기고 건축사사무소는 감리를 못하니 소규모단지를 맡긴다는 생각은 현실을 잘 모른채 정반대적인 생각을 한것 같다.

TV나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부실공사의 횡포는 시행자가 소규모 영세한 주택등록업자인 소규모단지가 더 심한 현실이므로 품질이 문제라면 소규모단지는 감리전문회사가, 주거 환경 및 공간 창출이 문제라면 대규모단지의 경우 설계자가 직접 감리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현재 신도시지역에서 공동감리단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감리여건을 보면 1개 공동감리단의 감리대상 공동주택세대수가 1000여세대에 준하고 있는 실정은 통계를

보더라도 알수 있다.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공동감리단도 건설부 입법예고(안)대로라면 3명의 감리자가 나누어서 감리토록 하여야 하는 바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운영과 효율을 중시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향후 감리업무를 입주예정자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리 전문회사의 등록업체수가 적고 일부 대도시 지역에 편중 등록된 실정이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거나, 또는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지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세대수 규모등에 따라 등록기준을 정하여 해당지역의 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감리할 수 있게 참여시키는 것이 지역실정과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에 감리를 맡기겠다는 착상을 부실시공에 대한 관점에 둘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공간을 창출시켜 세계적인 공동주택단지를 이룰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가발전 전략적인 차원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무한기술경쟁시대가 되었고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민간자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철저히 보장된 사회제도하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8올림픽 선수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처럼,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자의 예술적 창의성과 감리가 시공자의 기술관리 및 기술개발 등과 함께 조화되어 분업전문화로 완성된다면 품질 걱정은 사라지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계속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계자와 시공자 상호간에 전문화 및 파트너 ship 등의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본연의 주어진 영역을 지키면서 상호간 사명감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교두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자의 감리업무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Must be take part in Common Housing Supervision

元鍾一/세종건축사사무소
by Won, Chong-ll

89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이래 건축공사분야의 감리업무를 어떻게 상의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거론 되었다.

그간의 논의 중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은 주로 다음의 세가지 관점일 것이다.

첫째,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중시하는 토목구조물과 달리 예술문화적 내용을 더욱 중시하므로 감리 업무내용이 토목분야와는 다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건축물의 감리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창작의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형태나 마감재료 및 색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자(지작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 처리 하계끔 하는 설계감리 업무영역을 전기법에 명시하고 보상기준을 마련 할 것.

둘째, 건축물이란 그 자체구조의 안전에 대한 성능품질은 기본이며 기능적 성능 즉 예를 들면 방수, 방습, 보온, 환기, 채광, 급수, 배수, 난방, 냉방, 승강기, 전기설비 등 사람의 생활 욕구를 지탱 해주는 물리적 장치수단이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되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능품질이 또한 토목분야와 달리 문제시 된다.

따라서 건축분야의 시공 감리업무 내용은 매우 복잡다단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기법은 건축감리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고 치밀하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적 안전성능 품질에 대한 감리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의무사항으로 하되 기능적 성능 품질에 대한 감리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 주요한 몇 가지만 법적의무 사항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발주자의 경제적 형편 또는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계약 토목 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따라서 그 감리비 보수내용도 이상의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구조적 성능품질 감리만 계약했을때와 기능적 성능품질 감리중 법적의무 사항을 몇 가지 계약 했을때, 또한 자율 선택을 추가로 했을때 등 각각의 모든 경우가 전부 개별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세분된 내용 별도 감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에게 주어지는 감리업무 권한과 내용에 대하여 신설된 전기법은 특별조치법 같은 효력을 갖고 건축사의 감리영역을 잠식하면서 상호 법체계 간에 모순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건축사사무소는 영세하여 대규모 공공 건축물의 품질감리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별도의 전문적인 시공감리업무업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전기법의 제정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합당한 전문 시공감리 업체를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영세한 것은 비단 건축사사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발주자를 포함하여 시공업계 및 우리의 전반적인 건축산업계 환경이 열악하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법 시행 초기에 바로 드러난 현상이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발주자는 감리비 예산채정을 기피하거나 최소한의 형식적 요식행위로 감리업무를 축소하려고 하고 시공업계는

전문시공감리 체제하에서는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현장도면 작성과 QC조직운영 및 시험실 운영 의무사항을 최저가 입찰 구실로 묵살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적정 감리비가 포함된 전체 공사비의 합리적인 차별적 책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는 한 설사 합당한 전문 시공감리 업체를 확보한다 해도 정상적인 시공감리 업무는 발주자와 시공업계의 협력 없이는 허구일뿐 이라는 것이다.

발주자, 시공업계, 설계사무소를 포함한 우리의 건축산업력 전반을 뺀다고 보건대 설계감리 및 구조 성능품질감리는 법적의무사항으로써 모든 건축물에 필수 계약사항으로 하되 기능 성능품질 감리에 대해서는 각종 내용별로 감리비보상 기준만 마련해 놓고 발주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게 함으로 해서 발주자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융통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능성능 품질감리, 현장도면작성, QC조직운영 및 시험실 운영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급공사인 경우에는 기존의 최저가입찰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고급공사방식 내용을 입찰 시공업계에 알려져 적정공사비로 낙찰되도록 발주자측에서 배려할 것이 요망된다. 요컨대 이와 같은 여러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시공감리 업무범위를 각 입장의 능력에 합당하게 정할필요가 있는데 현행 전기법은 확일적이고 감리개념조차 설계 감리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급히 요망된다.

또한 이 설계감리업무 내용및 그 보상기준에 대하여 전기법에서 합당하게 표명되었을때는 이에 상응하여 건축사법에서 현재규정하는 공사감리업무의 포괄적인 정의와 내용 및 그 범위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 개념으로 권한과 책임의 내용이 세세하고 분명한 형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법의 최초 시발은 공공건물 발주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작업에는 300세대 이상의 민간발주 APT공사마저 그 대상으로 포함 시키려고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현재 전기법에는 공공공사의 감리업무 중에 설계 감리업무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어 건축공사 감리업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건축문화의 전도를 어둡게 하는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건설부는 이번 감리대상 건축물 확대 결정에 앞서 건축 예술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설계 감리업무에 대한 규정 및 보상기준을 전기법에 명시,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업무에 필히 참여토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려는 향후 UR이 본격적으로 실현되어 외국 건축문화가 이땅에 상륙한다해도 설계자의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그들의 관행파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Incheon Culture and A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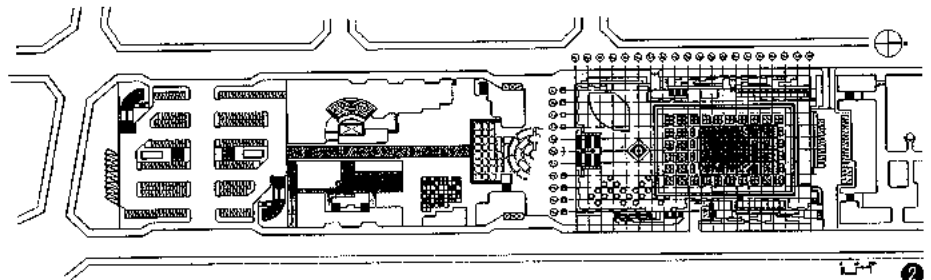
張錫雄/(주)아도무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uk-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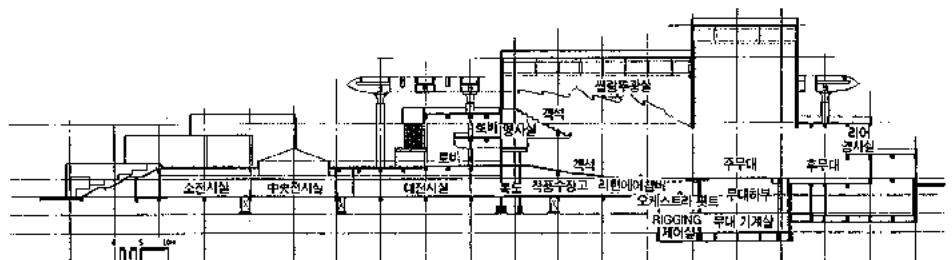


1

대지위치 /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965번지
 대지면적 / 53,003.25㎡
 건축면적 / 12,690.33㎡
 건축연면적 / 41,874.13㎡
 건폐율 / 3.73%
 용적률 / 4.92%
 층수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POST TENSION+철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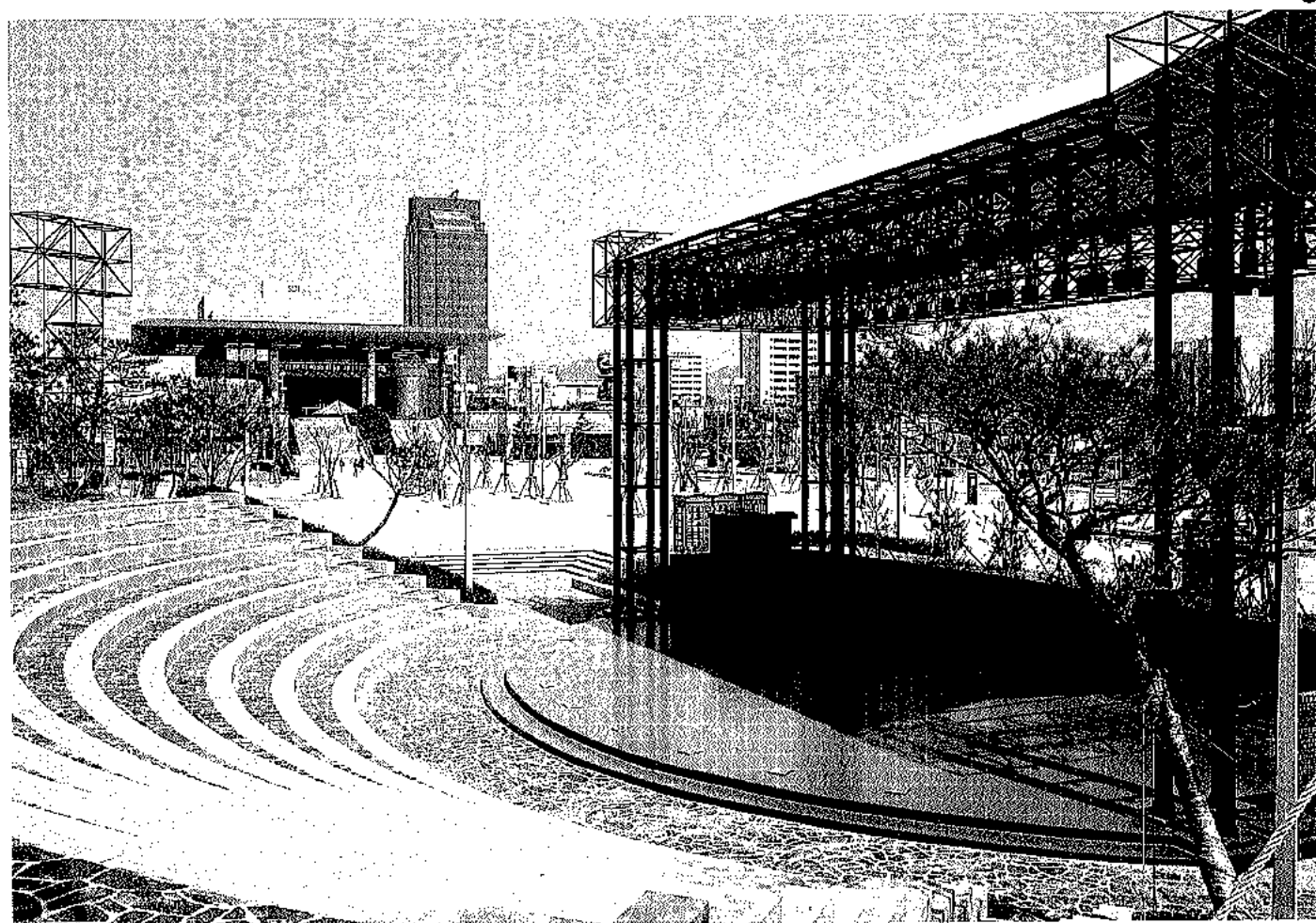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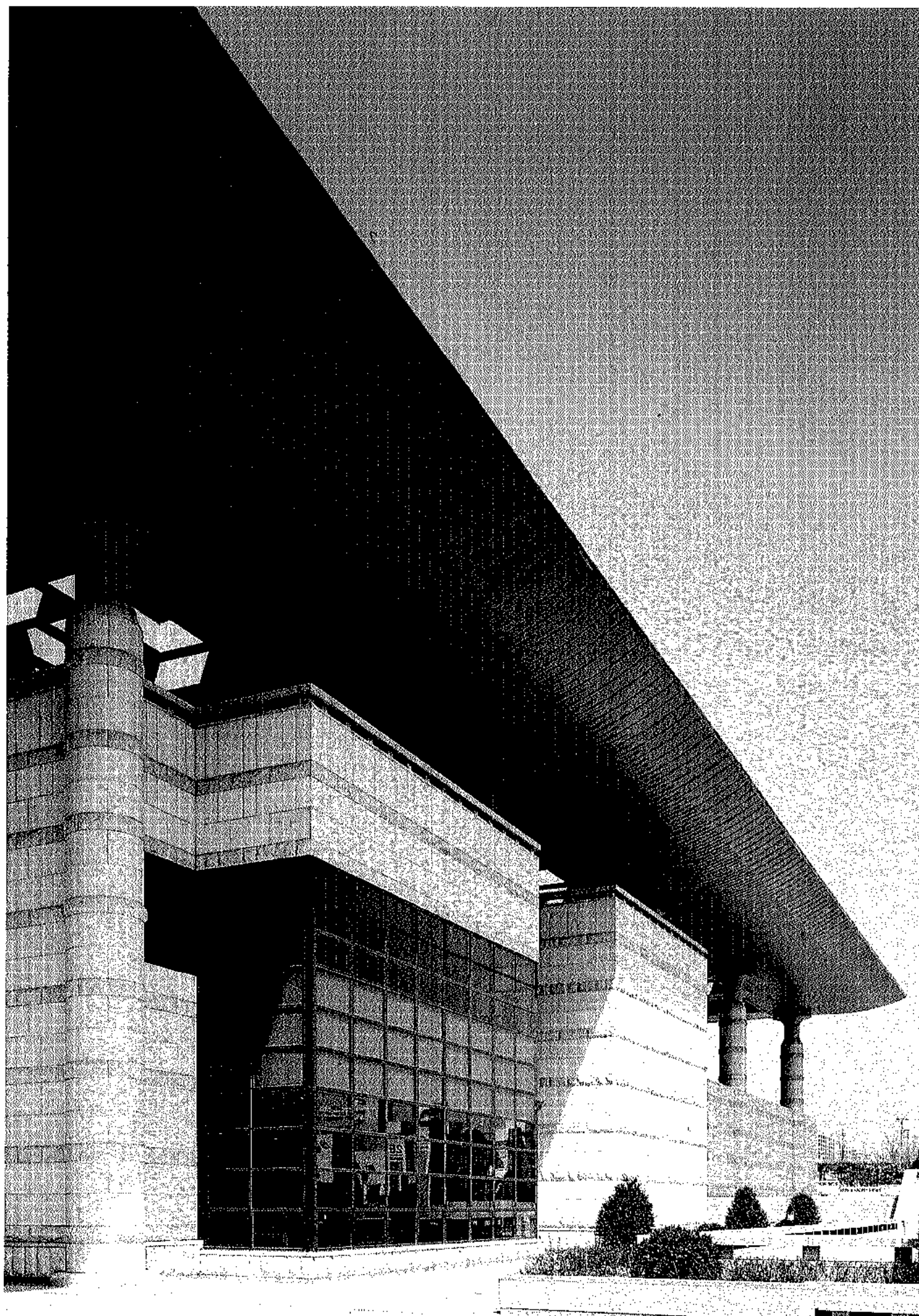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주 단면도
- ④ 원경
- ⑤ 야외공연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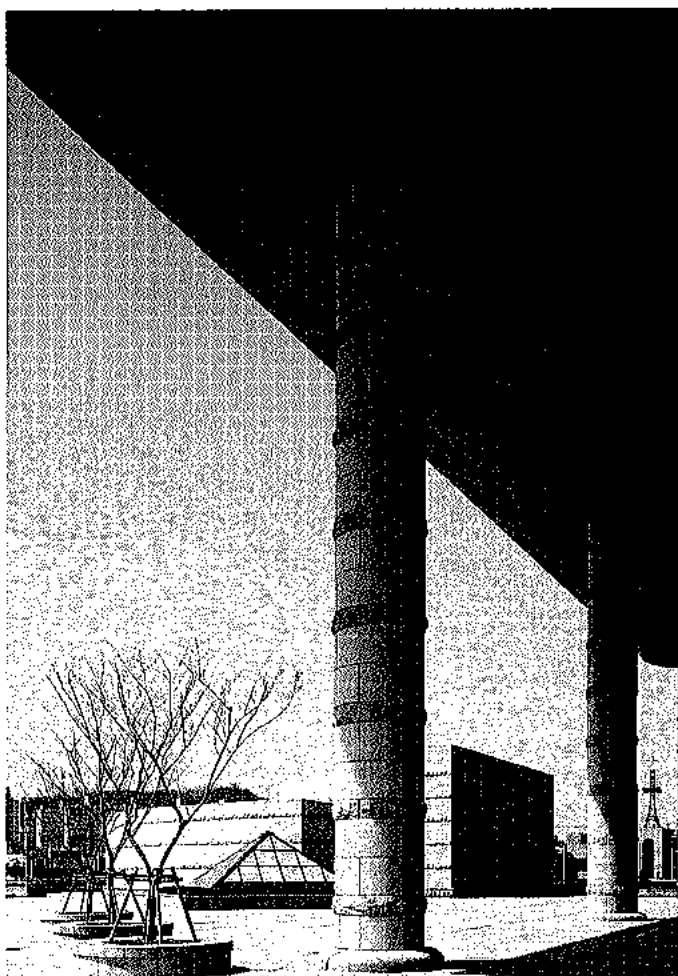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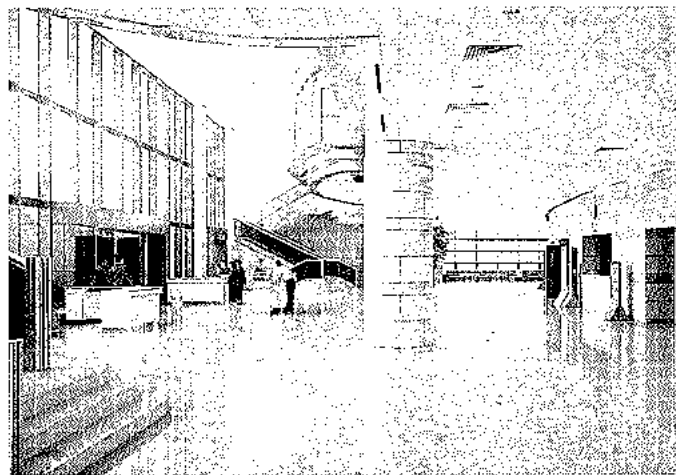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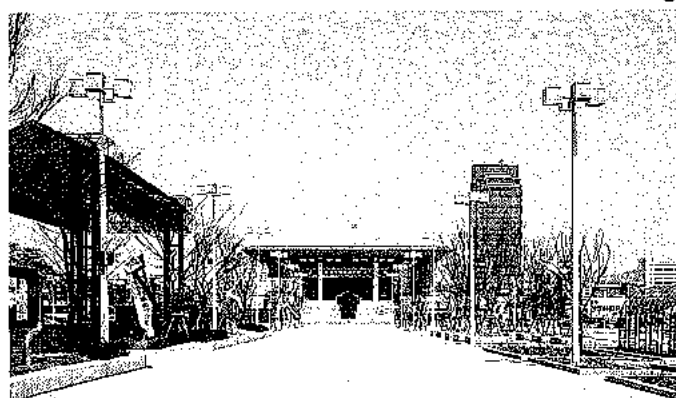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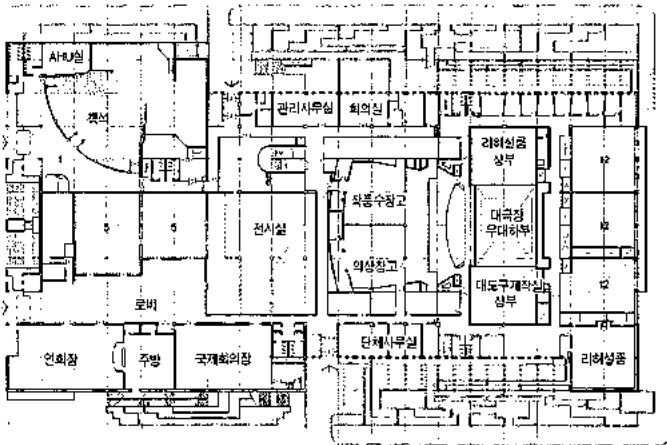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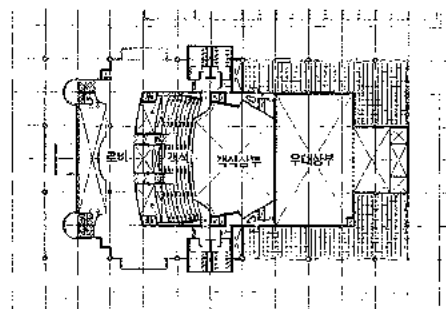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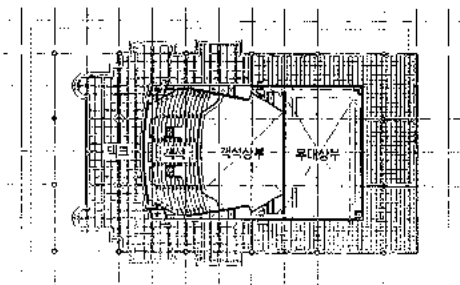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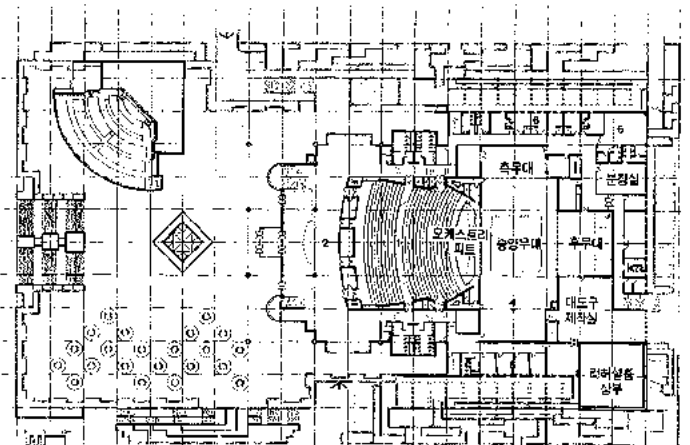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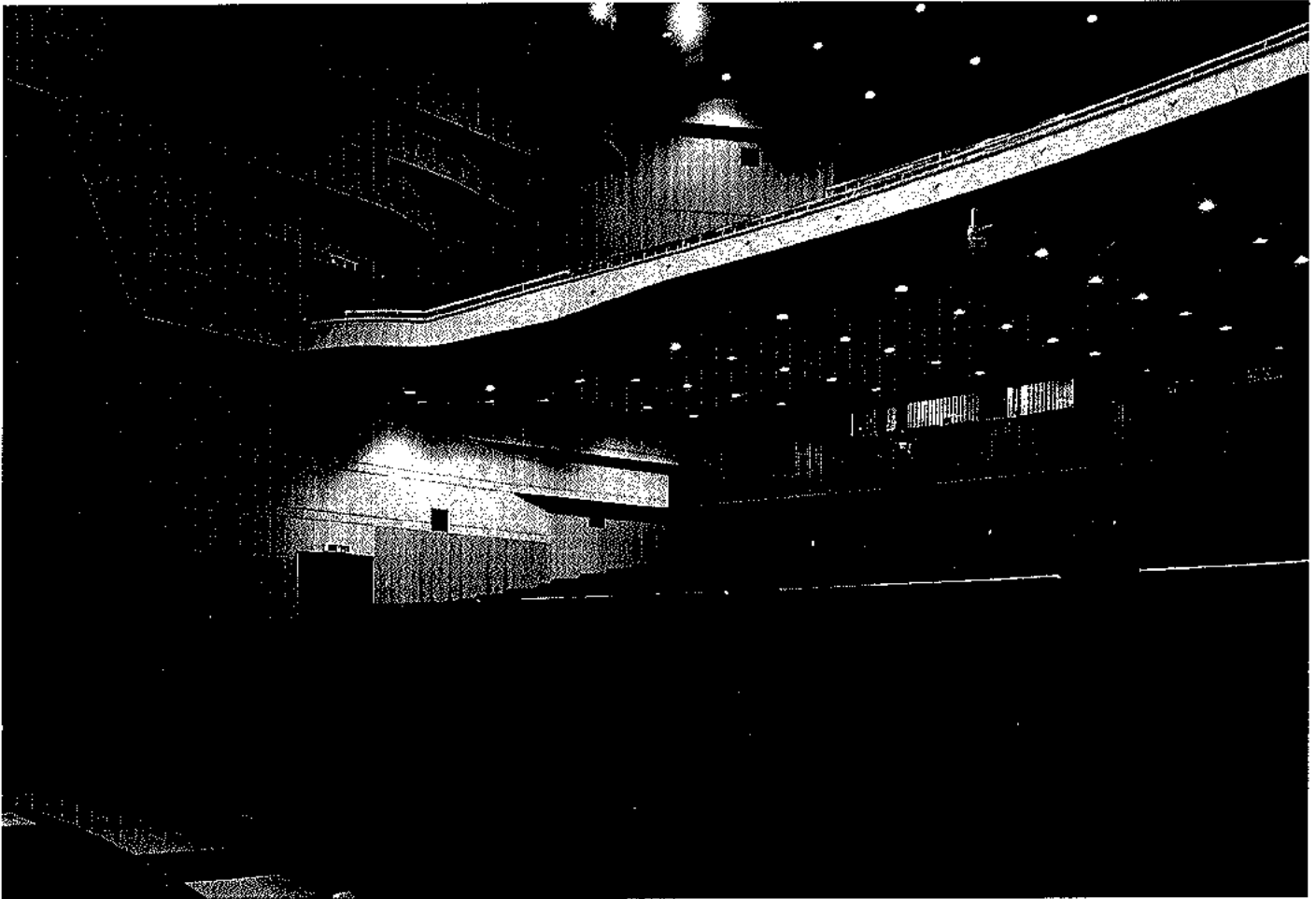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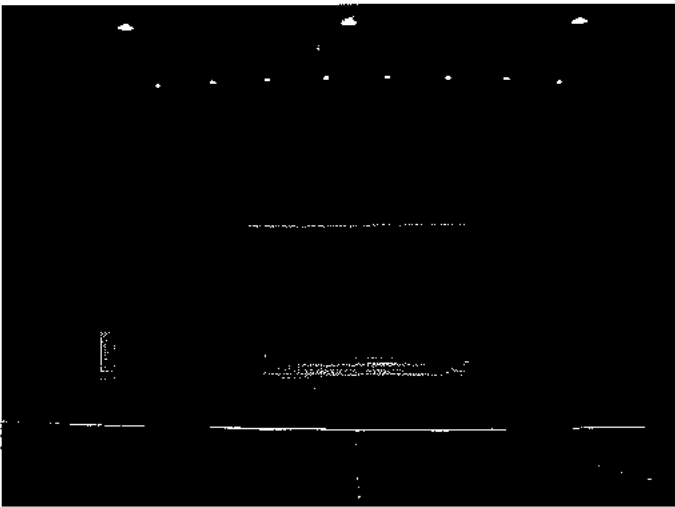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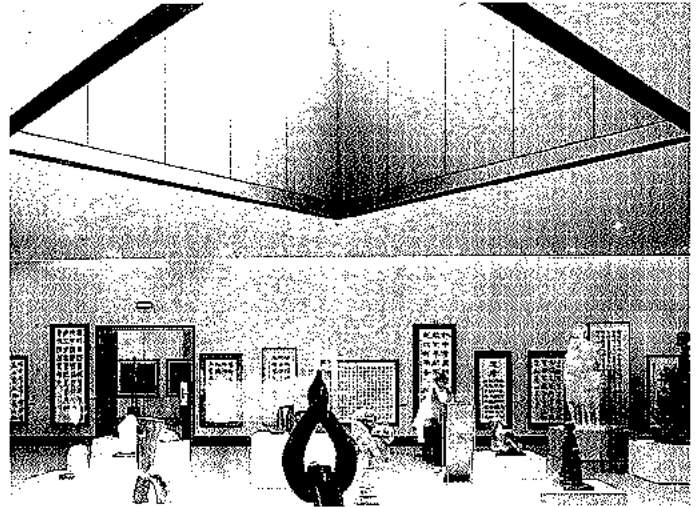
- ⑥ 측면상세
- ⑦ 측면 기단부 상세
- ⑧ 미술관의 피라미트 채광과 현관
- ⑨ 로비전경
- ⑩ 주차장서문 공연장 전경
- ⑪ 후면 무대 및 도구 반입구
- ⑫ 1층 평면도
- ⑬ 3층 평면도
- ⑭ 중 3층 평면도
- ⑮ 2층 평면도
- ⑯ 대공연장 객석
- ⑰ 대공연장 무대
- ⑱ 피라미트 채광이 있는 미술관



16



17



18

1988년 3월 인천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종합 문화회관 현상설계의 10여개 공모 안에서 채택되어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감리로 만 6년여의 긴 역사 끝에 94년 4월 8일 개관을 맞게 되었다.

인천은 우리나라 근대역사에서 문화와 문물교역의 관문으로서 또한 오늘의 서해안 시대의 중심항구도시로서뿐만 아니라 영종도의 신공항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 우리나라의 명실 상부한 관문이다.

본 대지는 폭 100m의 띠모양으로 연결된 철도부지가 중앙공원으로 변경된 일부로서 1,500m 길이의 16,000평의 규모로서 대지의 남쪽과 북쪽

의 고저 차이가 16m로서 주 진입 방향에서 저지 대이므로 계획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시의 경관이나 주변에 전개되는 잡다한 건물군과 문화회관으로의 소요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기단을 도입하여 접근성과 도시성을 강조 하였으며, 기단안으로 소극장, 미술관, 국제 회의장과 각 예술단체의 연습실과 사무실 기능을 두었고 기단 상부에는 1,700명을 수용하는 다목적 대극장이 자리한다. 다양한 무대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가장 완벽한 무대시설을 갖추었다.

문화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고 분위기에 동화되어야 하기에 접근성이 좋

고 친숙한 조형이어야겠고 지역성이 강조되도록 배려하였다.

옥외시설을 실내로 유도하여 실내외의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공연 관람과 미술감상과 휴식과 산책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는 도심의 소공원속에 종합 예술관으로 인천지역의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사파정동 주민회관

Sap'ajeong-dong Resident's Hall

許正道/시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eo, Jeong-Do



위치 / 창원시 사파정동 68-3

지역 / 주거지역

대지면적 / 992.00㎡

건축면적 / 399.76㎡

연면적 / 708.17㎡

건폐율 / 40.29%

용적률 / 6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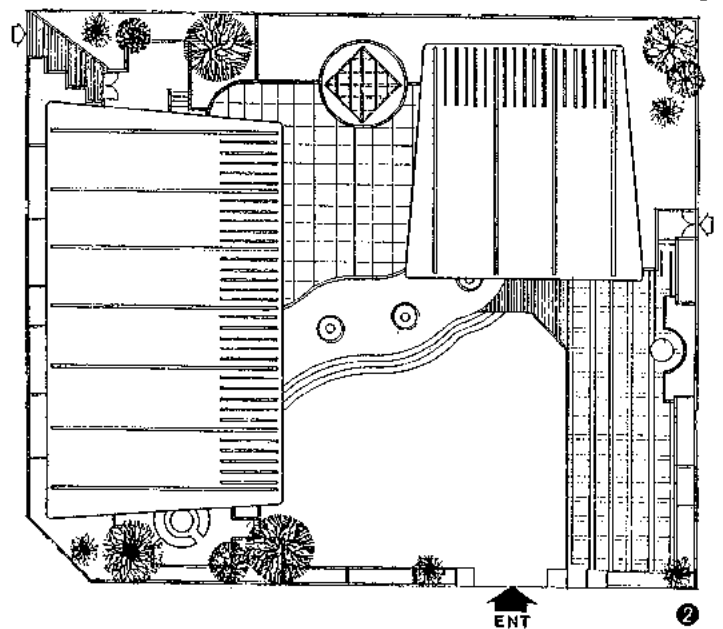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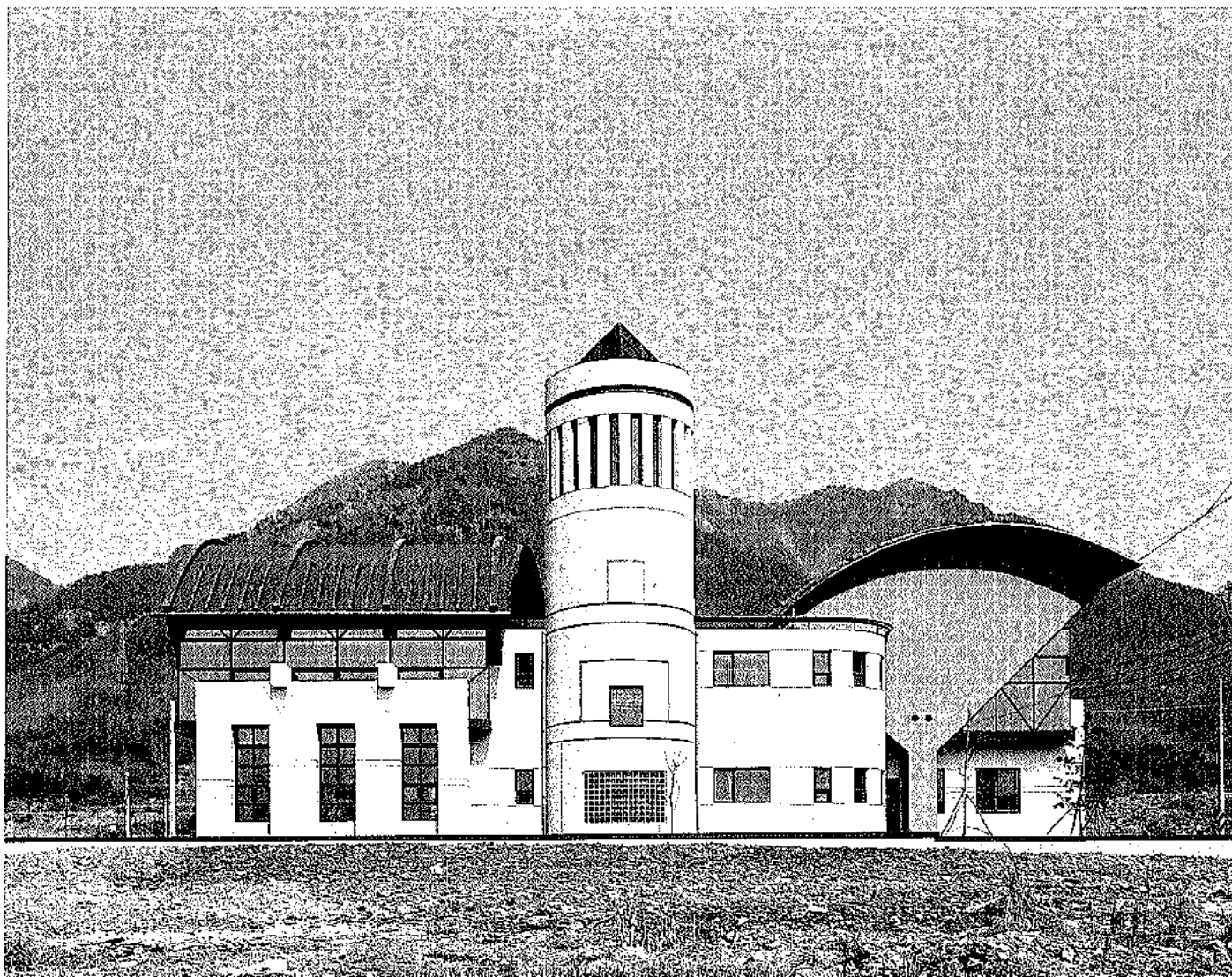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마감재료 / 외장 : 아이소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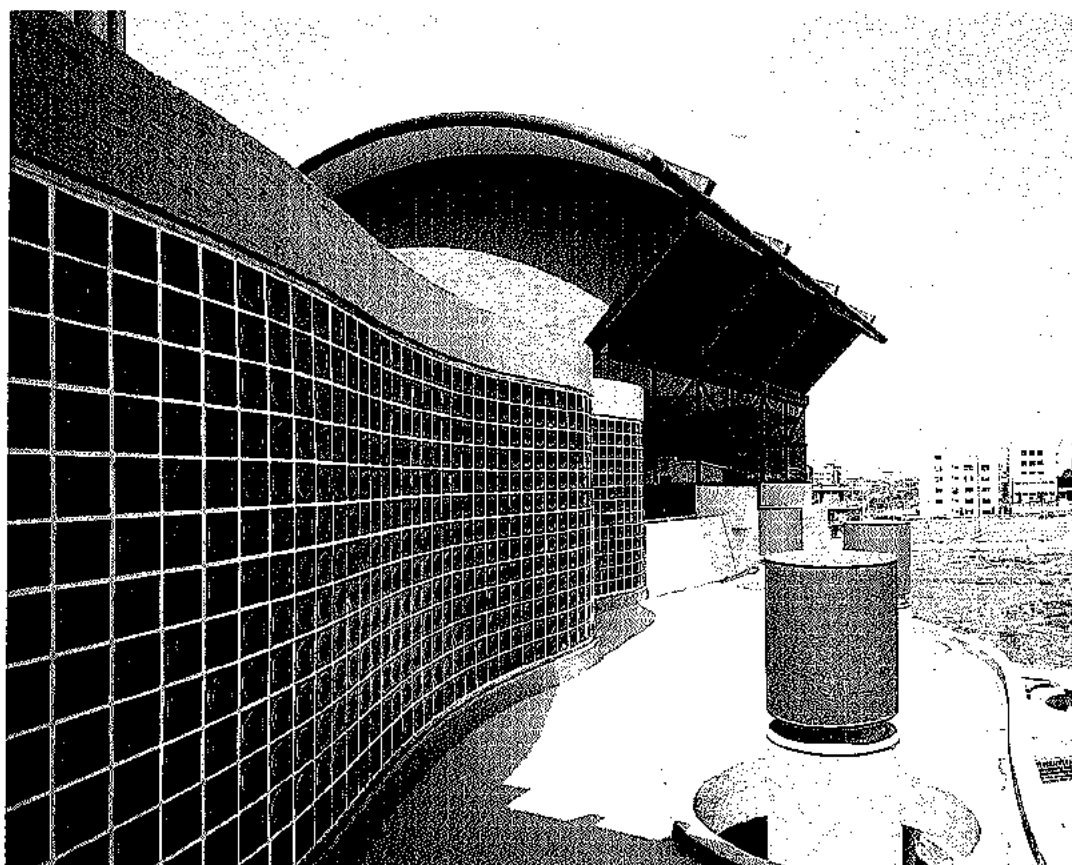
바닥 : 아트 타일

벽 : 인코트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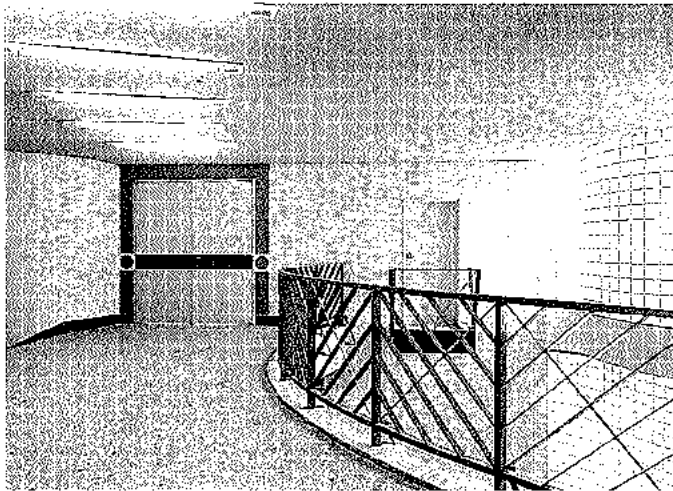


- ① 진입로에서 본 전경
- ② 배치도
- ③ 배면전경
- ④ 진입부 상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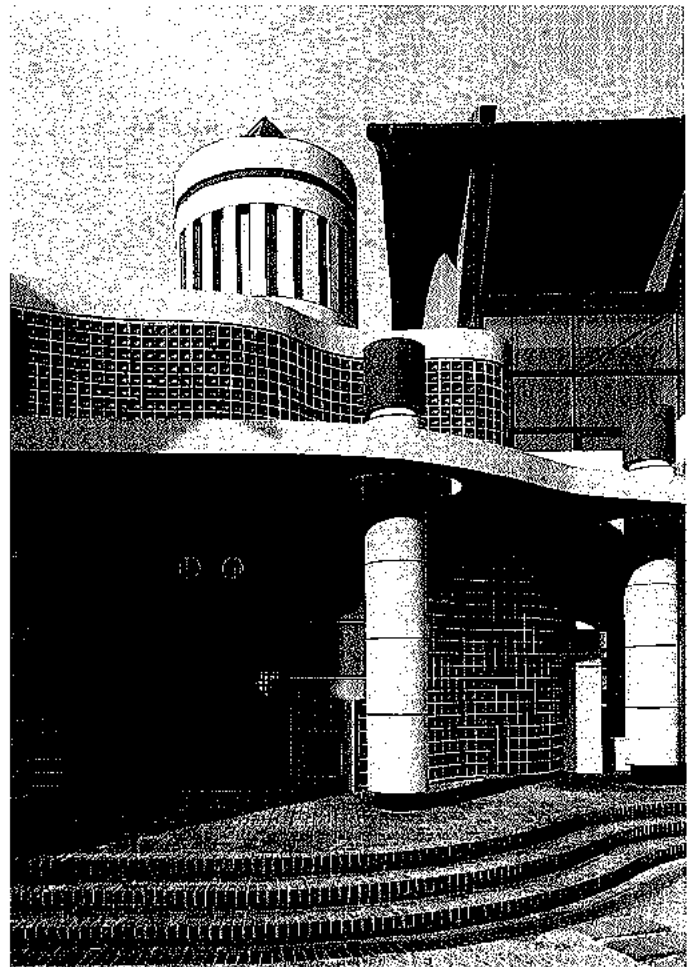
④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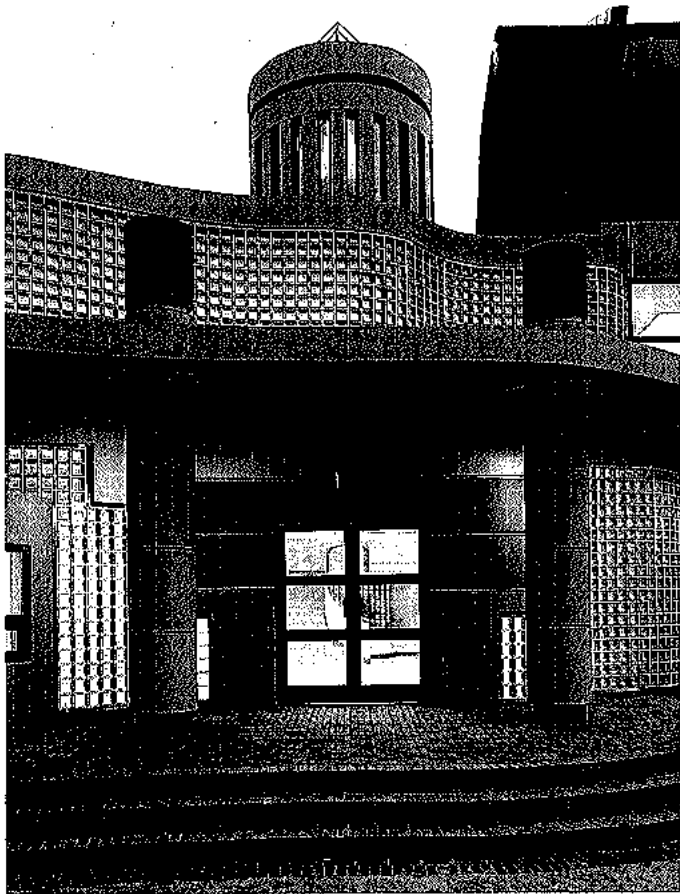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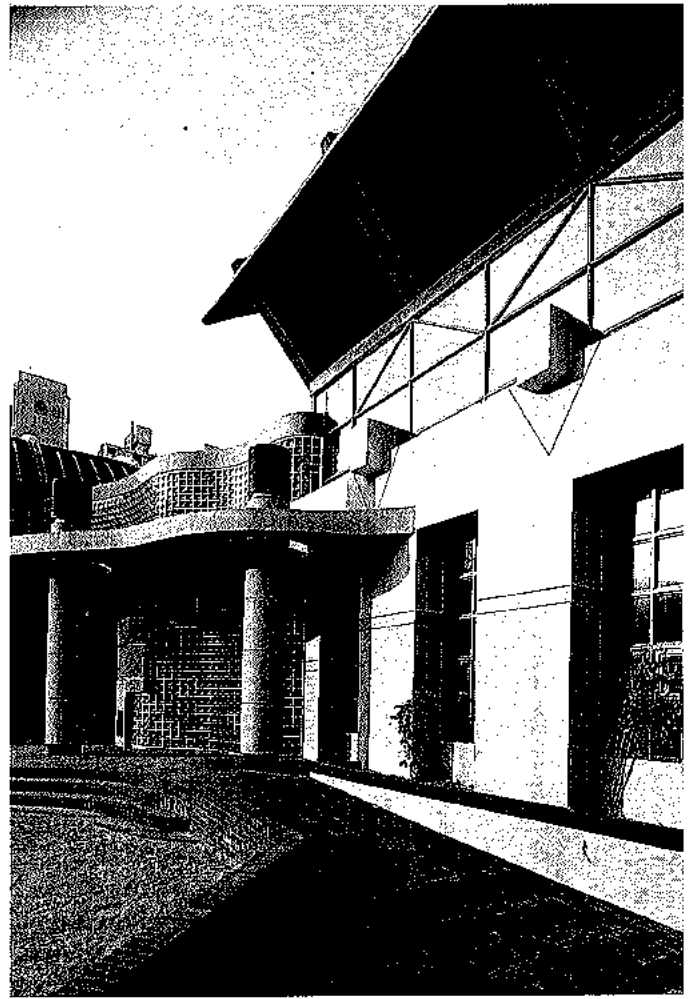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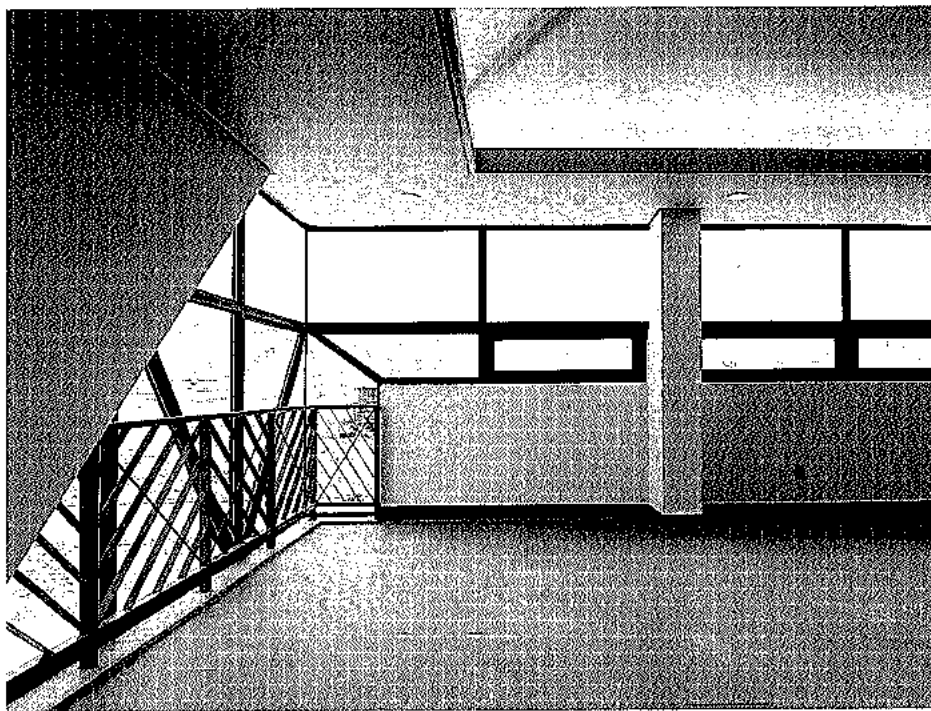
- ⑤ 북서측 전경야경
- ⑥ 중앙로비 2층
- ⑦ 주출입구
- ⑧ 주출입구 야경
- ⑨ 서쪽에서 바라본 주출입구
- ⑩ 독서실 내부 전경



8



9



10

작년 봄, 팔용동 주민회관이 거의 다지어질 무렵, 같은 용도의 건물을 하나 더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청원시로부터 왔다. 먼저번의 아쉬움을 채워 볼 욕심으로 섰듯 맡았다. 시(市)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평면구조는 어쩔도리가 없었지만 형태결정은 자유로운 편이었다. 먼저번의

것이 기하학적인 형태의 합산이었기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개념을 설정해보리라 생각하면서, 건물의 용도, 사용자의 연령별 반도수, 주위환경 등을 생각하다가 사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란 점과 인접대지가 공원이란 점에 생각이 머물렀다. (실은, 이 작안이 되기전에 나는 팔용동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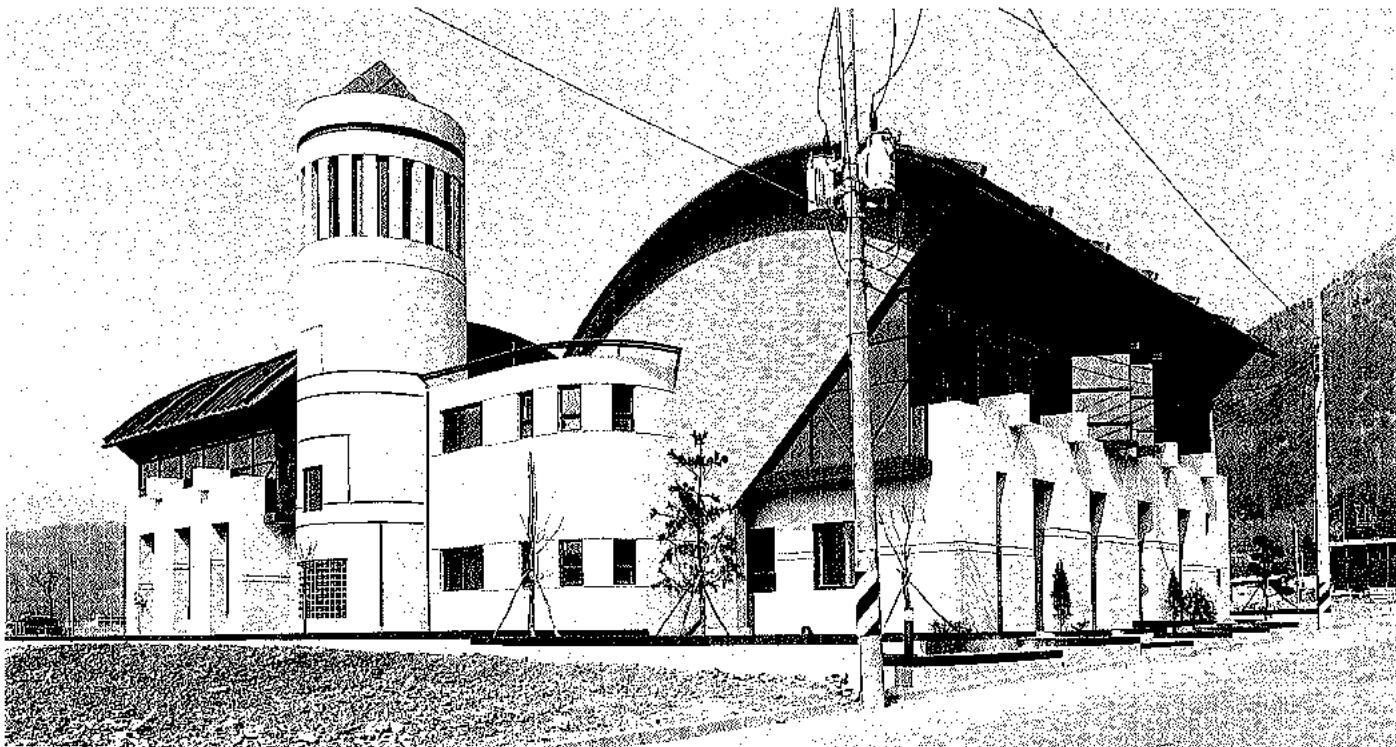
한 개념의 스케치를 완성해 놓고 있었다.)

나무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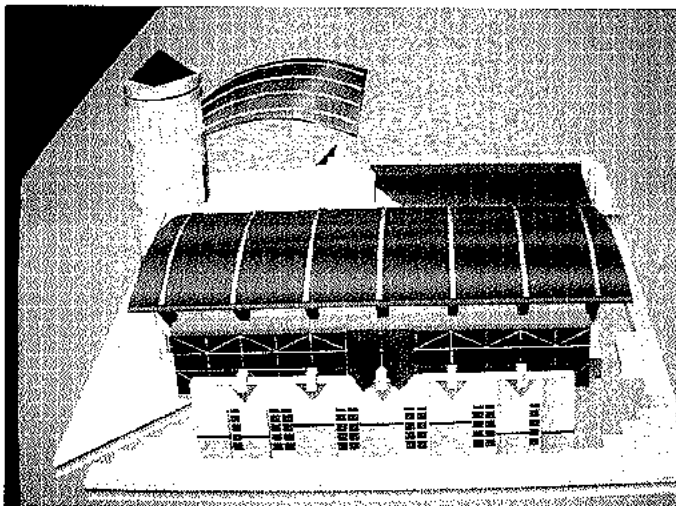
길은 황토색의 나무, 그 형상화...

이 엉뚱한 착상은 나의 머릿속에서만 굴러다니다가 어느날 이른 아침, 최종안으로 정립되었다. 출근시간이 되자마자 황급히 사무실에 나가 머릿속에 있던 상상을 종이위로 끌어냈다. 수시간이 지난후 나의 상상은 치수를 가진 그림으로 바뀌고 그것을 다시 도면으로 바꾸기를 30여일, 설계는 끝나고 한여름 땀벌아래 황토를 파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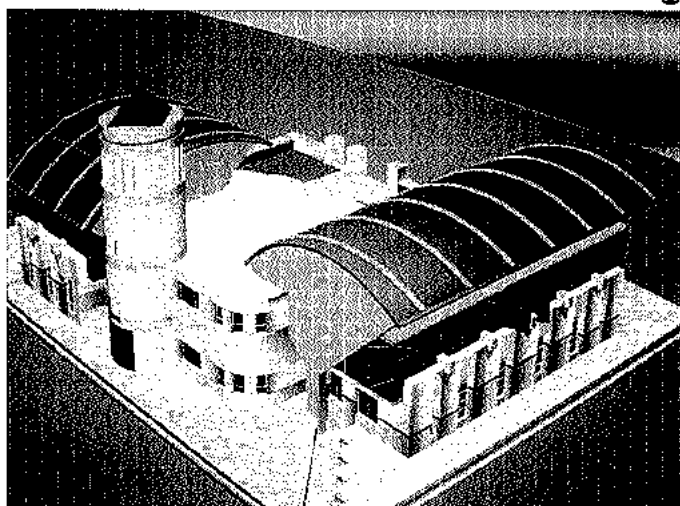
이건물의 형태는 자연에서 주어진 직접적인 동기를 건축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켜본 시도이다. 보는 이들 각기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형태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밝히며, 아울러 내용보다는 형태에 너무 치우침을 고백한다. 어쨌든 동네 한복판에 지어진 본 건물이 설계시 의도했던대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는 장소로써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미 끝나버린 일이지만 건축주의 심한 요구에 의해 당초의 안을 수정하여 건물축이 직각으로 변하게 된 것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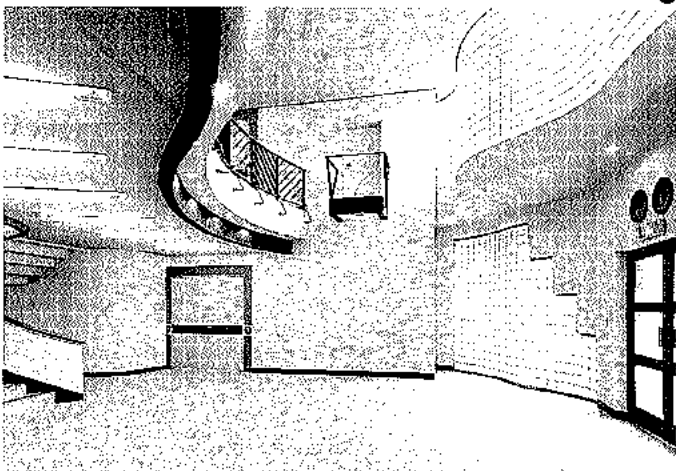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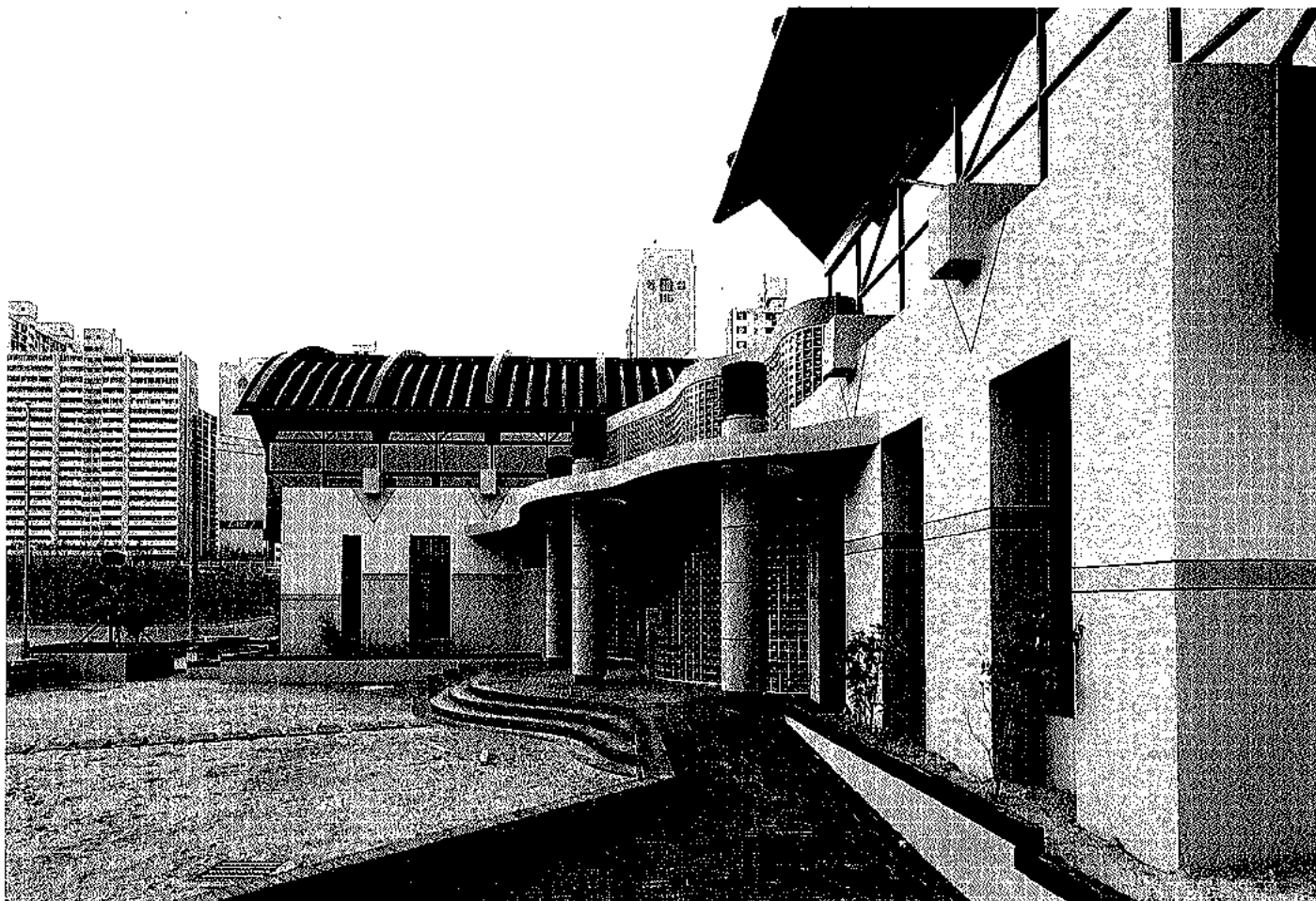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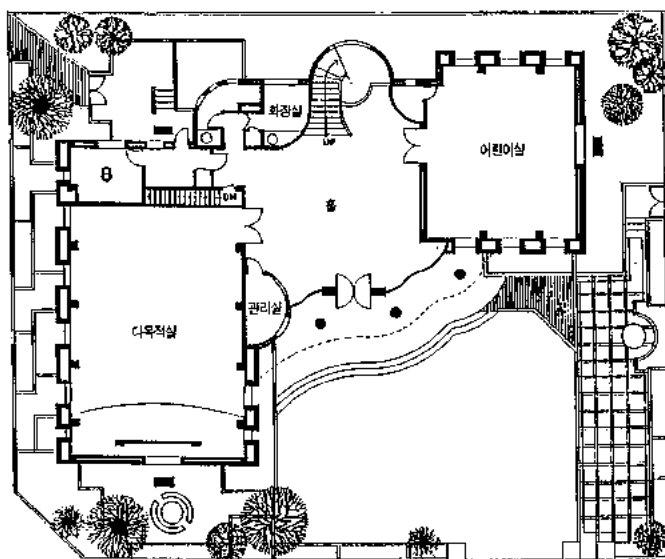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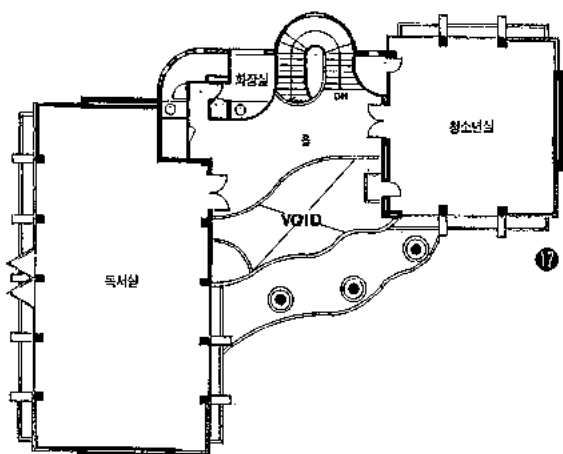
- ① 북서측 전경
- ② 모형1
- ③ 모형2
- ④ 중앙로비

- ⑤ 모형3
- ⑥ 서쪽에서 바라본 주출입구
- ⑦ 2층 평면도
- ⑧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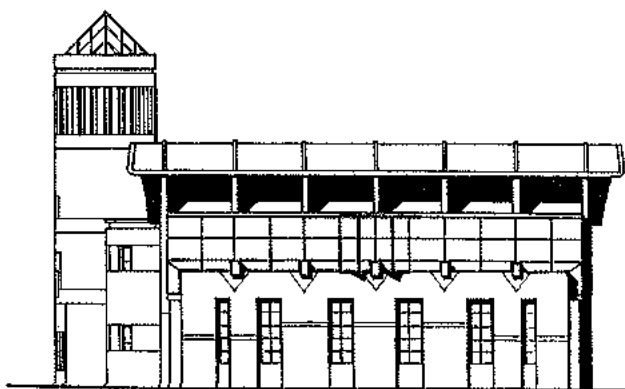
- ⑨ 좌측면도
- ⑩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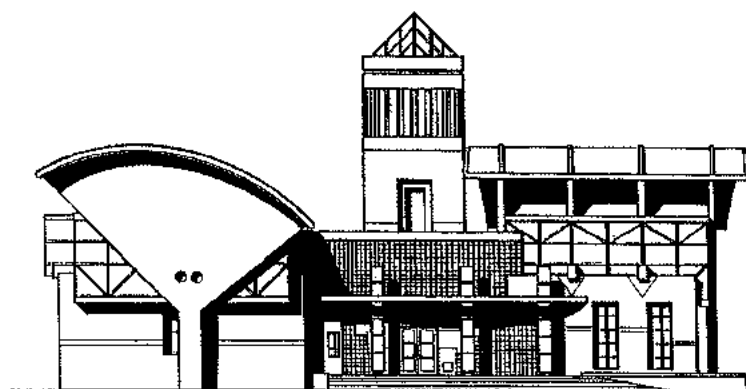
1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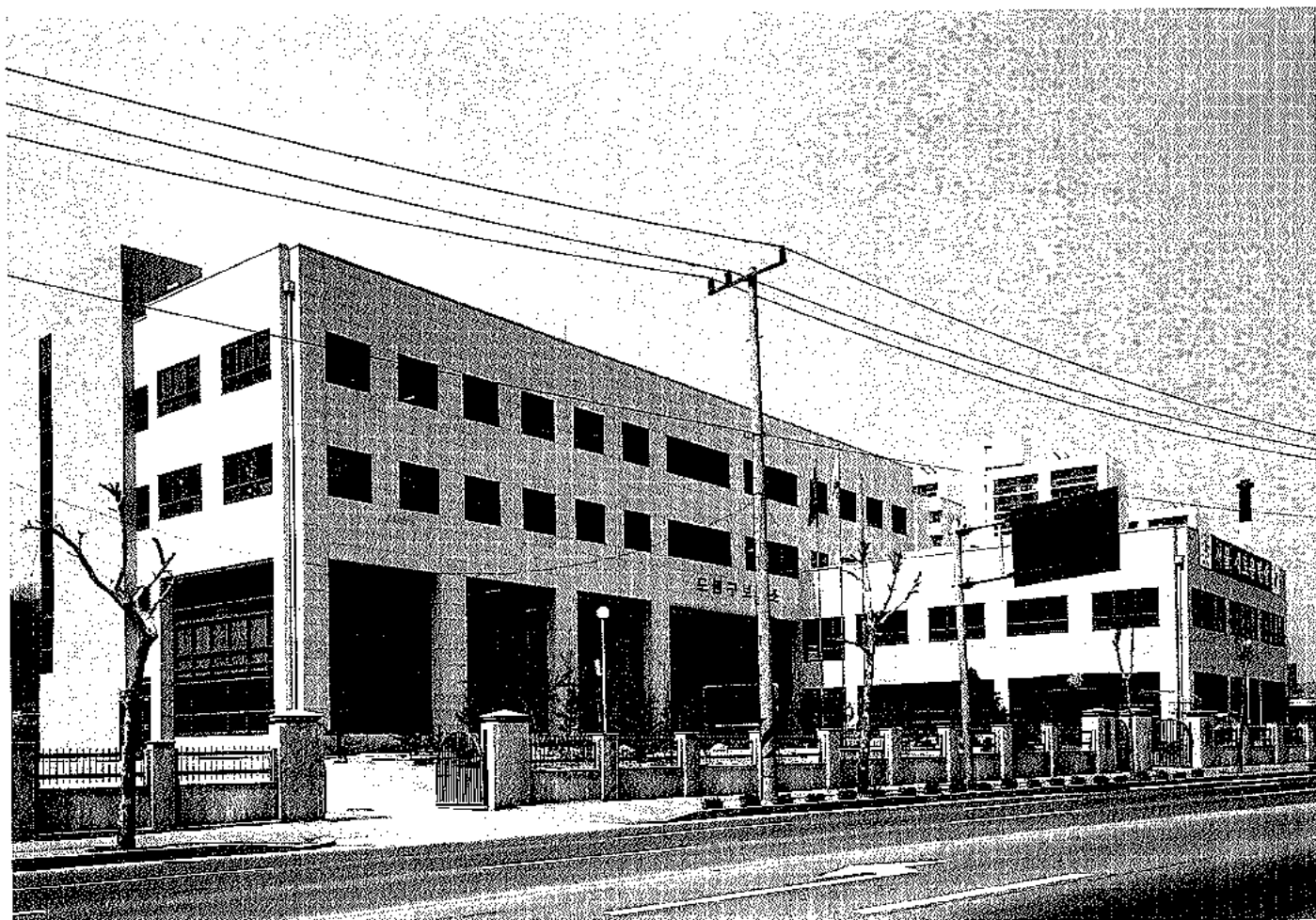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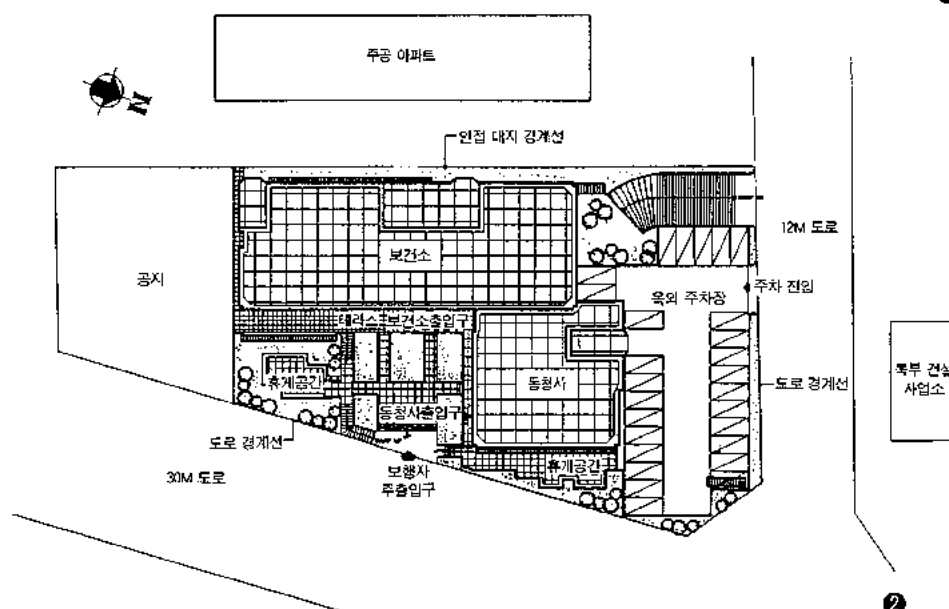
20

Health Center and Town-Block office, Seoul

Designed by Kim, Sang-kyung



12% 컬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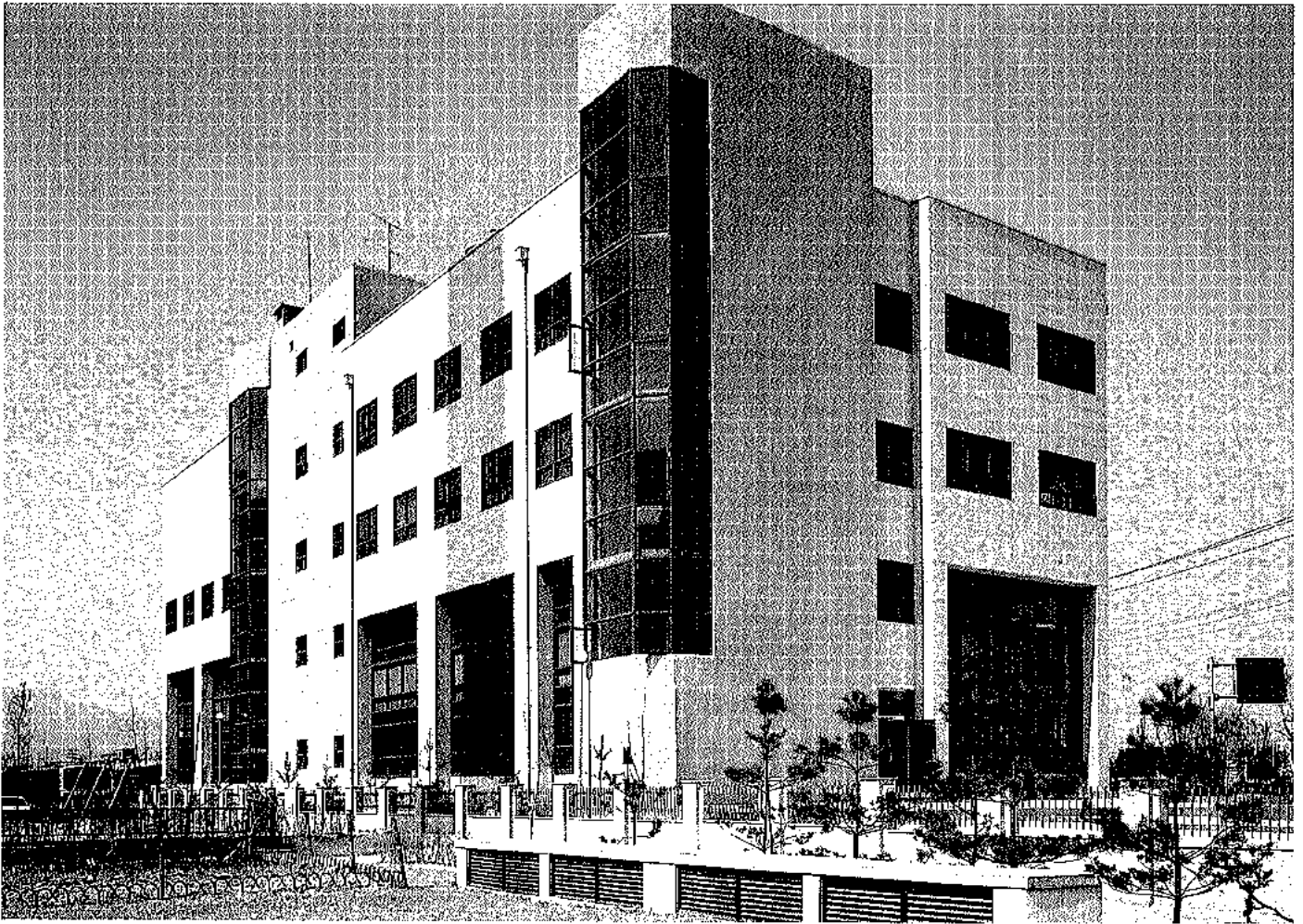
- ① 정면전경
- ② 배치도
- ③ 보건소 주출입구 전경
- ④ 동사무소 실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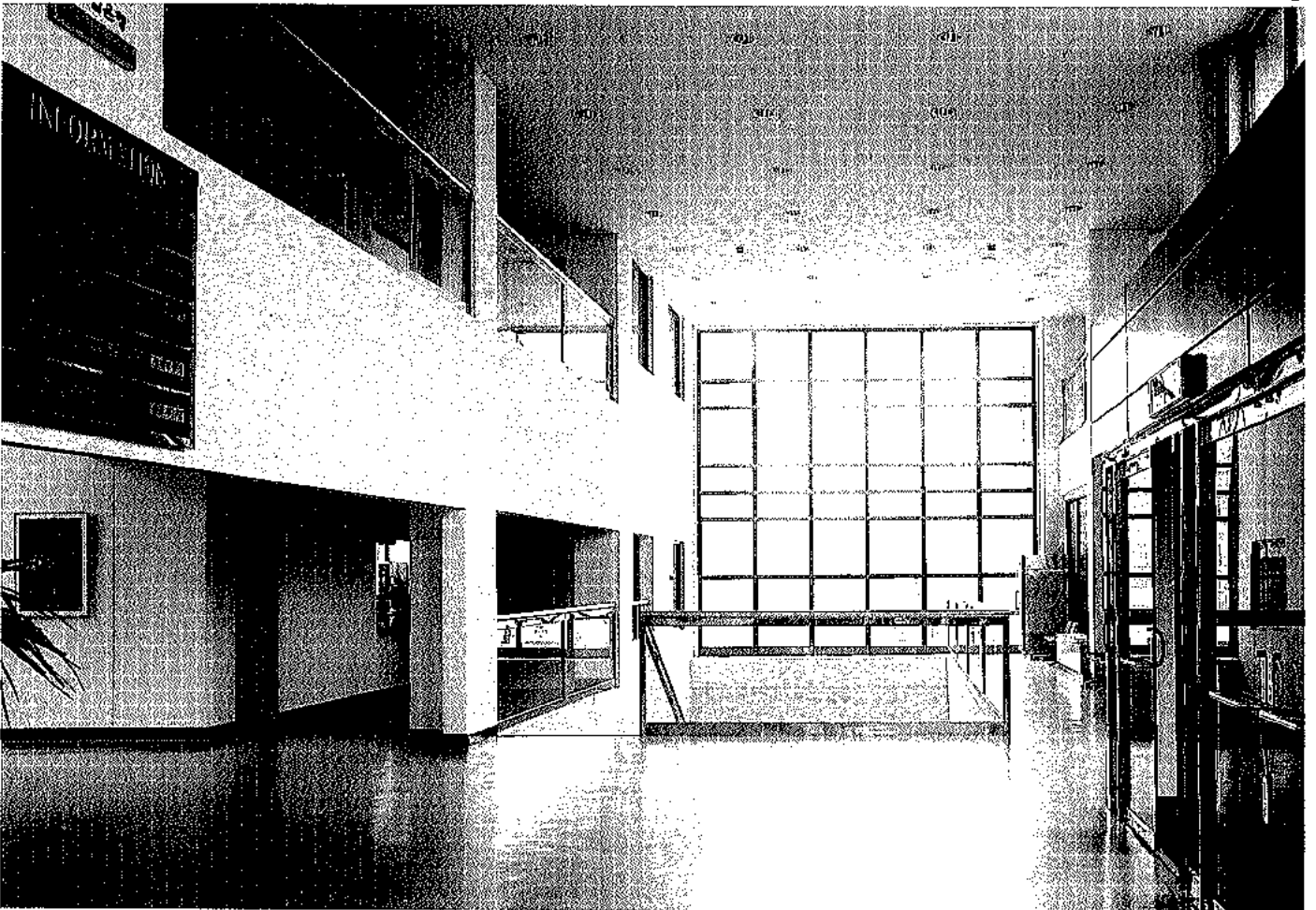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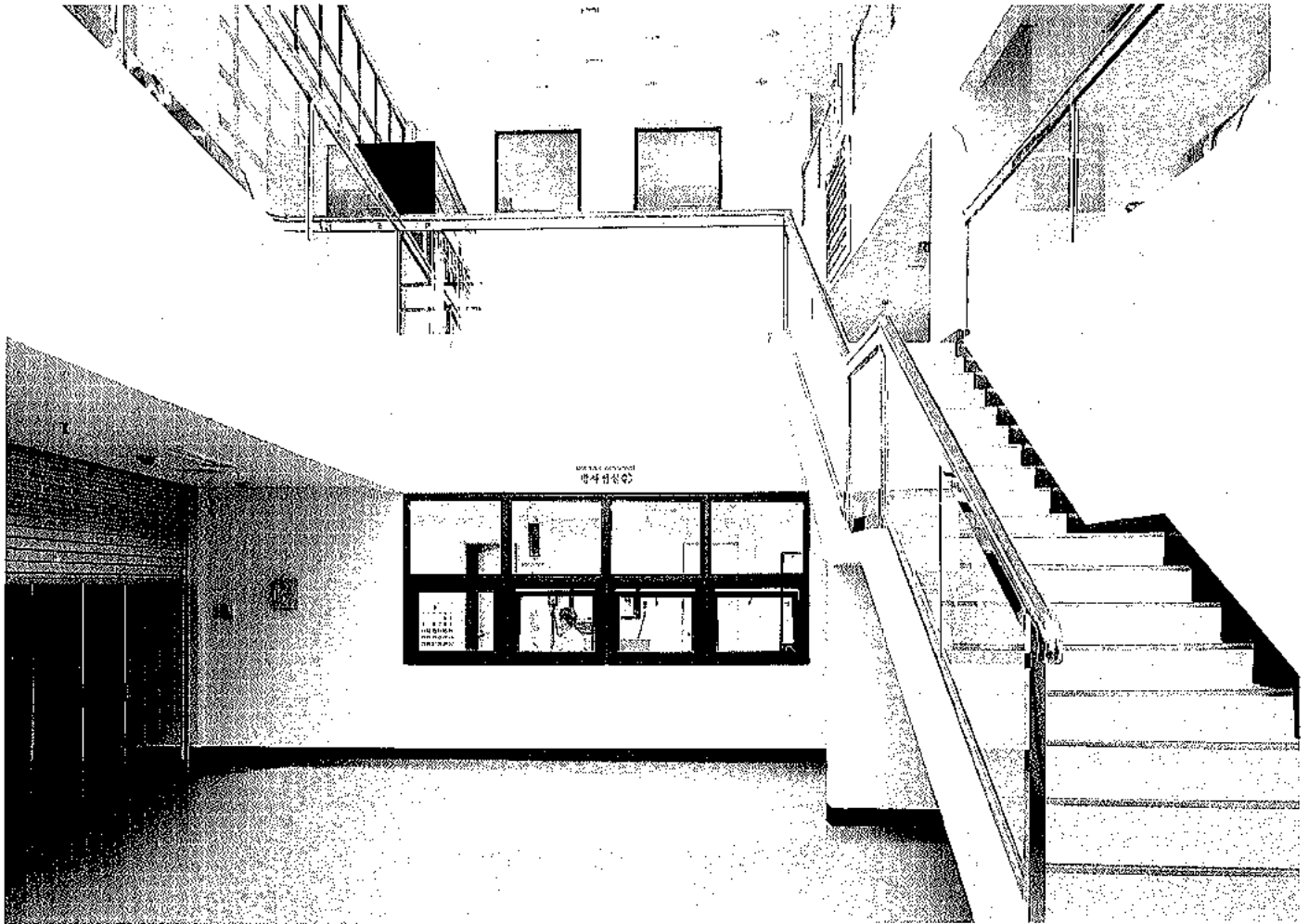
4



5



6



7



8

본 설계안은 1992년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안으로서 현상공모시 주어진 전체 대지 1000평을 설계 과정에서 좌측 대지의 일부인 약 200평을 공지로 남겨놓고 진행하면서 지상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었다.

배치계획에서는 전면의 30m와 측면의 12m의 가로체계에 순응하면서 전면에 면한 앞마당은 보행자 전용공간과 가로공원으로 구성하고, 측면의 12m 도로에 면하여 지상 및 지하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보차분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3.6m 폭의 피로티 공간으로 주차장에서 보건소 및 동청사의 각각의 로비공간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설계의 주안점은 보건소와 동청사라는 서로 다른 2개의 기능을 각각의 비교적 절제된 Box 형태로 분리시키고, 다시 피로티와 아트리움으로 2개의 공간을 상호 통합시켜 도시의 가로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한 점이다. 즉,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하여 라운지, 선근기근, 갤러리 등 내부와

⑤ 배면전경

⑥ 보건소와 동청사를 연결하는 아트리움

⑦ 보건소 내부지하공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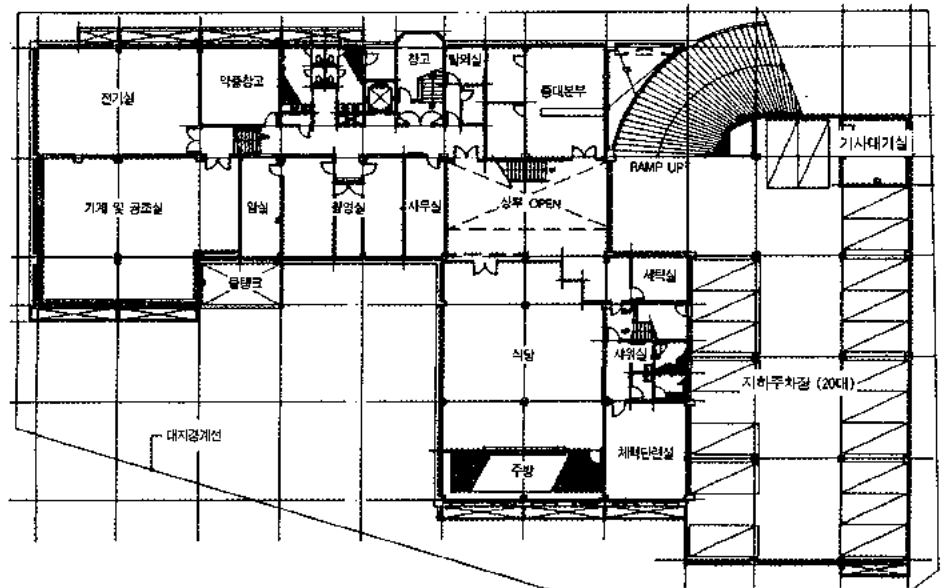
⑧ 대지측면의 주차장에서 전적으로 연결되는 피로티 공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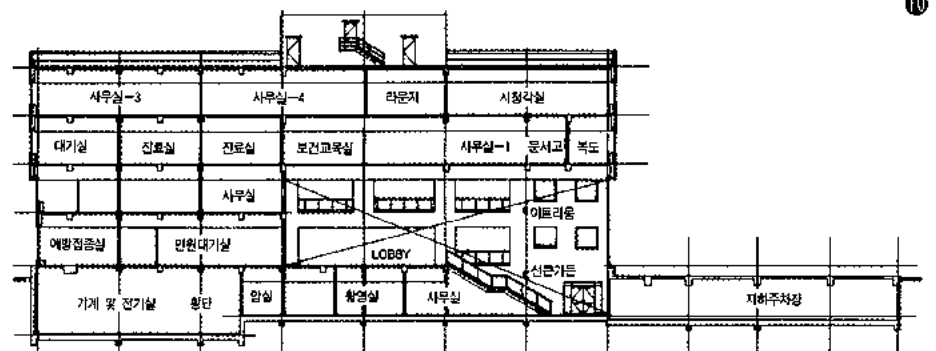
외부공간 및 보건소와 동청사를 연계하는 중간영역의 처리를 강조함으로써 각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공간을 통합시키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도한 것이 본 설계의 주요 관심이였다.

그 중간영역이란 7.2m×24m 크기의 커다란 지상 2개층의 개방적공간과 7.2m×12m 규모의 지하정원(Sunken Garden)으로 이어지는 아트리움 공간이다. 이를 통하여 공공건물이 활기를 되찾아 한결 시원하고 쾌적하게 되도록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서 이 건물을 보고 사용하는 생활환경이 멋이 있게 발전되어 사람들과 공간 그리고 주위환경이 하나가 되는 조화있는 상황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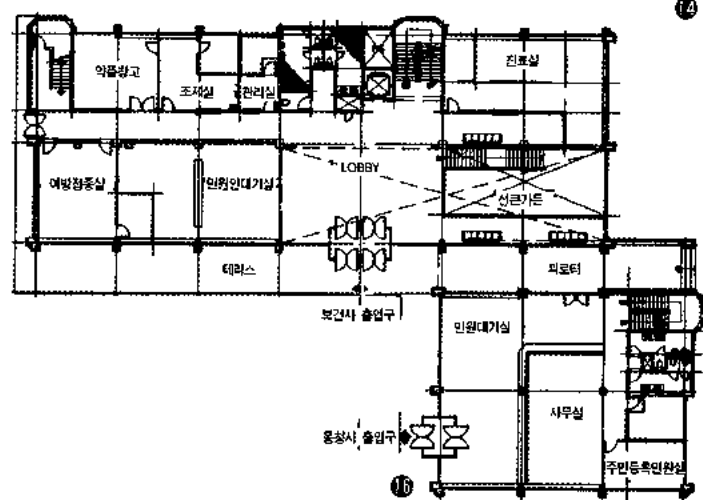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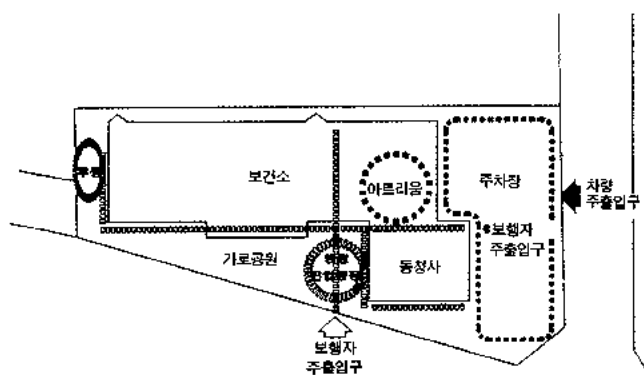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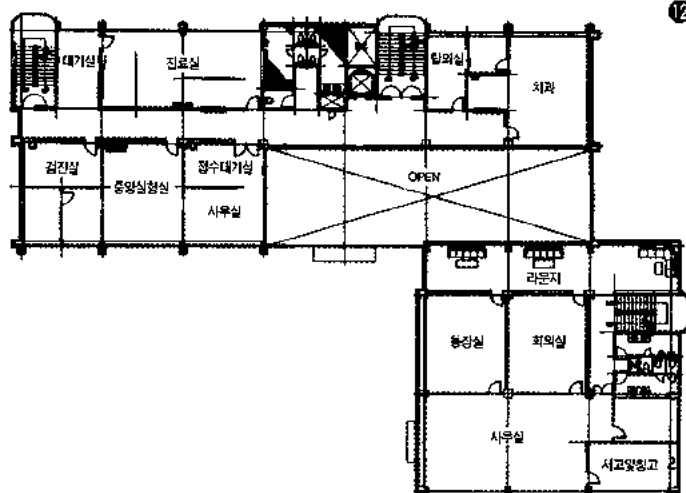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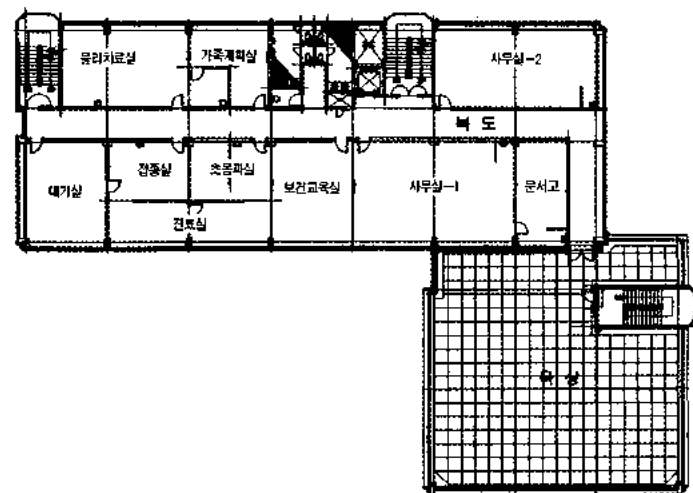


10

- ⑨ 보건소와 동청사의 연결부분
- ⑩ 지하층 평면도
- ⑪ 횡단면도
- ⑫ 보건소와 상부 Open된 로비
- ⑬ 3층 평면도
- ⑭ 2층 평면도
- ⑮ 배치 및 설계 개념도
- ⑯ 1층 평면도



11



서귀포 시청사

Seogwipo City Hall

韓奎峯/(주)천일건축(엔)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n, Kyu-Bong



①

대지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부구역내

지역지구 / 일반 주거지역,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28,426㎡

건축면적 / 9,053.91㎡

연면적 / 12,130.25㎡

건폐율 / 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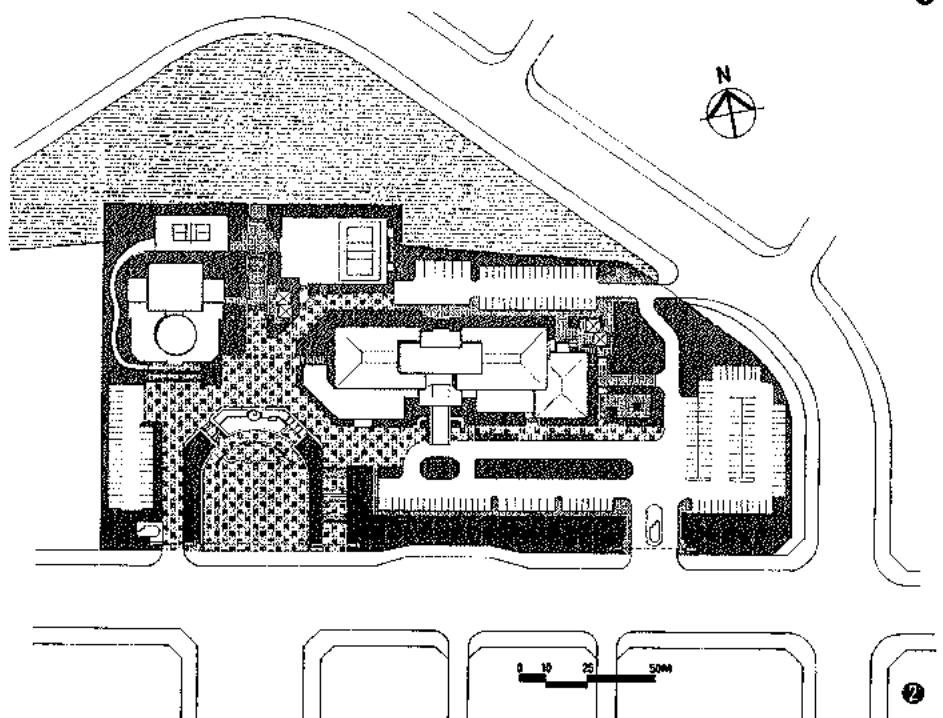
용적율 / 31.77%

외장재 / -외벽 : 화강석+현무암

-지붕 : 동판

-벽 : 수성페인트

-천정 : 석면텍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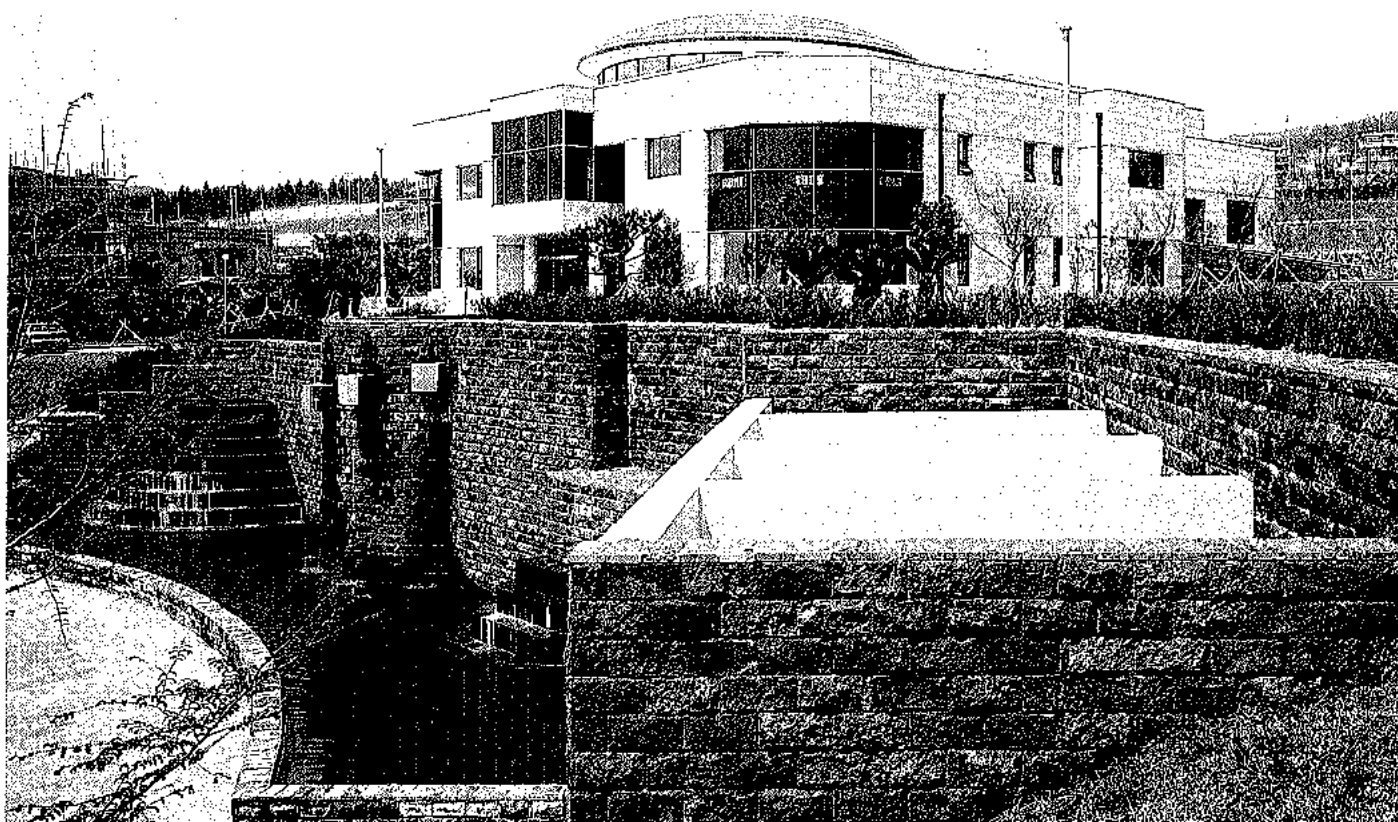
① 전경

② 배치도

③ 의회동전경

④ 청사동 로비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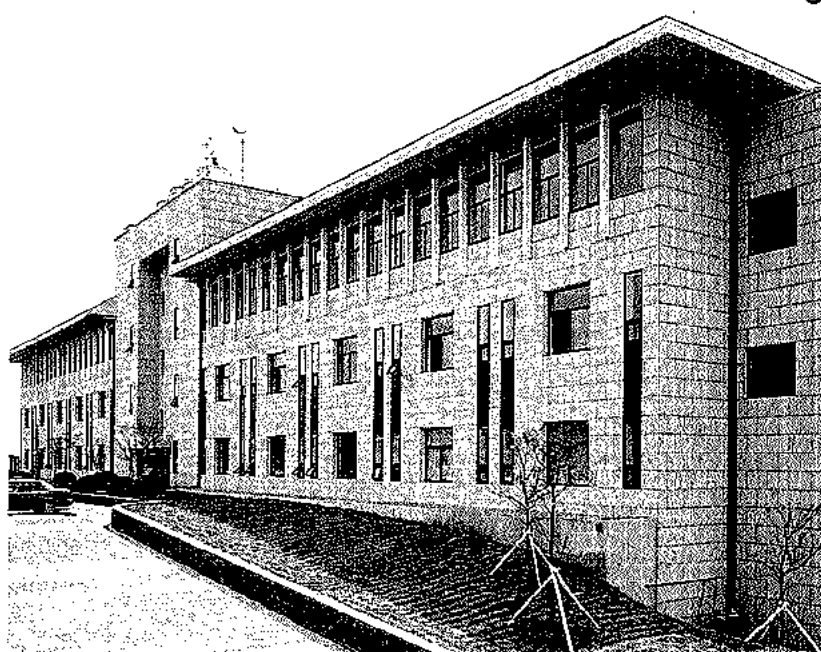
⑤ 청사동 배면



3



4



5

남쪽 전면의 수평선과, 백록의 신화를 지닌 한라산을 뒤로하는 배산임해의 양지에 입지하여 완공된 시청사를 바라보며, 현상설계에서부터 고심해온 “향토성을 지닌 현대건축의 구현”이라는 표현을 되새겨 본다.

배치에서 ‘올해’의 개념을 도입한 시민광장은 신시가지 축(바다—고근산—한라산)을 설정한 의회·시청사 건물군의 구심적 역할과 더불어, 시민공원과 녹도연결, 광장을 통한 지하공간 활

성화등, 주변 공공청사 단지의 구심적 행사공간으로서 집회, 놀이, 운동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평면구성은 민원의 성격별로 독립된 출입구를 마련하고, 동선이 집중되는 곳에 완충·휴게 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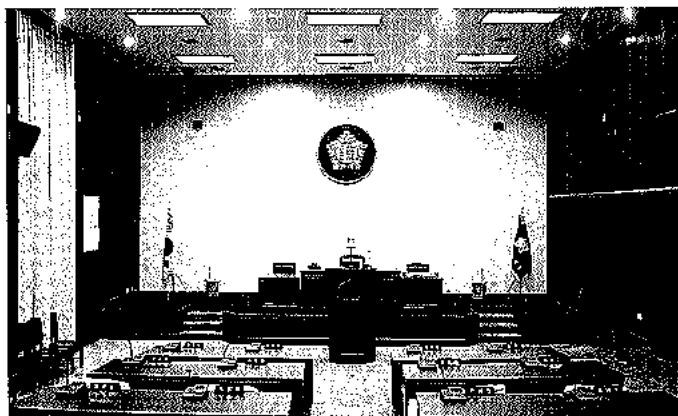
매스변화에 따른 단면구성으로, 창밖에 전개되는 대해상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던 지형적 여건이 남쪽의 건축물

들로 가려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도시설계의 내용 그리고 주변건물이 조망에 영향을 주는 도시구조가 어쩔수 없다고 자위할 수밖에 없다.

건물형태는 전체적 비대칭으로 친근감, 부분적 대칭으로 공공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려 하였으며, ‘줄’로 묶어 놓은 초가지붕을 동판줄눈으로 표현하려 한것은 한라산의 능선, 현무암 돌담의 채질감과 어울려 지역적 정다움과 이색적 정서를 느끼게 할 것이다.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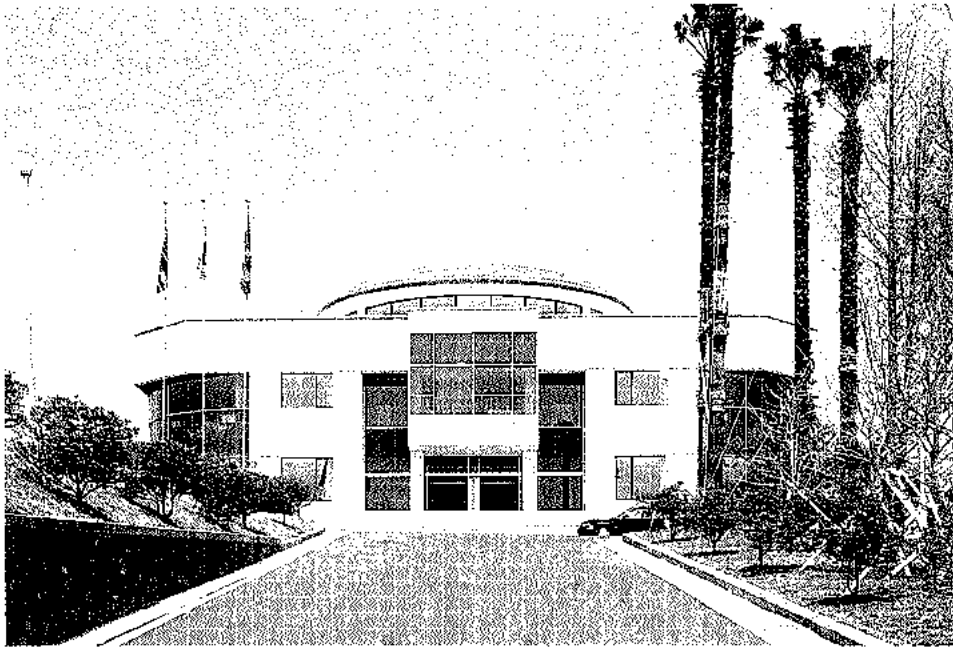
9

- ⑥ 시민광장 벽천디테일
- ⑦ 의회동 대 회의실
- ⑧ 시민홀
- ⑨ 의회동 우측면 디테일
- ⑩ 청사동 외벽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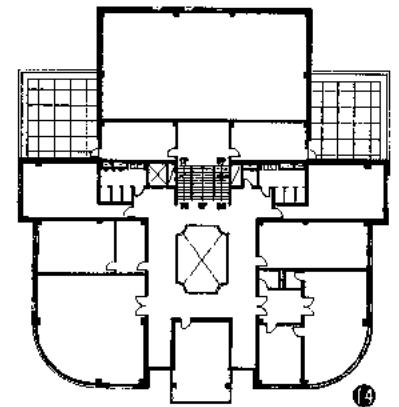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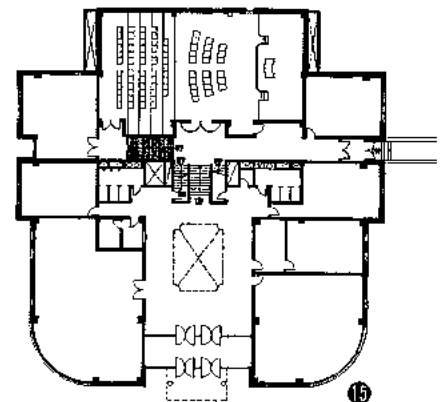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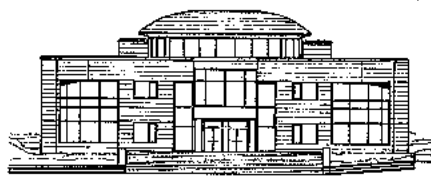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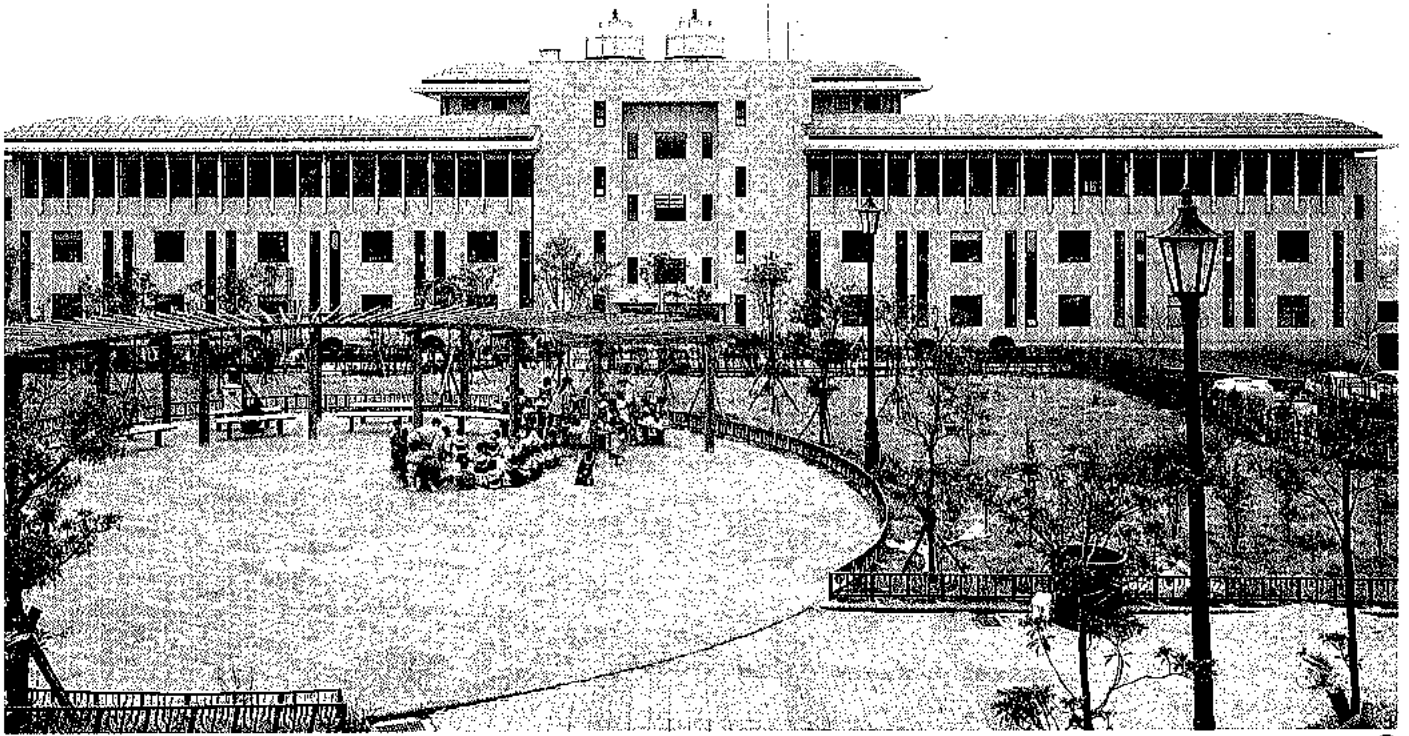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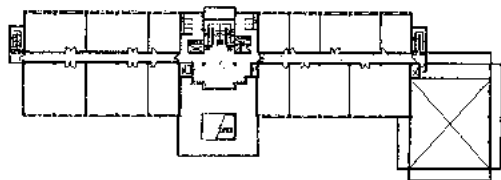
- 11 의회동 로비상부
- 12 의회동 전경
- 13 의회동 정면도
- 14 의회동 2층 평면도
- 15 의회동 1층 평면도
- 16 청사동 배면전경
- 17 3층 평면도
- 18 2층 평면도
- 19 1층 평면도
- 20 청사동 정면도
- 21 시민광장에서 바라본 청사 전경
- 22 청사동 로비에서 본 주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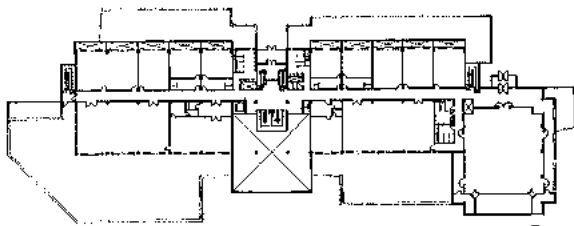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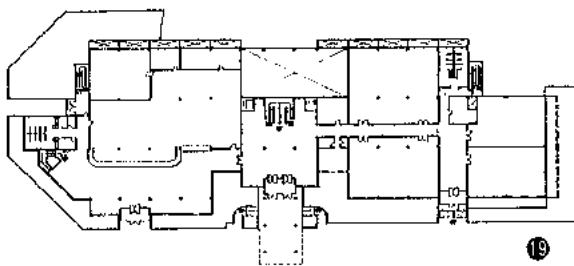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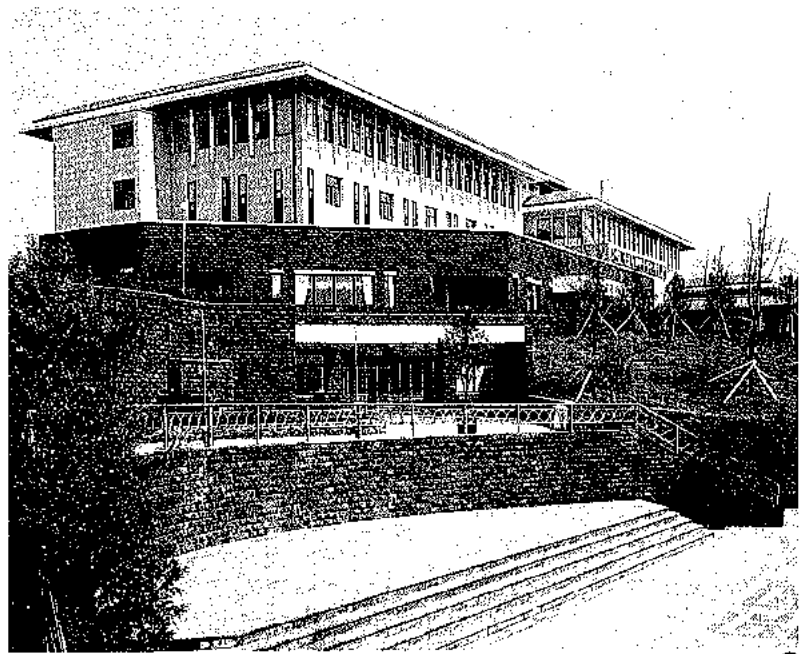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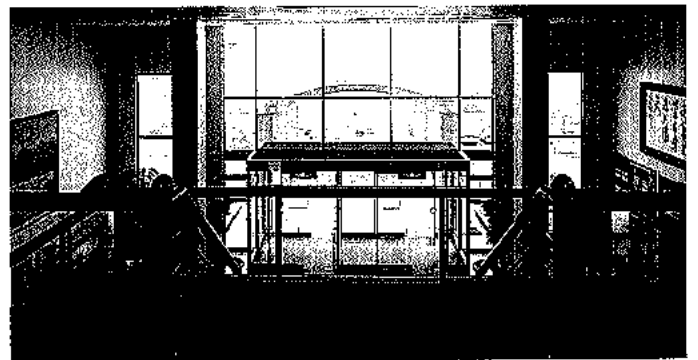
19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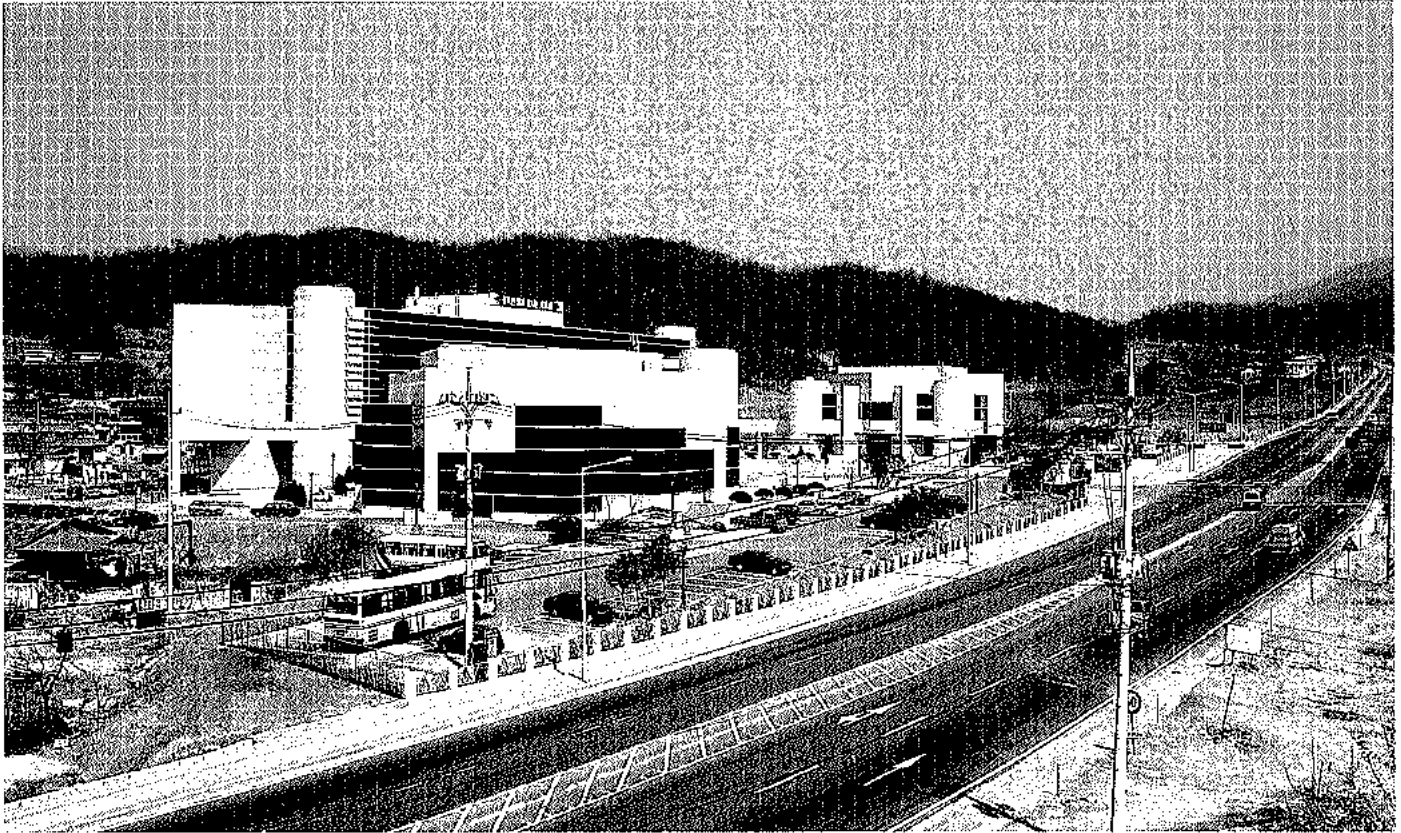
22

미금시 청사

Migum City Hall

林長烈/(주)성립종합건축사 사무소

Designed by Lim, Jang-Yul



대지위치 / 경기도 미금시 금곡동 185-10 외 18

필지

대지면적 / 27,494.24㎡

건축면적 / 3,559.64㎡

연면적 / 12,73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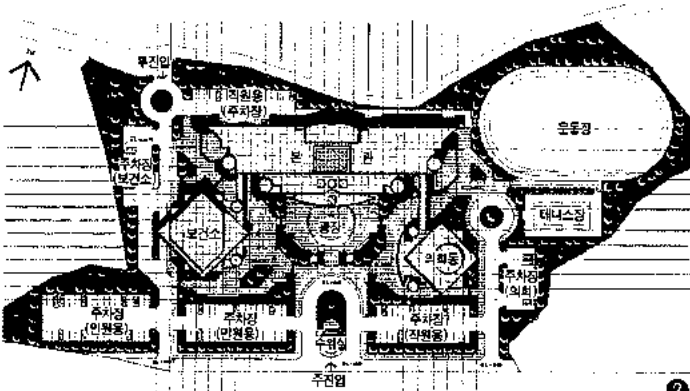
건폐율 / 31%

용적률 / 36%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외부 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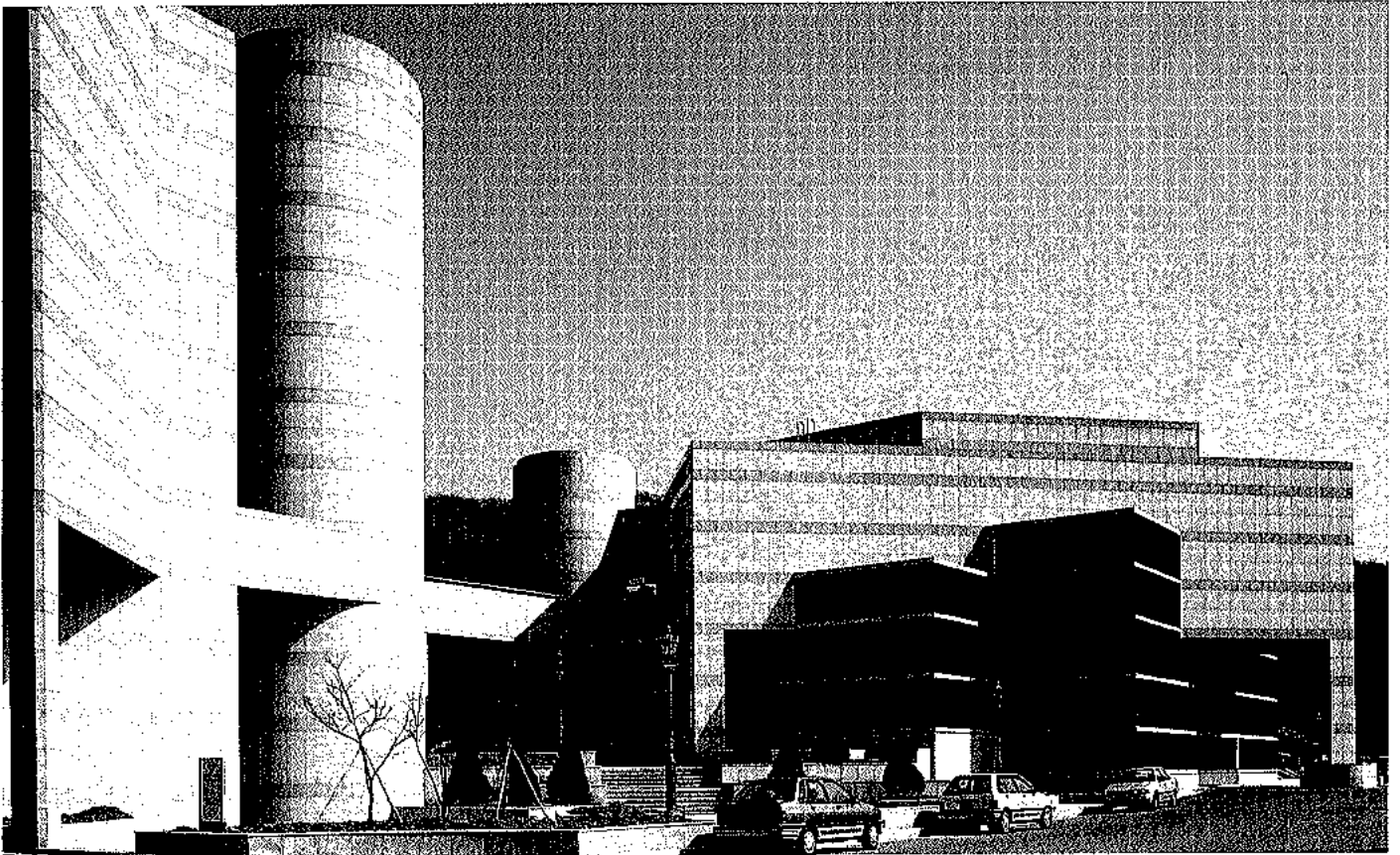
설계담당 / 이명호, 황병혁



- ① 경춘가도에서 바라본 전경
- ② 배치도
- ③ 본관동 로비
- ④ 의회동 정면
- ⑤ 본관 및 보건소동 연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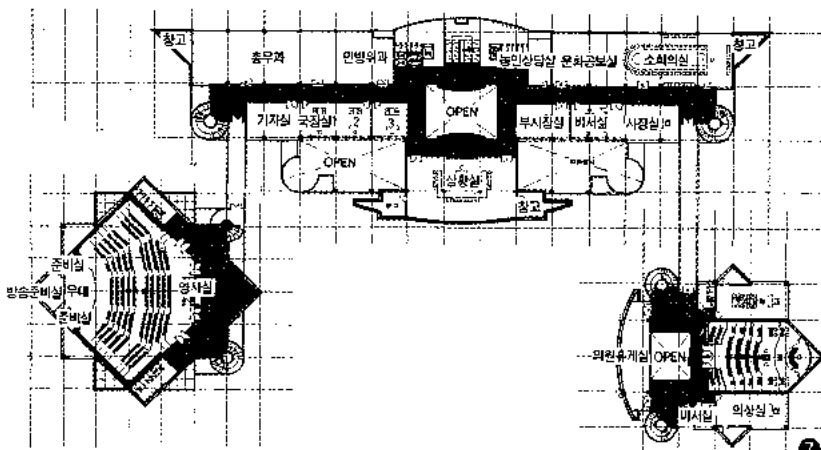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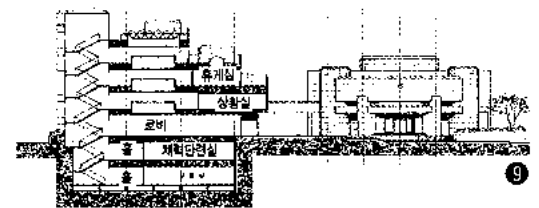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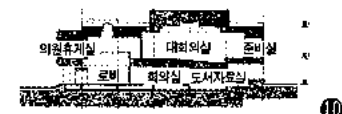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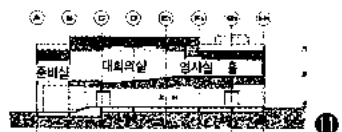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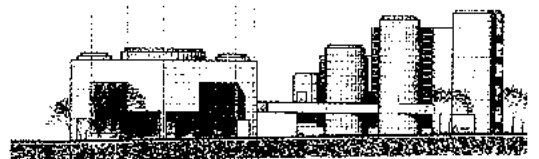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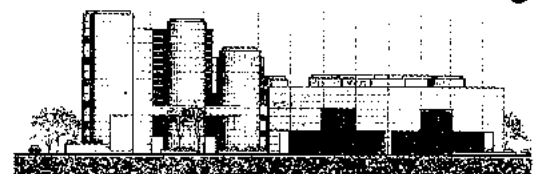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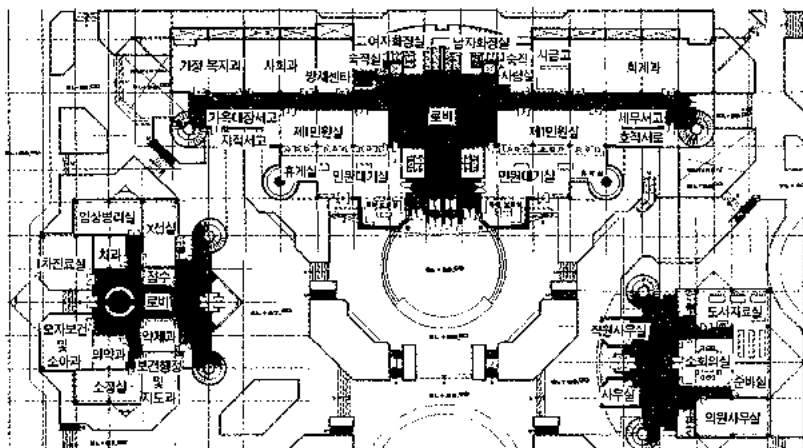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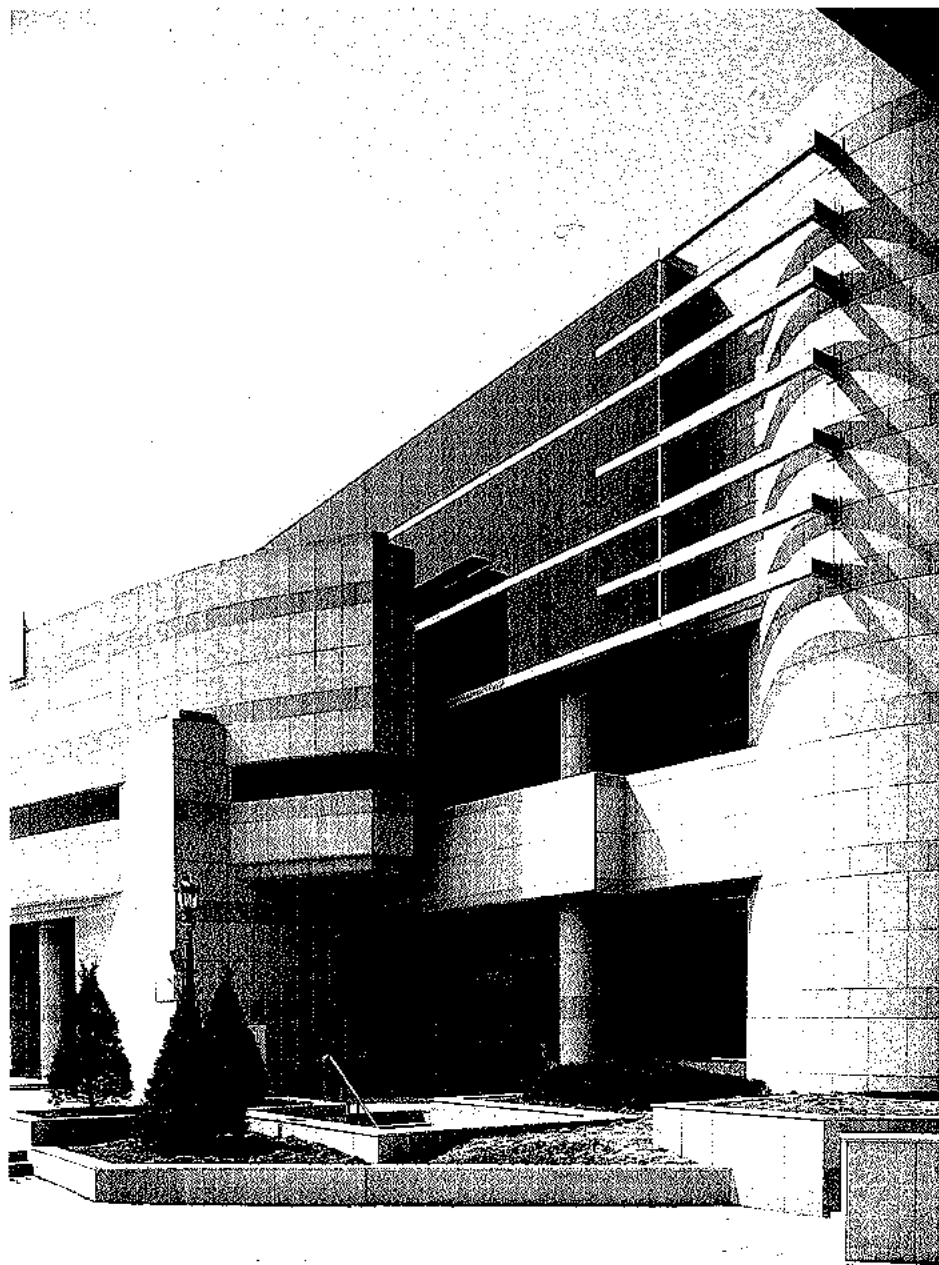
12



13



8



- ⑥ 본관동 정면
- ⑦ 2층 평면도
- ⑧ 1층 평면도
- ⑨ 종단면도
- ⑩ 의회동 단면도
- ⑪ 보건소 단면도
- ⑫ 좌측면도
- ⑬ 우측면도
- ⑭ 의회동에서 바라본 본관동 측면
- ⑮ 본관 및 대회의실 연결 브릿지

이 Project는 91년7월 미금사에서 전국 15개 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명현상을 실시하여, 그해 9월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어서 11월 설계준공, 12월 공사착공을 하였던 숨겨진 수행과업이었다. 발주청의 급박한 년내 공사발주부담 때문에, 설계를 서두를 수 밖에 없었으나, 본사의 보유 자료를 이백프로 활용하여 준공한 바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계획후 4-5년이 지나서야 미로소 건물화 되어져서, 계획당시의 최신설비가 막상 준공즈음에서는 구식으로 전락하게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견하게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되나, 이미 건축 구조체는 완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업무진행상 감속요인이 된바도 적지않다. 또한 건축계획 자체가 완벽을 향하여가는 수도자적 입장이므로, 건물준공시까지 설계변경이 고려될 수 있고, 그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관청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업무가 행정상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합목적적 향하는 발전된 준공물을 위하여 관련자 상호가 서로 긍정적인 협조 태도로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임을 재삼 확인하는 프로젝트였다.

미금시는 인구 7만의 전원도시로서 서울 청량리것점 동북부 20km에 위치하며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축상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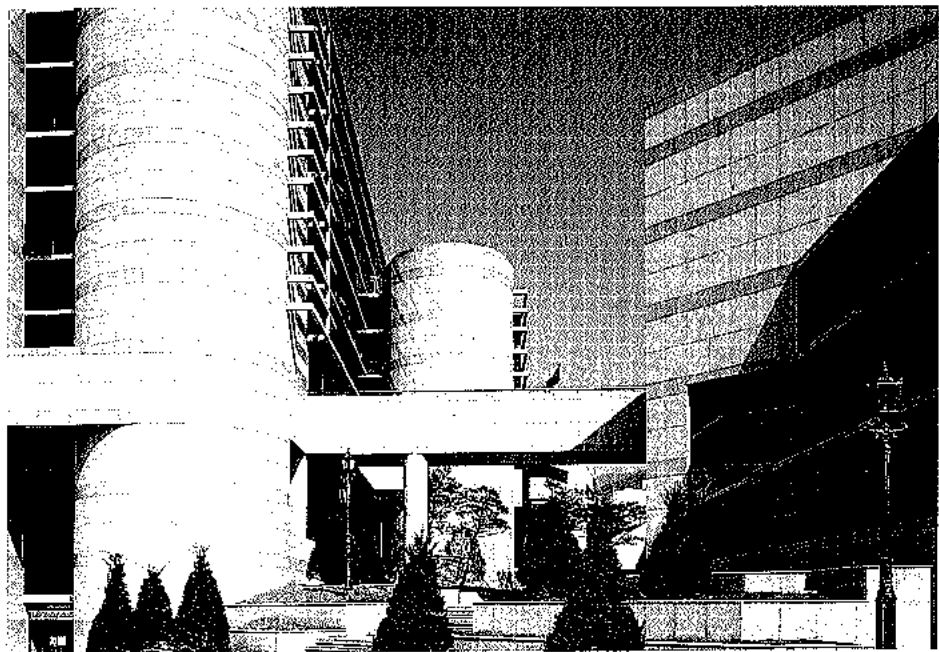
기존 舊市街의 불균형적인 도시체제와 부족된 기반시설을 보완키 위하여 신도시로 승격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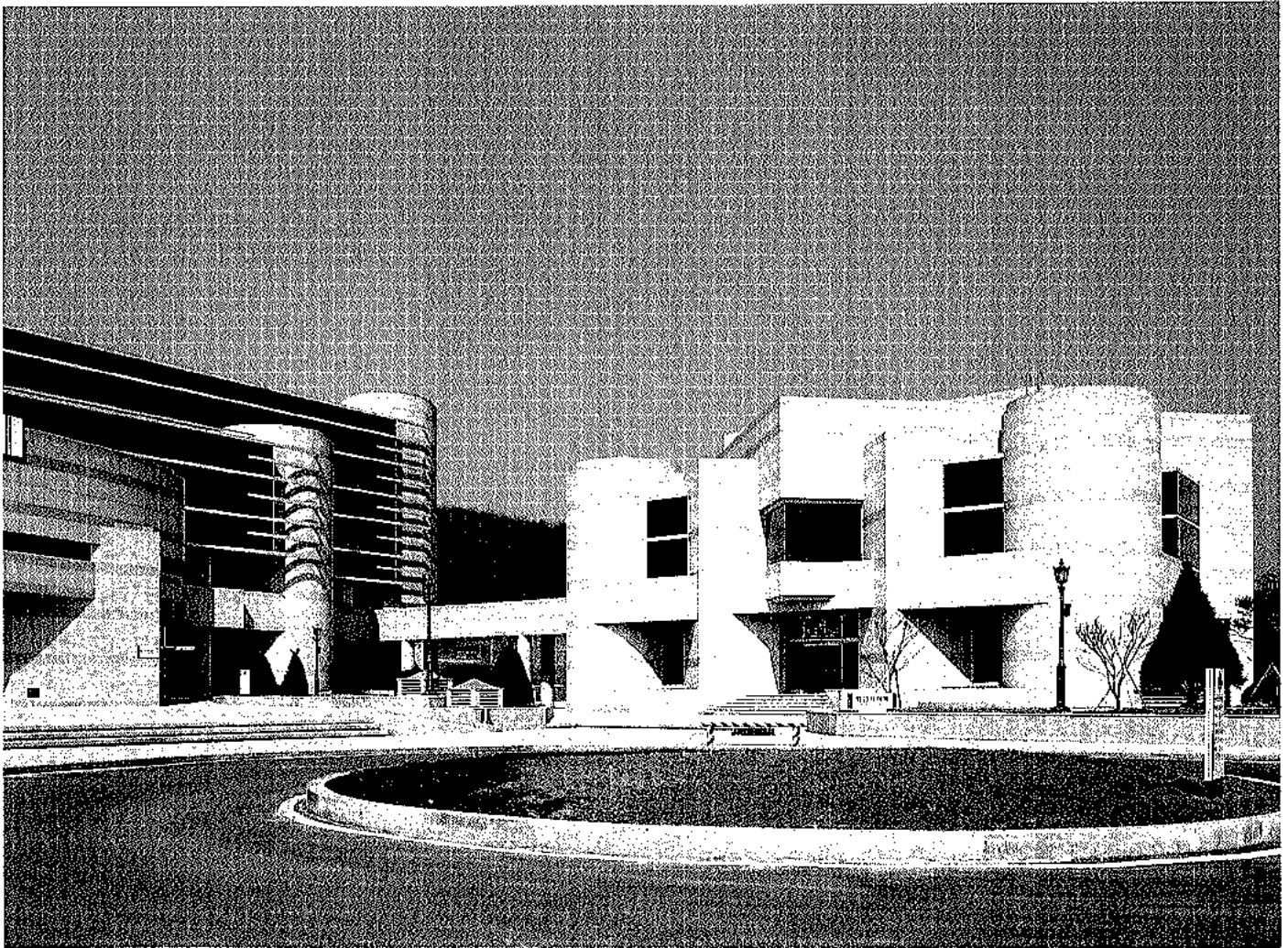
금번 시청의 신축은 도시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위민행정 구현차원에서 발전하는 미금시의 위상 정립과 도시의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자 함에 건립목적을 두고있다.

현장은 경춘국도 상행선측 국도변에 직접 면하여 있으며 부지가 동변을 하고 +55.85 level에서 +50.80 level 까지의 완만한 단계식 능경지으로써 지질조사결과 전면광장 하부 지하 주차장 부분과 본청 청사본관 지하실부분 일부가 연암과 경암이 지표 level-1.10에서 일부 발견되었으나 지하층 확보에는 별부리가 없었다.

그러나 부지내 기존 개천을 구겨 시설로 유도하는데는 전체 배치계획상 지하사설건에 상충되는 점이 많아 외부공간구성계획시 어려움이 많았다.

전면도로가 8%의 경사로를 道路軸 上에 갖고 있어서 서울측과 미금 구시까지 측에서 진입하는 청사의 인지도가 유효하게 확보되었으나 반대로 춘천측에서 진입시에는 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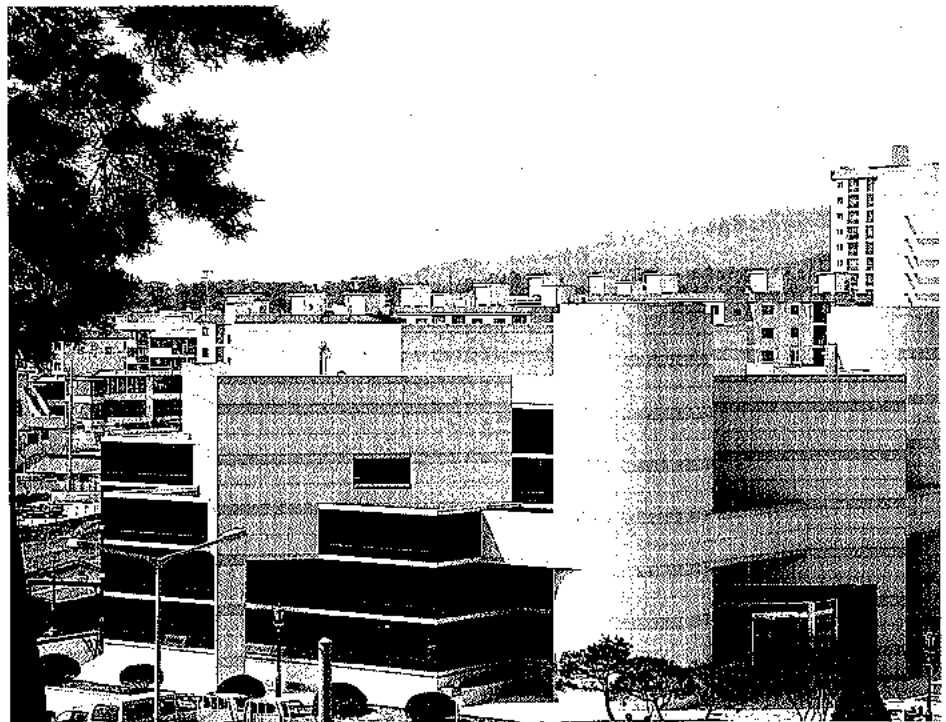
관계로 인지도 확보에 고심하였다.

그러하여 계획시에 대안으로서 낮은 Podium을 갖는 High-Rise본관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부적 대지의 현황외에 거시적 환경분석에 따른 결과를 얻기위한 노력 끝에 여덟번의 Remodeling Study를 거쳐 4층높이규모로써 확정되고, 인지도의 손실을 보전키위하여 형태분석 기본요소인 원통형, 원호, 다각형 Mass로서 시각적 Identity를 높였다.

이들은 시청본관동과 의회동 그리고 보건소동으로 중앙진입광장을 구심으로 각기 독립된 기능구분에 의하여 3개로 분절하였으며 Bridge로 연결되어 있다.

본관동을 중심으로하여 보건소동은 구도심에서의 접근이 가깝게 배치하고, 의회동은 독립영역확보가 가능한 북측 공원쪽으로 편중 배치하였다.

입면계획에서는 84년 작품인 수원시청사계획에서부터 시도하였던 탈 권위주의적 입면추구와 87년 인천시립박물관과 89년 삼성동 본사 사옥 입면에서 유추된 형태적 모티브의 대입으로 Post-Modern의 SlickTech를 도입시도하였다. 그것은 원통, 원호, 다각형요소의 분절과 조합에 의한 율동적 입면을 시도함으로써 구태의연하고 Rigid한 입면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이러한 형태요소의 Void部가 太陽日照에 의하여 Solid部에 보여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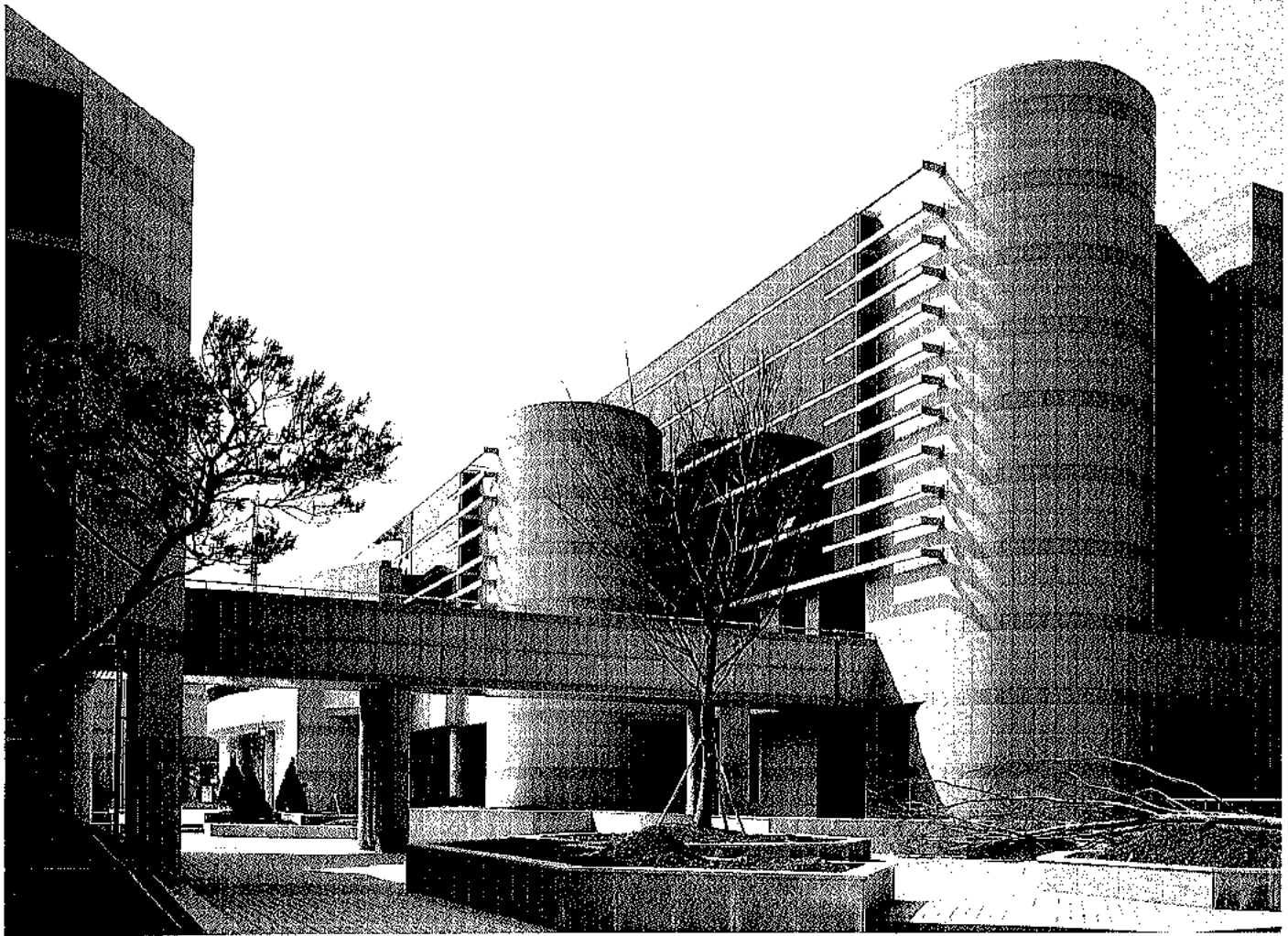
17

음영의 극적 효과도 고려되었다.

건물내부의 Partition은 당초 경량칸막이를 제시하였으나 설득에 실패하여 WetSystem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고품질, 고정밀도의 내부 조립식 칸막이가 Cost-Quality Evaluation상 충분한 경쟁력

이 곧 갖추어져 보편화 되어질 것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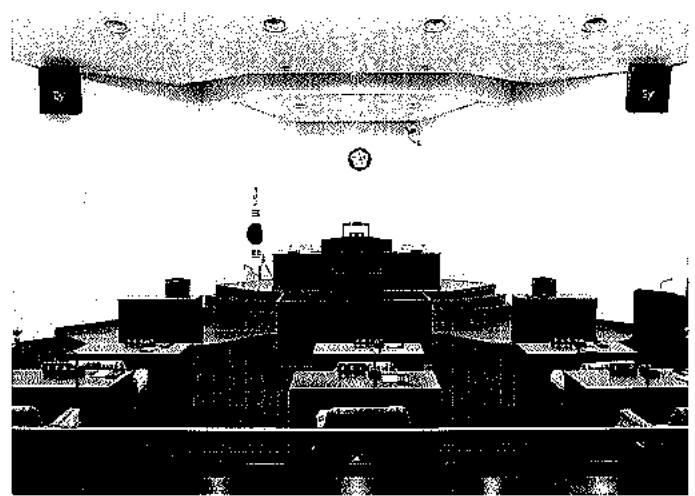
본 건물의 시선은 동면한 정면쪽으로 경춘국도를 건너서 안산의 사철 변화있는 훌륭한 조망이 바로 눈앞 가까이에 있음은 본 Project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18



19



20

부지가 경춘국도변에 바로 경계하여 위치함으로써 통과 차량소음 등을 여과할 수 있는 완충공간 형성에 노력하였으나 후면부 부진입로의 기존 개설도로가 변경 불가하여 본동을 최대한 뒤로 밀어 위치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점과, 진입문계에 있어서 경춘국도상에서의 진입은 현재 평면교차 진입으로써 향후 우회차와 차도를 계획하는 입체교차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사업초기에 이미 제시했었으나 사업비 추가확보관계로 건물준공시점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분간 진출입차량의 동행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사비관련하여 관공서의 공사예산은 내무부 기준산출근거에 의한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Gap이 있으므로 예정공사비결정은 계획설계시 제시되는 추정공사비로서 규모확정하여 설계진행시에 무리한 계획진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청 등의 관공서건물은 이용자(국민, 시민)들의 투자(세금)로써 수행되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시설과 달리 이용자들이 선택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특색으로서 설계계획시 행정

가능수용성과에 비금가는 요소로서 외부이용자들의 편의성, 대기시 쾌적성, 입면의 친밀성, 외부공간의 실질적 휴게이용성등에 주력해야 할것이다.

- ⑫ 본관 및 의회동 연결부 전경
- ⑬ 보건소동 측면
- ⑭ 본관 및 의회동 연결부
- ⑮ 대회의실 내부 전경
- ⑯ 의회 대회의실 전경

고전적 상징의 건축 표현

Architectural Expression of Classical Symbol

—임장렬作 미금 시청사—

李範幸/단국대 교수

by Lee, Peom-Jae

건축은 현재 모든 문화상황의 집적일 수 밖에 없다. 당시 그 사회의 개념, 기술,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현상의 겉침들이 모든 재반 요소를 포용하고 있다 하겠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한국건축의 현상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현상이라기보다는 실상이라고 하겠다.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새로운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것도 이러한 건축의 속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근대건축가들의 역할이 더 이상 이해되지 못하는 시기가 오자 건축가들이 단순히 기능자로서의 위치로 전락할 것인가, 또는 종합적 사상가로서 그 역할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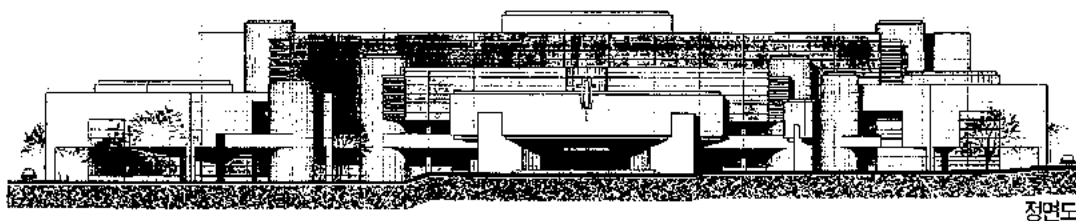
세계는 이미 앨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넘어서서, 정보가 더이상 한사람의 독특한 영역을 확보해 주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지 못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정보의 공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엄청난 하이테크의 발전은 지적인 능력과 정보확보의 다소가 중요하던 정보화사회로부터, 탈 정보화시대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부터, 점차 창의적이고 개성화된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국제화라는 것은 결국은 종족화 또는 민족개별화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건축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건축사는 결국 또 다른 의미—근대 건축사의 독보적 사상가로서의—로서의 종합자(Conductor)가 되어야 한다. 이는 창의성과 개별화가 철저한 프로듀서(P.D)와 같은 것이 될 지 모른다.

금년도 아카데미상을 휩쓴 스피버그는 원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이전에는 20세기 후반의 영화 하이테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저하지않고 영화에 하이테크를 도입함으로써 그야말로 정보화시대에 영화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그 절정에, 그는 180°역전하여, 마치 시대를 30년이나 되돌린 것처럼, 흑백의 영상으로, 인간의 본연을 파고드는 새로운 복귀를 하였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창의력있는 사고’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별화된 언어’라고 하겠다. 이것이 21세기를 의미하는 ‘Vision’이라 하겠다. 21세기는 ‘비전(vision)’의 시기라고 한다. ‘창조력’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기술과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결국 ‘창조력 또는 창의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건축에 있어서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창의력’과 ‘미래에의 개념과 제안—즉 vision’에 의한 스피버그류의 ‘보다 인간적인’ 어떤 것의 애정과 이를 위한 ‘통합’ 및 ‘조정’이 어떠한가에 있을 것이다.

1. 미금 시청은 연면적이 4,000평이 되는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3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다. 본관, 보건소, 의회동이며, 운동장, 테니스장 및 주차장들이 개방된 장소(open space)를 형성하고 있다. 설계자인 건축사 자신의 설명을 들자면 이렇게 배치한 것은 “한국적 공간 배치개념에 따라 진입공간, 시민광장, 본관동 순으로 배치하여 시청사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중략... 시민광장을 우리 고유의 안마당 개념인 중정으로 형성,



정면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입부의 U턴 도로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중략...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이 미금시 청사는 경춘가도에 면해있다. 주 도로와 직교하고 북측에 위치하는 대지는 주위가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곧 시가지화 할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대지전체가 하나의 의미있는 공간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위치를 정해놓고 건축물주위의 비어 있는 ‘땅’에 주차장과 운동장 등을 그야말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배치도를 인지하고 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는 이 미금시 청사가 위치한 대지의 공간적 개념을 터득할 도리가 없다. 배치의 설명을 보고, 실제로의 답사견학후에 생기는 몇가지 의문을 피력한다면, 첫째, 미금시 청사라는 공공 건물의 배치에 우리나라 공간 배치개념을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보다 더 부연한다면, 우리나라 공간 배치개념은 도식상이나 형식상으로는 본 시청 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과정적 공간들을 갖는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형태적, 도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스케일과 공간의 느낌들을 포함한 극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하겠다.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장의 공간과 U턴 하도록 되어있는 극히 기능적인 진입공간은 도로공간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설명에 나오는 시민광장을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다. 중정은 ‘에워싸여진’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이 건축물앞의 넓은 공터는 도저히 ‘에워싸여진’느낌이 나는 중정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특히 우리고유의 안마당 개념으로 이해되기 힘들며, 이 공간이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시민광장’은 깊이가 너무 작고, 좌우가 벌어진 ‘벌어진 옥외공간’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중정’주위에 조경을 하여 나무를 심는 것으로 에워진 느낌을 갖는 안마당개념을 실현하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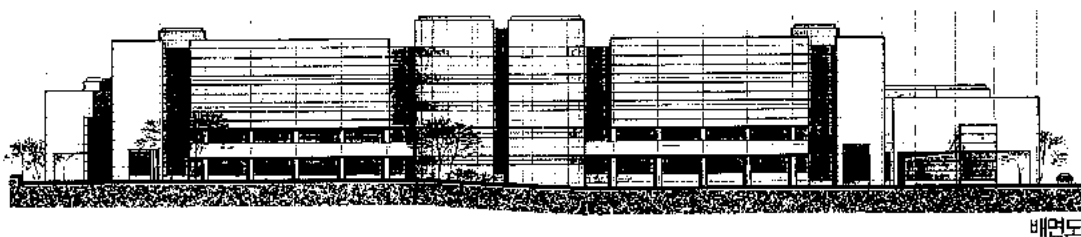
것보다는 이왕에 시도한 레벨(Level)차를 더 두어서, 이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된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은 한국적 공간 배치개념이라는 극히 피상적인 형태적 형상을 그대로 평면적인 판(板)위에 그려놓고 마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주차장이 여러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기능상으로 보다 토지의 이용상, 효율적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이 위치한 공간들은 각각의 ‘창조적’의미를 가져야 함에도 이 각 주차장의 독특한 개별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각기 건물주위에 필요에 의한 위치에 산재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도로에서 진입할 때 주차장을 좌우에 두고 또 U턴하는 중앙 교차로를 지나서 본관에 진입해야하는 건조한(dry) 느낌을 없애 버릴 수는 없었는지? 시민의 광장을 정말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있는 개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로에서 본관까지 보도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걸어서 차근 차근히 주위 공간을 느끼면서 본관에 들어갈 수는 정말 없었는 지를 묻고 싶다.

2 시청사의 상징성이란 무엇인가?

설계자 자신도 시청사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 같다. 여기서 상징성이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인지? 또는 주위의 환경에 대한 독특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 모든 건축물은 ‘상징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는 건축이 갖는 하나의 요소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것이 건축의 비전(vision)으로서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설계자로서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 물론 실제 건축물자체가 갖는 독특한 ‘이미지’를 느끼고 인지하는 것이 꼭 필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건축물에서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예의 주시 관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 건축물에서의 상징성은, 배치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우리공간 배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평면’을



‘원·원호·삼각형의 기하학적 요소와 결합’하여 신도시의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 이상을 표현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집합에서 나오는 순수공간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현되었는 데에서 상징성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수평성에 대한 수직성의 극적대비’에서 ‘상징성’을 찾는 것인가? 또는 ‘좌우 대칭형의 입면구성’으로 ‘균제된 미스의 안정감’을 추구한데서 ‘상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상징성’이 모든 건축물이 갖는 속성이라 할지라도 이 의미는 비교적인 값어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다른 건축물과 무엇이 다른가가 중요하다. 무엇이 다른가? 이 시청사는 다른 건축물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명제제기에 대한 해답이 쉽게 구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수평이 강조된 유리벽(유리창)과 유리 사이사이 수평의 가는 띠는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건축물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모티브(Motive)인 것은 사실이다.

설계자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형상적인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다. 하늘이 반사되거나, 하늘이 흡수되는 듯한 넓은 유리창과 이 유리를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게하는 수평띠요소의 처리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주고 있다. 특히 원통형의 계단실에 가서 박히는 수평 가(假) 프레임(Frame-가보/假樑)이 햇빛에 의해 그림자를 건축물전체에 드리우는 상황은 우리에게 ‘잔잔한 과거에의 회상과, 현 시대의 섬세한 즐거움’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것은 자칫 시청사라는 공공 건축에서 과중하게 압도될 수 있는 이미지를 잘게 해체해서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파편’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간결’하고도 ‘의미’있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이 ‘상징성’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또는 ‘요소’였다면, 보다 더 이것에 대한 ‘인용’과 ‘적용’에 과감했어야 했으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 ‘무엇’인가를 명확히 나타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세 덩어리의 건축물은, 바꾸어 말하면 세개의 기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의문은 세가지 기능이 반드시 이렇게 세가지 덩어리로 각각의 건축물로 분리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세 덩어리는 서로 연결통로로 연결되어있다. 그것도 한개층에서만 연결되어 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연결의 심도는 그다지 깊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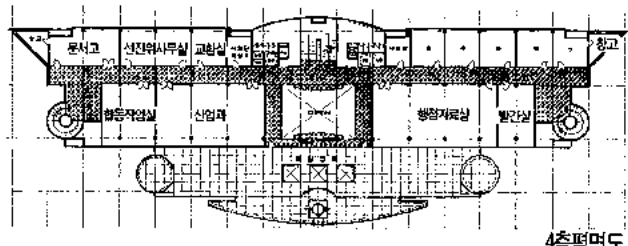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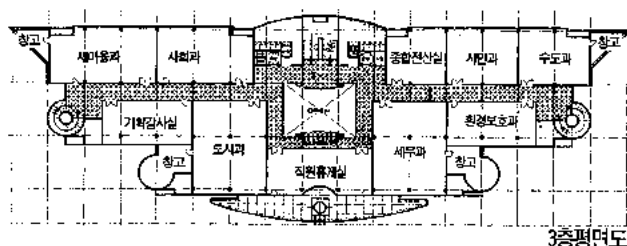
이 점들은 필자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것이지만, 우선 이렇게 느슨한 연결 정도라면 연결통로(브릿지)가 보다 더 의미있는 장소화 되었으면 싶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세 덩어리의 건축물이 각각 제 나름대로 계획되고 마치 못해서 각각의 건축물이 연결된 것 같다는 뜻이다.

또 하나, 그 연계관계가 어찌됐던 이 세가지 건축물은 한 대지안에 존재하는 구성의 요소들이다. 즉 한 대지에 공공건축물의 복합공간(complex)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세가지 건축물들의 복합체로 볼 것인가? 또는 한 덩어리의 건축물인데 기능과 공간의 분할필요성 때문에 브릿지가 필요했던 것인가?

세가지 건축물들의 복합체로 본다면 보다 더 매스(Mass)와 공간의 독자성(각각의 건축물의)이 제시되고, 이의 연결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럴 때 아무리 기능의 연결이 서로 느슨하다고 해도 내부 공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했던 것이고, 한 덩어리의 건축물이었다면 그 연결복도(브릿지)의 길이와 폭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다.

현재의 브릿지는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강한 자극력(연결성)도 없고, 공간과 공간의 이미지를 구별하는 구분력(Divide Quality)도 상실되어진 것같이 보인다. 한층만이 연결된 브릿지로서는 연결성도, 분리성도



강렬하게 느껴지지 못한다. 브릿지공간의 의미가 명확해졌으면 한다.

4 본관 내부 로비공간은 3층까지 상부로 Open되어 있다. 현관 로비에 들어가면 안내가 있어서 시청사의 공간 형성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3층까지 Open된 공간은 4층 바닥으로 막혀져 있다. 이는 마땅히 뿔려져야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원래의 계획의도는 4층 바닥도 Open되고 옥상에서 부터, Sky Light을 통해 자연채광이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해야지만 이 중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건축물내부의 의미있는 중정공간이 되며, 로비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건설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라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 본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건물에도 이와 같은 공간이 한군데 있는 데 오히려 이곳의 공간에 대한 느낌이 현재 본관의 로비공간에 대한 느낌보다 훨씬 좋다. 만일 원래 의도대로 되었다해도, 이 본관의 중정공간에 대하여는 좀더 의미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한다. 단지 상부와 하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뿔려져 있다해서 ‘의미’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의 ‘본관 로비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장소’로 밖에는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5. 외벽은 석재를 사용하였다.

근대에 들어 보편적인 자재인 동시에, 공공건축물인 경우, 거의 대부분 석재를 즐겨 채택하고 있다. 석재가 공공건축에 즐겨 채택되게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부터 시작되어 복천 독립기념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등이 아닌가 싶다.

석재도 여러가지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 미금시청사의 경우 석재의 사용에 어떠한 설계자의 의지가 있었었는가를 알고 싶었으나, 석재에 대한 일반적인 해(解)이상은 없지 않았나 한다. 석재를 일종의 마감재(Finish Skin)이상으로는 인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평띠(Horizontal Stripe)는 물갈기로 처리한 것이나 주 벽면을 버너마감한것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기 때문이다. 마감의 처리를 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기에 더이상의 평은 분석하기 힘들지만 모든 매스(Mass)를 석재하나로 통일시킨 ‘자재 선택’의 개념이 명확했으면 한다.

6. 미금시청사는 또 하나의 상징적이며 고전적인 상징성을 갖는 건축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균제’의 ‘아름다움’, ‘대칭’을 이루는 ‘안정감’, ‘기능적’인 공간의 ‘조합’, 또한 석재를 사용한 무난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놀랄만한”—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공간적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

“무엇이 상징성”인지를 발견하기 힘들다. 어쩌서 “원·사각형·대각선으로 돌출되는 평면의 중첩”을 그 구성기법으로 적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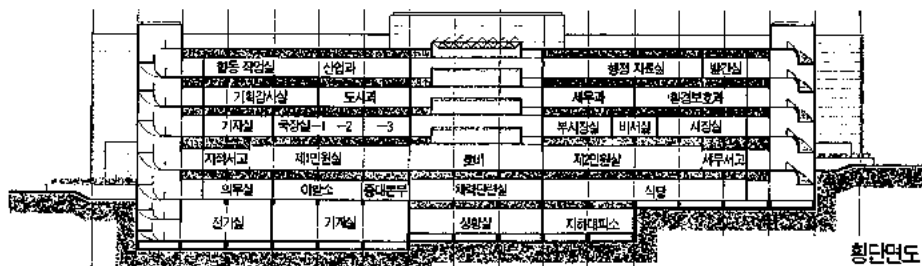
설계자 자신이 아무리 설명한다해도, 이에 대한 수궁이 쉽게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건축은 ‘건물’과 ‘건물을 둘러싼 기타 공간’으로 양분되어 있다. ‘옥외공간’과 ‘건축의 내부 공간’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중정공간”은 적절하고 적합하게 위치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형성되어 있지 못한다.

과연 이 건축에서 설계자는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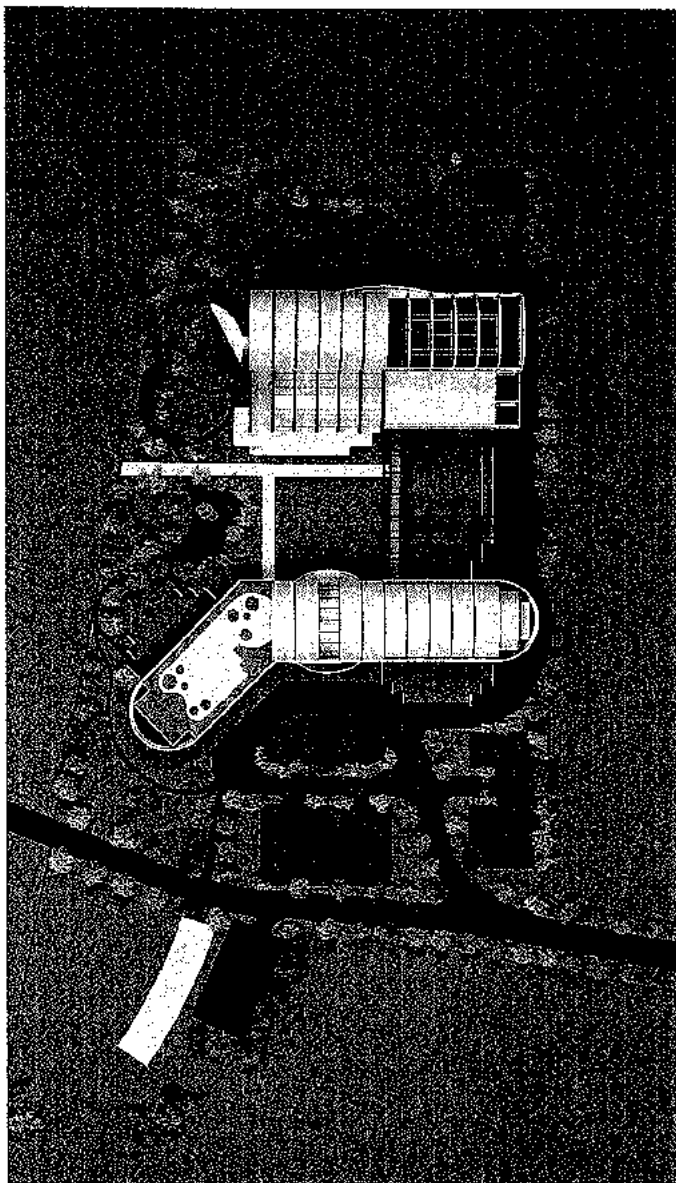
구석구석에 여러가지 섬세한 계획을 하고 민원실 등의 공간을 의미있게 생각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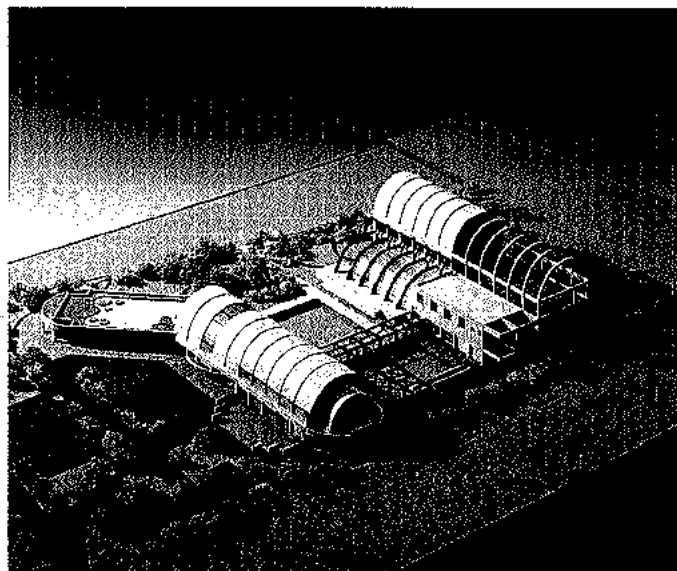
중국 베이징 국제 레저클럽 「柳園」

Beijing the Willows Premier International Leisure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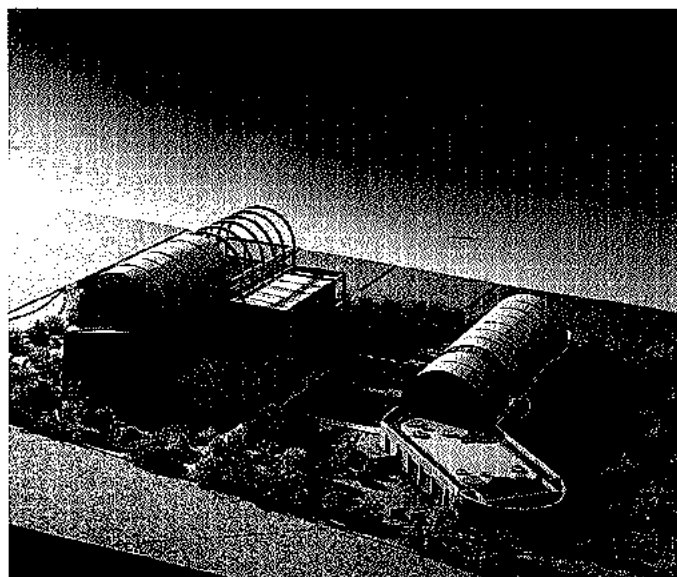
趙仁淑/다리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In-Souk



모델1



모델2



모델3

중국의 전통적 예술정신인 바탕에 깔고 空間의 層次를 시도한 布置

몇 년 전에 일본에 사는 친구의 소개로 싱가포르의 한 젊은 건축가를 만나게 되었고 디자인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농담반 진담반 본인이 후보로 나선 것이 인연이 되었다.

처음에는 베이징소재 홀리데이 인 리도호텔 콤플렉스의 외장공사의 기술자문 및 외관디자인을 하기로 했었다. 선적거리가 가깝고 제품생산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으므로 유리한 고지에서 홍콩, 싱가포르 업체를 제치고 거의 계약일보직전에 한 한국의 업체가 중국측 고급관리와 손잡고싼 값으로 프로포즈하는 바람에 망신만 당하고

그 일은 여섯달 공을 들이고 엉뚱한 사람들 돈만 들어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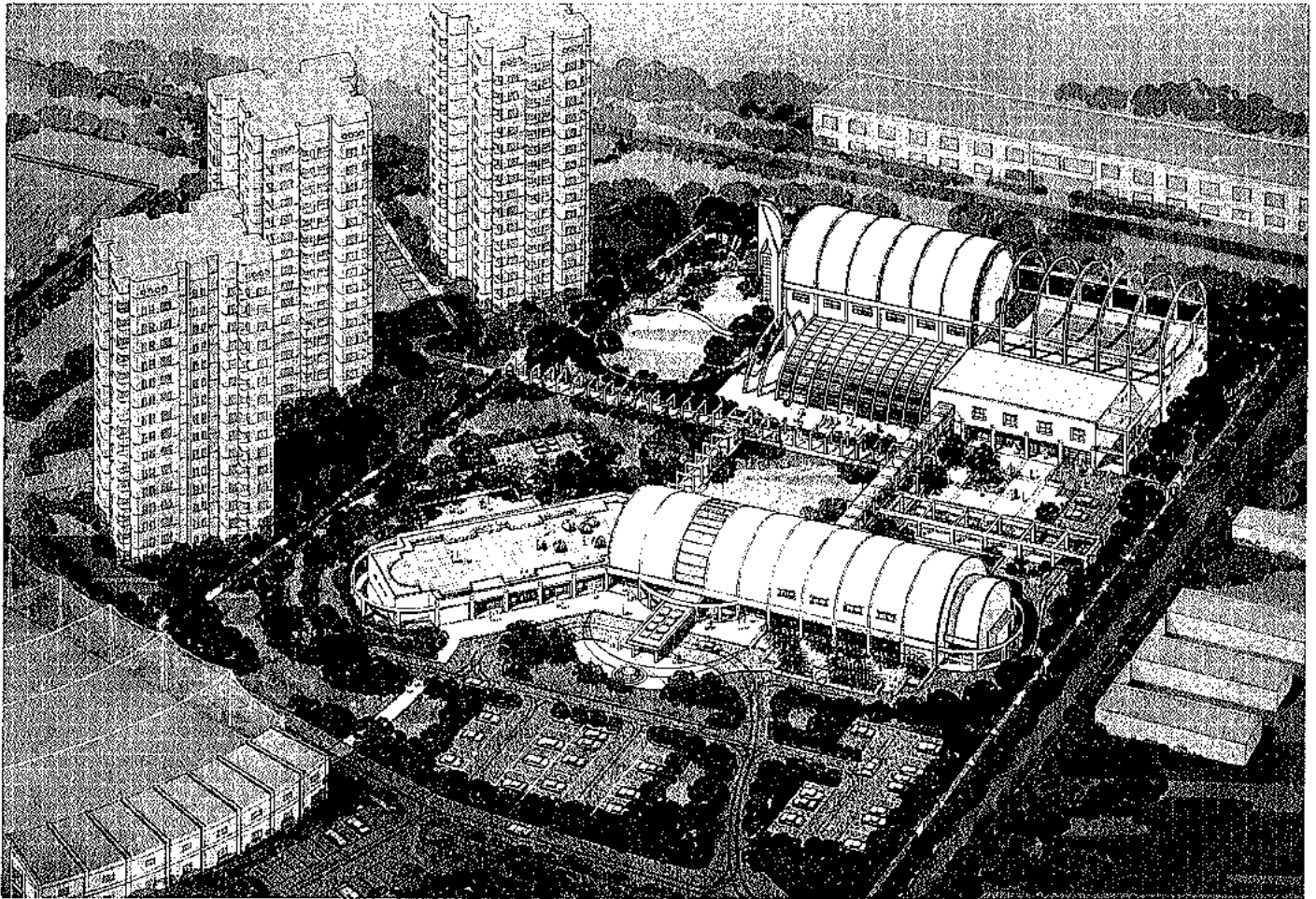
DJ라는 그 알루미늄 업체는 '다소 상도의에 어긋나지만 일단따면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우리측에서 DJ社의 제품을 들고가서 브리핑을 했고, 가져간 샘플에는 그들의 스티커도 붙여 있었다. 이르기 위해 그들에게 자료를 100% 오픈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싱가포르 협력업체로부터 너희 한국인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할 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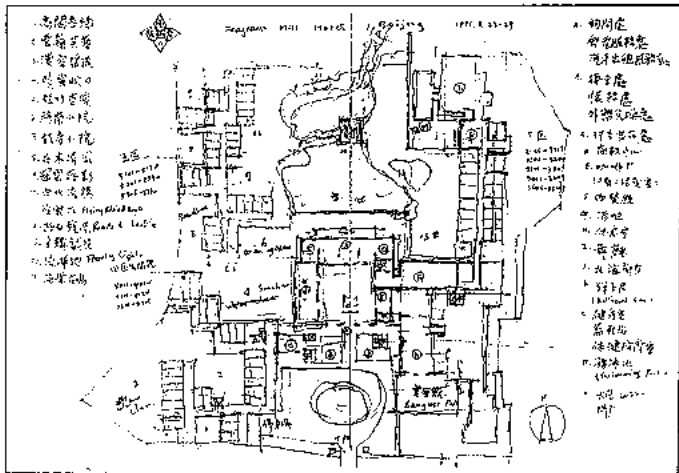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느날 싱가포르 친구가 베이징(北京)에서 긴급 연락을 하는 바람에 급작히 간단한 설계용구를 챙겨가지고 베이징으로 갔다.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설계를 해왔고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했던 클럽하우스 계획안을 전면수정 아니 재설계를 하는 일이었다. 한 며칠 다녀온다고 갔었는데 마침 Client가 베이징에 있는 동안에 1차계획안의 협의를 마치고 와야했었으므로 예기치 않게 상당한 기간동안 머물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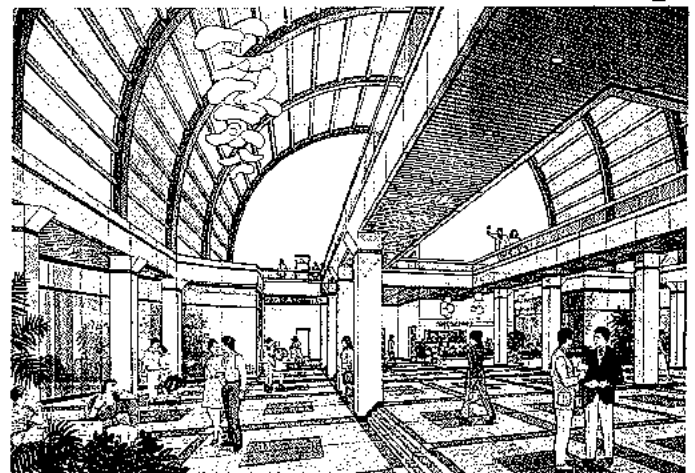
아무 자료, 계획도 없이 회의 테이블에 제도판을 펼쳐놓고 스케치를 해서 만들어 낸 案을 천만다행으로 Client 및 싱가포르 젊은 건축가가 좋아했고 그자리에서 계약금을 받고 돌아와 일을 하게 되었다. 도중에 규모가 줄어들어 난항을 거듭하면서 계획안이 결정되었고 어찌어찌 하다보니 기본설계를 끝내고 北京市設計院에 넘겨 施工



조감도



(그림1)



내부투시도

도를 그렸고 최종검토의 의견서를 보낼 수 있게 까지 되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부지기술로 밤도 새웠고 한달의 반은 베이징에서 지내고 회의할 때마다 중국인들의 쑤알라 쑤알라에 멍해지곤 했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싱가포르 젊은이들에게서 좋은 교훈을 받았다. 한 번 씩 베이징에 가게되면 전날은 여지없이 새벽 두 세시까지 일하고 아침 해 뜨기전에 도면을 들고 공항으로 향해야 했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특히 조형의 어색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신 전동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원래 수주자 Architeria, Mr.Tan Tee Seng으로부터 느낀, 이 사회에서는 드문 정직함과 신뢰감은 큰 힘이 되었다.

실제 설계자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쪽에 책정된 금액을 몽땅 이 쪽으로 보내는 신의에 상당히 감동했다.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행위 그 자체가 높이 살 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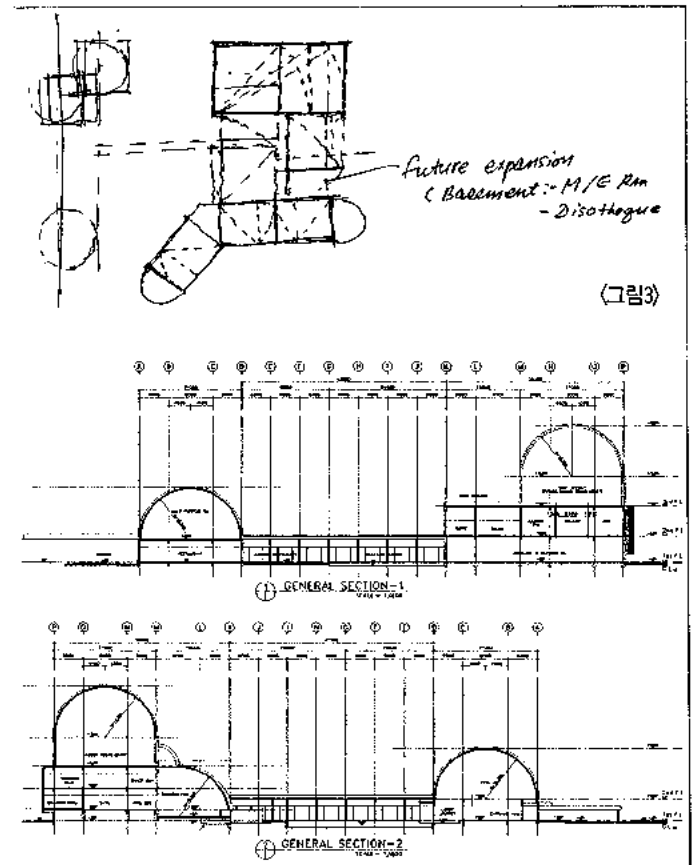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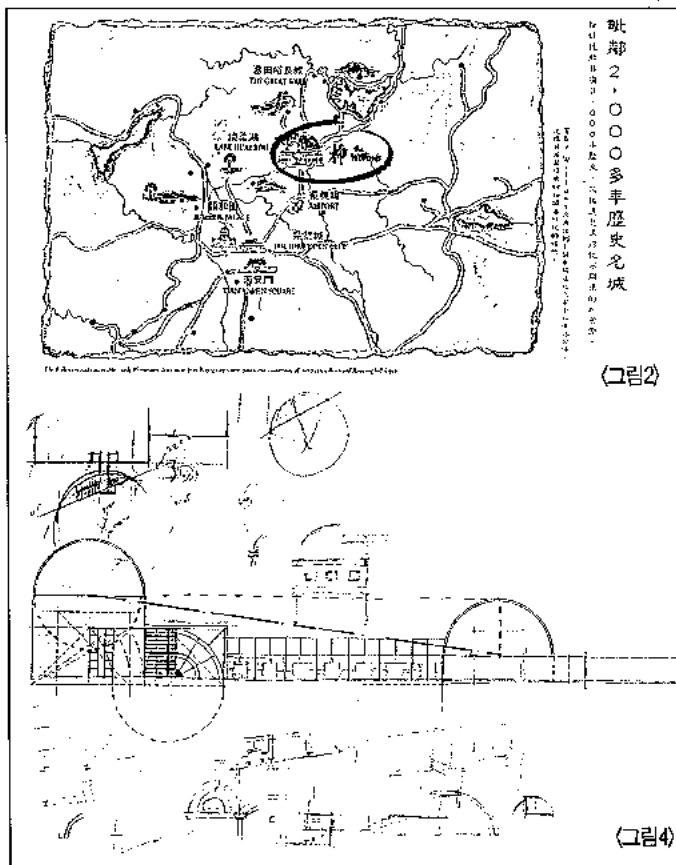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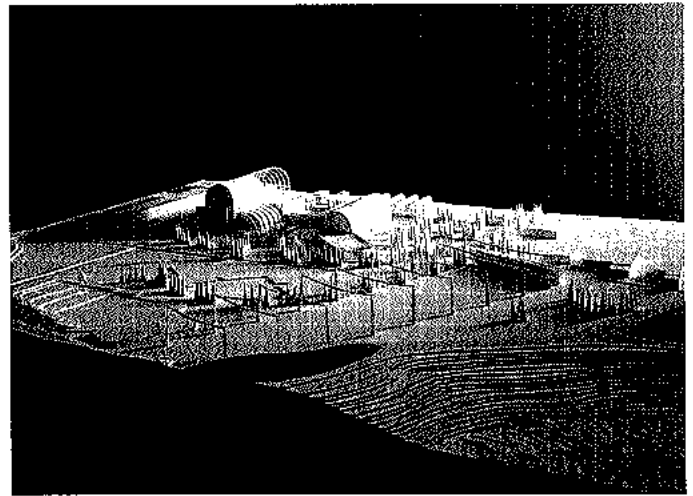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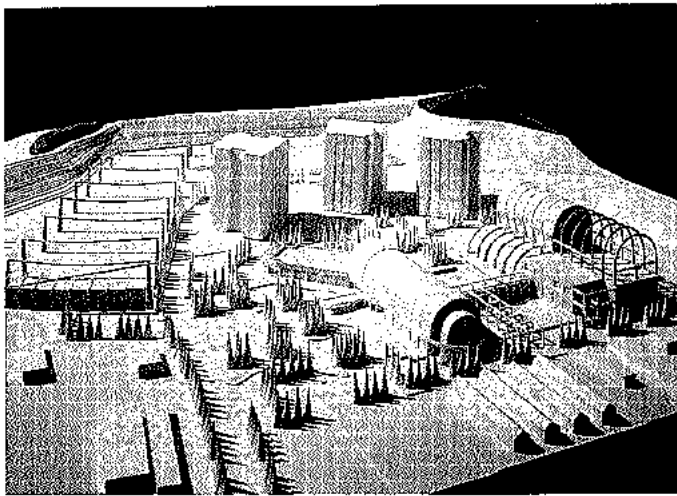
1991년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운이 좋게도 베이징(北京) 교외 풍광이 수려한 상산(香山)에 위치한 상산판티언(香山, 飯店, Fragrant Hill Hotel)에 일주일가량 묵었다.(그림-1)

1980년대 초 Au를 통해서 사진으로만 보았고 기회가 닿으면 꼭 한 번 실체를 보고싶었던

그 호텔은 건축가라면 대개 아는 중국계 아이·엠·페이 설계로 미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무척 수수한外觀을 하고 있었으나 크고 작은 십 여 개의 정원들은 각 客室에서 저마다의 小自然을 가질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단순화된 입면의 모티브들은 그것으로 이 건물이 중국판 현대건축이라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버지나스가 잘 안되어 퇴락하고 말았지만 본래의 설계나 위치등은 뛰어나 있었다.

중국이란 나라의 스케일을 얘기하자면 국가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페이(Pei)에게 “건축가가 원하는 SITE에 원하는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있게”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스케일이었다.



(물론 그 당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었고 땅이라든가 건물이 돈벌이의 수단이었으니 까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중국인이란 건 거의 누구나 다 건축가 페이 위 밍(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다.)을 안다. 세일즈 정도 웅전사도 다 안다.

이 프로젝트 즉 베이징(北京) 교외 화이로우현(懷柔縣) 호수(水庫·베이징시민의 상수원) 옆에 래저클럽하우스 설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상산호텔의 空間布置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었다.(그림-2)

다행스럽게도 한때 東洋美術史學에 심취하여 중국의 그림, 중국의 도자, 중국의 조각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고, 몇 년 간에 걸쳐 중국고전건축설계원리분석을 이 주행씨의 도움으로 번역 연계를 적도 있었기에 중국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특히 중국의 예술정신이란 ‘自然에의 순응과 自然속에 內在하는 질서에의 조절의식’이라는 點을 익히 알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그림(대개 東洋畫라고 알려져 있다. 東洋에는 繪畫라는 표현이 없었다. 단지 畫 또는 書畫등으로 表現되었었다. 서양의 회화와 동양화의 차이는 사용하는 붓의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中國畫는 詩의 영향을 받아 筆意(써 놓은 개념)가 있고 畫의 영향으로 구조의 美를 받아들였다.)에는 西洋의 繪畫에서 ‘단순히 보고 있다’는 空間개념 뿐 아니라 ‘보아 간다’는 時間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도 알고 있었다.

평상시에 입력시켜 놓았던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얼마만큼 그 地域特性 및 民族性과 藝術精神에 맞는 設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바탕작을

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중국에서 앞서가는 경제산업의 기수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건축의 역사가 깊은 중국인들은 안목이 높다.

되지못하게 설계를 해 놓으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대했을 때 다분히 감각적으로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에서 평면, 입면, 단면에서 이르기까지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례를 적용하고 기능구분을 했다.(그림3.4)

老子の 가르침에 따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어놓고, 가능공간은 크고 작은 두 동(棟)으로 나누고 회랑으로 연결했다. 중국건축에서의 회랑은 역시 空間의 전이에 時間의 개념을 더한 것의 표

위치—중국 베이징 화이로우(北京, 怀柔)
 발주자—REKACANTIK GROUP
 설계자—조인숙 + Tan Tee Seng (ARCHITERIA SINGAPORE)
 北京市設計院 唐德滿
 설계자문—전동훈
 설계기간—기본설계 1993년9월~1993년12월
 실시설계 1993년12월~1994년3월
 〈건축개요〉
 대지면적 61,153.8㎡(1단계 대지 31,351.25㎡)
 건축면적 4,831.35㎡
 연면적 8,422.13㎡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협력설계〉
 구조—오창학, 唐光杰
 설비—정원호, 曹越
 전기—김용운, 王翔
 〈CAD작업〉
 조종일, 마원호

현중 하나라 볼 수 있겠다.

빈 부분과 찬 부분의 교차반복으로 空間의 체험을 전개시켜 나가며 各 機能空間 또한 各者의 外部空間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

塋地內로 들어가면서 視線의 흐름은 진입로비의 투명한 지붕을 넘어 실내 테니스 코트의 볼트를 지나 클라이막스인 중국정원에 잠시 머물렀다가 뒷동산 언덕에 솟아오르니 一即 空間의 層次(공간의 중첩 : 중국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배치수법)가 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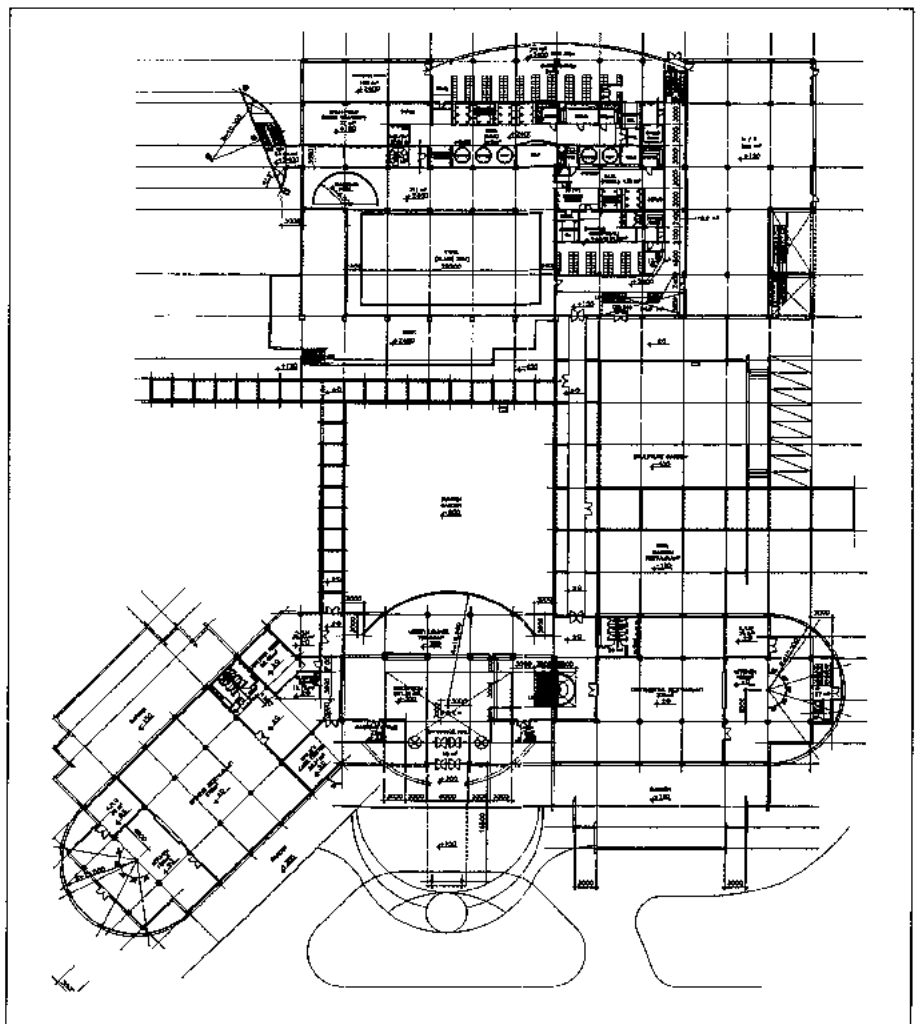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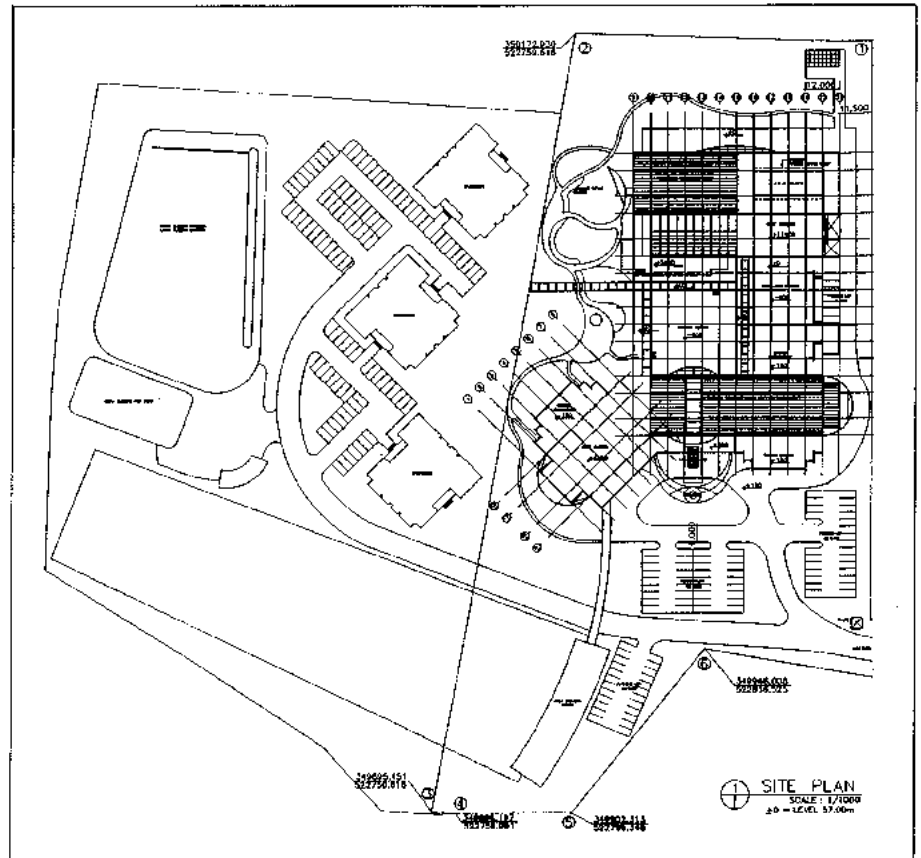
모듈 및 비례와 이 空間의 層次 덕분에 規畫局 등에서 설계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인들로부터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외국인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그들이 인정해 주어서 무척 고마웠다. 아마도 이것은 필자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설계원칙의 일부분일 것이다. 언젠가 국제회의석상에서 스스로를 소개할 기회를 가졌을 적에 자신이 하는 건축의 立場을 다음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다.

I have been interested chiefly in abstract architectural expression based on so called regionalistic tradition. I would like to realize an ideal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natural setting on the basis of my understanding of local conditions.

I want my works be characterized by a simplified composition and careful choice of materials that produce a new image of domestic design.

Anyway I would like to find my own direction. (표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모국어 가 아니니까 이해하리라 생각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용기를 얻었고 기회만 닿으면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일들을 해보려 하고 있다. (글 : 조인숙)



역삼동 L빌딩 계획안

Yeok Sam Dong L-Bldg

金錫桓/터·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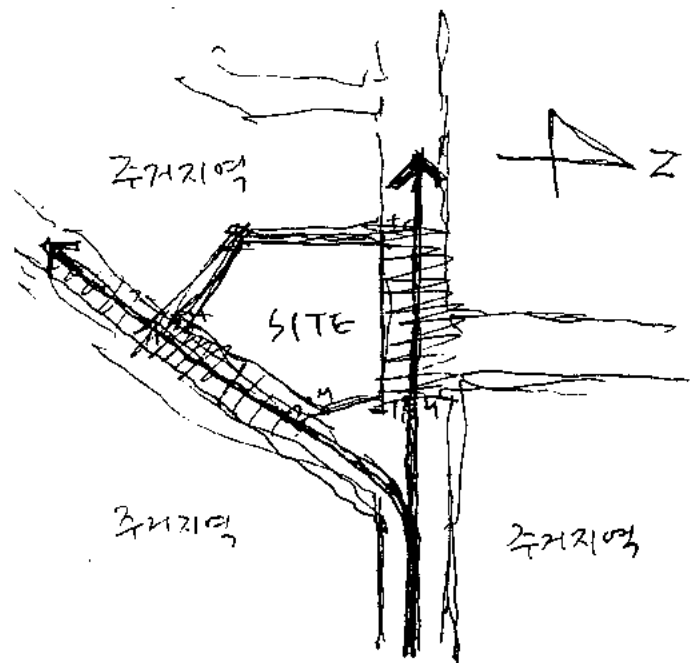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Suk-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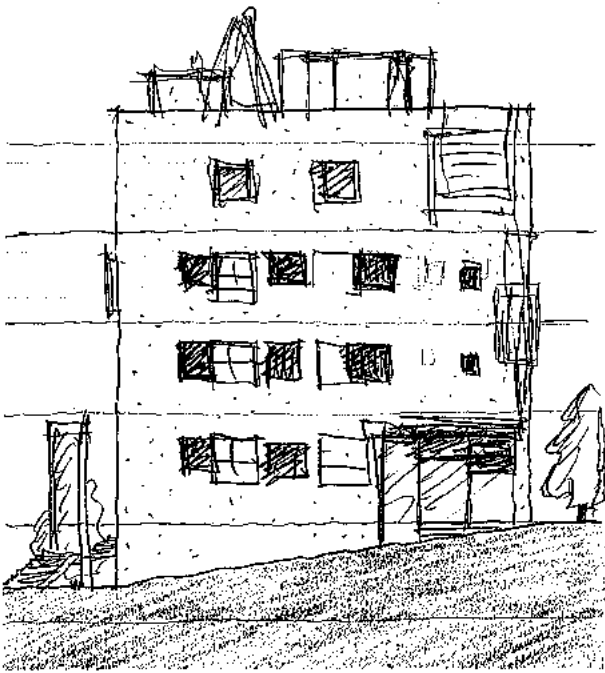


나는 우리 협회지안에서 이 스케치만이 가장 정겹게 느껴져왔다. 이 페이지는 작품이 아닌 건축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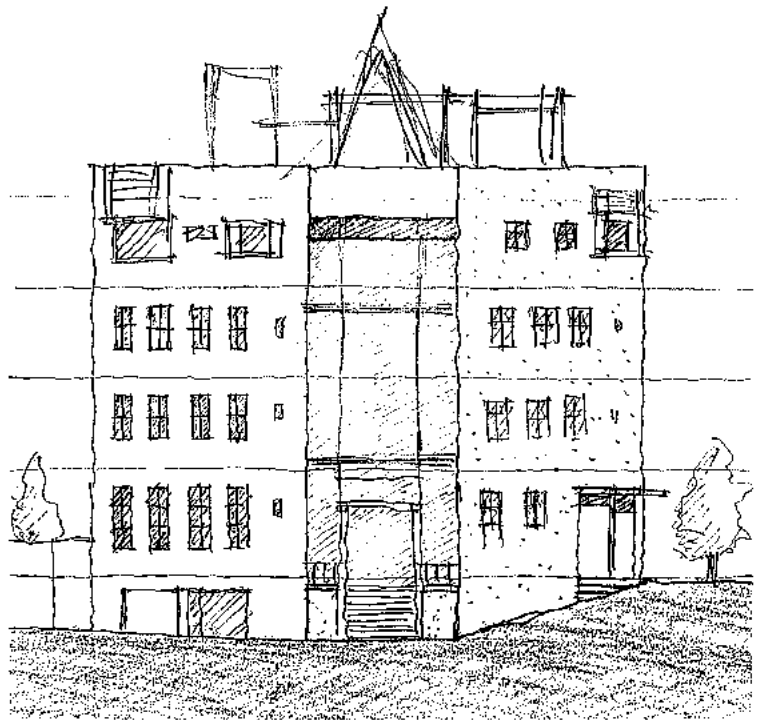
스케치는 사용하는 필기구의 필치와 터치의 속도및 섬세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그것은 마돈나의 얼굴처럼 예쁘게 그려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가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제재하는 건축가 자신에게는 겸연쩍은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의 스케치는 언어보다 더 가까운 자신의 표현수단이다. 건축가들은 대화도중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스케치로 나타내곤한다.

나는 이 건물의 부지를 답사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서 곧 이 스케치를 그렸다. 오르막길에 놓여진 경사지, 그리고 다각형의 부지형상. 대지에 접근하게 되면 먼저 다각형모양의 대지 모서리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 환경은 이 대지의 생명력이기도 하다. 그러한 여건의 특성을 건축적으로 풀어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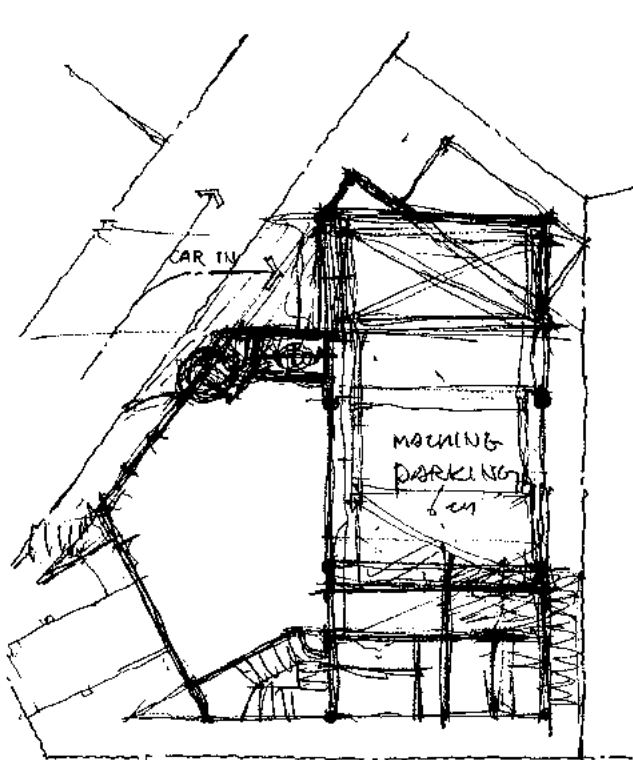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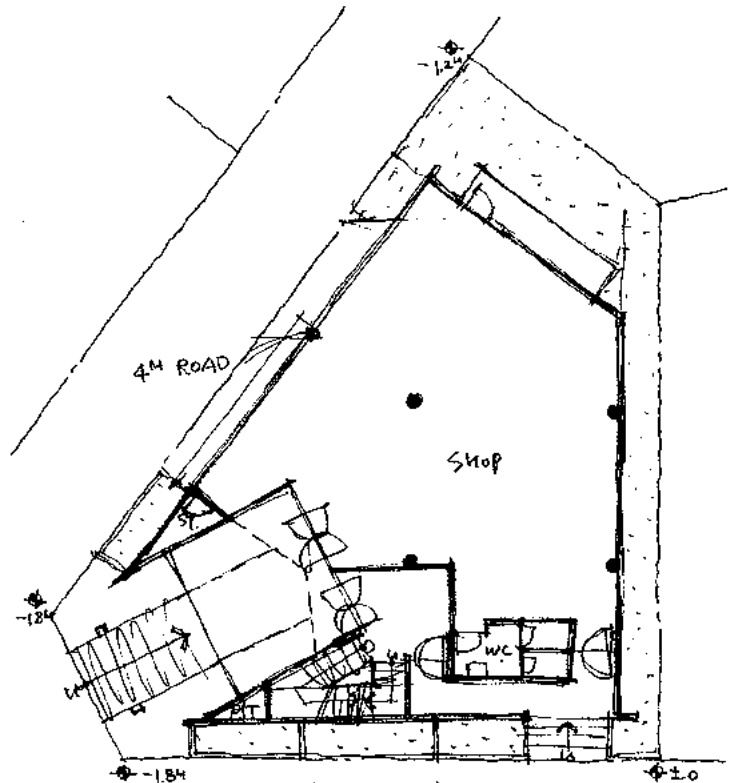
ELEV - 1



ELEV - 2



B1ST PLAN



1ST PLAN

이제 더이상 경관 공해는 용납될 수 없다

We Can't Tolerated a Public Scenery Nuisance Any more

尹汝郁/중합건축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도시문화속에 건축의 표상성 상징성과 인간과 환경의 상호(조정) 작용으로 Territoriality 문제를 제시한다.

1. 신체와 얼굴

바벨(Bar Bell), 덤벨(Dumb Bell)등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근육미가 있는 신체의 체조를 Body Building 이라한다. 빌딩이란 말을 우리들은 많이 세우고 부수고 의미없이 심었다. 신체의 근육은 강한부분을 더욱 강하게 약한부분은 더욱 약하게 각기관 미세한 부분까지 전신에 올리브기름을 발라 남성은 강하고 우람함과 여성은 날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 많은 기름을 바르면 오히려 빛에 반사되어 신체의 표현력이 떨어지며 관객의 감정도 떨어진다고 볼 때 꽃의 아름다움보다 어린아이의 웃음표정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올바른 외피 구성방법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진행하면서 전체적 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심신의 자유스러움을 필요로 한다.

신체를 중심으로 앞은 뒤의 정반대의 것이며, 앞은 뒤보다 다양성과 조화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건축물의 전면을 얼굴과 같은 원형이라 할 때 창과 같은 두 눈, 환기구 같은 두 귀, 캐노피 같은 하나의 코, 개구부(Door) 같은 하나의 입, 머리와 같은 지붕으로 구성된 얼굴표정이 마음속에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체상 감각체계는 신체중심(Land Mark) 좌표(심장, 뇌, 위와 입)와 신체경계(Body Scape) 좌표(수직좌표, 수평직각좌표, 피막, 안면, 두부, 시각)이다.

건축의 Facade는 단순한 계시판, 광고판이나 Hard Edge 같은 그래픽이 아니고 외적지각(External Perception)과 내적지각(Internal Perception)을 복잡하게 암시하는 것으로써 신체경계(Body Scape)의 피막은 벽과 창을 암시한다.

2. 창과 벽

창과 벽 양면성 이미지 표상에 대해 풍경이 정해지고 수평·수직방향의 상호운동적 에너지를 균형있게 조절한다. 조절은 경관의 원리이고 경관은 그 자체의 원리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속물로 발전하여 조화의 공포성을 갖는다.

둘 이상의 이질적 요소가 합쳐서 어느 일방으로 편향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미를 형성하는 것을 조화라고 일컫는다. 하늘과 땅에 결부되어 조화는 자기중심에 있고 의미, 형태, 색채, 행위 그리고 경관 모두가 조화로 대조적 갈등을 해소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경관 환경지대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수많은 형태는 도안적이고

간판이나 광고용이 되기도 하지만 보조기억장치로써 경관 보존 산물임에 분명하다.

Copper Design를 지니게 한 것은 부분적으로 창과 벽 지붕의 역할관계(Roofing, Facade, Detailing)를 모색하며, 그 시대에 특유한 기술만으로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며, 퍼사이드의 실천능력을 갖춰 나갈 때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

창은 빛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조절할 때 ① 태양광선 ② 광의작용 ③ 공기와 빛 ④ 색 ⑤ 명암(빛과 그림자) ⑥ 심리학적 효과 등에 스스로의 존재형식을 찾아 연출되고 우리들은 자연과 무난한 일치성 능력을 길러가야 될것이다. 초가지붕 아래 창호지로 보이는 다듬이 방망이 치는 어머니의 호롱불빛에 비쳐 보이는 모습은 분명 우리의 정감어린 옛 모습이었다.

일부 또는 전부의 경관 이미지 표현기능은 외관재료를 선택하는데 시작하여 디자인의 규범을 유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기초적인 조건으로 받아진다고 볼 때 글과 말로 흥미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또 그 이상으로부터 요구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결코 문제가 되지않고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퍼사이드 이미지 결합은 ① 선의구성 ② 면의구성(분할, 합성) ③ 텍스처의 구성 ④ 입체구성 ⑤ 경관의 구성으로 어프로치 되고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나누어 기록 고찰할 수 있다.

3. UR패션의 지분

지붕이 머리라고 한다면 헤어스타일 패션 또한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에 의해 비화되어지듯 외벽에 비하면 눈에 띄지않는 존재로 인식해 왔고 흐르는 세월에 고리를 걸고 어떤 작가의 주택작품은 이층 벽이 없어지고, 지붕으로 덮고, 모자가 커지고 변화의 운동성이 그 이유가 된다.

높은 비교문화 경향의 시야 확대로 국제간의 탈지역주의가 유행되고 창공을 비상하며 UR 패션을 자아낸다. 세차게 밀려오는 인터넷서널리제이션이나 글로벌리제이션이나의 물결을 미처 헤아릴 겨를도 없이 휩싸인 현실속에 아담한 한옥 지붕 아름다운 우리의 산이 그립다. (석굴암 아침경을 못보면 한이로구나! 어느 노래가사중에)

Top Light와 Atrium은 빛과 접촉하여 진화된 녹음낙원은 자연과학의 축소판이다.

Dome, Space Frame(Mero Truss), Membrane Structure 등은 엄청난 무주(無柱) 대공간의 창출로 자연의 설화를

일부담아 EXPO(국제화·개방화)장으로 축제를 이루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위해 빛의 테마는 한없이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감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4. 표준화와 법의 장애

공업화된 경관의 규격품의 건물 정의는 통일성과 전조시의 이점은 있으나 다양성 결여로 양산과 규격에 이점을 안고 바람직한 구상적 외관설계의 다양성 융통성이 새로운 생산에 의한 과학적 사고의 창의력 재고 등에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질서도 창의도 플랜이 없이 탄생하지 않으며, 플랜은 그 자체에 감각의 본질을 갖추고 감각의 본질 그 자체에 새로운 플랜을 필요로 한다는 Le Corbusier의 도시구조의 분석 근거를 들고있다. 반복된 규칙은 Vitality를 취약케 할 염려가 뒤따르며 어느 누구도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건물형태 크기가 높고, 속길이, 옆길이 등으로 만족시켜야 할 욕구의 요소들은 법의 한계성에 Human Scale적인 건폐율 용적률을 탄생 못하고, 건축주의 물리적 공해 욕구들은 기형아를 출산하며, 인체공학, 물리적, 기하학적 재료의 성질 등이 복합적 요소가 정성아로 태어날 때 그 의미가 독자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본다. 보편성의 추구와 제어된 모습은 고도의 세련 그 이상의 의미 추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감각과 심미안을 필요로 한다. 감각과 직관은 이론 정립에 우선하지는 않으나 건축의 다양성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5. 시간·공간·장소

경관 역할이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삶의 행위를 생성하며 미래의 꿈을 위해 밝고 풍요로운 물질 환경을 발산하는 상황들이며, 動과 情이 제공되고 도시문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시간·공간·장소가 주어진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경관의 파노라마는 도시의 형태를 발전시키고 사람의 내적합리와 경관 공해의 비합리 사이에 사회학적 호기심을 유발한다. 자연속에 현실적인 경관 미학은 예술과 사회학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시되며, 신세대 젊은 남녀가 호기심을 길러 새로운 슈퍼 패션인으로 현대 유행을 표출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맞물려 교차하고, 거리마다 경관 패션 행위는 사람에게 정신 이상자로 마비를 주는 한계선상에 유추적 시각의 유희와 자유가 피상적으로 교감되고 유행되어지나 그것이 스타일로 정착하고자 표정을 흘리고 하얀 피부살을 드러낸다.

경관 공해의 원인들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학구적인 이념이나 체계화된 기반이 약한 탓도 다소 있었다는 주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군사문화의 획일적, 폐쇄적, 통제적 정책에 순치되어 제각각 주장을 펴볼 용기가 없었던 수직적요소(관청건물) 시대를 거쳐 새롭게 들어선 문명정부는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어려움에 부딪쳐 경관들이 아름답게 정리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진실과 순박한 의식을 억누른다.

박제화(剝製化)된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호프만 교수는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분자의 미학에서 풍요성(복잡성)의 미가 예술의 미학과 유사하다 하였고, 아름다움의 발견의 접근방법 시작은 선을 긋는 것보다 와해된 부분을 시각과 감성으로 찾아내는 훈련의 기술이 우리들의 무계획적인 사고행동에 제동을 걸고 풍요와 현상에 균형과 안정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속에 충분한 관계로 접촉하여 변화와 흥미는 생성되지 않으며 평범하고 단조로운 성격만이 강조되는 것이다. 절제하되 궁핍하거나 위험한 경관으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든 다수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추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경관의 관계와 의미

경관 의미는 사적영역보다 공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람과 건물들(寺院建築의 石燈, 石塔, 浮屠, 石碑) 사이에 교향곡 역할이고, 배타적인 독자성보다 고도한 종류의 공간으로 건물 자체를 초월하여 도시적 영역의(街路, 交通, 余暇) 시스템으로 짜여진 표상 기능과 Identity를 펼치는 모친적 모태의 이미지다. 그것은 순박한 인간적 Enclosure을 창출하고 난로불(초롱등)에 일어나는 온기를 느끼는 것이다.

H Beam, Pipe, Con기둥 등으로 구조미가 드러나고 남성적 섬멸을 기념하는 기둥노출은 여성을 매혹시킬 때 공해 요소로써 열주들의 행진은 바지(벽) 속으로 숨겨져 버리고 또한 여자의 종아리가 취약점으로 드러날 때 치마 속으로 감추어진다.

경관 환경은 인간, 공간, 환경 그리고 건축(관계와 의미)으로써 "I-Thou" Relation(보존) "I-IT" Relation(개발)의 공존적이며 보존과 개발 관계로써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회복(Restoration) 및 관리를 함으로써 더이상의 경관 공해를 용납할 수 없는 이것들이 빛과 힘을 지니고 생활양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Utopia 아닌 Entopia로 인식되고 어떤 속으로 배회(徘徊)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는 곳마다 경관은 각양각색이다. 거기에 작위적 건축으로 경이로움과 불가사의한 양태로 변모시켰다. 경이로움은 정확함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영속성은 완전함에 있으며 Vitality는 한치의 오차없는 신진대사가 필요하듯 경험적 의지가 없는 것은 평범한 것들로 이어지고 흘러 보내게 되고 규범속에 충족시키는 일이야말로 새롭고 순수한 경관의 전진과 실체적인 경관의 정착을 기대하고 중요한 사실로 발견하게 될것이다.

오늘날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각지역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한옥들이 자리 이전으로 남산골에 한옥촌 보존과 개발의 동시 합주곡 관계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침식하며 위협하고 있는 기형적 경관 공해를 막고 건축가인 우리가 열쇠를 쥐고 정부의 현실적인 관심으로 대책과 노력을 새롭게 강구하지 않으면 그 모호성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 순간 산과 바다, 물(낙동강의 폐물이후 병커C유 대량유출로 인한 수돗물 오염의 고통과 불안)과 공기가 오염되듯이 우리들에게 또한 경관 허구의 실상에 의하여 몸도 마음도 비뚤어지고 허물어져 간다.

건축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른 건축관계법의 개정방향

The Direction of Revise on Architecture Laws & Ordinances
(미국의 Uniform Building Code의 사례와 비교하여)

金宇成/(주)아키텔랜 건축사사무소
by Kim, Woo-Seong

I. 건축법의 근본취지

법1조에 “건축물의 용도,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무슨 규제가 그리 많으나 하는 것이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경우다. 그러나 교통법규의 신호등처럼 규준이 없으면 제멋대로 달리다 사고가 나듯이 건축도 남에게 피해가 될수 있는 부분에, 최소한의 규준을 만들어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볼수 있다. 건물은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건물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기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그곳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

건물과 이웃 건물과의 관계

건물내부의 용도별 사용자간의 관계

건물자체의 구조적인 안전성

건물 화재시의 소방과 피난대책

건물의 환기, 채광, 위생 등의 환경대책

등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약속”인 규정이 필요하다.

II. 건축관계법 및 행정절차의 현주소

외국 선진국들의 법과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좀 특이하다.

13개 용도지역과 13지구별로 용도 및 규모 그리고 개개규제 내용이 되어있어 일반주거지역이면 서울이건 속초건 어디나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주차장이나 지하대피소가 필요없는 지역이건 상관없이 “평등”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 지역,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실정과 지역환경에 맞게 규정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Zoning Ordinance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그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제정한다.

우리나라 건축관계법의 또다른 특징은 체계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건물을 짓는데 무려 47개나 되는 건축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어느 특정법의 어떤 조항이 건축에 관계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리고 건축법규의 조문수는 441개이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이에 따라서 각종 예규, 유권해석이나 지역별로 나름대로 지침들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정리된 법의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함에 따라 관련인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혼란된 법적용이 되게 마련이다.

예를들면 단순히 비교해도 우리의 건축법,령, 기준, 조례 등 모두 합친다 해도 280쪽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UBC의 경우에는 3,100쪽이나 되며, 특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71개조의 68쪽인데 반해 미국의 UBC의 경우는 1,020쪽으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의 확인여부가 용이하여 별도의 심의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우리나라 건축관계 행정절차의 특징 중 하나는 각종 심의제도라고 볼 수 있다.

건축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규정이다 보니, 건축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애매하거나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려고 하다보니 심의가 많아지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13개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그 많은 심의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규정의 미흡한 점들이 모두 보완된다고 볼 수가 없다. 심의하는 각 개인의 능력의 차와 시각의 차이, 주관의 차이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심의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대단한 시간적인 낭비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모든 규정이 통합적으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었는가 여부만 검토하면 허가가 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규정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이거나, 더 나은 방법이나 자재를 쓸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규정에 얽매어 설계하기 보다는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규정의 근본취지도 달성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건축이 되게끔 하기 위한 「긍정적」인 제도인 것이다.

건축법 내용상의 불합리한 규정도 많다.

· 내용이나 성능에 의한 규정보다는 외양이나 규모 등 숫자에 의한 규정이 많다.

예를들면 주거지역에 몇세대 또는 거주인구에 의해 건축규모를 허가해 주기 보다는 건축용적률에 의한 면적으로 허가해 줄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인구 및 형태가 예측 가능치 못하며 연관된 적절한 시설을 계획하기가 어렵다.

•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정의함으로써 어느 지역이건 입지 가능성에 따라 지역, 지구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단독주택 옆에 다세대 주택, 교회, 술집 등이 일정한 규정이 없이 혼란하게 건축되어 있어, 지역환경의 미래 예측이 어렵게 되고, 수 많은 민원을 낳아 건축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 조경에 대한 기준도 나무의 크기와 질 그리고 필요유무에 관계없이 대지면적 몇 m²당 몇 그루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조경환경이 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물량위주가 된다. 그리고 흙위에 나무만 심어야 조경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 이런것은 선진국과 같이 각 건물의 안전과는 관계없는 사항임으로 지역별로 필요유무 규정의 내용들을 도시건축기준(Zoning Control)에서 결정케 하는것이 타당하다.

• 주차장에 관한 규정과 교통영향평가 제도도 지역별로 규정내용을 결정케 하고 교통 공학적인 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없게 되어 정력의 소요가 많이 절약될 것이다.

• 대파를 위한 지하층의 설치규정, 그리고 지하층을 다시 주택으로 전용케 할 수 있도록 1/2만 지하에 있어도 되도록 하는 완화규정, 밭코너 면적의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추후 유리로 막아 살내화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규정 등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규정들이다.

Ⅲ. 추진되고 있는 개정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문민정부의 민간 자율화 철학과 국제화에 대비한 건축활동의 생산성 제고라는 명제하에 「규제완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건축신고제를 도입하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규제완화 방안의 요지는

- 입지심의회와 건축신고를 분리하고
 - 모든 건축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검사를 책임감리제 등을 도입하여 건축사에게 이양하고
 - 이에 대한 불법행위는 엄벌에 처한다.
- 이상과 같은 개정의 방향과 요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뒤따라야 된다.

입지심의회는 도시건축기준(Zoning Control)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종전과 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할 것이다.

예를들면 심의시 현법상으로는 용적률 1,000%에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에 의해 20층 건물을 적법하게 설계하여

신청하였을때 심의에서 「10층으로 낮추어라」, 「10m 후퇴해서 지어라」 「주차장을 2배로 키워라」하고 한다면 종전과 다름없는 제도가 될 것이다. 다만 종전의 건축심의회에서 다룰때 보다는 준비해야 할 작성도면 매수가 좀 줄어든다는 것뿐이다.

현행 건축관계법으로 건축신고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

종전의 허가와 다른 점이, 건축사가 관계규정을 준수했다고 서명하고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제도인데, 기존의 법 체계가 복잡한데다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규준들만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다.

규정이 합리적이고 명료해서 누가 판단하여도 같은 의견이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처럼 같은 규정을 놓고도 심의위원들마다 다른의견, 담당 건축공무원들도 지역별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책임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건축주와 건축사 등 현재의 사회전반적 수준에 비추어볼때 미흡한 규정이나마 적절히 응용하여, 수준높은 「신고도서」를 작성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기존의 「허가제」에서는 심의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각각 달라서 문제가 되었지만, 최소한도의 질적 기본 문제들은 지적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안전장치는 되었다.

「중간검사 및 사용승인의 민간이양」도 예상되는 문제가 많다. 설계한 건축사나 책임감리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책임과 권한 관계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현재의 책임감리 제도는 검사의 책임도 지게 되어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검사는 시공능력에 대한 품질관리임으로 설계자보다는 직접 자기손으로 시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설계사무소나 행정관서에는 그런 인적 자원이 없다는 점이다.

검사는 외국과 같이 현장작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하여야 한다. 거푸집, 철근배근, 콘크리트, 철골, 배관, 배선 등 각 기능분야에 10~20년씩 직접 일을 한 경험자들 중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주어 검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Ⅳ. 미국의 건축제도와 Uniform Building Code

1. 건축허가 제도 :

1. 허가대상 : UBC에 의해 규제받는 모든 건물과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증개축, 이전, 개량, 보수, 철거시에도 허가를 받는다.

2. 도면과 시방서 : 건축사나 기술사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도서에는 각 구조부분의 시공시 구조설계자가 검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허가 : 건축공무원(Building Official)은 신청서, 도면, 시방서, 계산서 및 자료 등을 모든 법규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도면과 시방서에 "APPROVED"라 서명하고, 별도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모든 도면과 시방서가 완성되기 전에 건축물의 일부분에 관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출해 부분허가를 받아 착공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의 보관 : 한 질의 승인된 설계도서는 최소한 준공후 90일 이상 건축공무원이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한 질은 현장에 항상 비치되어야 한다.

5. 허가의 효능 :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허가받아 승인된 도서가 UBC 및 관계기준에 어긋난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건축공무원이 모든 규정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허가후에도 건축공무원은 UBC 및 관계기준에 어긋난 사항들을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수수료 : 허가수수료(Permit Fees)와 도면검토 수수료(Plan Review Fees)를 내게 되어 있으며 공사금액과 비례토록 책정되어 있다.

2. 건축검시제도 :

1. 허가를 받아 시공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공무원의 검사대상이 되며, 검사대상 부분은 항상 검사전까지 검사가능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허가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에 의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추후 UBC와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발견이 될 경우 건축공무원의 책임없이 시정되어야 한다.

3. 건축물이 승인된 배치도대로 위치하였는지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지 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4. 검사기록 대장을 준공승인 시까지 비치한다.

5. 검사신청 : 검사대상이 준비되는대로 건축공무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적어도 하루전에 하되, 서면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검사비는 시간당 \$30)

6. 검사부문 :

- 모든 구조부분의 기초에서 부터 상부구조에 대해서 하되 거푸집, 철근, 배관, 배선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한다.

- 방화시설, 방화장치, 굴뚝, 배연관계 시설

- 점검보드 시공 후

- 건축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문

7. 시정, 보완 필요시 재검사 한다.

8. 특별검사 : 건축주나 설계자가 검사원을 고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 Concrete/Bolts in concrete/Reinforcing Steel/Welding/Structural Masonry/Spray-Applied Fire Proofing/Piling/Special grading

9. 특별검사원은 해당부문의 전문가로서 건축공무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에 한한다.

10. 특별검사원은 검사보고서를 건축공무원, 설계자 및 기타 지정된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1. 시정사항들을 시공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자, 건축공무원에게 보고한다.

12. 특별검사원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검사원의 지식과 경험의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서명한다.

13. 건축공무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 특별검사원 배치를 면제시킬 수 있다.

14. 건축공무원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고, 등록된 시공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면제 될 수 있다. 추후 위법이 발견되면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취소된다.

등록된 시공자는 시공후 모든 규정에 의해 시공했다는 이행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제출해야 한다.

15.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등록시공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세부 제작지침서(Detailed fabrication procedural manual)를 통해 공장시설이나 직공의 능력 등과 같은 검사기준을 제시한 업체

- 세부 제작지침서에 의해 공장과 인력들의 품질을 승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보증받았을 경우

- 승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을 경우

- 검사기관은 지침서의 변경사항을 승인기관에 통보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취소된 업체가 재승인을 요청할 시에는 작년도의 품질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3. 사용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

1. UBC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을시 사용허가를 하는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숨겨진 불법사항들의 면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사용허가 : 부분적으로 미완료되더라도 건축공무원이 재해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사용허가를 줄수 있다.

3. 사용허가 취소 : 부정확한 자료 제출이나 판단오류에 의해 사용허가를 내주었을 시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4. Uniform Building Code(UBC)

1. 취지 : 더 좋은 건축물의 개발과 일반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들을 통일화 하였음.

또한 새로운 자재나 신공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성능(Performance)에 입각한 규정을 만들었음.

2. 1927년 10월 18-21일 Phoenix, Arizona 에서 있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의 여섯번째 연례 회의에서 제정 발효 되었음.

매 3년마다 수정판이 발행되어, 지난 수정판이 발행된 이후의 승인된 변경사항들을 부록으로 포함하게 된다. 매년 수정사항을 검토, 승인하여 부록으로 발행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즉시 적용 가능토록 한다.

수정 요청사항들은 수시로 누구한테서나 접수하여, 건축물 시공, 화재, 인명안전에 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청문회를 통해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3. UBC는 아래 관계법, 그리고 부수적 자료집들과 같이 사용되어 완벽한 규정의 일체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Uniform Building Code : 화재, 인명, 구조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룸.

—Handbook to the UBC : 각 규정의 목적, 역사적 배경, 참고자료를 포함하고 도표로 설명하며 UBC의 이용을 편하게 함.

—UBC Standards : UBC에 나오는 시험, 자재, 설계기준등을 수록함.

—Uniform Mechanical Code : 기계설비 기준

—Uniform Plumbing Code : 배관설비 기준

—Uniform Housing Code : 기존 주택의 보존과 개보수 기준 명시

—Uniform Code for the Abatement of Dangerous Buildings : 위험한 건물의 처리 기준

—Uniform Sign Code : 건물에 부착되는 광고, 표시판의 기준

—Uniform Administrative Code : Code의 집행 기준

—Uniform Building Security Code : 방법에 대한 기준

—Uniform Code for Building Conservation : 건물보존에 관한 기준

—Uniform Fire Code & Standards :

—National Electric Code :

—CABO Model Energy Code : Council of American Building Officials(CABO)가 만든 에너지 효율적 활용에 관한 기준

—CABO One & Two Family Dwelling Code : 주택에 대한 통합된 기준

부수적 관계자료집 :

Dwelling Construction Under the UBC

Dwelling Construction Under the Uniform Mechanical Code

UBC Supplements

Analysis of Revisions to the Uniform Codes

Building Department Administration

UBC Application/Interpretation Manual

Plan Review Manual

Field Inspection Manual

Building Official Management Manual

Legal Aspects of Code Administration

Illustrated Mechanical Manual

Concrete Manual

You Can Build it!

Guidelines for Manufactured Housing Installations

Tabulated Fire-Resistive Requirements by Occupancy

Introduction to the UBC Workbook

Plan Reading and Nonstructural Plan Review Workbook

4. UBC의 구성

Part I - Administrative

Chapter 1. Title, Scope & General

2. Organization & Enforcement

3. Permits & Inspections

Part II - Definitions & Abbreviations

Chapter 4. Definitions & Abbreviations

Part III - Requirements Based on Occupancy

Chapter 5. Classification of All Buildings by Use or Occupancy and General Requirements for All Occupancies

6. Requirements for Group A Occupancies

7. Requirements for Group B Occupancies

8. Requirements for Group E Occupancies

9. Requirements for Group II Occupancies

10. Requirements for Group I Occupancies

11. Requirements for Group M Occupancies

12. Requirements for Group R Occupancies

13-16 No Requirements

Part IV - Requirements Based on Types of Construction

Chapter 17. Classification of All Buildings by Types of Construction and General Requirements

18. Type I Fire-resistive Buildings

19. Type II Fire-resistive Buildings

20. Type III Fire-resistive Buildings

21. Type IV Fire-resistive Buildings

22. Type V Fire-resistive Buildings

Part V—Engineering Regulations—Quality and Design of the Materials of Construction
 Chapter 23. Part I—General Design Requirements
 Part II—Wind Design
 Part III—Earthquake Design
 24. Masonry
 25. Wood
 26. Concrete
 27. Steel
 28. Aluminum

Part VI—Detailed Regulations
 Chapter 29. Excavations, Foundations and Retaining Walls
 30. Veneer
 31. Accessibility
 32. Roof Construction and Covering
 33. Exits
 34. Sloped Glazing and Skylights
 35. Sound Transmission Control(See Appendix Chapter 35)
 36. Penthouses and Roof Structures
 37. Chimneys, Fireplaces and Barbecues
 38. Fire-extinguishing Systems
 39. Stages and Platforms
 40. Motion Picture Projection Rooms
 41. See Uniform Building Security Code

Part VII—Fire-resistive Standards for Fire Protection
 Chapter 42. Interior Wall and Ceiling Finish
 43. Fire-resistive Standards

Part VIII—Regulations for Use of Public Streets and Projections Over Public Property
 Chapter 44. Protection of Pedestrians during Construction or Demolition
 45. Permanent Occupancy of Public Property
 46. No Requirements

Part IX—Wall and Ceiling Coverings
 Chapter 47. Installation of Wall and Ceiling Coverings

Part X—Special Subjects
 Chapter 48. Cellulose Nitrate
 49. No Requirements(See Page 861—Appendix)
 50. Prefabricated Construction
 51. Elevators, Dumbwaiter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52. Light-transmitting Plastics
 53. See Appendix Chapter 53
 54. Glass and Glazing
 55. See Appendix Chapter 55
 56. Covered Mall Buildings
 57—59. No Requirements

Part XI—Uniform Building Code Standards
 Chapter 60. Uniform Building Code Standards

APPENDIX

Chapter 1. Division I—Life-safety Requirements for Existing Buildings other Than High-rise Buildings
 Division II—Life-safety Requirements for Existing High-rise Buildings
 7. Aviation Control Towers
 10.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11. Agricultural Buildings
 12. Division I—Requirements for Group R, Division 3 Occupancies
 Division II—Requirements for Group R, Division 4 Occupancies
 Division III—Barriers for Swimming Pools, Spas and Hot Tubs
 23. Division I—Snow Load Design
 Division II—Earthquake Recording Instrumentation
 Division III—Earthquake Regulations for Seismic-isolated Structures
 Division IV—Flood-resistant Construction
 24. Prescriptive Masonry Construction in High-wind Areas
 25. Conventional Light-frame Construction in High-wind Areas
 26. Protection of Residential Concrete Exposed to Freezing and Thawing
 29. Waterproofing and Dampproofing Foundations
 31. Division I—Site Accessibility
 Division II—Accessibility for Existing Buildings
 32. Reroofing
 35. Sound Transmission Control
 38. Basement Pipe Inlets
 49. Patio Covers
 51. Elevators, Dumbwaiter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53. Energy Conservation in New Building Construction
 55. Membrane Structures
 57. Regulations Governing Fallout Shelters

70. Excavation and Grading

5. UBC의 체계 및 사용법 :

—①건축물의 면적, 사용인수 그리고 ②건축물의 구조, ③대지경계선 및 주변 건물과의 배치관계를 고려하여 총 건축가능 규모와 높이 그리고 층수를 산정한다.

—Chapter 6~12를 통해 사용조건(Occupancy Requirements)에 부합되는지 검토한다.

—Chapter 17~22를 통해 구조별조건(Type of Construction Requirements)에 부합되는지 검토한다.

—Chapter 33를 통해 출구조건(Exiting Requirements)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Chapter 29, 54, 56과 Appendix를 통해 구체적 기준에 맞는지 검토한다.

—Chapter 23~28을 통해 건축자재의 기술적 조건들을 검토한다.

V. 프랑스와 일본의 제도

프랑스의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물의 배치, 위치, 주변도로와의 관계, 건축의 형태, 주변경관과 연관성 등을 정한 규정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적보호 정책과 연관되어 이의 용도변경, 개조에 대한 규정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허가신청 15일후, 심사기간동안 시청계시관에 신청내용을 게시한다. 제3자에 알람으로써 심사기간동안 이의 제기 등을 경청하여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막는다.

건축물의 검사는 건설부에서 승인된 전문기술단(VERITAS, SOCOTEC, CEP등)에 맡기며 5년 단위로 재승인 받도록 되어있다.

전문기술단은 건축가와 함께 설계초기부터 개입하여 기술적 도면검토를 하며, 시공 중 문제 발생시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 검사를 하며, 준공 후에는 시공업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도 한다.

현장의 중요도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기로 한다.

일본은 건축허가 제도라고 하지 않고 「확인신청」 제도라고 한다. 사전에 관계법령과 자치단체의 규정, 주변과의 관계 등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서, 확인신청 전에는 사전협의, 개발허가, 연관법에 따른 허가, 방재계획허가, 지역여건에 따른 절차, 구조허가, 방재세부시설허가 등을 거쳐 확인신청을 할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관공서의 일방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능기준을 가지고 설계전문가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살리도록 하는 행정절차가 되어있음.

일본의 심의제도는 건축물의 허가, 확인과 관련한 관·민간의 문제, 주변 주민과의 문제, 특별한 설계자의 의도를 관청에 대해 설명하려는 경우에 신청을 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성격을 갖고 있음. 건축설계자가 모형, 사진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인사들을 설득하여 설계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됨.

건축주사 제도가 있어 관청에서 임명하는 전문가로서 설계도면 검토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업무를 책임하여 확인하는 사람이며, 시의 계장급에 해당되며, 자격요건은 건축사 동등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하며, 건설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행정 관청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으며, 행정구역내 구역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함.

VI. 제언

1. 도시건축규정(Zoning Control)은 다원화해 가는 사회에 부응하여 각 지역단위로 지역 고유 환경과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2. Building CODE의 CODE의 뜻이 「System of LAW」 이듯이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통폐합을 통해 일관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법, 령, 규칙, 조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스스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2단계 정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하겠다.

법에서는 원칙과 정신만을 세우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할 수 있게 하되 UBC와 같이 표준법을 만들어 채택케 함이 바람직하다.

3. 법규의 내용은 성능위주로 하여 새로운 설계, 자재, 공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이여야 하며, 지엽적이고 임의적인 수치규제에서 탈피하여, 꼭 규제해야만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축공무원과 건축검사원 제도를 확립하여 UBC를 만든 ICBO(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등에 가입케 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자질향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5. 심의는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차원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작업을 하려는 건축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법원 판례조사

Judicial Precedent Research in Suspense Injunction of Architect's Duty

趙顯君/조현군 건축사사무소

by Cho, Hyun-Goon

1. 머리말

작년 6월경에 많은 건축사들이 위법 건축물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신문보도와 함께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사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감리자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의무도 배가되어 많은 건축사들이 행정처분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고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관청에서는 건축사들을 통제, 관리하는 수단으로 행정처분 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여 성실히 설계에 임하였고 감리업무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형건축물 현장에서의 위법사항은 이기적인 건축주와 시공자에 의해 저질러지는게 대부분이고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죄로, 또는 즉시 위법보고하지 않은 죄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건축사들의 사회적 위상도 찾고 불명예스러운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있던 본인도 작년 9월경에 1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어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근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법내용인즉, 건축사 조사, 검사대상의 건축물(토초세를 면하기 위해 짓는 단층건물로 연면적 약 25평 정도)을 본인이 감리하던 중 도면에는 없는 차량출입시설(일명 나팔구)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묵인하였다는 것이다. 아마 공사용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 보도블록을 일부 견어놓은 것을 보고 상설점검 나온 공무원이 보고를 한 모양인데, 본인도 사전에 이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권유하여 수일내에 설계변경하여 정식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다음날 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 공문이 내려왔으나 이미 설계변경 완료된 상태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상설점검을 나갔던 담당 공무원도 적법하게 시정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데, 뒤늦게 상부관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행정처분을 내린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침 그 당시는 시청에서 하던 건축사 행정처분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던 과도기적 시기로서 구청 청문에서도 이 사안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강조하였으나 감리자의 성실등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게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대로 당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의 상급기관인 시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하고,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생각외로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은데다가, 마침 법률자문해주는 분의 도움도 있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 재판에 임하게 되었다.

서너번의 법정출두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의 판결내용은 "공사 감리자로서의 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건축사의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여부는 이 법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정도로 즉시 시정조치된 사항에 비하여 이 사건처분은 과중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약 3개월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찾던 중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마침 서울건축사신문에 게재되던 법원판례들도 참고가 되어서 아래와 같이 그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2. 사례조사

(사례-1)

○사건번호: 92 구 2136

○위반사항: 지층노출 50cm, 발코니 창문 설치에 따른 연면적 15㎡ 증가등의 사항에 대한 위법보고 지연

○고등법원 판결 (2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 원고(감리자)는 비록 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이기는 하나 현장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건축주에게 권고하였고, 위법건축 보고서의 제출이 다소 늦다고 하더라도 위법내용이 경미하고, 감리 건축사가 성실한 공사감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점에 비추어 불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다.

(사례-2)

○사건번호: 92 구 5241

○위반사항: 건축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갱신하지 않고 설계업무를 수임한 사실

○고등법원 판결 (1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

: 원고(건축사)는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22조에서는 (1)항 내지 (6)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유사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행정판청)의 이 사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사례-3)

○사건번호 : 91 누 12172

○위반사항 : 공사 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인 준공검사에 합격되기 전에 준공서류에 날인한 후 건축주가 불법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

○대법원 판결 (4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며, 준공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종료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사항임. 그러나, 이 건물의 용도변경은 원고가 감리업무를 일단 끝낸 후 건축주가 이에 따른 준공신고를 아니한 채 2년이나 사용하던 중 무단으로 감행된 것인 바, 이 점에 비추어 감리 건축사에게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하여 부과한 4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사례-4)

○사건번호 : 92 누 602

○위반사항 : 지하층의 노출로 인한 일조권 침해 사항, 옥탑부분 1.8㎡ 무단 증축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위법보고 지연

○대법원 판결 (8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며, 원고가 맡은 이 사건 공사감리는 일반 공사감리로서 위반사항이 정미하고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아님. 비록 위법공사 보고가 늦었다고는 하나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공사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 성실하게 감리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법에서 정한 최장기인 8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사례-5)

○사건번호 : 91 누 11940

○위반사항 : 허가 면적보다 26㎡ 증축된 위법사항을 공사 감리자로서 관청에 보고하지 않아 업무수행 의무를 태만히 한 점

○대법원 판결 (2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 서울시의 건폐율 완화 검토 보도가 있어 건축주가 예상되는 건폐율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원래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였고 감리건축사도 추후 설계변경 허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청에 위법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실제로 변경된 건폐율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변경 허가를 얻어 기왕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해소된 점 등을 비추어 볼때, 행정청에서 감리 건축사에게 내린 2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22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건설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이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례-6)

○사건번호 : 90 누 8985

○위반사항 : 처마와 베란다를 설계도서와 달리 도로에 돌출시킨 위법사항에 대한 보고 지연

○고등법원 판결 (2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 시공위반 사항의 일부는 실지 측량을 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는 주 3회이상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리를 하면서 위법시공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비록 관청에 제출한 위법보고가 관청의 적발 1주일 후에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감리업무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법규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시공 부분의 내용이나 그 발견경위, 원고가 성실한 공사감리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사례-7)

○사건번호 : 93-1282

○위반사항 : 지층노출 1m, 1층면적 증가 72㎡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관청의 적발후에 위법 보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 건축사의 성실의무 위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 감리 건축사의 성실의무는 공적업무를 위임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건물에 대해 관청의 적발일보다 1일후에 청구인(감리 건축사)이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감리자가 공사중 지층노출 1m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었으며, 통상 시정 권고서를 2-3회 건축주에게 발송한 점으로 보아 건축사법 20조 제2항에 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통상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처분을 한 관청의 상급기관(서울시나 건설부)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나, 청구인(건축사)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그러나 상기(사례-7)의 경우는 상급 행정기관에서 하급기관의 건축사 행정처분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는 드문 경우임.

3. 맺는말

이상과 같이 법원판결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 건축사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다. 개중에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사가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 관청의 행정처분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로 잘못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흔히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들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소극적이고 자조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성실히 감리에 임했다는 확신만 있으면 상기 사례와 같이 얼마든지 우리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와 사회적 위치는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고, 언론이나 관청의 건축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도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에 의하여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례조사를 통해보면 승소판결을 받은 건축사들도 판결후의 후속조치(예를 들면 손해배상, 명예훼손 소송등)는 거의 강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귀찮기도 하려니와, 대판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 이상의 책임추궁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들이 관보등에 위법 건축사로 기록되는 불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이며,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건축사들이 업무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직업 이기주의에 편승해 우리 건축사들의 권익만 소리쳐서는 안될 것이나,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온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 관청에서 건축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릴때 좀더 신중하고 법 취지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My Opinion on Development of Architecture Culture

朴淳鍾/예지건축사사무소

by Park, Soon-Chong

세상 모든 이치가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어 놓아야 살아 남듯이 건축도 우수한 설계실력과 저렴한 설계비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경쟁되어야 좋은 건축작품이 나오고 건축문화도 발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야 건축사들이 건축사 면허를 딸때보다 더욱 설계실력을 높이려고 공부도 하고 컴퓨터 설계도 배워 생산성 있는 건축설계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주에게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 경쟁력도 키워 UR에 대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의 건축사계는 대부분 그러하지를 못한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흘러온 몇가지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축사들과 국민이 원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왜곡된 제도와 관행이 원칙인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1 원리 원칙적인 건축개념의 정돈이 없음

순수한 의미에서 건축주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작품경력이 많은 훌륭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양심적인 시공자를 선정한 후 좋은 날을 정해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집이 설계의도 대로 지어지는지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 현장에 나와 예술과 기술을 지도하여 달라고 감리를 의뢰할 것이며 또한 시공자가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감독자를 따로 내세워 감독할 것이다. 집을 다 지은 후엔 준공검사(건축현장조사검사)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감독자, 건축현장조사검사자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문제2 건축주들의 그릇된 사고

건축주는 어떤 건물의 주인이자, 시공발주자이며 스스로 시공자이므로 예술작품 보다는 집을 조금더 넓고 싸게 지어 끊임없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다. 또한 준법은 손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 건축주의 욕심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안되는 건축허가 잘 받아주고 준공처리를 잘해주며 설계비, 감리비가 싼 건축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설계 잘하고 감리 잘하는 건축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건축문화가 얇고 건축사계가 무가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무형의 지적노동에 대하여는 값어치를 인정 안하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3 원칙도 모르는 건축사들

건축사는 건축주의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존재가치가 성립되기 때문에 순수 예술가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며 완벽한 기술자도 아니고 행정대서사도 아닌 사람이다. 건축주의 주문에 의하여 설계를 하고 감리도 한다는 원칙을 모르고 감리를 한답시고 건축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다.

자영을 하건 타영을 하건 일부 건축사 중에는 자신의 제도책상조차도 없이 기사가 수주하고 그런 도면에 도장이나 찍고, 사무책상만 치장하는 이가 많다.

문제4 감리자가 모든 책임자 인양 잘못 인식

감리자는 설계자로서 설계에서 표현 못하는 예술성을 현장에서 감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철근 빼먹는 것 시멘트 빼먹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며, 공무원대신 위법을 적발하는 자가 아니다. 국가가 위헌적으로 건축주를 감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시장경제의 원칙대로라면 건축주가 필요하여 설계를 시키듯이 감리도 필요에 의하여 시켜야 한다. 국가의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감리비는 건축주에게서 받게 하고 건축주를 감시시키는 위헌적인 일은 이제는 그쳐야 한다.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술이나 기술의 제공은 안하고 위법여부나 감시한다면 국가에서 감시비를 받아야지 건축주에게 감리비는 왜 받는가? 감리자는 어디까지나 건축주에게 예술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건축주편에서 시공자를 지도하여 좋은 건물이 되게 하며, 변호사처럼 대판청에 대하여 건축주를 보호하는 입장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건축주를 감시하는 국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 건축사도 법무서비스로 업태분류 된다.

과거 감리비를 한푼도 못받다가 국가에서 현장조사검사업무를 공짜로 대행시키니까 건축사계와 관료편의주의가 단합하여 건축주의 감리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교체감리자를 건축사협회에서(서울은 일부 구청에서) 지정하고 감리비도 강제 징수한 위헌적인

결과이다. 건축주가 감리자와 자유계약을 못하는 것은 분명 헌법 위반이다.

생수업자들도 보사부장관의 시중판매규제를 행복추구권, 직업자유선택권 등의 법규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소송을 하는데 우리 건축사들은 남의 벌을 대신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들이다. 주범 건축주, 중범 시공자 대신 감시자만 처벌받고 감리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한다. 4년전 건축사협회에서 감리업무인지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건설부에 반납하자고 하다가 반납이 될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번 적이 있다. 건축사협회의 지도부는 구를 위에 떠있는 귀족주의 건축사이다.

감리비 받고 감시 잘못 하면 똑똑한 건축주에게 배임으로 고소당한다.

감리비 아닌 감시비로서는 엄청난 액수인데도 부족하게 여기고 감사에 걸리는 것에 대한 보합식의 준공비를 별도로 받는 감리자도 상당수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강제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교체감리가 91년도부터 없어져 다행이지만 감리비 강제예치제도는 여전한다.

우리는 아직도 법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감리”와 “공사감독” 그리고 “건축현장조사검사”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모든 책임이 마치 감리자에게 있는 양 희생양으로 매도하고 있다. 감리가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감리비를 주고 용역을 맡긴 건축주만이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물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건물이 부실시공 되었다면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지 모든 것을 감리자에게 씌운다고 부실건물이 없어지고 건축문화가 발전하는가?

문제5 건축을 안배운 대부분의 시공자

건축주의 발주에 의해 공사하는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설계감리자의 지도”하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의 예술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공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제일의 존재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규모 건물이 우리나라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소규모 건물의 시공자들 대부분이 정식으로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도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건물이 시공되는 실정이나 도면만 잘 그리면 무엇 하랴! 허가용 도면에 준공 잘해주면 그만이지 대부분의 시공자가

무자격으로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기에 국가는 만만한 감리건축사만 처벌하고 일 다했다고 한다.

문제6 공사 감독자의 법적인 위치가 없음

공사감독자는 감리자와 달리 기술자적인 위치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자가 철근 시멘트 등과 같은 자재 및 건설기술기능 감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공감리자 또는 책임감리자라는 명칭보다는 감독자라는 명칭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건축공사에서는 건축주가 감독자를 내세워 시공자를 감독하고 국가 공사에서는 감독관이 있어 감독하고 있는데 모두들 감리자가 감독자인 줄 잘못 알고 있다.

문제7 잘못 대행되는 건축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형

건축현장조사검사자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물을 짓고 사는가를 조사하는 국가적인 관리자이어야 한다. 예산과 고급인력의 부족, 공무원의 부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8년전 국가는 국무총리령을 발동하여 지금의 건축법에 ‘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지침을 두어 개인자격인 감리자에게 건축현장조사사업무를 떠넘겼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이나, 부실건축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 감리자를 희생양으로 처벌해 왔다.

앞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부작용 1: 간혹 TV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여론의 추궁을 받는 구청에서는 건축현장조사검사는 건축사에게 일임되었기 때문에 건축사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내주고 있다는 것은 온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부작용 2: 건축주와 건축사는 협력의 사이이면서도 위법자와 감시자의 사이로 이간되어 있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건축주의 위법을 적발하면 설계, 감리를 의뢰하는 건축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법건축 단속이 안된다.

부작용 3: 위법 건축물이 감사나 이해관계자의 진정에 의해 적발되면 주범 건축주 중범 시공자 보다 감리건축사만 처벌을 받는 현 실정에서 건축사는 매품을 팔아 살던 흥부와 같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법건축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부작용 4: 국가에서 공무원 의제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니 하여 행정처벌로 영업정지를 2,3개월 받는 것은 보통이며 때로는 구속 입건도 되며 벌금형도 받는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건축사면허가 취소된다. 결과적으로 건축사는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불안에 떨고 산다.

부작용 5: 건축주의 위법을 얼마나 묵인하며 처벌을 벗어나느냐에 따라 유능한 건축사가 되는 여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건축주는 준공 잘해주는 건축사만 찾게 되고 건축문화는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감리비아닌 고액의 감시비와 준공 잘해주는 감리건축사 보험식의 준공비는 뻔할 뻔자이다. 여차피 감리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위법건축은 건축주의 이익만큼 생겨나는데 준공비나 많이 챙겨 노후나 편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부작용 6: 건축주의 위법을 구청에 위법보고하여 보지만 담당공무원은 검찰에 고발하러 가기 싫어 건축사를 밋게 보게 되고 다음 건축허가 내기가 힘들게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검사앞에 고발하러 가기는 싫은 것이다.

부작용 7: 건축문화 발전이나 건축기술 보다는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의 편법 운영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부작용 8: 각 언론 매체들은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건축사의 절반이 범죄인이라고 보도한다. 심지어 건축사들이 이렇게 하여 최상류층이 되었다고 영터리같이 기사를 쓴다. 건축사협회는 반박성명 한번도 없다.

부작용 9: 위법건축의 구조적인 양산, 건축문화 및 기술의 퇴보, 건축사를 전과자 집단으로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개선책

건축현장조사검사 제도는 엄연히 시장 군수가 할 일이며 위법 건축물 단속도 시장 군수가 할 일이다. 국가가 위법건물 근절의 의지가 있고 국가의 예산 절약과 건축직공무원의 보호 차원이라면 건축사 개인에게 명예를 씌우기 보다는 건축사협회 조직에 의뢰하여 건축사의 연수 제도와 연결하거나 “3인 건축현장조사검사팀”(인천에서 운영 경험 있음)을 운영함이 합리적이며 공공성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8 건축물대장 작성자

건설부령으로 건축물대장 작성자는 건축사 혹은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부작용 1: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취득세 가옥세 중지대를 받고 그 부속 도면으로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건축사에게 공짜로 부속도면을 그려받고 있다. 건축주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도면을 제출하게 하고 건축주 위법적발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자기방어권의 침해라고 생각된다.

부작용 2: 건축허가용 도면을 축소복사 사용 못하게 하며 새로 그리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 식이다.

부작용 3: 공짜로 그리게 한 부속 도면이 틀렸다고 건축물대장을 발급 안해주니 건축물대장이 시급한 건축주는 급한 마음에 급행료 생각이 절로 날 것이다.

부작용 4: 실수로 틀린 도면이 나중에 발견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진다.

부작용 5: 건축주 신고 사항으로 처리되는 소규모 신축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도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물대장 부속도면을 요구하니 건축주 신고로 처리되는 건축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법의 모순에 빠진다.

개선책

건축물대장은 구청장이 정당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시키거나 건축허가용 도면을 활용하여 가옥세와 중지대 위법건축물을 관리 함이 지당한 줄로 안다.

문제9 공동 주택 하자 보수 예치금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건축주이지만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법적인 건축주는 시공자이며 진정한(실질적) 건축주는 입주자 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하자문제는 어떠한 건물 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사회 문제이다.

하자보수를 위하여 준공 후 3년간 일정금액을 예치후 찾아가는 하자보수 예치제도를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다세대주택은 법에도 없어 주택건설촉진법을 원용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성을 그르치는 일이다. 3년이 지나도 예치금을 찾아 가기가 아주 어렵다.

부작용 1: 공동 주택에서 입주자는(진정한 건축주) 아직 정해 지지 아니하여 감독자를 내세워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발주 공사에는 감독관이 꼭 있음) 하자문제를 법적으로만 건축주인 시공자의 양심에 의지하고 있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부작용 2: 그렇다고 법적인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받고 그를 위해 일을 하는 감리자가 감독자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건축사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감리자는 감독자가 아니며 건축사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건축사가 무균적인 사람일 수는 없다.

부작용 3: 준공후 3년간 하자보수기간으로 하며 일정금액을 예치한후 3년이 지나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다세대는 입주자전원의 도장을(법에없음) 받아야 예치금을 찾을 수 있는데 어디 도장을 찍어 주는가? 건축주는 하자 보수에 등한히 하며 하자보수예치금만큼 적당히 시공하고 입주자들은 하자보수예치금에 눈독을 들여 민원을 일부러 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정서며 입주자간의 돈 다툼, 입주자와 건축주와의 싸움, 도덕심의 마비, 행정당국의 중재 등 국력의 낭비가 얼마나 큰가! 못찾아간 예치금은 누가 갖겠는가?

부작용 4: 사람 중에 공동주택을 옮겨다니며 하자문제를 진정하고 언론에 폭로 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한 집, 하자없는 집은 없다.

부작용 5: 모두들 애써 외면하지만 선량한 서민의 탈을 쓴 늑대들을 느낄 것이다. 집 한채 짓는데 주위주민에게 얼마나 시달리는가. 심각한 문제인데도 언론을 위시해 모두들 외면만 한다. 못 뜯어 먹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우리 모두가 늑대인 것이다. 도덕심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신운동이 각계각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선책

공동주택의 하자문제에서 건축법상의 감리자는 설계감리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자는 감독을 하게 하고 입주자들이 정하여진 후 입주자에게 시공자와 함께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즉 법적인 건축주에게 설계감리비를 받은 건축사는 건축주를 위하여 설계감리 일을 하고 입주자들에게 감독비를 받은 감독자는 입주자를 위해서 감독일을 하고 국가로부터 조사점사비를 받은 조사감사자는 국민을 위하여 위법건축을 방지하여야

하겠다.

문제10 종합 건설업 면허 대여

우리나라 건설업법은 일반건물 150평, 주택 200평 이상을 종합건설업면허자만이 시공할 수 있게 면적제한을 두고 있다.

부작용 1: 덩치가 큰 종합건설회사가 조그만 200, 300평 건물은 안짓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집장사를 하는 사람이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려서 짓고 있다.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리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연한 비밀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도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이 지어진다.

부작용 2: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다반사이며 만성적인 악순환으로 인해 법질서의 권위가 없다.

부작용 3: 어떤 종합건설업자 가운데는 영업상무를 여럿 내세워 공공연히 면허대여업을 한다.

건축주에게는 여러 종류의 입장이 있는데

1. 자가주택 소유자=건축주+시공자+입주자
 2. 소규모 주택, 상가, 다세대주택, 집장사=건축주+시공자+판매자
 3. 중규모 빌딩 임대 업자=건축주+시공발주자+임대자
 4. 중규모 빌딩 및 연립주택 집장사=건축주+시공발주자+판매발주자
 5. 대규모 아파트 집장사=건축주+주택사업 지정업자
- 이중 중규모 집장사들이 주로 건설업 면허가 아쉬운 사람이다.

개선책

정식으로 건축을 공부한 사람 중 일정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에게 조그마한 건물의 시공면허를 주어 부실건축물 및 위법건축물을 방지 하고 법질서도 확립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건축을 공부하지 않고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건축을 공부한 건축인이 아무래도 나을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건축문화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인들이 서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에서 르 · 꼬르뷔제와 루이스 · 칸을 찾아서

Looking for Le Corbusier & Louis I. Kahn in India

閔賢植/민현식 건축사사무소

by Min, Hyun-Sik

모든 분야의 공부나 그릇하듯,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건축공부 대부분은 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 수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일일이 직접 체험으로 습득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책들(texts)을 이용하여 왔으며 그런 만큼 수 많은 건축 책들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독자들을 끌고 있다.

이러한 책을 통한 지식 습득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은 습관화되고, 실체와 만나서 팬스라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보다 소위 유명인사들의 관점, 그들의 도식적 권위를 따르는 것이 맘 편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인정된 권위」로서 책의 언술이 실체보다도 더 큰 권위를 얻게 되고 그 책이 서술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현실」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어 버리게 된다.

책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며, 더구나 기행을 통하여 정작 실체에 접하여서도 책에서 배운 것을 그 예비적 지식의 단위들을 문자 그대로 실체에 적용 · 확인하려는 태도는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실패를 가져 온다.

4·3 그룹의 건축기행은 이러한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고통스러운 일련의 공동작업이다. 잘못된 지식,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얻은 편협된 이해는 무지보다 더 무서운 적이며 무심코 얻게 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얼마나 오랜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했는가.

권위(?)가 인정된 책만을 통해 정의된 것을 일단 보류해 두고 실체에 직접 부딪쳐 자신의 오감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 기행의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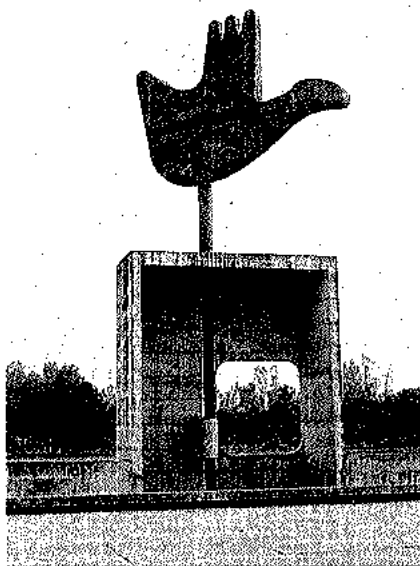
기행을 떠나기 위해 일년 남짓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가장 결핍되어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열심히 토론하여 기행의 주제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시각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소위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권위」들을 강의의를 통해 습득하고 세미나를 통해 이리저리 의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정작 떠날 때는 이 모든 텍스트와 사전지식들을 휴지같이 버린다. 혹시 그동안 생겼을지도 모르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잊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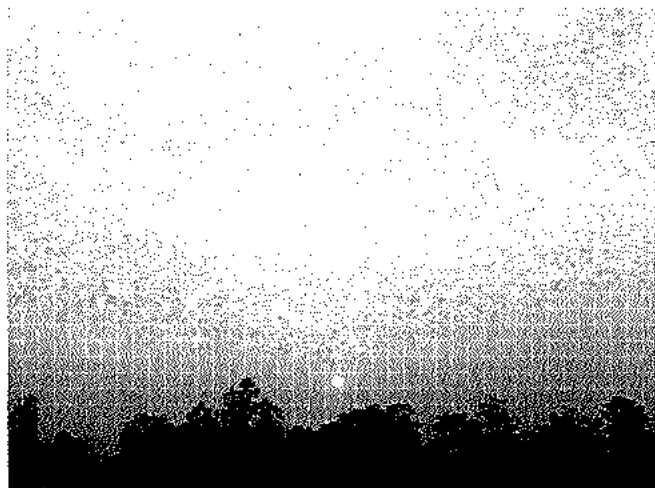
특히 인도기행의 경우 더더욱 그래야 될 것만 같다. 물론 이 생각조차도 텍스트에 의존하는 것이 될 터이지만 후지와라의 「인도방랑」의 서두는 ‘버리기, 그리고 준비하지 않기’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단지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흥분만이 가득할 따름이다.

이번 기행의 실용적 목표는 인도



열린 손



찬디가르에 뜨는 해



열린 손

대륙에서의 르·꼬르뷔제(Le Corbusier)와 루이스 칸(Louis I. Kahn)을 그 땅에서 직접 만나는 일이며 그리고 그 위대한 인도를, 엄청난 대륙과 역사와 인간을 잠시 동안이나마 채득할 수 있다면 행운일 터.

우리 일행이 홍콩을 거쳐 델리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예정보다 무려 8시간이나 늦은 다음날 새벽 2시가 훨씬 지나서였다. 처음부터 일정이 삐걱거린다. 모두들 “와연 등던대로...”를 눈빛으로 주고 받으며 애써 느긋해지려 노력한다.

눈 불일 새도 없이 서둘러 일어나 관례적 관광코스를 따라 올드·델리(Old Delhi)의 유적들 즉 회교사원, 간디 묘(Raj Ghat), 붉은 성(Red Fort)을 위망엽하듯 둘러 보기도 하고 찬드니 초크 거리(Chandni Chowk Street)를 톱샤를 타고 지나가 보기도 한다.

마음을 미쳐 열기도 전에 온 몸으로 밀려드는 무채색으로 황폐된 도시풍경, 물려드는 길인들 그리고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유적들 ...

말을 잃는다.

델리역(驛)에서 기차를 타고 찬디가르(Chandigarh)로 향한다.

콘크리트 덩어리, 그것도 이제는 썩어갈 괴물을 뒤흔들려 보려 가나.

그저 멋있는 인도의 옛 유적이나 보러 가지.

근대 도시계획의 실패작으로 악명의 대명사로 일컬어 왔던 도시.

꽤 늦은 부루탈리즘의 건물들이 아닌가.

찬디가르에게 너도나도 신나게 퍼부었던 지독한 독설들을 애써 외면하려고 주문을 맘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창 밖의 풍경에 눈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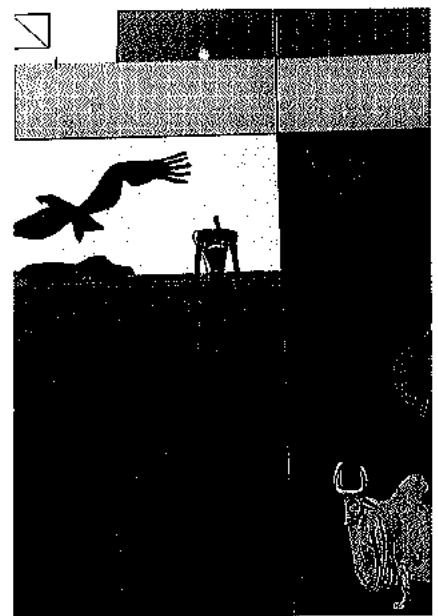
종일 거리에서 악다구니 같이 대들던 걸인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처음으로 「사람」으로 인정했다던 소위 거리의 천사(Harijans)들이 철로 변에 버려진 듯 쓰레기더미같이 살고 있다. 저녁 끼니를 위해 조금씩 연기를 피우고, 그 연기를 넘어 지평선에서 붉게 해가 진다.

갑작스러운 경제 성장의 알랑한 거품의 달콤함에 길들여져 오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던 잊었던 우리의 자존심, 주린 배를 움켜 쥐고서도 던져진 초코렛, 추잉껌을 애써 외면하던 그 오기를 우리는 너무 잊고 있는 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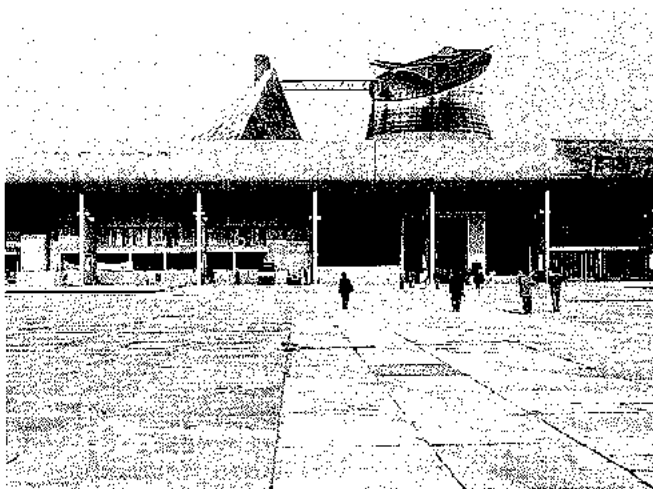
찬디가르역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그 안개를 도저히 헤칠

수 없는 서너개의 누런 불빛 아래 사람들, 소음들만이 악몽같이 가득 역사(驛舍)를 매우고 있다. 몽유병에 걸린 듯 버스를 타고 암흑을 달려 숙소인 마운튼 뷰 호텔(Mountain View Hotel)에 여장을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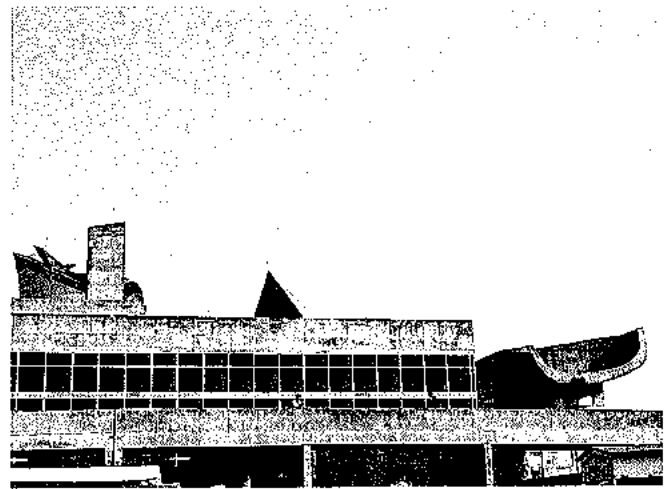
1951년 봄, 처음 르·꼬르뷔제는 펀잡(Punjab)에 도착한다. 그때 그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일생을 두고 구축한 모더니즘의 이상(理想)에 완전 부장하고



의사당 입구의 거대한 문



의사당 정면



의사당 남측 전경

이 생경한 거대한 대륙을 구태여 외면하였을까. 소위 「더 나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a Better World)」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 땅에 이식하여 그의 이상을 여기에 실현하고픈 욕망에만 가득했을까. 아니면 이 새나라, 이 인민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여 그들의 희망을 성취하는데 그의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려 했을까.

당시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막 독립하였고(1947) 아직도 곳곳에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분쟁과 대화살이 자행되는 혼돈 그 자체였다.

특히 찬디가르는 이러한 혼란스런 드라마의 중심지였다. 1946년 파키스탄이 독립되면서 옛 수도 라홀(Lahore)을 포함한 펀잡주(州)의 서쪽 반쪽이

파키스탄으로 합병되고 찬디가르는 엄청나게 밀려 오는 피난민들, 관리들을 받아들여 나머지 펀잡주(州)의 새 수도가 된다.

이러한 혼돈으로부터 네루(Jawaharal Nehru : 1889~1964)로 대표되는 당시의 지도 엘리트들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그들의 이상, 자유와 민주 그리고 미래에의 도전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위대한 정치가 네루와 금세기 최고의 예술가 르·꼬르뷔제, 서로의 이상이 맞아 떨어진 행복한 만남인가.

결연적으로 르·꼬르뷔제는 인도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미학적 해석의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고 그의 판단에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가 J. 네루에게 보낸 편지(1954. 11. 26)에서 그 교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합적 심경과 의견을 토로한다.

“인도는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순진무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단순히 새나라라고 부르는 어렵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가장 높은 문명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고유의 지성과 도덕적 철학과 의식을 가진 나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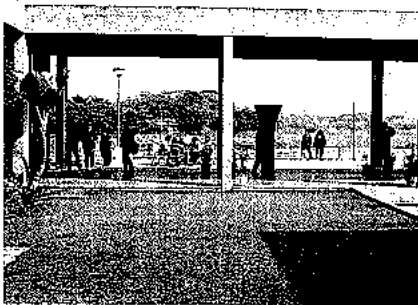
그리고 덧붙여 인도는 수많은 불교석굴과 스투파들, 힌두교와 자인교의 사원들, 회교의 궁전들과 사원들, 위대한 다양성을 가진 도시들과 마을들, 거기에 또한 덧붙혀진 영국 식민시대의 건축들, 기념물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건축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그러한 유산을 관통하고 있을 인도의 위대한 정신을 해독하여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되 잘못된 오리엔탈리즘으로 일탈되거나 모조품이 아니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즉 그것은 인도문화를 뿌리까지 추적하여 그것의 신화와 의미를 탐구하여 저 밑에 깔린 본원을 현대의 상징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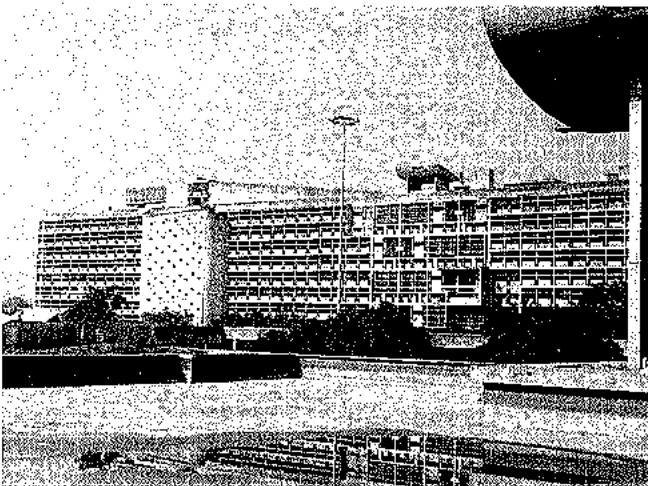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지평선 위로 잿빛으로 바랜 발그란 해가 뜨면서 이 “빛나는 도시”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히말라야를 바라보는 찬디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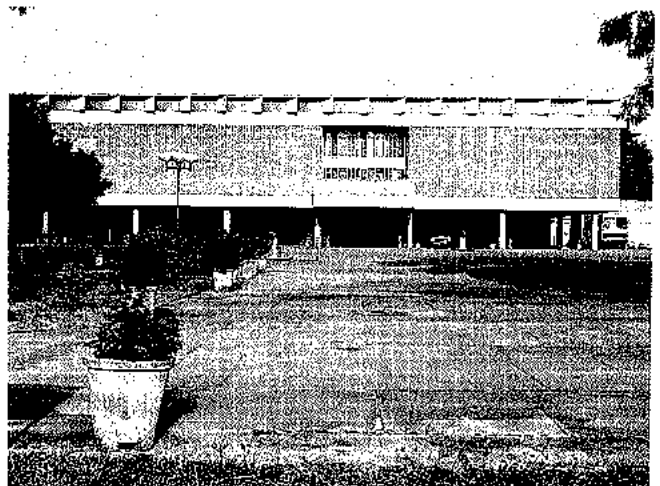
인도 말로 찬디가르는 전쟁의 여신의 성(城)을 의미한다. ‘찬디’는 일곱명의 자매가 있는 여신의 이름이며 ‘가르’는 성(城)이다. 찬디가르에서 북쪽으로, 곧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산들을 향해 가다



찬디가르 보트크립하우스



의사당 옆 행정청사



찬디가르 박물관

보면 산 자락에 하얗게 칠한 작은 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몇세기 전에 이 산에게 제사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찬디가르’라는 이름은 이 곳에서 취한 것이다.

하루 낮과 하루 밤의 그 지독한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나 싶었으나 차창 밖에 눈에 익숙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치밀어 오는 사기(邪氣)를 억누르기 힘들다. 드디어 왔구나.

전 도시의 머리 부분으로 은유되는 캐피톨(The Capital)은 찬디가르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이다. 80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주정부 청사를 위해 비워 두었고, 여기에 르·꼬르뷔제는 문자 그대로 마음껏 그의 천재성을, 일생을 두고 구축한 건축의 이상을 펼친다. 불륨의 조화, 공간감의 창조, 태양광의 장엄한 구사, 전체의 통일성과 각 요소들의 다양성, 휴먼·스케일 및 개별성의 존중 등 성경 구절같은 모더니즘의 규범들을 그의 방법대로 그대로 나열해 놓고 있다.

최고재판소(The High Court), 의사당(The Parliament 또는 The Assembly Hall) 그리고 행정청사(The Secretariat)가 광대한 광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찬디가르 창설 30주년 그리고 르·꼬르뷔제 서거 20주년을 맞아 인도정부의 자부심은 캐피톨의 완결을 결의하여 그가 이미 설계해 둔 그림자의 탑(The Tower of Shadow), 명상의 제곡(The Depth of Consideration) 그리고 열린 손(The Open Hand)을 완성한다. 당시의 총독이 주거지역에 살기를 원하여 아직은 미완으로 남아 있는 총독관저(The Governor's Residence)는 지식의 박물관으로 기능을 바꾸어 기술, 경제, 사회 및 윤리 네 분야의 연구소를 수용토록 기능이 변경되어 전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척추에 해당하는 잔·마르그(Jan Marg)를 통해 캐피톨의 서남쪽으로 진입하면서 처음 멀리 하늘을 향해 열린 손이 뜨는 해를 역광으로 받으며 실루엣으로 눈에 들어 온다. 르·꼬르뷔제는 새 도시 찬디가르의 캐피톨에 이 상징기념물을 세워야 할 필연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득한다.

그가 네루에게 보낸 편지(1954. 11. 26~27)에서 읽을 수 있듯이 지금의 세계는 100여년을 지나오면서 과학과 기술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어 온 기계 시대(The Machine Age)의

운명적 모순에 직면해 있고, 그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 온 인도는 지금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이제 조화의 시대가 될 제2의 기계시대가 개막되려는 지금, 인도는 그가 가진 위대한 최고의 문명을 바탕으로 이 새 시대에 주역으로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이 기념물은 이러한 증명하는 상징물로 채택되어야 한다.

하늘을 향해 열린 손,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또한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열린 손, 선한 의지로부터, 그것의 행위를 위한 필사의 투쟁으로부터, 인내와 불굴의 노력으로부터 솟아오른 그 정신의 표상.

르·꼬르뷔제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기념물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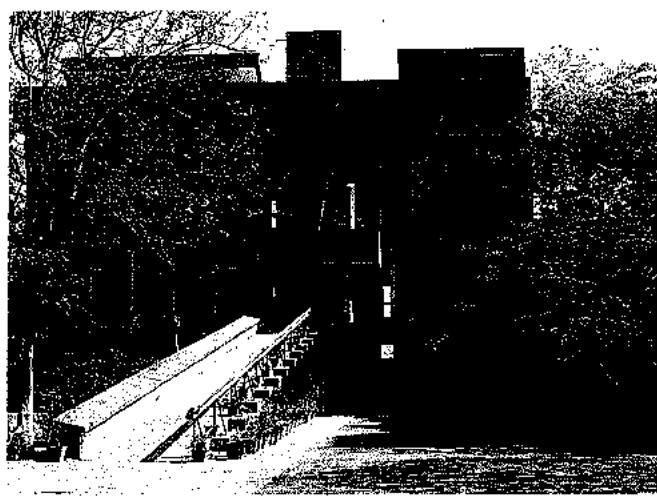
다음은 그가 타계하기 한달 전에 쓴 글의 일부이다.



방직협회 강변측 입면디테일



방직협회 전경



방직협회 정면

“...열린 손, 창조의 부를 받기 위한, 그것을 온 세계 인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손은 우리 시대의 상징으로 가필코 세워져야 합니다. 천국에서, 신들의 별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에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앙드레·말로여, 모든 나의 동료, 친구들이여, 간디의 제자 네루가 사랑한 도시, 지평선에서 솟아 오른 히말라야와 함께 찬다가르의 하늘아래 이 열린 손이 세워지는 데 도움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그가 타계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실현된 이 열린 손을 본다.

어느 한 구석 기릴 데 없는 살벌히 펼쳐진 거대한 광장에 서서 하늘을 향해 열린 실루엣을 본다.

그의 시대정신, 어쩌면 이제는 늙은 호랑이의 객기 또는 과대망상으로 포장된

이상향에의 욕망을 메마른 잿빛 형상에서 읽고 있는 것인가.

광장을 이리저리 가로 지르며 둘러쳐진 조잡한 철조망, 부장한 경관들이 곳곳에서 눈을 부라리고 섰고, 곧 살육이 자행될 듯한 살기도는 분위기에서 이 거대한 구조물은 폐허처럼 허무한 데, 이는 그 위대했던 지난 시대, 모더니즘 정신, 그 새로운 정신(L'Esprit nouveau)을 달래는 장송곡인가.

스산한 마음으로 망연자실 한참을 서 있다.

열린 손의 토대를 이루는 명상의 계곡을 둘러 볼 틈이 없이 겨우겨우 입장이 허락되었다는 의사당으로 서둘러 달려 간다.

좌측이 ‘그림자의 탑’에 가렸던 의사당은 철조망을 지나서야 완전한 정면을 드러내 보인다. 캐피톨의 서측에 자리잡은 이 집은 멀리 최고재판소와 마주 보며 이제 꽤 높이 솟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난다.

반전된 보울트 모양의 포티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판상의 거대한 8개의 열주, 지붕의 거대한 콘크리트 원통과 변형된 피라미드는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 충분히 집중적 논쟁을 불러올 만한 하나의 거대한 상징 조형물이다.

J. 네루의 개혁과 진보주의의 바람에 따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바라티 강변 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차용해 왔다는 20세기 신화는 이제 세기말에 와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고대 인도의 성스러운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어 아직도 강한 메시지를 던지며 당당하게 서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들의 조합인가’ 등의 논의는 일반인의 호사에 대응하기 위한 저급한 수단일 뿐이며, 오히려 그 너머, 그 아래 굳게 도사리고 있는 로·코르뷔제 교(敎)를 설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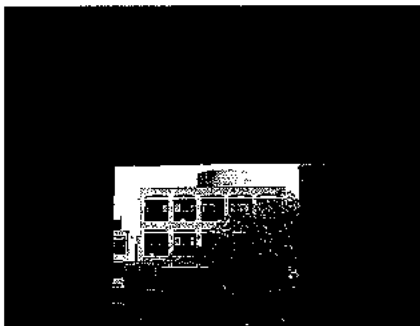
낙관처럼 찍혀 있는 ‘모듈라 맨’의 부조를 흘깃거리며 정문과 마주 선다.

하나의 한지로 열리는 이 문은 문이라기 보다는 거대한 움직이는 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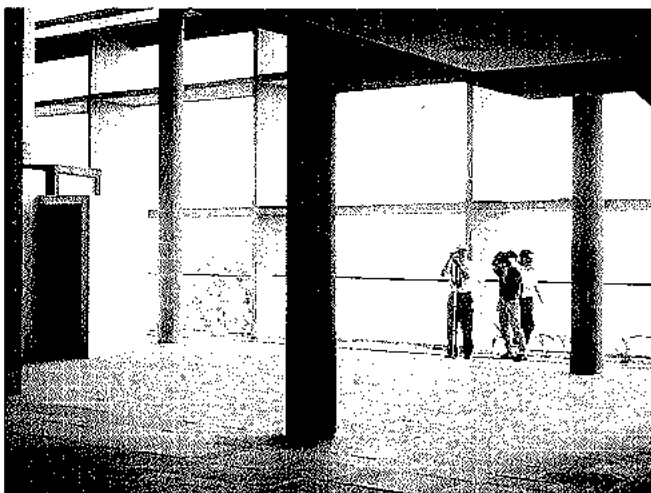
거기에 르·코르뷔제 특유의 필치로 그려진 태양의 궤도, 수많은 신화적 동물들, 상징들, 사상(事像)들의 고대와 현대가 융합된 알레고리는 그 설교의 자상한 주석이다.

문 앞에서의 검색.

카메라와 스케치 북을 뺏기듯 맡겨



인도경영대학



방직협회 2층 홀



인도경영대학

놓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 간다.

강렬한 태양광 밑에서 장엄한, 정확한 공간의 유희가 펼쳐진다. 그리고 교향곡의 마지막, 강렬한 관현악의 튜트로 연주되는 거대한 회의장에 이른다.

노출 콘크리트는 인도 기후에 맞지 않는다는 등, 자연광만으로는 홀 안의 조명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등, 아무리 고쳐도 새는 비를 막을 수 없다는 등... 안내하던 관리의 불평이 이명속에 웅웅거리고 말을 잃는다.

다시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오른다. 높은 파라펫으로 둘러쳐진 옥상은 회의장 상부를 이루는 거대한 원통, 상원 회의장 상부인 변형된 피라미드, 갯·위커로 사용되는 철탑과 보릿지, 이 무대장치를 향한 계단식 좌석과 함께 혼합되고 융화되어 '빛나는 도시'는 그의 이상향을 추상하고 있다. 르·포르뵈제 교(敎)의 신전, 초월자의 설교, 사제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섬뜩한 긴장감, 귀를 멀게하는 초음파의 아우성, 이 모든 말들로도 설명키 어려운 충격 그 자체이다.

이제 르·포르뵈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다 좋다.

다시 델리로 돌아 오는 기차 속에서 현지 가이드로 동행했던 한 여성 인도

건축가, 그녀의 자부심에 가득찬 미소가 밤속에 각인처럼 새겨져 못내 지울 수 없다. 위대한 건축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건축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자꾸 나를 초라한 줄부로 만든다.

소위 인도 관광의 황금의 삼각지(The Golden Triangle), 델리(Dehli), 아그라(Agra). 그리고 자이푸르(Jaipur)를 돌며 한 사흘을 소비(?)한다.

뭇타르 마할 왕비의 무덤 타지 마할(The Mausoleum Taj Mahal), 아그라 성(The Agra Fort), 르·포르뵈제가 청송했던 쉼크리 성(Fatehpur Sikri), 바람의 궁전(Hawa Mahal), 자이징 2세의 궁전(City Palace), 그가 세운 천문대 잔타르·만타르(Jantar Mantar)등을 돌아 본다.

그리고 나 혼자만, 사정에 의하여 가 보지 못한 갠지스 강가의 바르나시(Varanasi), 그 감동을 전해 들기만 하는 그들의 삶과 죽음.

언젠가 다시 와서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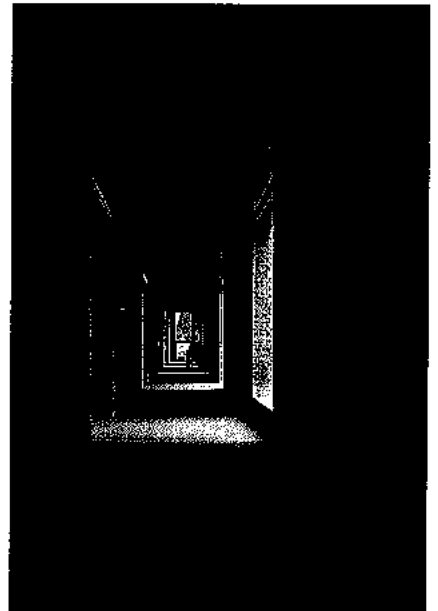
다시 델리를 떠나

아메다바드(Ahmedabad)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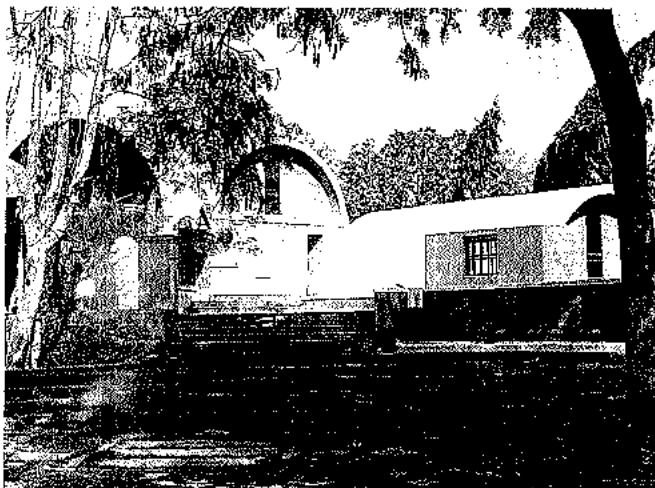
새벽 2시에 일어나 비행기를 탄다. 단정한 공항 건물, 작지만 범상한 도시가 아님을 감지한다.

아메다바드, 마하트마 간디의 근거지, 또 하나의 르·포르뵈제의 도시 그리고 그의 제자 B.도쉬(Balkrishna Doshi)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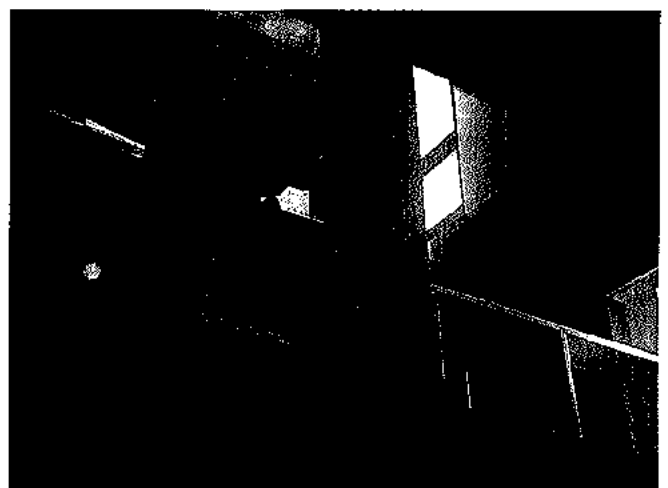
아메다바드는 인도 방직공업의 중심지이다. 방직업자들이 중심이 된 이 도시의 지배. 엘리트들은 진보적 성향이 돋보이고 그들이 인도의 자유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이 성향은 문화적 조예와 함께 그대로



인도경영대학



B.도쉬의 사무실



B.도쉬의 사무실 내부

도시와 건축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이 시대 새 정신의 기수 르·포르뷔제를 초빙하여 이 도시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이 건축들이 씨앗이 되어 이 도시를 격(格)있게 만들 수 있으리라 희망한다. 그 희망은 이제 현실로 나타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도시와 건물들은 일견 오염된 우리의 눈으로 표면적으로는 피폐해 있는듯 하지만 실은

범상하지 않다.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집들은 건축의 기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강한 집들로서 난잡한 피상적 형태유희는 찾아보기 힘들다.

놀라운 건축 유산인 계단 우물(The Step Well)을 돌아 본 후 아침식사를 위해 사바르마티 강의 동편 뚝에 있는 한 호텔에 들어간다. 호텔의 뜰에서 강 건너 서측 뚝에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고고하게 서있는 방직협회 건물을 본다.

이 도시의 첫 씨앗이 된 방직협회 건물(Millowner's Association Building 또는 Textile Industry Club, 1954)은 하나의 작은 궁전이다.

인도의 풍토 위에 세워진 모더니즘 정신의 화신(化身)이라 능히 불릴 만하다.

여기서 르·포르뷔제 건축을 진솔하게 만난다. 찬디가르에 비하여 그 스케일이 작아서만은 아니다. 인도의 전통을, 그 풍토적 특성을 억지로 끌어다 합리화시킨 요사스런 수사도 없고 거짓과 방자함도 없다. 한 원숙한 천재 건축가가 일생을 두고 구축한 건축정신과 방법론이 정확하게 빚어져 있다.

르·포르뷔제의 건축 규범중 인도의 풍토에 적용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 원숙한 세련성으로 교과서와도 같이

실현되어 있다.

바로 그의 “건축의 산책로 (Promenade Architecture)”의 실체이다.

건축은 빛 아래 집합된 여러 입체의 교묘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조합이다.

물체의 관계와, 빛 아래에서의 물체와 인간의 관계 및 이 두가지가 이루어내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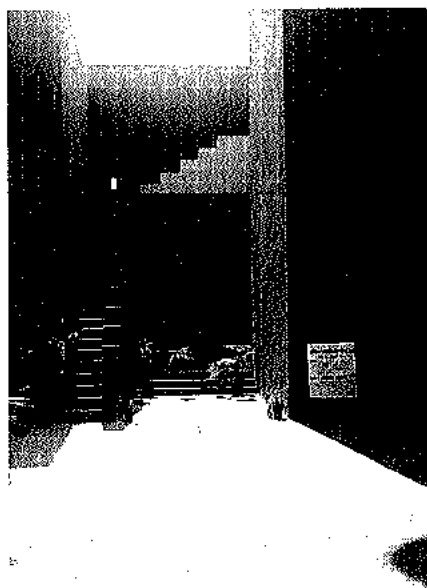
따라서 건축이란 물체의 관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 속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가 하는 규칙의 조합이다.

지금 이 건물은 거의 쓰이지 않고 폐가같이 폐허처럼 남아 있다. 노출된 콘크리트는 심하게 풍화를 입고, 모든 철물은 녹슬어 썩어가고 있고 방들은 먼지만 두텁게 쌓여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눈에 그것의 본질적 구체가 확연히 보이게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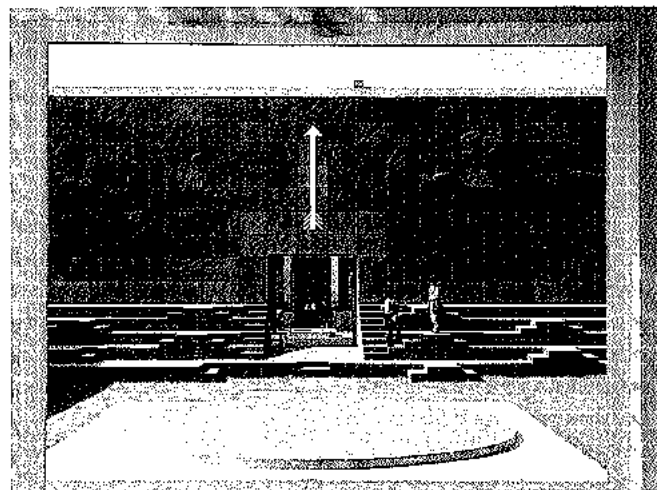
식은 땀을 말리는 섬뜩한 바람이 해집고 지나가는 홀에 서서 강을 내려다 본다. 오래 전 이 집이 살아 숨쉴 때, 협회원들이 파티를 벌이며 강가의 노동자들을 바라보던 곳.

강 또한 이제 완벽한 시궁창이고 강변 모래사장에는 아침 대변을 해결하고 있는 빈민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다.

B. 도쉬의 사무실을 방문한다.



자이푸르 박물관 내부



자이푸르 박물관 중정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찬디가르와 아메다바드에서 르·꼬르뷔제는 인도 현대 건축의 지표를 실체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이어 받은 인도 건축가들은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의 제자가 된다.

그곳은 그의 건축정신을 이어 받은 바스투·실과 환경연구재단(Vastu-Shilpa Foundation for studies and Research in Environment Design)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도쉬의 건축 또는 그를 통하여 르·꼬르뷔제, 루이스·칸의 건축을 배우려는 학생들로 붐빈다. 하얀 도자기를 정교하게 입힌 3개의 반원 볼트로 구성된 사무실 건물은 다양한 프로젝트로 활기에 넘쳐 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열심히 떠들어 대는 실장의 열변을 귀 밖으로 들으며 혼자 딸에 나와 앉아 이 지방 인도 건축가들의 숨씨일 아메다바드 거리의 건축들을 반추해 본다.

그들인들 그들의 엄청난 건축적 유산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와중에 과감히 서양건축가를 초빙하게 되는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때때로 그들 중에 일부는 피상적인 꼬르뷔제안이 되었을 것이고, 또 다른 건축가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것의 정신과 태도를

이어 받으려 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르·꼬르뷔제를 통해 건축의 본원을 정통성을 가지고 직접 체험을 통하여 올바르게 익힐 수 있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건축 수련이 그것을 극복하여 인도의 현대 건축을, 고유성을 획득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C. 프레이(Charles Correa)의 일련의 작품은 뚜렷한 그 궤적을 보여 주고 있다.

그가 젊었을 시절 지었던 간디 기념관(Gandhi Smarak Sangrahalaya in Ahmedabad)은 루이스·칸의 건축기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타라 공동주택(Tara Group Housing in Dehli, 1979)과 최근에 완성된 자이푸르 박물관(Museum of Arts & Crafts, Jaipur, 1991)에서는 그것을 뛰어 넘어 독자적 고유성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이제 방글라데시의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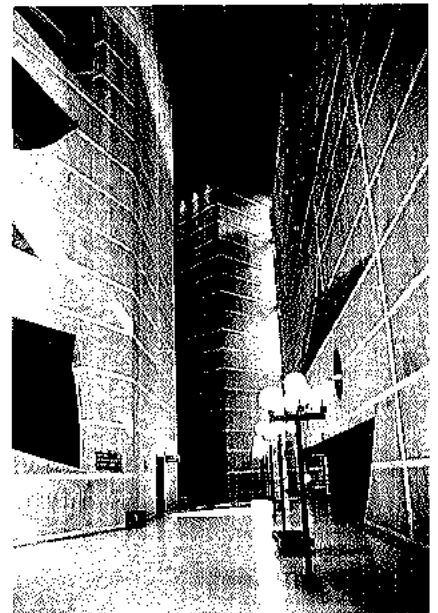
다카(Dhaka)로 향한다.

이번 기행의 마지막 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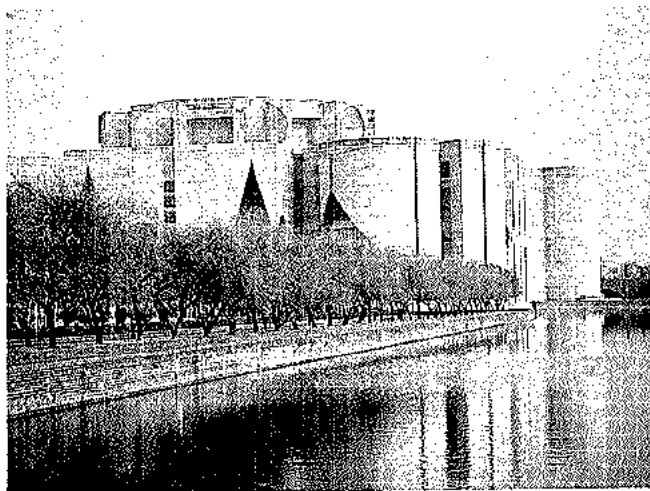
오랜 동안의 분쟁으로 인한 처참한 빈곤으로 생활은 인도보다 더욱 열악하며, 국민의 80%가 문맹이라는 나라—인도—에서 충분히 단련된 듯 이제 이러한 열악함에는 꽤나 익숙해져 있다.

다카는 지금 선거 열풍에 휘말려 있다. 벽이란 벽은 모조리 조잡한 선거 벽보로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거리를 매우고 있는 확성기 밑의 군중들, 80%가 문맹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입후보자들은 기호대신 물고기, 우산, 비행기, 자전거 등의 그림으로 자기의 소속 정당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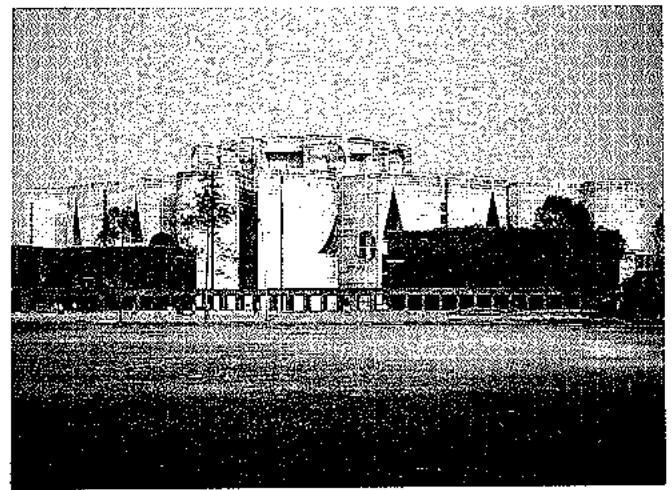
지금 막 전쟁을 치른 듯한 황폐한 도시 풍경, 이러한 열악한 나라에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루이스·칸의 걸작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국회의사당(Sher-E-Banglanagar National Assembly Hall, 1962-74), 금세기 최후의 거장 루이스·칸의 거의 마지막 작품.

나는 10여년 전 캘리포니아 라·호야에 있는 루이스·칸의 대표작 쏘크 생물학 연구소(The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research, La Jolla, California)의 감동을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온

몸에 소름을 돋게 하던 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한, 하늘을 향해 열린 그 침묵의 마당에서의 진율이 아직도 내 피부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의 건축의 또 다른 해석을 지금 보러 가는 것이다.

아침 일찌기 출발한 덕택에 오전은 오랜만에(?) 쭉 쉬기로 한다. 바쁘게 몰아대던 일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루이스·칸을 위해 단단히 마음을 준비함일까.

루이스·칸의 건축 그리고 인간 루이스·칸.

그의 주변을 항상 장식하고 있는 수도승의 독백과도 같은 건축 메시지들, 구도자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듯한 선언적 설교, 어떤 때 미스터리 같은 그의 시적 언어와 제스처어들 그리고 시작(beginning), 제0권(Volume Zero), 공간의 중심화, 물체와 공간, 침묵과 빛, 침묵과 말, 보편성, 건축에의 외지 등이 무수한 형이상학적 언어로 해석되는,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정확히 집어낼 수 없는 그의 실체는 이 곳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 조악하고 분주한 거리를 한참이나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거대한 인공 호수위에 차가운 갯빛으로 빛나는

의사당이 물에서 솟은 듯 당당히 떠 있다.

하얀 대리석을 격자로 상감시킨 거친 콘크리트 피부는 한 낮의 태양 아래서 중후함과 현란함을 동시에 보여 준다.

의사당 회의장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 엄격한 기하학으로 둘러싼 방들은 장엄한 태양광으로 생명을 불어 넣은 겹겹의 길들로 엮여져 총체적 하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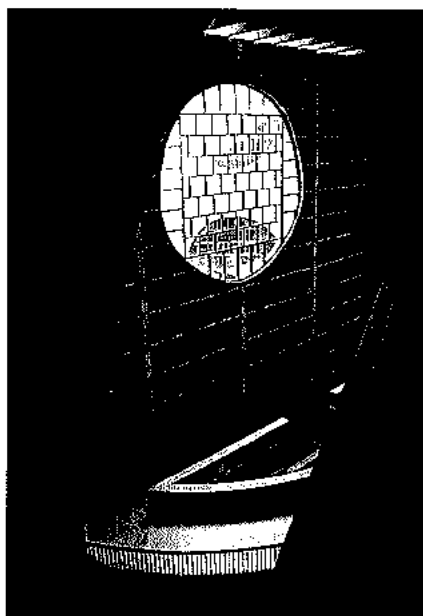
미스터리 같은 시적 언어, 형이상학적 술어로 표현되곤 하는 그의 건축의 신비함은 실제 앞에서 그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된다.

“너희는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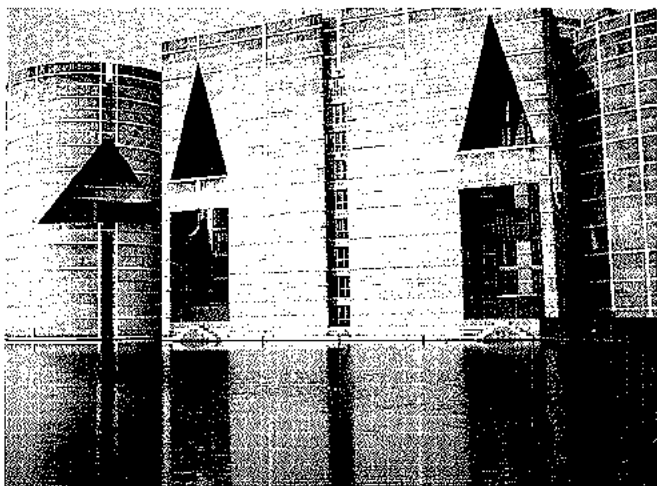
그것은 하나의 성채(Citadel)이며 루이스·칸이 이룩한 원형의 도시이다.

고전적 비례감의 아름다움을 지닌 서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미적 감성을 끌어 놓는 본성을 추구하는 한 구도자의 설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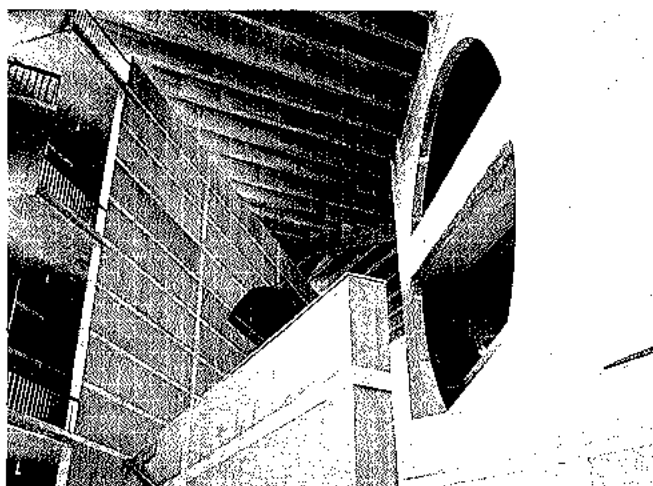
구태여 그는 르·꼬르뷔제가 하듯 역사, 전통, 풍토 등을 끌어다 합리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성을 초월하여 영원한 본성, 보편성을 탐구한 궤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루이스·칸은 그 지역의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나는 4년전 우연히 읽게 된 한 위대한
보고서를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안에 삽입된 놀라운
사진 한 장, 철근 콘크리트 성형 시험에
쓰여졌던 방글라데시 현지의 도구와
장비들, 철근과 거푸집을 늘어 놓고
현지에 동원된 일꾼들과 이 시험을
주도한 랭포드씨(Mr. Fred Langford)가
둘러서서 찍은 증명사진이다.

이 보고서는 1966년 6월 랭포드가
루이스·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방글라데시 현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가능성, 잠재력을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루이스·칸은
그의 건축을 만든다.

어떤 이는 루이스·칸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같은 열악한 기술조건에서
일하지 않고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만났다면 더욱 훌륭한 건축을
남겼으리라고 얘기들 한다. 그러나
건축기술이 좋은 건축을 만드는 조건이
되지 않음을 여기서 안다.

르·꼬르뷔제의 건축의 산책로는
시작에서 끝까지 명확한 그리고 강렬한
직선적 하나의 드라마를 이루고 있는
반면 루이스·칸의 그것은 시작에서 끝을
다양한 수 많은 방법으로 조합시키고
개개인에 따라 지극히 선택적이다.

그래서 그의 건축은 항상 신비에 싸인 듯
모호하고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무한한
듯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그가 끊임없이
추구한 영원한 본성, 보편성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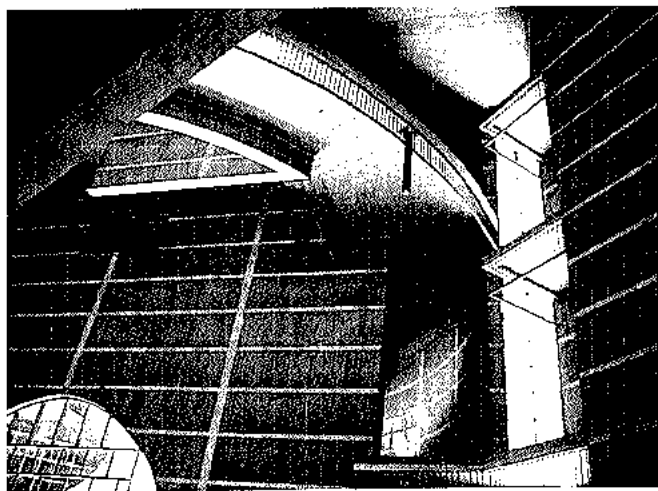
이제 짧지만 긴 여행을 끝내면서

영동하게 김환기의 예술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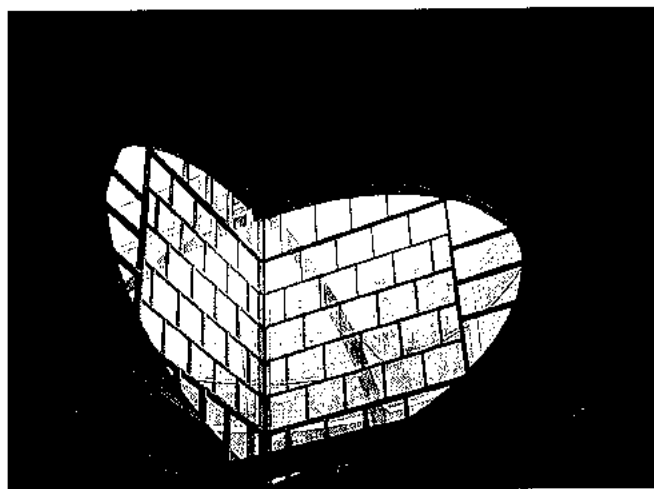
종신형 죄수가 돼서 일하는 것 같고,
춘향, 일편단심, 폐노로사가 베를 짜듯이
추구했던 그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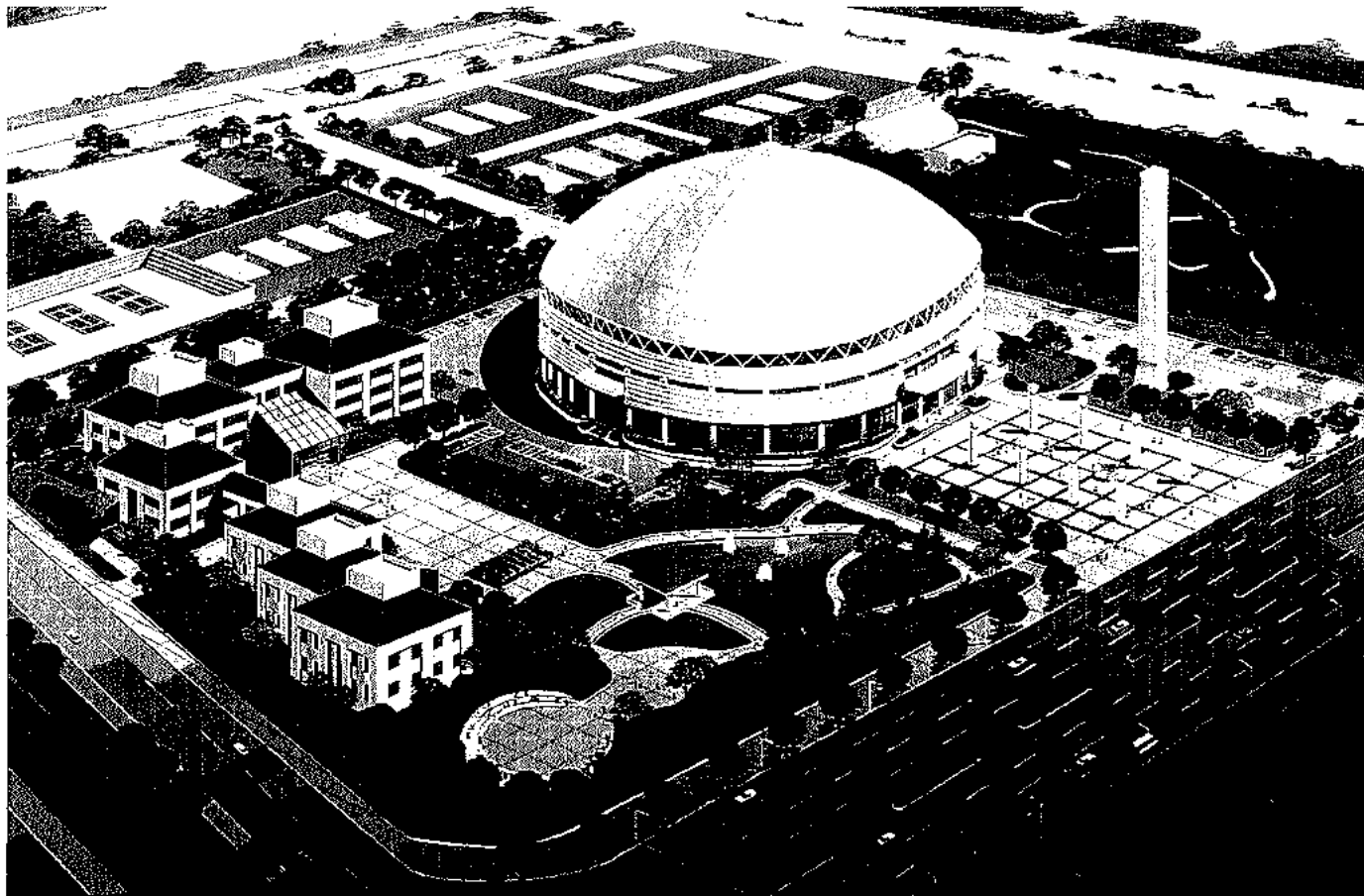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다카의 국회의사당

김제 청소년 수련관 및 체육관

김제시에서는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서 진보된 시민의식과 진취적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장을 마련키 위한 청소년 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 현상공모를 실시, 송영섭건축(대표: 송영섭)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3월16일 발표했다.

총 9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이번 공모에서 우수작으로는 담중합건축(김동술)안이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 그리고 응모작중 건정건축안을 게재한다.



조감도

당선작

송영섭 건축
(대표: 송영섭)

대지위치 / 전북 김제시 검산동 산 62-1번지 일대

지역 / 근린공원지역

대지면적 / 23,100㎡

건축면적 / 6,233.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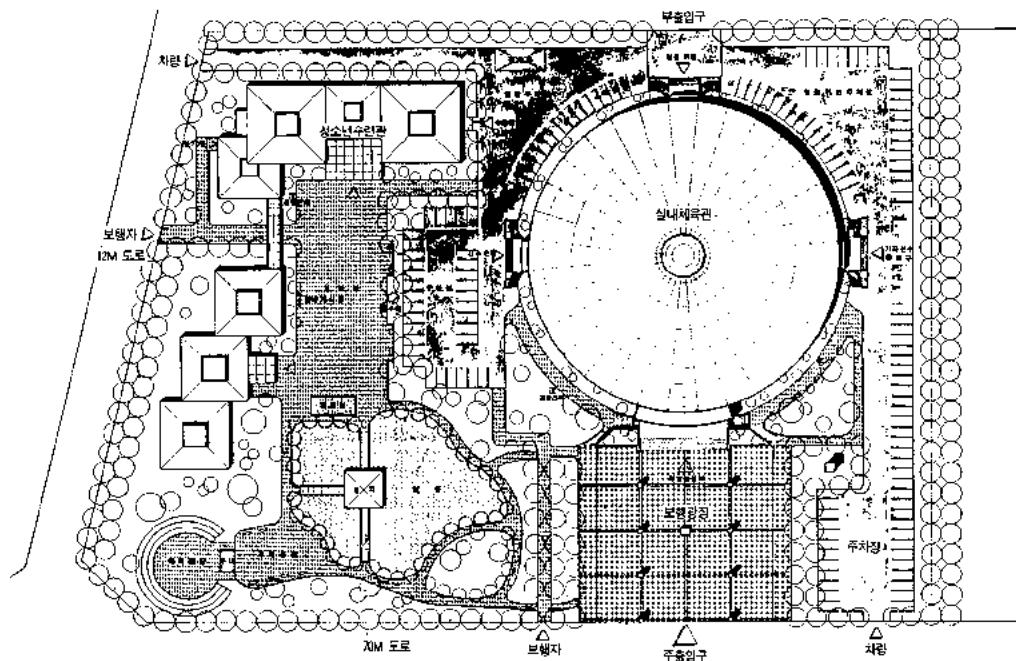
연면적 / 12,049.715㎡

건폐율 / 2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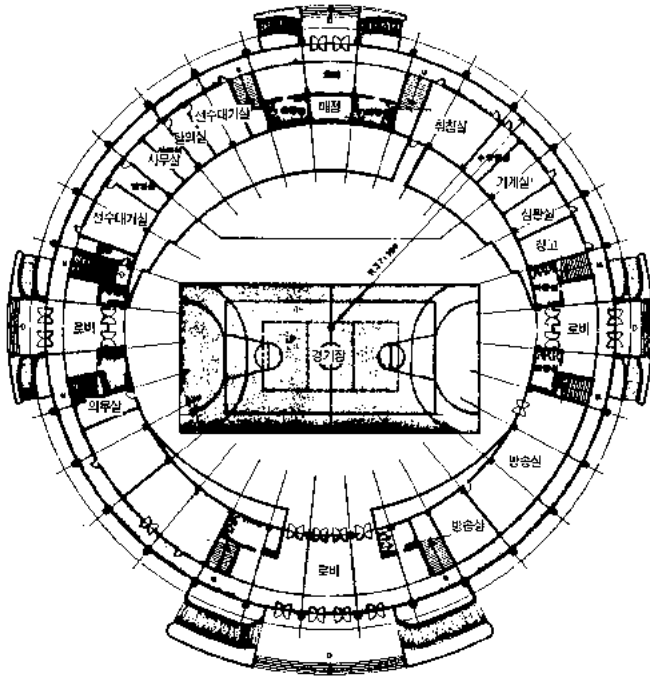
용적률 / 45.6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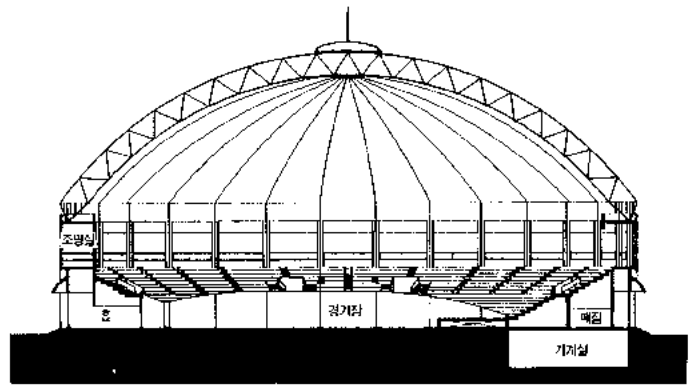
계획설계 / 김석환(타·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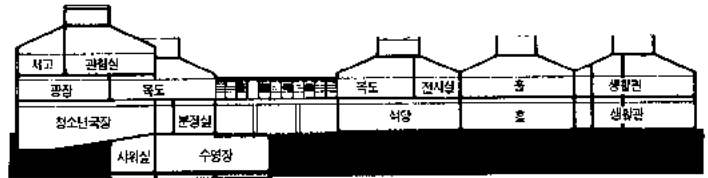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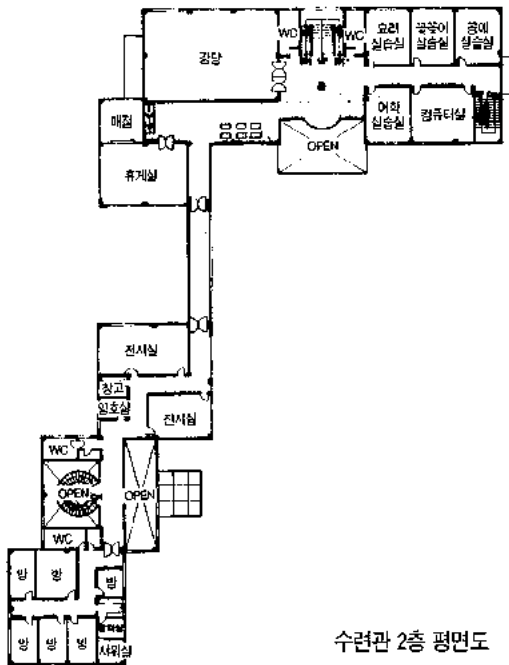
체육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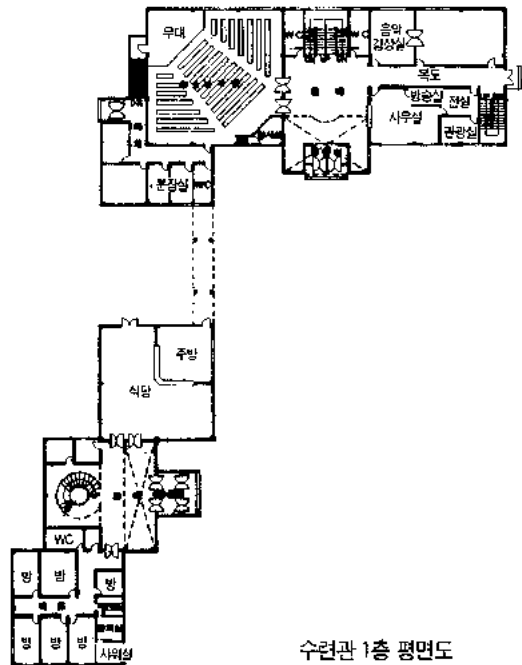
체육관 종단면도



수련관 횡단면도



수련관 2층 평면도



수련관 1층 평면도

검산공원에 오후의 태양이 작열할 때 청년의 기상은 하늘로 뻗는다.

드넓은 공원에 펼쳐진 푸른 숲의 물결, 솔잎사이로 불어오는 맑은 바람이 청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20여만평의 공원과 경계구분도 없이 멀리 시야가 펼쳐지는 평원. 여기에 젊음의 어우러짐

을 그려보면서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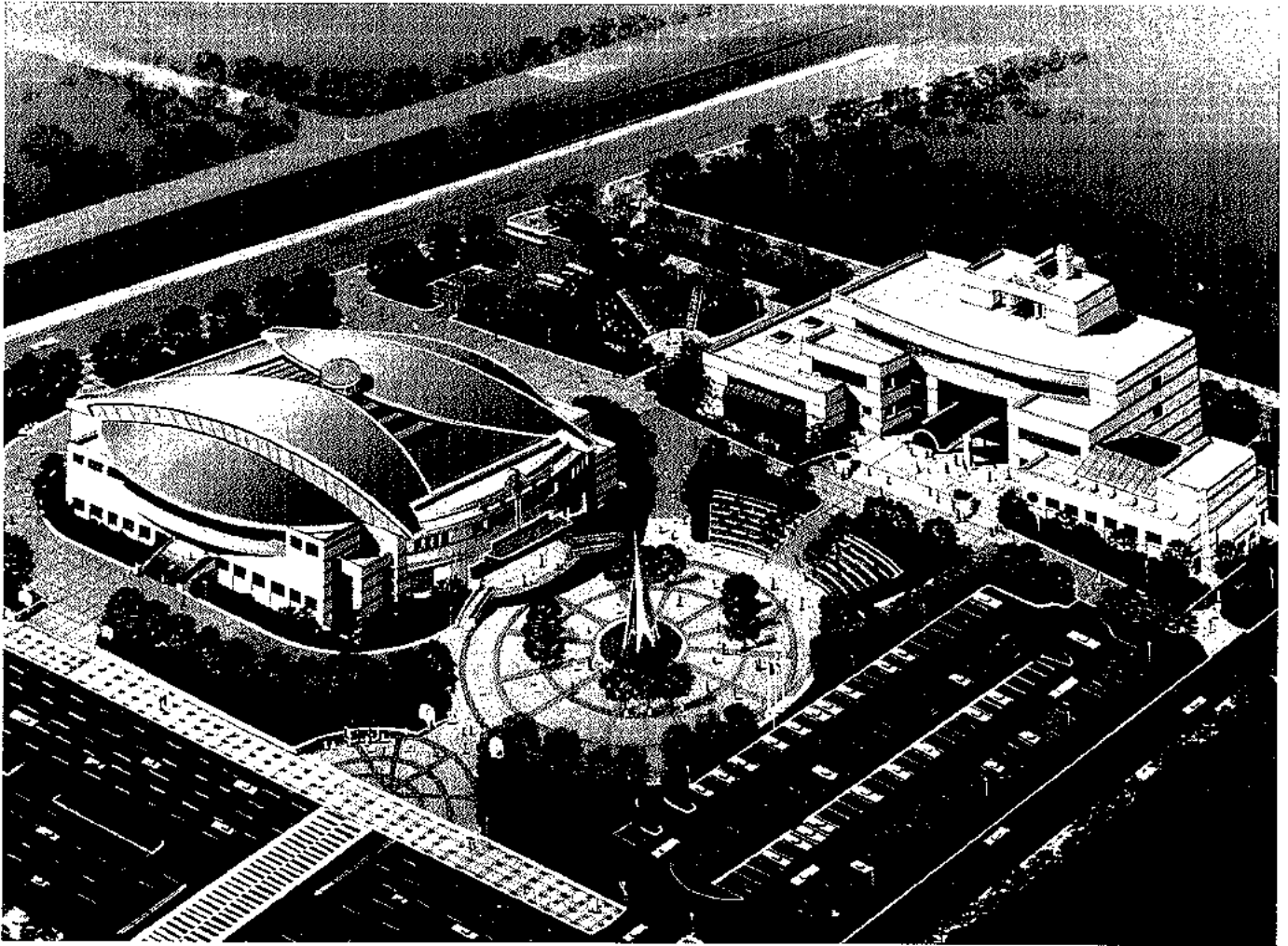
건축가는 항상 백지앞에 선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야 한다. 건축가는 가끔 확고한 자를 갖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무망한 일임을 깨닫는다. 건축이 지녀야 할 균형을 개량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건축사의 직업은 느껴가는 것이다.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것은 느끼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 작업은 지루하다. 그래서 건축사들은 직관에 의해 곧바로 본질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검산공원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조형물이 될 두개의 건물의 이미지를 구상하였다. 공원안의

중심적 매스가 될 체육관과 이와 대비되면서 공원에 자연스럽게 적응될 변화있는 형상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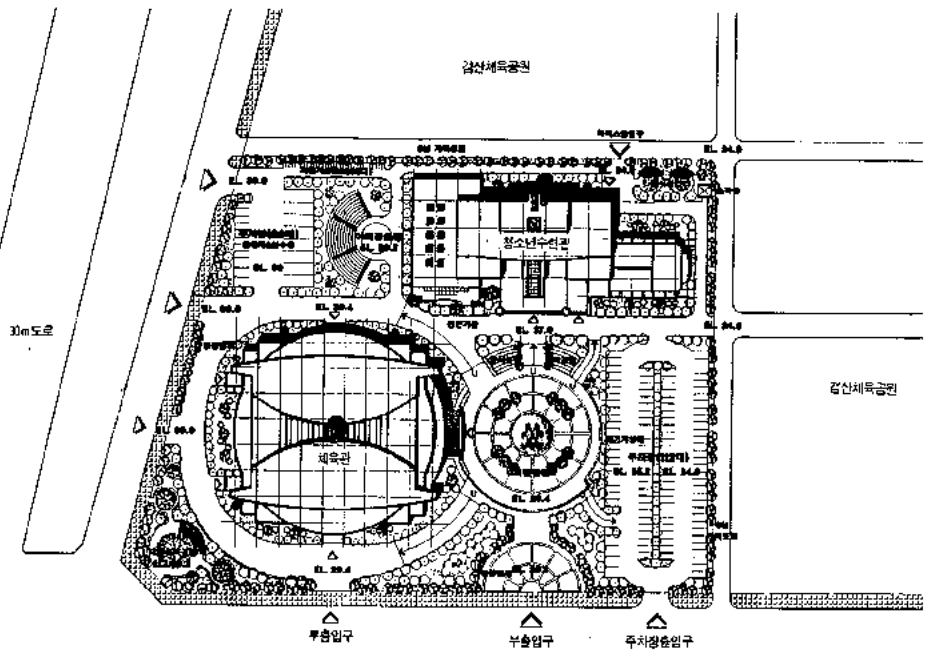
청소년수련관의 주변은 다양하고 여유있는 외부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그들의 젊음과 낭만이 넘쳐나고 자유롭게 발산되며 기쁜 마음을 갖게 하고 싶다. (글: 김석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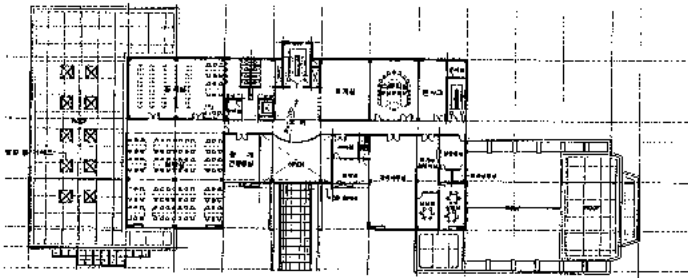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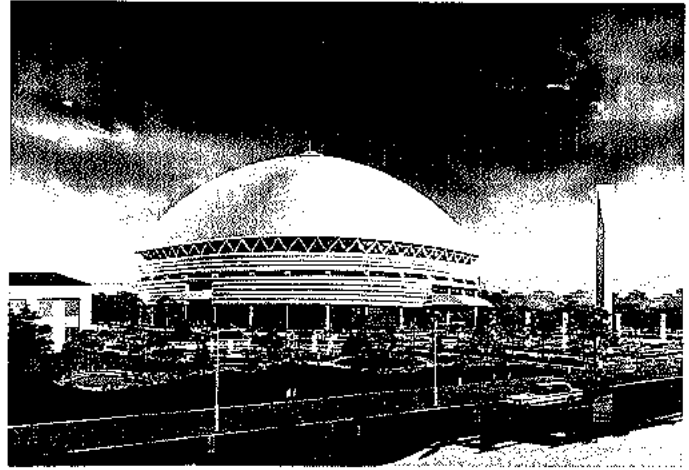
대지위치 / 김제시 김산동 김산공
원 일대
지역지구 / 도시계획 시설결정지
역, 공원
용도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체육시
설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 23,132㎡
건축면적 / 5,540㎡
연면적 / 11,843.62㎡
건폐율 / 23.93%
용적률 / 37.93%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철
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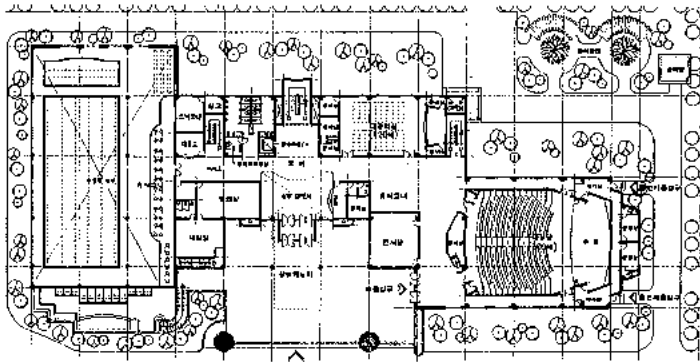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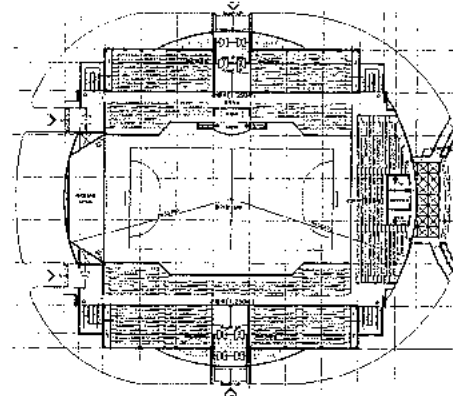
수련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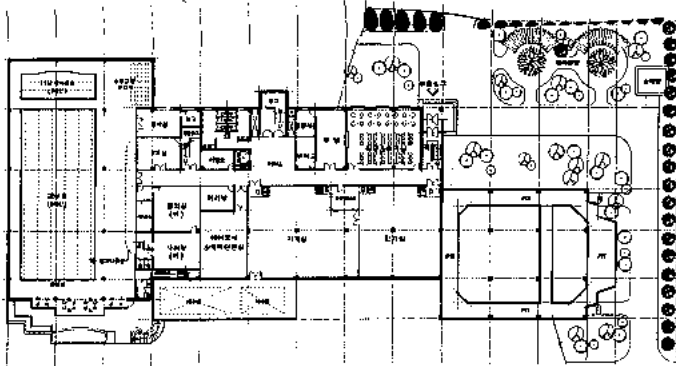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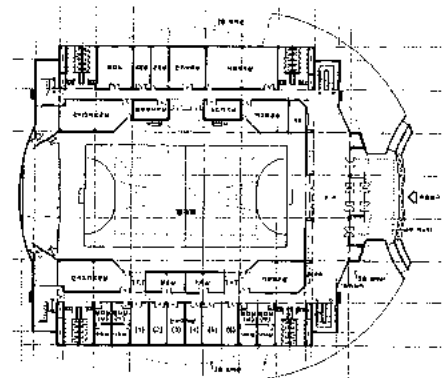
수련관 1층 평면도



체육관 2층 평면도



수련관 지하 1층 평면도



체육관 1층 평면도

찬란하고 유구한 선진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의 후예들이 삶을 영위하는 곳 김제! 금만경 너른 들에 옛 김제인의 기백과 미래의 힘찬 발돋음을 느낀다.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서 진보된 시민의식과 진취적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장을 만들어 본다.

- 주변 활동과의 조화
- 지형에 순응한 배치, 김산공원과 연계된 축의 설정
- 도시의 상징성 및 역사성부여
- 자연사물(조개껍질)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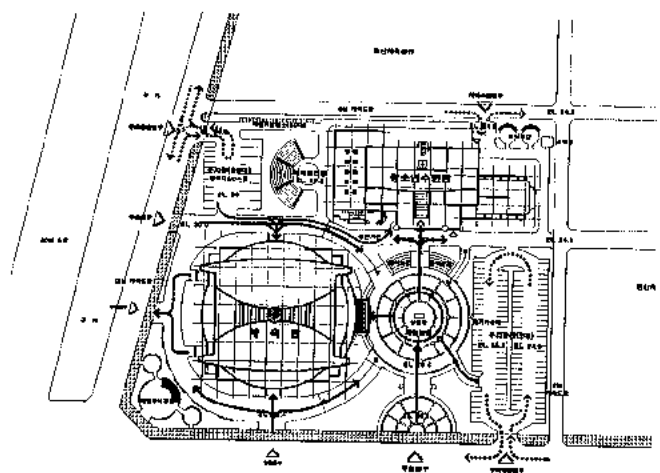
금만경 지세와 조화되는 유려한 형태구성과 면과 선의 조화를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시민의식 함양

- 지역 주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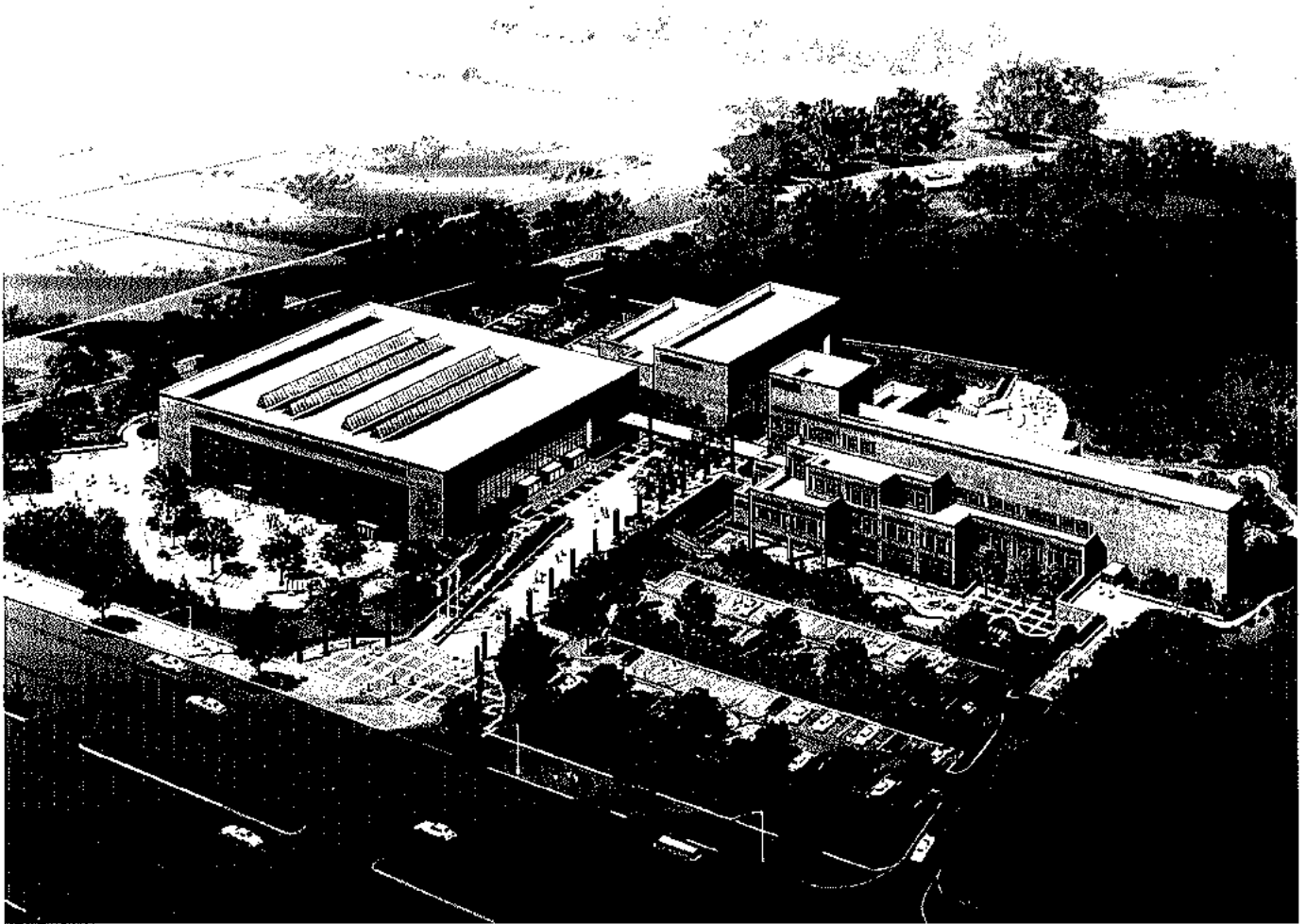
내, 외부 공간의 적정성 확보, 단순하면서 융통성있는 평면구성, 대칭적 개념을 탈피한 배치 및 외관구성

- 경제성, 능률성, 안정성의 고려

단순한 구조계획과 관리체계의 집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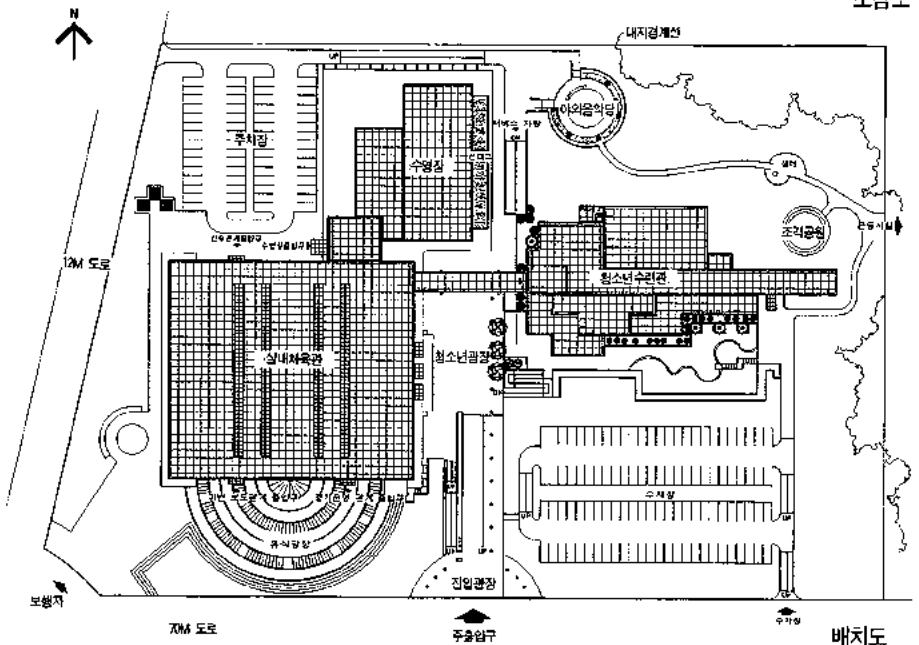
동선체계도



조감도



대지위치 / 김제시 김산동 산 62-1번지 일대(김산 공원 내)
 대지면적 / 28,874㎡
 건축면적 / 청소년수련관(2,665.54㎡), 실내체육관(3,205.26㎡)
 연면적 / 청소년수련관(5,495.7㎡), 실내체육관(6,494.9㎡)
 건폐율 / 12.02%
 용적률 / 41.52%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페이스 후레임



■ 계획의 원칙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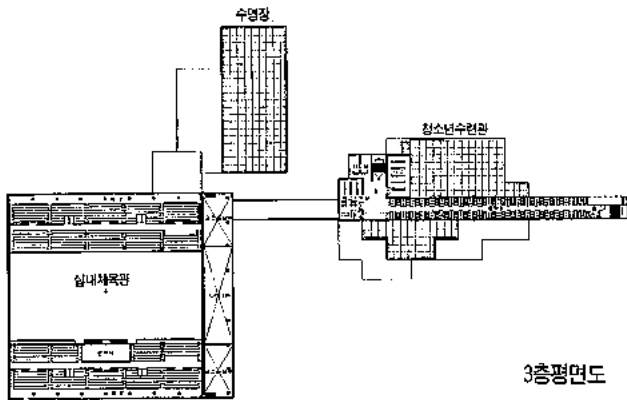
- 상징성 : 김제시의 Land Mark 김제시를 대표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 융통성 : 옥외공간의 적극적 활용
 - 옥외전시, 조각공원, 잔디, 물의공간, 광장, 쉼터가든, 샘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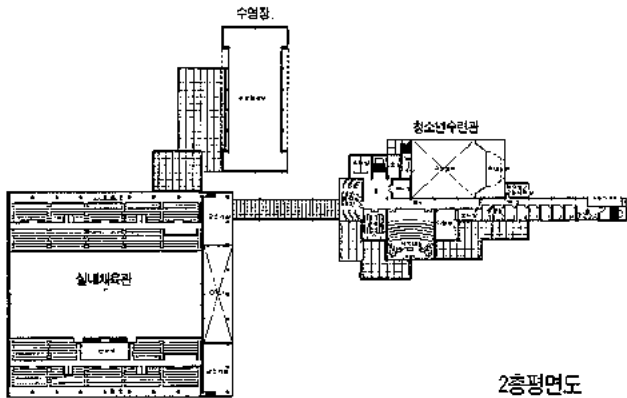
- 참여유도 : 적극적 진입유도, 재미있는 볼거리
- 시민의 모임, 휴식의 장 제공
- 문화행위의 배경 : 단순한 선과 벽돌색, 투명한 유리... 자연색이면서도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행위의 배경

■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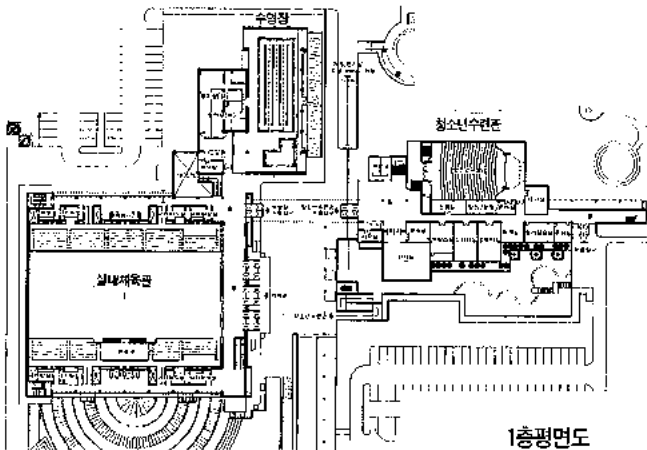
- 축의 적용
 - 자연축과 일치하는 도로축을 적용하여 정면 강조와 계획시설의 인지도를 높임
- 진입
 - 보행자는 김산공원광장과 남측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고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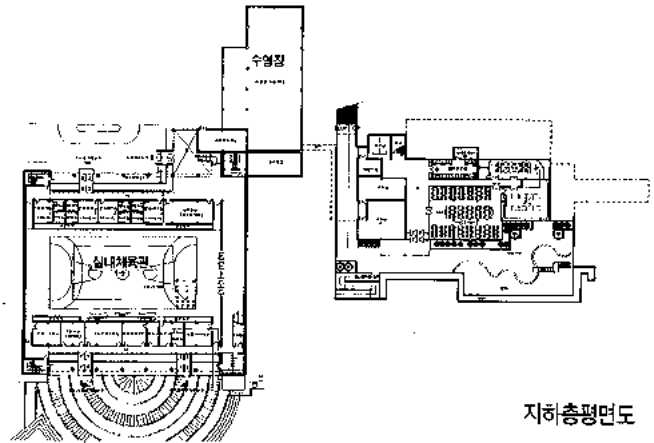
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지하층평면도

시설이용자·관리자용 차량은 북서측과 남측 차량 진입구를 이용하며, 기계, 전기실, 식당, 서어비스 차량은 서북측 지하경사로 통한 지하Level에 진입토록함

· 건물 및 시설배치

—청소년 수련관

1차 시행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은 기 수평완료된 검산공원계획부지이용과 조화되도록 옥외체육시설과 인접하는 계획부지동측에 배치함

—실내 체육관

공사시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서측에 배치하여 외곽도로에 인접토록 하며, 또한 남측의 육상경기장과 북측의 수영장을 배치하

여 체육시설 Zone을 이루며 시민이용 빈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수영장

평소 시민의 승용차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영장은 진입과 주차가 용이하고 외곽에 접하여 시설관리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Zone과 일치하는 계획부지 서북측에 체육관과 인접하여 배치함. 또한 이용률이 최대시에는 체육관의 선수 탈의실, 샤워실, 위생업실을 공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 체계

—분리된 Mass에서의 독립된 동선과 연결가능한 공간체제로 접근에 따른 시야의 확보와 변

화를 가능케 함

—공간의 순차적 구성 및 위계성부여

—메메공간을 통한 공간의 개방성과 배합성 유도

—건물 외부구성에 있어 직선반원 등을 이용하여 변화속에 통일감을 주어 체계적이고 친근감있는 공간구성

· 외부공간

—다양한 문화형태(설치 작품, 행위 예술, 모빌 등...)를 수용하기 위해서 물, 잔디, 포장 및 구조물 등에 의해 구성

—경관이 우수하고 조용한 동측후면에 옥외 조각장 설치

—휴식 공간 : 에어로빅, 다양한 문화행위의 장을 제공, 시각확보를 위한 완만한 경사로 계

획

■ 설계경기는 동등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채택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본다.

건설부가 올 2월부터 시행키로 한 설계경기운영지침에도 심사위원의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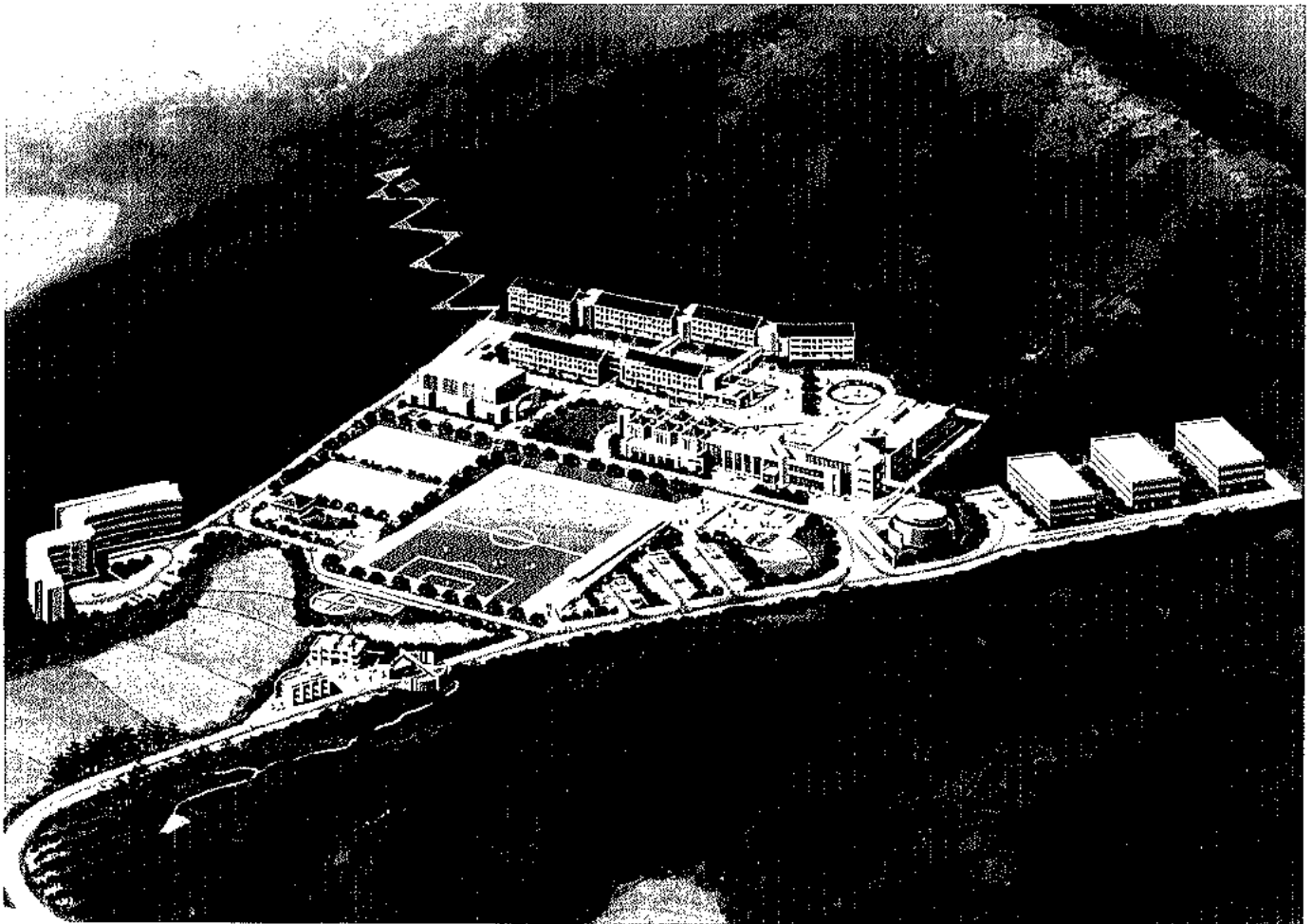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시행기관의 편의에 따른 형식적 파행운영으로 설계경기에 참여했던 설계자들에게 설계경기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낳게 한다. 또한 지면을 통해 당선작과 심사평을 공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해 본다.

건설경영연수원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급변하는 건설업의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진취적이고 현대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연수원을 계획,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총 20개 사무소에 서 출품한 결과 범한건축(최광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3

월16일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토문컨설턴트(엔)인이, 가작으로는 유창건축안 과 신환경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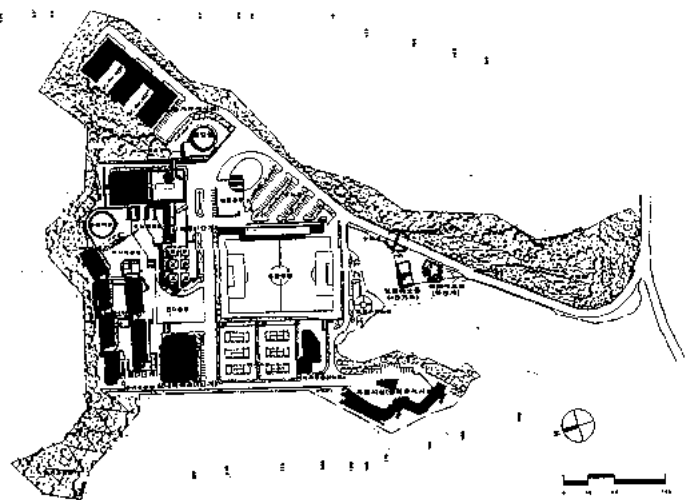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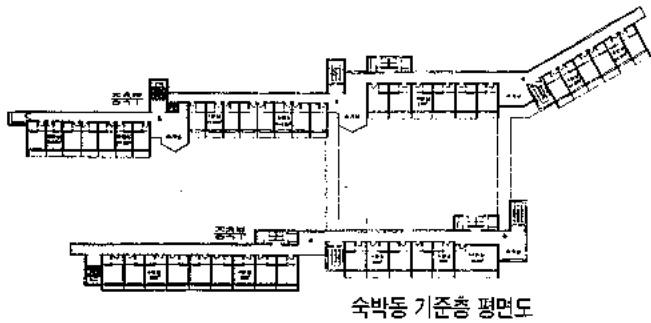
당선작

(주)범한종합건축
(대표 최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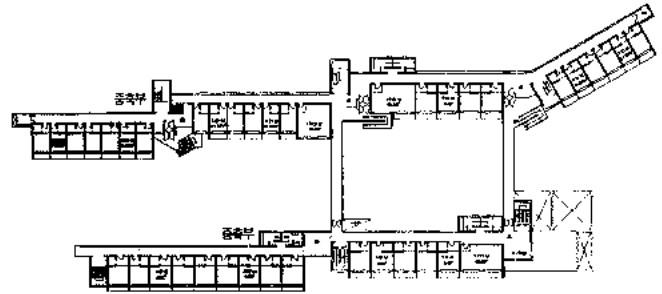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
면 수통리 산 64-1 일원
지역지구 / 개발촉진 지구
대지면적 / 111,045㎡, 사업의 부
지포함 217,250㎡
건축면적 / 1단계사업 2,091평-총
사업 3,267평
연면적 / 1단계사업 3,593평-총사
업 5,601평
건폐율 / 1단계사업 6.2%-총사업
9.72%
용적률 / 1단계사업 10.7%-총사업
16.0%
건물규모 / 숙박동-지하2층, 지상3
층
강의동-지하1층, 지상3
층
숙소동-지상2층
체육관-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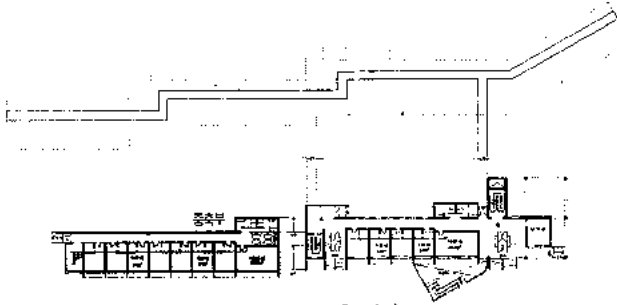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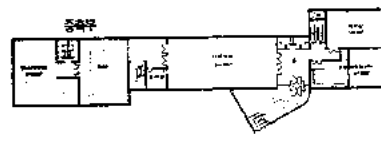
숙박동 기준층 평면도



숙박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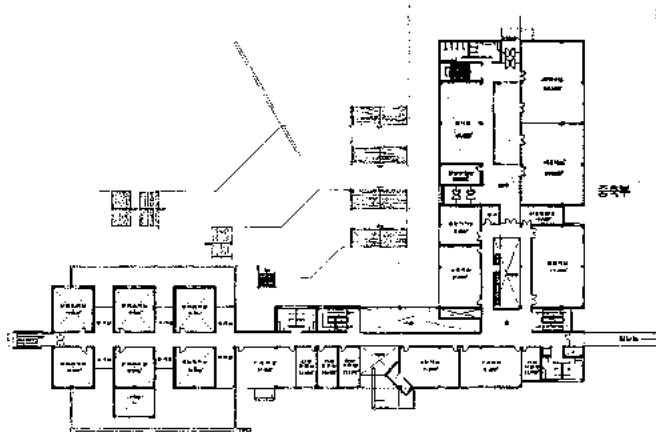
숙박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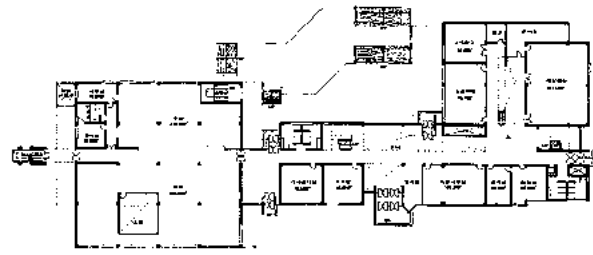
숙박동 지하 1층 평면도



숙박동 지하 2층 평면도



강의동 2층 평면도



강의동 1층 평면도

■ 계획의 개념 및 방향

급변하는 건설업의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진취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본관동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 지형 조건에 부합되는 숙박동의 분리, 그리고 두 건물 사이의 전이공간(화합의 장)을 구성, 합리적인 위치에 장애의 유치 시설 공간을 확보하였고, 자연적인 느낌의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외관과 저렴함 공사비(자연적인 재료(벽돌)와 인공적인 재료(Steel, Glass)의 조화), 지형축에 따른 순응된 배치(효율적인 공사와 최소의 사

토처리), 방향을 고려한 배치(남향배치로 인한 에너지 절감)를 꾀했다.

경사지를 이용한 점진적인 공간의 전이 과정의 전개로 능률적인 기술 습득과 연수생들의 인성 회복을 위해 곳곳에 광장을 형성(화합, 도약, 준비, 휴식, 연못의 광장), 획일화되어 있는 연수원의 형태를 지양(다양한 형태들의 전체적 통합 개념)하고 대지를 정리하여 생긴 많은 공간들과 형태를 달리하는 하늘에 떠있는 듯한 지붕들의 조합을 이루었다.

■ 평면계획

• 평면 계획 개념

공간의 기능성과 쾌적성을 위한 평면계획으로 각 동의 독립성과 통합성 유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 스패 사용(8.4m×8.4m)과 주 건물군에 전이 공간을 도입하여 활력적, 정서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 교육 사무 시설

평면 계획의 기본 개념은 동선 분석을 토대로 복합된 기능의 유기적인 연결과 자연 지형의 최대한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고, 진입 공간의 Zone과 시설 Zone, 자연과 숙박동으로 연결된 휴게 Zone을 지형에 자연스러운 전이 공간으로 연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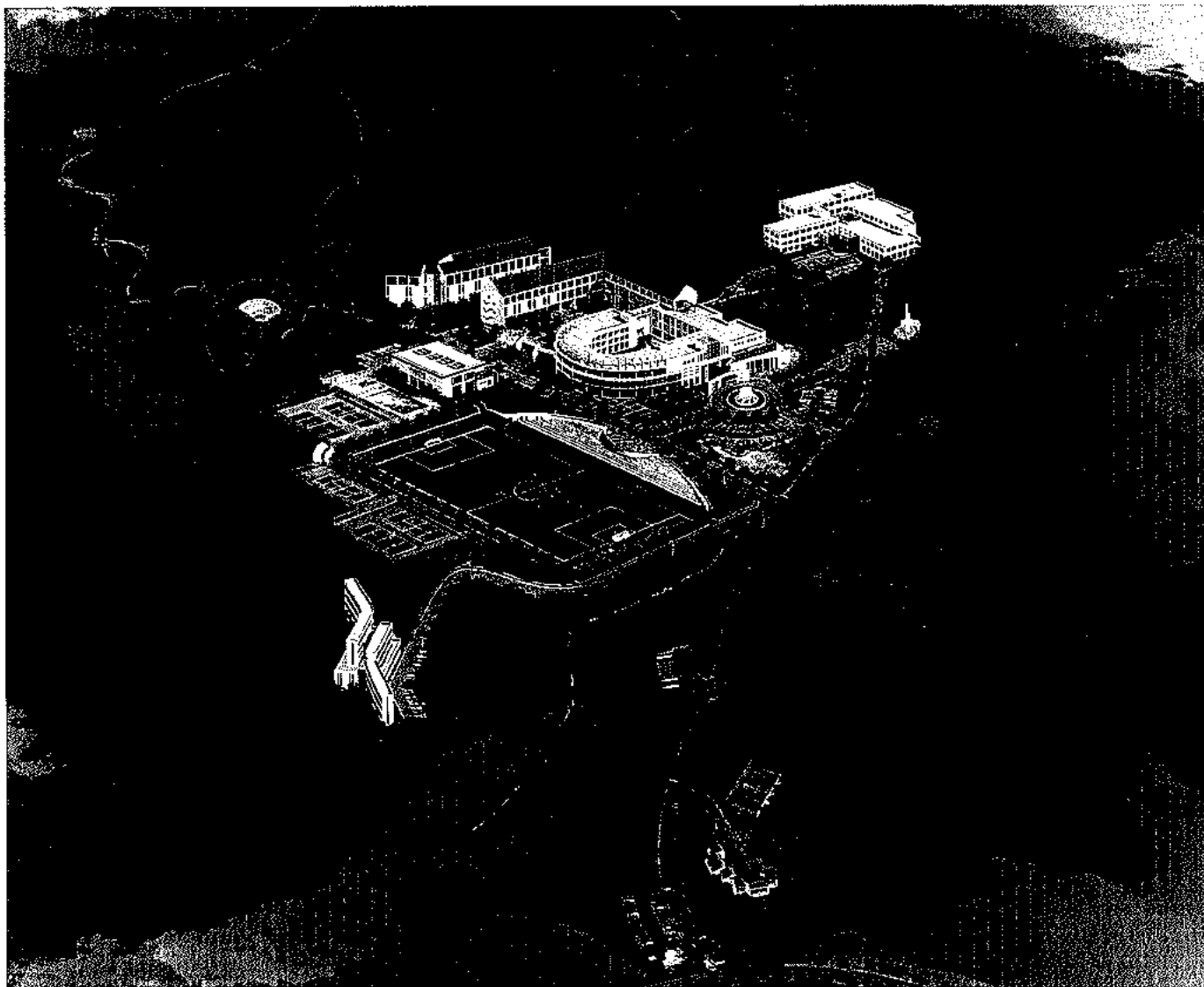
켰다.

•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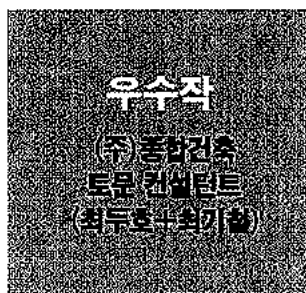
숙박시설은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대지의 상부에 위치시키며 지형에 따라 배치하여 미래의 증축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교육, 사무시설과는 중간에 전이공간을 두어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숙박동의 중앙부분에 중정을 두어 각 동을 브릿지로써 연결하였다.

• 체육시설

지역 사회의 개방성을 고려하고 교육동과 숙박동의 시선 차단을 위해서 진입 부분에 위치시켰다.



조감도



위치 / 충북 중원군 노은면 수동리
산 64-1외

지역·지구 / 개발촉진지역(시설
용지지구) 33,590평
산림보전지역 32,
127평

대지면적 / 33,590평

건축면적 / 2,256평

연면적 / 5,37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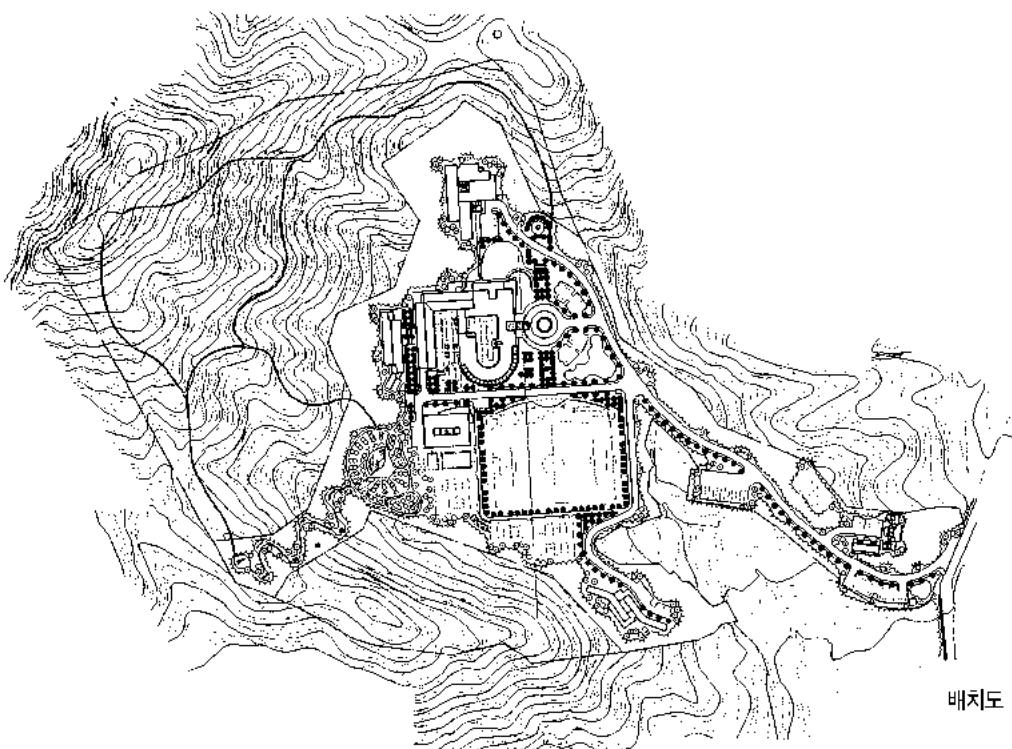
건폐율 / 6.72%

용적률 / 1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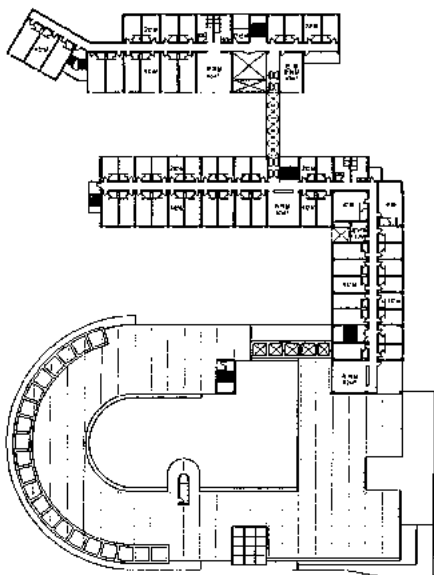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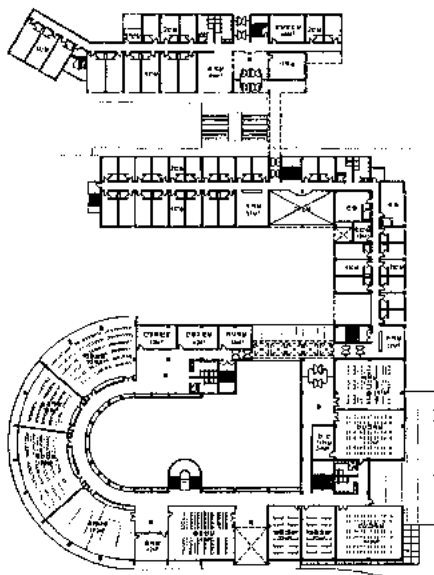
설계담당 / 문익섭, 박희연, 송호병
이수열, 김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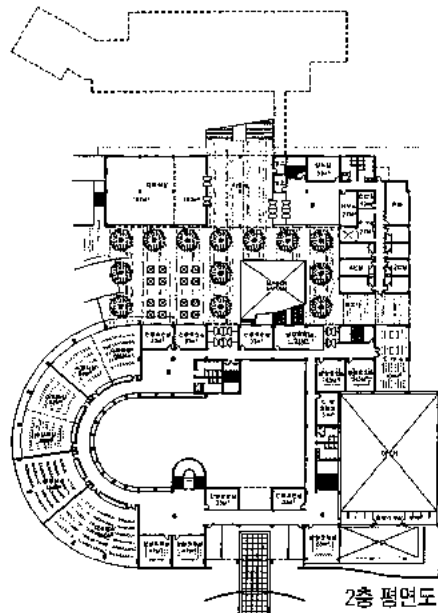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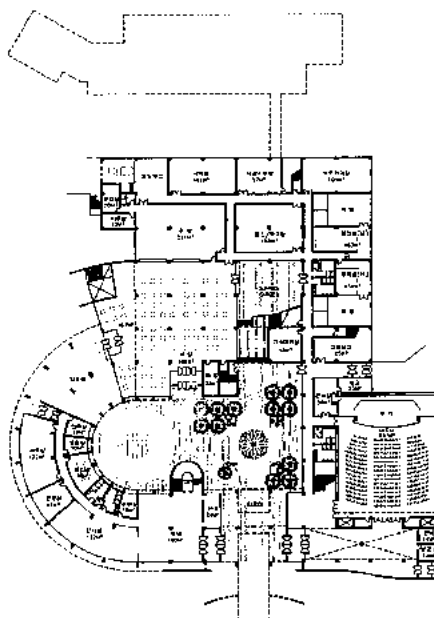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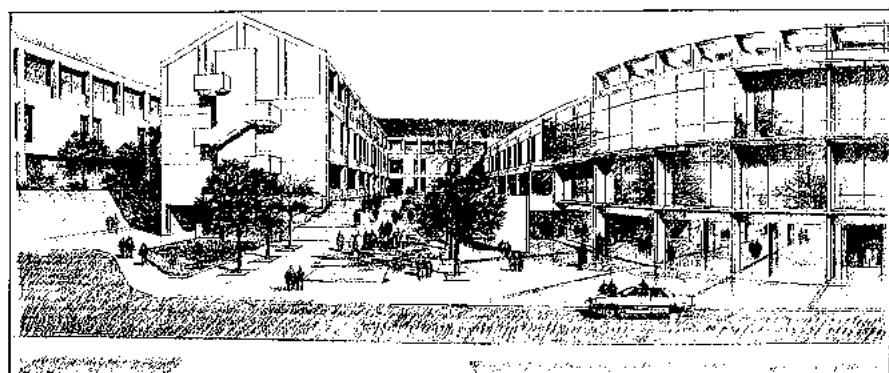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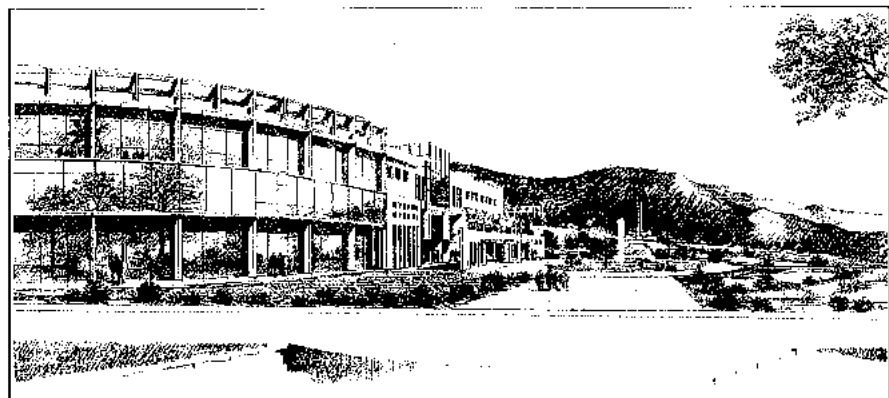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부분투시도(숙소동 진입부)



부분투시도(주진입부)

연수시설의 건물유형과 형태

연수기능과 숙박기능을 동일한 건축물에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할 것인가? 단일 건물로 하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가 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호텔과 비슷한 이미지를 주어 연수원의 특성을 살리는데 부적합할 것 같아 이를 피하였다. 어차피 완전한 비탈면 지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단식의 건물배치가 필연적이고, 이를 내부동선과 연계하여 배치하면 건물의 내외부를 다양

하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체적으로 지형에 의한 제약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의한 강한 축을 설정하여 구조적으로 형태를 조성하기 보다는 이용자 동선에 의한 축을 설정하여 자연스런 지형대응형으로 배치하였다.

건축물의 전면(facade)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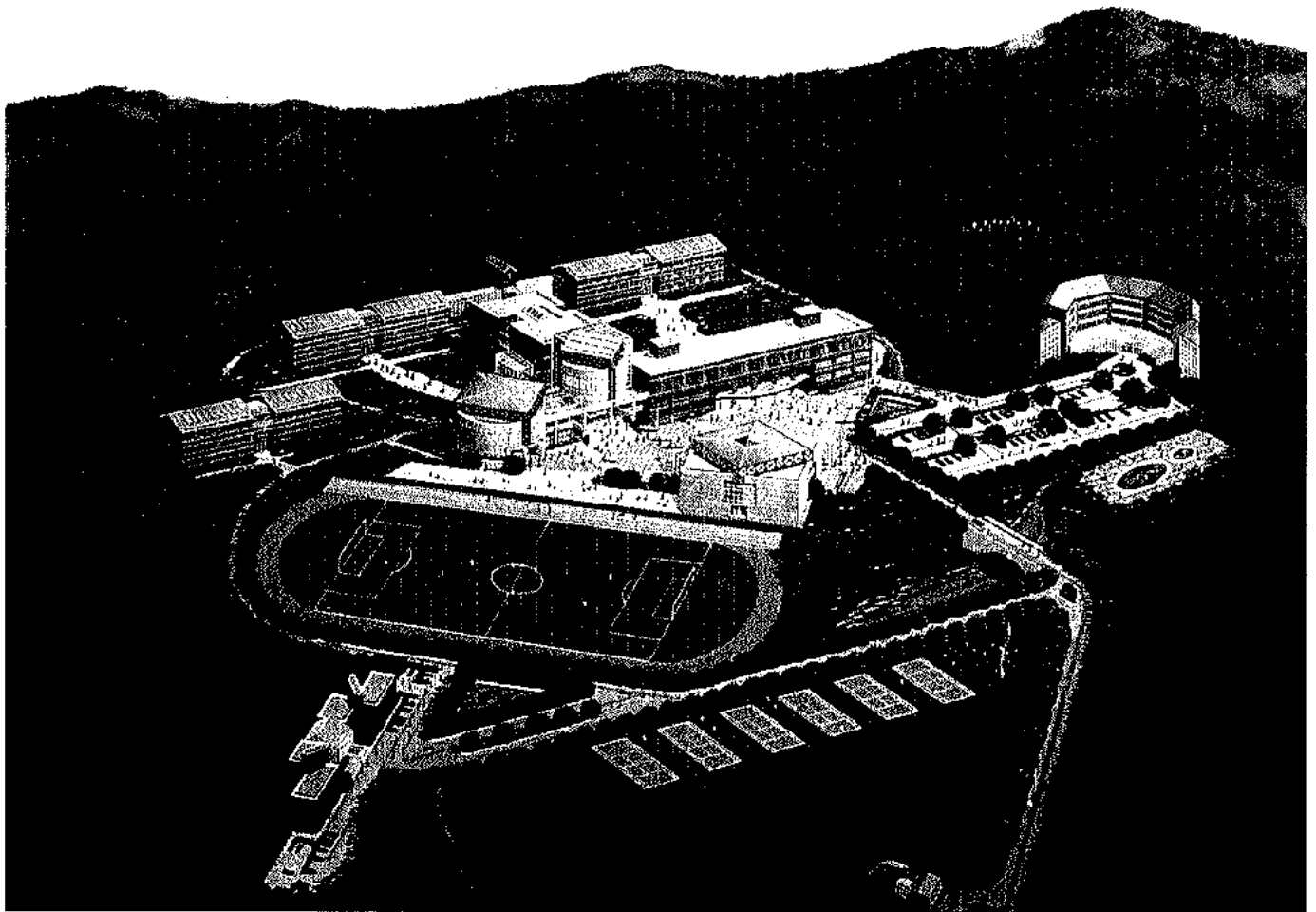
먼저 주접근도로에서 뒷산을

배경으로 멀리 바라보이는 경관을 감안하였고, 다음에는 진입한 동선상에서 마주치는 모습에 중점을 두어 건축물의 주입면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은 두 방향의 전면성을 갖도록 배치하였고, 입면도 그에 맞게 계획하였다. 직각형태의 중복에서 느낄 수 있는 단조로움을 없애고자 모서리부분은 원형의 형태로 변화를 꾀하였다.

운동장 배치

이번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

결하고자 한 것은 운동장의 배치에 대한 결정이었다. 대상지의 지형조건을 보면 절성토량을 감안할 때 운동장의 위치는 서측산록의 아래로 거의 결정적이었다. 다만 운동장의 長軸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결정이었다. 지형 조건과 운동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운동장의 축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시설의 배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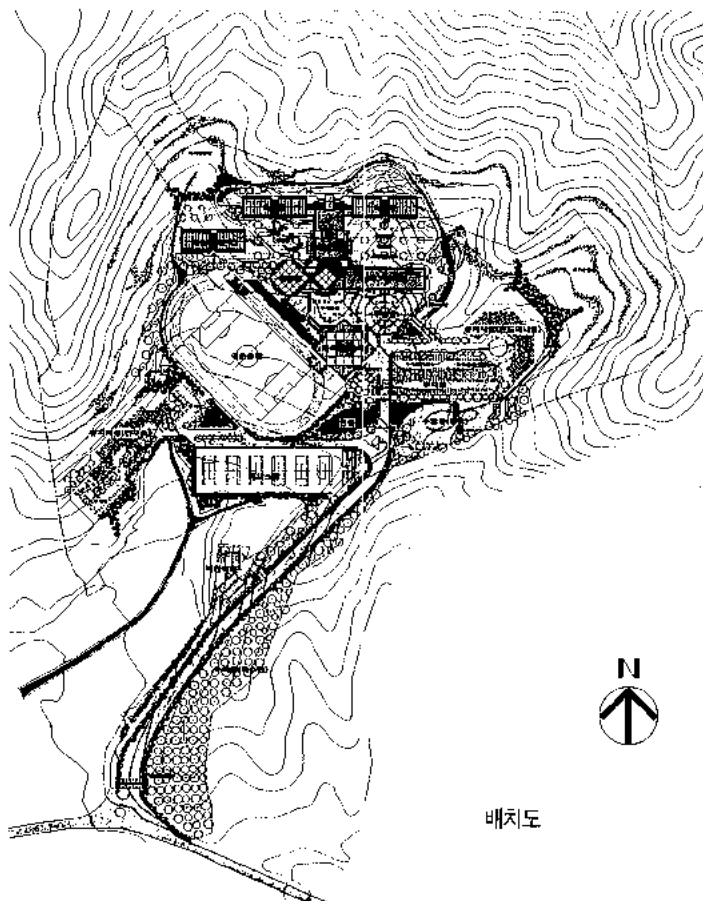


조감도

가작

(주)유창종합건축
(안병모+김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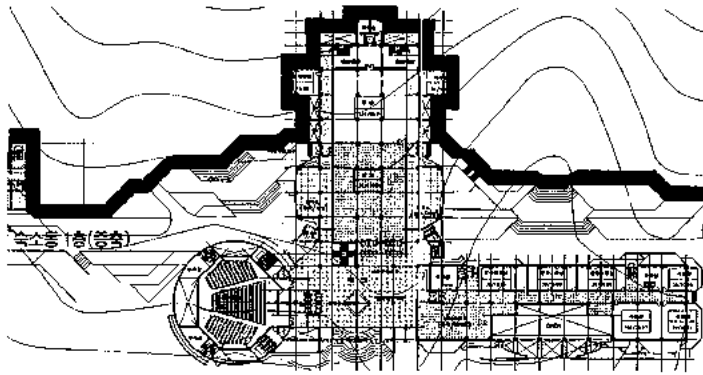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북 충원군 노은면 수
룡리 산 64-1
지역·지구 / 준 도시지역
대지면적 / 111,044.63㎡
건축면적 / 1단계 : 2,827.27㎡
총사업 : 5,511.80㎡
연면적 / 1단계 : 11,849.66㎡
총사업 : 18,812.05㎡
건폐율 / 1단계 : 2.55%, 총사업 :
4.96%
용적률 / 1단계 : 9.97%, 총사업 :
16.07%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담당 / 박창래, 김진남,
구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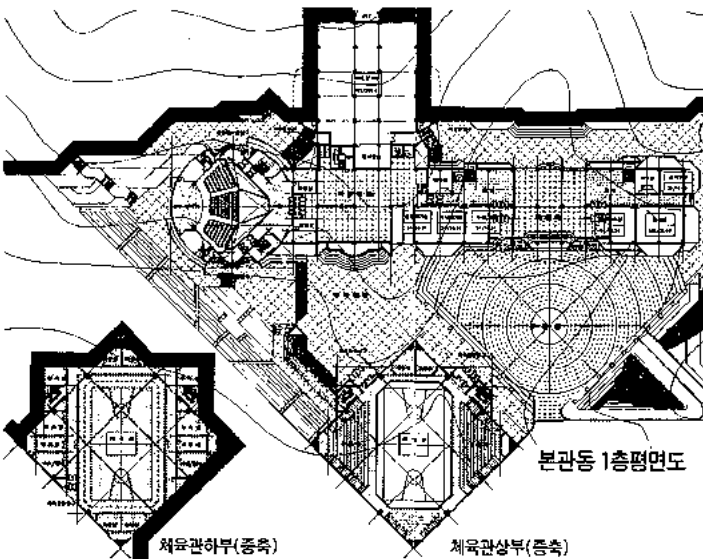
배치도

건설 경영 연수원의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요구조건의 모호한 한계는 시설별 기능에 따른 개별적 융통성 확보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각 시설 별로 요구되는 조건들과 부지의 지형적 조건 사이의 갈등은 공사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과 자연지형의 최대한 활용을 통한 순응성을 찾는 선에서 그 답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지내에 있는 기존의 못과 수로를 이용하여 연못을 계획하고, 그 위로 교량을 설치하여 진입도로와 주광장을 연결하면서 절·성토 공사부분을 최소화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건물주변과 구릉 경사면이 만나는 접점을 수로로 활용하여 기존의 물흐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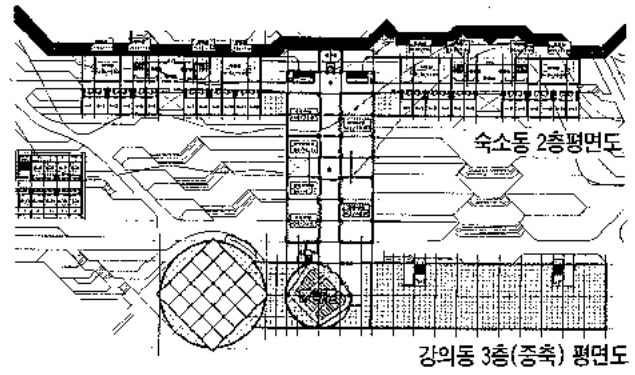
관리동 2층/식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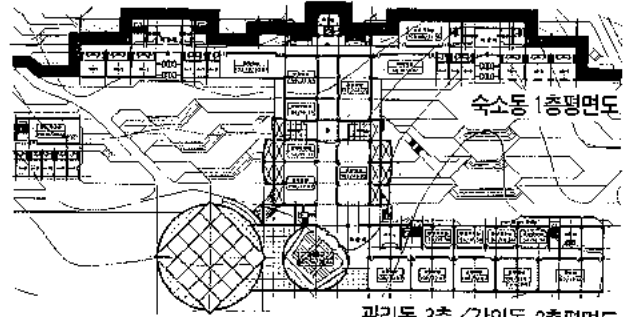
본관동 1층평면도

체육관하부(중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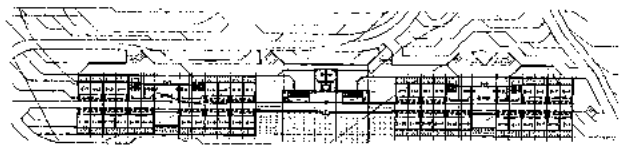
체육관상부(중축)



강의동 3층(중축) 평면도



관리동 3층/강의동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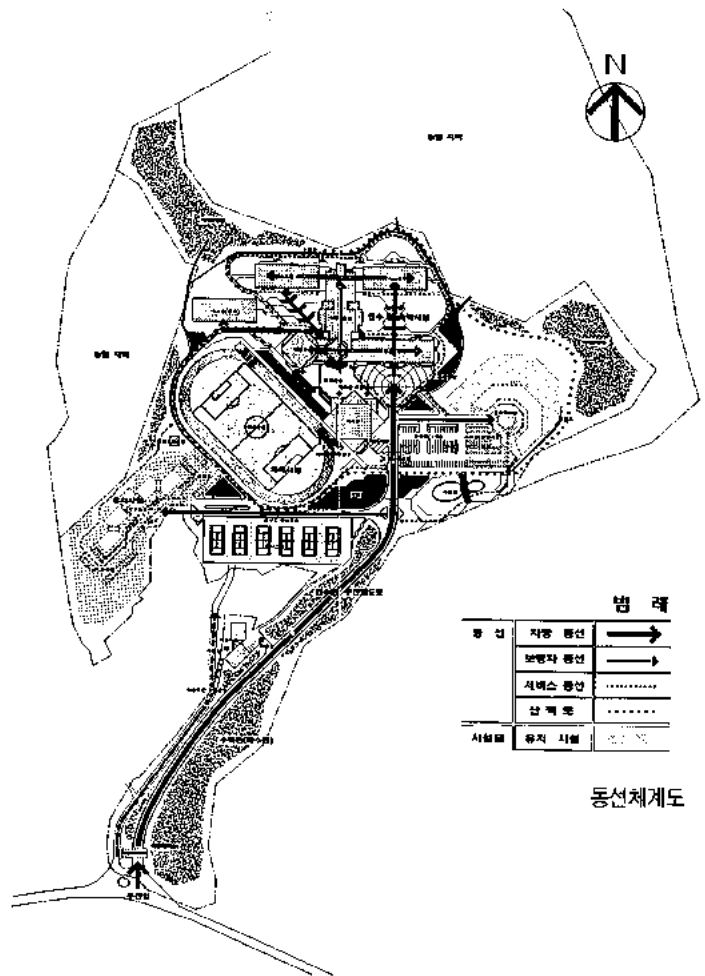
숙소동 3층평면도

자연스럽게 연못으로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옹벽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자연환경보호 및 순응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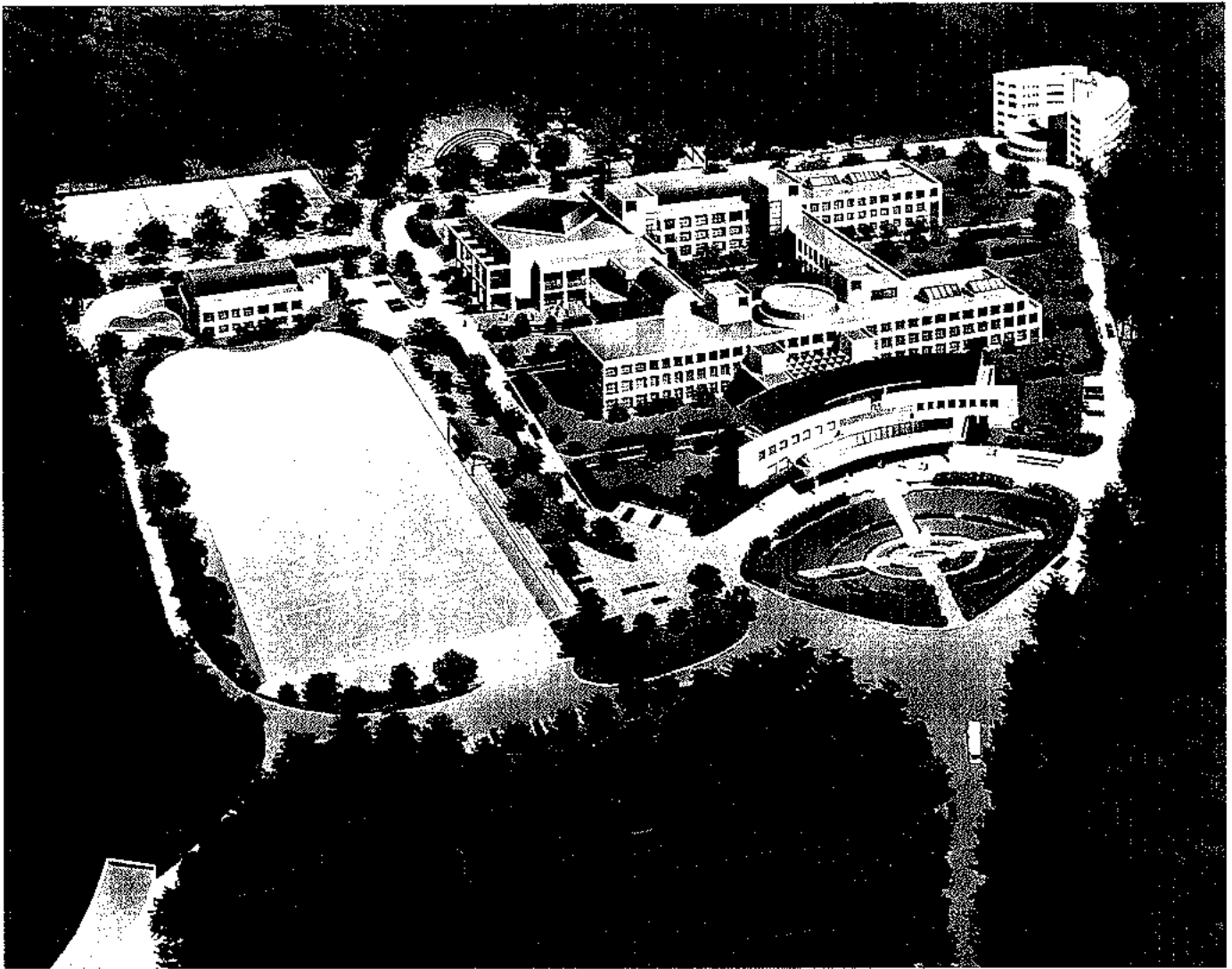
한편, 각 시설별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숙박과 강의/연수 그리고 체육시설간의 독립적인 고유영역 확보와 동시에 유기적인 공간연결을 통하여 기능성과 편의성을 창출하고자 Pilotis 및 Bridge 개념을 계획에 도입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열 손실이 비교적 큰 공용부분은 아트리움 계획으로 겨울철 온실 효과에 의한 난방 및 여름철 통풍에 의한 냉방효과를 꾀하였고, 시설의 융통성과 확장성을 위하여 숙소동 Unit의 Module화를 통하여 장래 요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지의 경사면 활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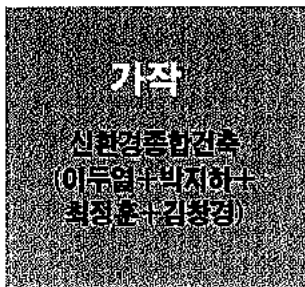
동시에 시설별 기능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운동장과 스탠드는 절·성토부분의 최소범위가 가능한 완만한 경사지를 선정 배치하였으며, 체육관 역시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강의/연수동과 운동장사이의 경사지를 활용 배치하였고, 숙소동은 부지의 후면의 비교적 경사가 급한 위치에 남향 배치함으로써 일조확보와 동시에 조망성을 확보함으로써 쾌적성과 보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형조건에 따른 건물 Mass의 자연스런 중첩성과 더불어 용도별 Mass의 변화감과 인지성을 연출함과 동시에 형태와 재료의 통일성 부여로 각 시설들간의 조화와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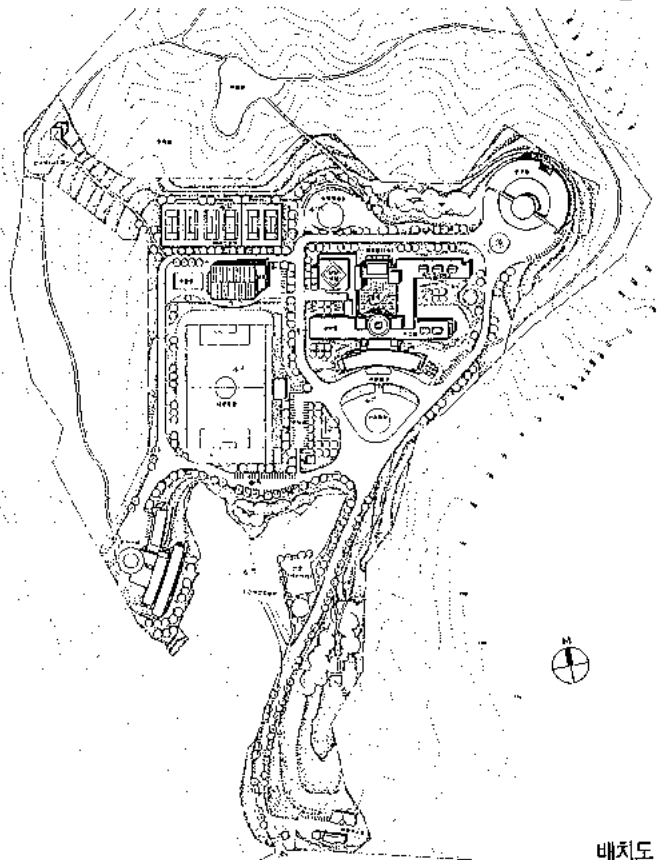
동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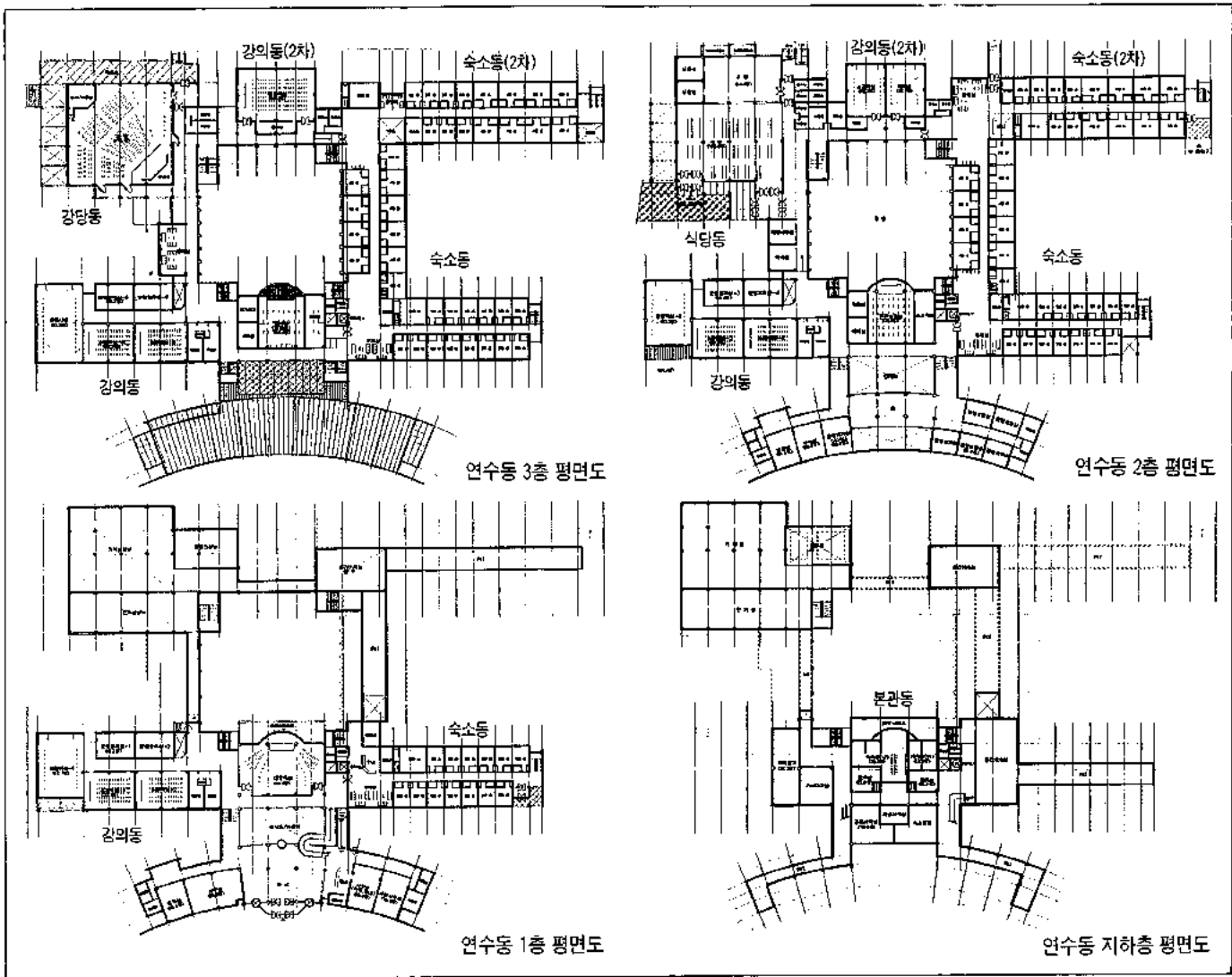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 충북 증원군 노은면 산 64-1외
 대지면적 / 111,045.00㎡
 총 사업-7,628.67㎡ (2308명)
 건축면적 / 1차-5,466.26㎡
 총사업-7,628.67㎡
 연면적 / 1차-15,777.25㎡
 총 사업-19,820.48㎡
 건폐율 / 1차-4.92% 총 사업-6.87%(법정 60%)
 용적률 / 1차-12.37% 총 사업-16.01%(법정 40%)
 규모 / 본관, 강의동-지하 1층, 지상 3층
 숙박동-지하 1층, 지상 3층
 강당 및 후생동-지상 2층
 실내 체육관-지상 2층
 직원 숙소동-지상 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트러스조



배치도



■ 계획의 목적, 방향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건설인의 자체연수 시설을 마련하여 건설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신단련 및 복합연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계획의 방향으로는

- 건설경영연수원을 상징하는 조형성
- 연수시설의 이용자, 운영관리 단위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 계획대지에 구축물이 어떠한 질서로 자리잡을 것이며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수원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여보고자 함

■ 계획의 주안점

○가용대지의 확보와 경사의 극복

대지현황이 남북경사면에 진

입축이 일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 가용대지를 넓히는 것이 현안이었고 이와 해결점은 운동장과 연수시설의 배치방법에 있다고 본다.

많은 배치대안 검토끝에 두개의 대안(운동장의 남북배치와 45° 경사배치)중에 진입축에 따른 전면광장을 확보하기 쉽고 연수동의 레벨(+160~+180)을 조정하기 용이한 운동장 남북배치를 취함에 따라 경사, 진입, 조망, 일조등 조건이 가장 양호한 대지의 중심부와 동측면을 건축가능한 가용대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수동의 구성방식(분동형/집약형)

연수동은 사무관리+강의동과 숙박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초기 계획진행은 분동형으로 출발하였으나 상시 이동거리를 줄이고 우천시에도 지장없게끔 가능성을 높이고 대지경사를 극복

함과 동시에 더 많은 외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시설물의 전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집약형 형식을 취하였다.

배치방법은 진입축-전면광장-상징및 입구공간(사무관리)-활동공간(강의동)/휴식공간(숙박동)의 구성을 가지며 운동장및 체육시설과의 연결점에 식당(하부)/대강당(상부)을 두어 연수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중축 방법(지점 : 건축시행 분1차, 2차/주차시설)

시행1차분(강의+숙박 약 3,500평)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2차분 증축시에도 조형성/시공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분동형 증축을 지양하고 코아나 연결브릿지 면에 익스팬션조인트로 연결증축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경사대지에 동선상의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었고 주차시설을 유보지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연수자의 시설물 접근방법(교통체계)

연수원의 소재지가 원거리(충북 증원군)이므로 연수자의 교통체계상 단체(버스) 이동이 개별(승용차) 이동보다 중요시 될 것이라 보아 연수자의 연수시설의 최초접근방식이 호텔식에서 버스에서 로비까지 직접 연계시켜 연수자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을 가지게끔 하였으며 단지내 순환도로를 구성하여 시설물간의 이동체계를 확립하였다.

○에너지 절약방안

시설물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을 이용함과 동시에 외기를 집열판하부 그릴로 통풍시켜 열효율을 높이고 지중1.5m깊이에 코일형식으로 관을 매설하여 지중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건축(3)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in Britain

金龍昇/한양대 건축과 강사, 공학박사
by Kim, Yong-Seung

1. 머리말

Pevsner의 저서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에서 나오는 한 귀절을 인용하여 보자.

"20세기 초반의 40년동안 영국인의 이름은 더이상 이 책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영국은 건축과 디자인에서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을 이끌어 왔었다. 이제 영국의 지배는 끝을 맺게 되었다. 영국에서부터 조원술이 퍼지게 되었고 아담과 웨지우드의 양식이 생겨났으며 고딕부흥이 인식되었고 기계생산에서 비롯된 응용예술의 오염도 영국때문이었고 그것에 대한 건설적인 반동도 영국에서 일어났다. Morris, Norman Shaw, Voysey 등에 의해 주도된 주거부흥도 영국적인 것이었다. 영국에서부터 건축을 주축으로 하여 예술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사회개념이 생겨난 것도 영국이었다."

이상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수적 성격이 강한 영국사회에서 혁명적이고 지나치게 진보적이었던 유럽대륙의 근대주의운동은 영국에서 번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유럽대륙에서 근대주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영국에서는 예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던 건축가가 있었다. 글라스고우의 맥킨토쉬가 그였으며 그는 스코틀랜드의 성과 봉건귀족의 저택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98-9년에 디자인 한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글라스고우 예술학교 건물은 길게 뻗은 정감어린 곡선과 회색의 라일락과 장미색조 등에서 찾아볼수 있는 아르 누보적인 요소와 직선적이고 곧고 탄력있으며 강하게 각이 진 구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나무에서는 하얀 라커칠로 표현되고 있다. 1900년 직후 아르 누보를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찾고

있던 유럽인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한 맥킨토쉬는 영국에서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더욱 존경받게 되었다.

2. 2차 세계대전후의 영국건축

지금까지 근대주의건축이 수많은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유는 도덕적 정당성에 있었다. 근대주의건축이 주창한 도덕적 정당성이란; 1.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으로 좋다는 것인데 건축에서는 이것이 평면에서 직접 그려지는 입면에서 나타난다.

2. 건축재료를 솔직하게 사용한다.
3. 상상적 필요보다는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4. 당시의 산업시대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Adolf Loos(1870-1933)가 1908년에 출판한 저서 'Ornament and Crime'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건축에서의 장식은 범죄라는 것이다. 범죄행위와 장식의 관계를 범죄자들과 그들의 문신의 관계를 동일시 하고 있으며 순수하고 합리적인 사고로부터의 분명한 표현으로 발생된 그리스신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이 전후의 영국에서는 모순을 낳고 있었다.

전후 영국의 악화된 경제사정과 주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건축가들은 건축의 질보다는 경제적인 건축과 양의 건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양의 싼 주거가 단시일내에 필요하여오며 경제적이고 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무소 건물들이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주의운동에 의한 교육을 받았던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심적 어려움을 주었으며 극소수의 능력있는 건축가만이 이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갔다. 즉 그들이 추구하던 근대주의건축은 기능적 요구의 충족, 내부평면의 외부에서의 반영 등 너무 많은 요구들이 건축가에게 주어짐으로써 많은 시간과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18,19세기에 사용되던 건축의 고전적 요소들은 비교적 배우기도 쉬웠고 적용하기도 쉬웠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하에서 영국의 건축가들은 전후 30년동안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정직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능력있는 건축가들은 이러한 영국의 상황에 능력있게 대처하면서 나름대로의 영국건축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James Stirling, Norman Foster 그리고 Richard Rogers가 그들이다. 이들 세사람의 건축가들을 보다 상세히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영국의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건축가들과 그들의 건축이념을 알아보기로 한다.

3. 신아수주의(New Brutalism)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후 영국에서 가장 긴급했던 문제는 도시 재건설과 주거의 공급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주의 건축이 찾고 있던 새로운 형태에 관한 문제 접근에 있어서 건축, 도시 그리고 새로운 생활과의 관계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의 노동당이 이끄는 복지국가에 의해 학교, 병원, 집합주택을 지을 기회가 건축가들에게 제공되었으나 이러한 건축형태에 대한 파라다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건축가들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Le Corbusier의 Unite가 나타나기 전에 독일의 Mies에게 영향을 받았던 영국의 젊은 건축가들 가운데 한사람이 P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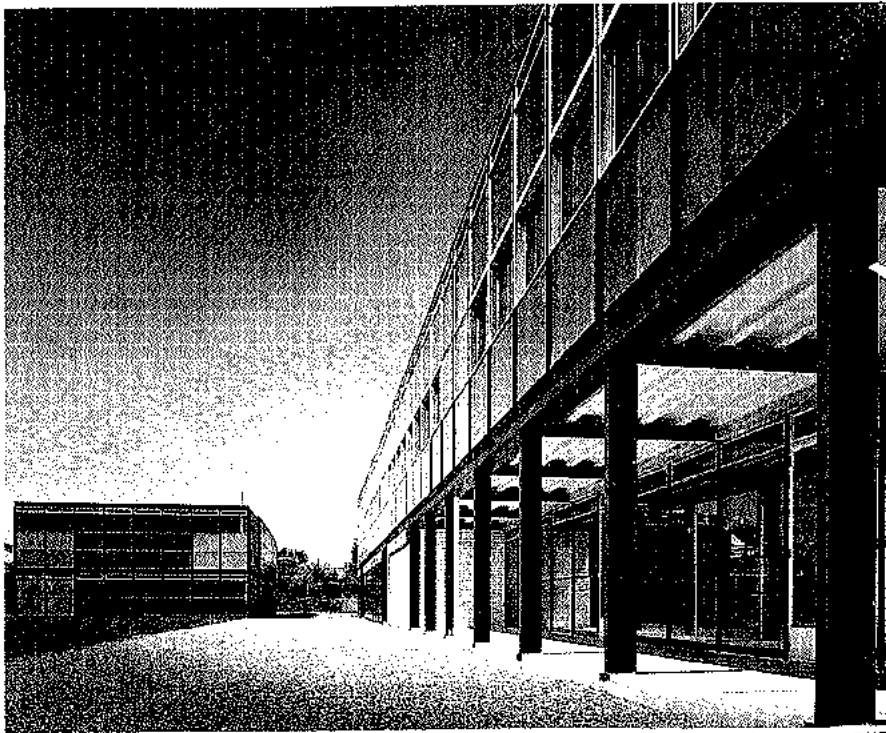


그림1. Hunstanton 건물

Smithson(1923-)이었다. 근대주의 건축은 사회적 의무나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상과 형태의 문제였다는 개념이 신야수주의(New Brutalism)의 주창자인 스미슨에 의해 더욱 발전하였다.

그의 초기 대표작인 Hunstanton 학교건물(1949-54, 그림1)은 근대주의 건축가운데 가장 정직한 건축이었다. 이 건물에서 그는 미스의 IIT 건물의 주요 건축언어인 철골구조를 비대칭 평면과 남겨진 정착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재료는 고의적으로 거칠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영국에서 왜 근대주의 건축이 성공하지 못하였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개념이나 이상에 근거한 건물은 잘못되었던 것이다. 즉 건축적 개념에 비중을 둔만큼 학생이나 교사의 필요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학교건축으로서 보다는 건축적 발전의 기여에 더욱 성공을 거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후 르 꼬르뷔제에 의해 영향을 받아 1960년대의 영국은 거친 콘크리트마감이 새로운 건축요소로 발전하면서 런던의 사우스뱅크의 복합건물(그림2)에서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거친 콘크리트마감을 그대로 노출하고, 떠있는 통행로들로 복잡하게 연결된 이 건물군은 사막같은 도시에 사회적 결합의 형태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통행로들은 범죄자들의 도피에 빈번히 사용되어졌고 아이들의 스케이트 보드나 자전거 경주의 장소가 되었다. 또한 창문도 없고 분명히 식별할 수 없는 출입문, 버려진 지하주차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영국에 있어서 야수주의건축의 문제점은 건물의 기능과 대지에 대응하는 실용적 접근이 아니었고 일종의 부과된 하나의 패션이었다는데 있었다. 스미슨을 비롯한 건축가들은 르 꼬르뷔제나 미스에 의해 상징되는 초기 근대주의운동의 영웅적 건축의 시대로 되돌아 가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조심스런 접근에 반발하면서 강하고 공격적인 건축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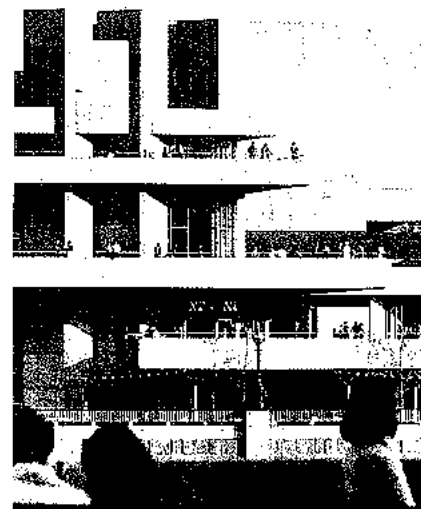


그림2 사우스뱅크, 런던

이처럼 잘 의도된 공격적 건축이 이상도시를 꿈꾸며 계획하였던 주거용 집합주택의 계획들과 연관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땅에서 떠있는 집합주택들이 높은 수준의 마감처리와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극장이나 수퍼 등의 부대시설들이 제대로 제공되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던 계획들이었다. 영국의 건축가들이 모방했던 꼬르뷔제의 유니테 집합주거(Unite d'Habitation)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고 사실 초기에 의도된 강철재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콘크리트를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그 콘크리트건물은 그 지역에 하나의 모뉴먼트로서 잘 어울렸던 것이다. 실제로 같은 종류의 런던의 바비칸(Babican, 1957-1984; 그림3)은 자녀가 없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 건물은 작은 폭포, 수영장, 정원 등을 사용하여 조경계획에 성공하였고 식당, 바 등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에 의해 이 복합건물은 부자들의 도심지 주거로 정착되고 있다.

4. 제임스 스티어링의 건축

야수주의 건축가들 사이에서 나타난 James Stirling(1926-1992)은 전후에 활동했던 가장 유능한 영국건축가라고 할 수 있었다. 스티어링의 초기 대표작인 레스터대학의 공학건물(1959-63, 그림4)은 6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대주의 건축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건물에서는 근대주의 건축의 진정한 이미지가 19세기 영국의 공학에 기본을 둔 구조적 취급과 훌륭하게 혼합되어 있었다. 근대주의 건축이 중요시 여겼던 디자인의 과정과 조합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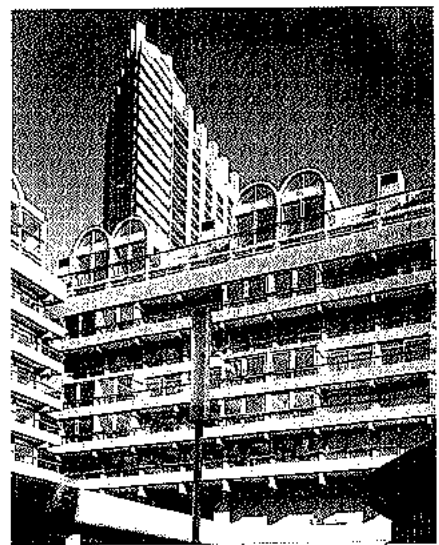


그림3 Babican,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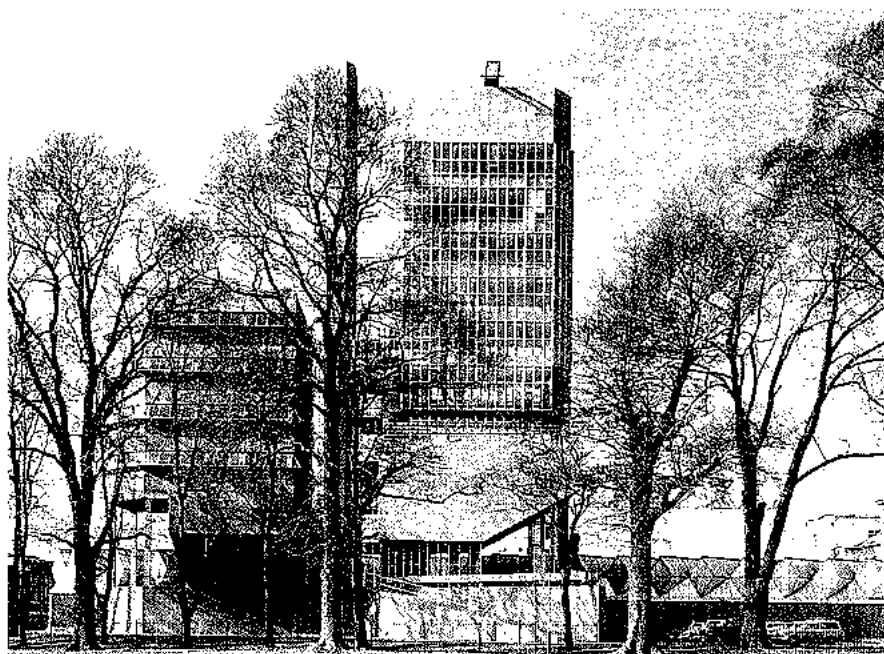


그림4. 레스터대학 건물

아니라 기능하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러시아의 구조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계로서의 건축개념은 그 이후 리차드 로저스에 의해 더욱 개발되었으며, 그의 런던에 위치한 로이즈 본부건물(1978-86, 그림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스틸링의 이러한 접근은 캠브리지대학의 역사학 교직원건물(History Faculty Building, 1964-67; 그림6)과 옥스포드대학의 퀸스컬리지 학생기숙사인 Florey

건물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레스터대학 건물의 독창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백킨트쉬와 보이시 이후 사라져버린 영국건축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건물의 완성 이후부터 스틸링은 세계적인 명사가 되면서 196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영국대학들의 증축계획에 빈번히 초대되면서 다음 10년동안 대학건물이 그의 주요테마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 일종의 도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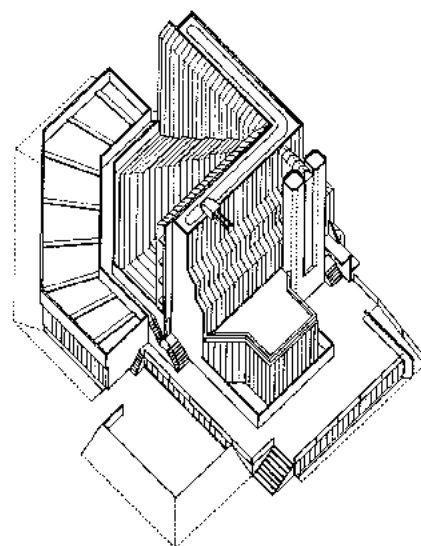


그림7. 캠브리지, 역사학건물 아이소메트릭

사용했던 아이소메트릭(Isometric)은 그의 독특한 건축의 원동력이 되었다. 아이소메트릭의 사용으로 그의 건축은 주위를 걷는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변하는 광경을 제공하는 공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로 통일되는 화사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7)

캠브리지대학의 역사학교직원건물은 역동적인 부채꼴모양의 평면과 벽돌과 타일로 치장된 타워에서, 레스터대학건물의 성공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실체에 있어서 독서실의 지나친 양의 빛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한때는 건물이 없어질 위기에까지 갔으나 건축적으로는 스틸링의 디자인 능력을 돋보이게 했던 성공적 작품이었다.

르 꼬르뷔제의 부단한 노력을 반영하듯이 스틸링은 건축표현에 있어서 어느 한 형태에 만족하기를 거부하였다. St. Andrews대학의 기숙사건물에서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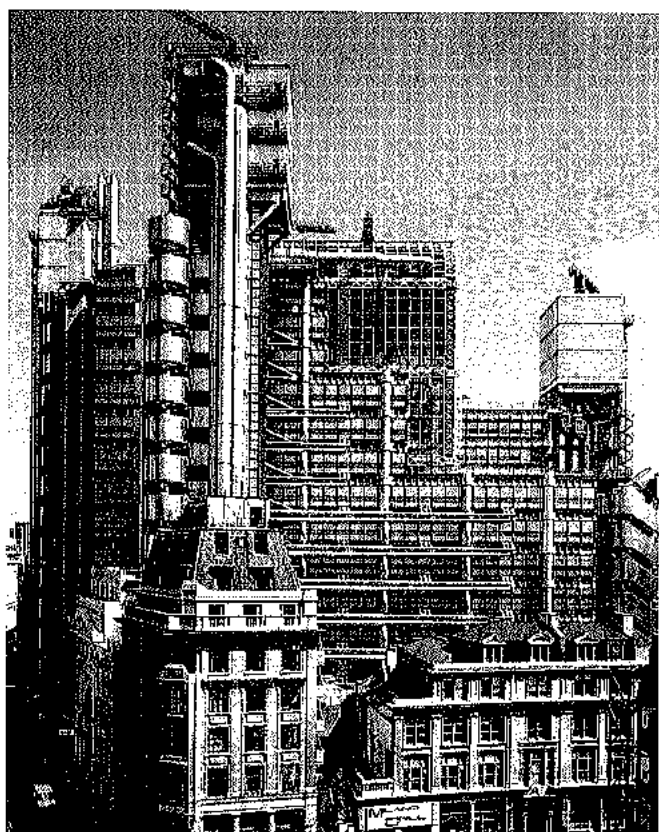


그림5. 로이즈빌딩,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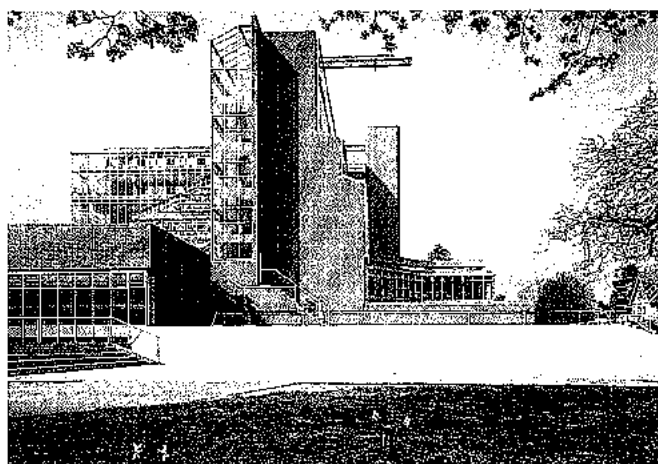


그림6. 캠브리지, 역사학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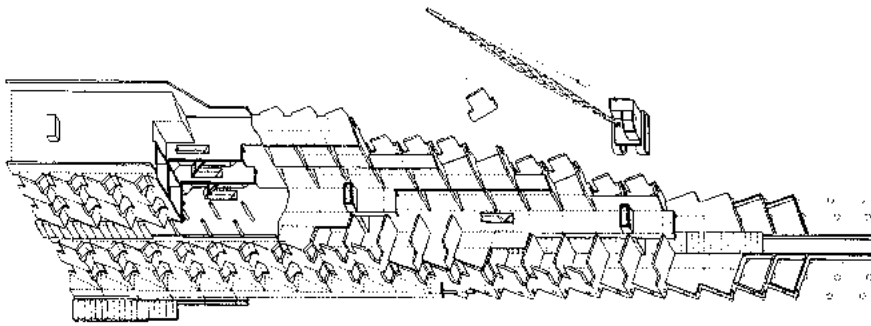


그림8 St Andrews 대학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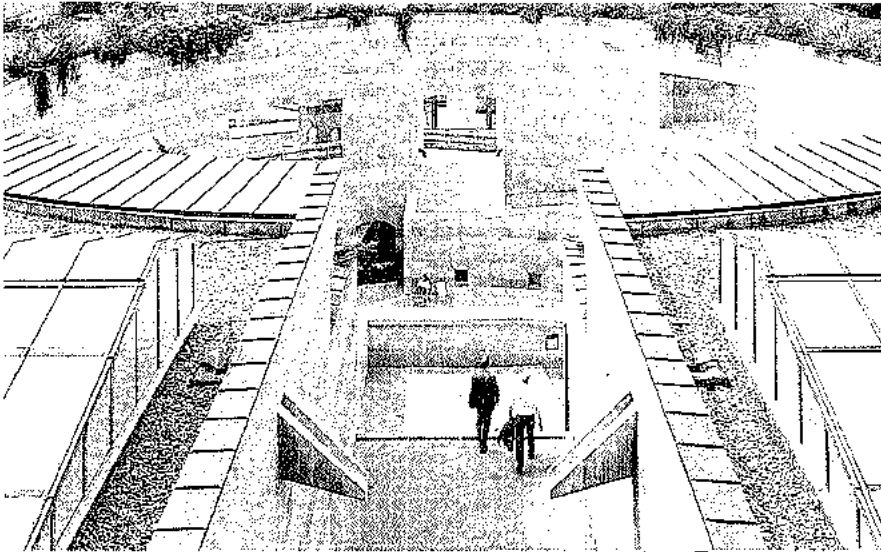


그림9 슈투트가르트, 주립미술관

지역의 부족한 건설기술로 인하여 콘크리트 판넬시스템을 사용하여 크레인에 의해 설치되게 계획하였다.(그림 8)

건축가로서의 세계적 명성은 계속되었으나 영국의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1960년대의 대학건물들 이후 1970년대의 10년동안 스텔링은 타의에 의한 휴식기간을 갖게 되면서 종이위에서 생각하고 탐구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백기간은 그의 초기작품들로부터, 즉 대학건물 디자인에서 보여주었던 러시아 구조주의의 성향과 공학적 어휘들 그리고 St. Andrews 대학에서 나타났던 기술적 실험들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동안 그에게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건물의 전후관계에 관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실현되지 않은 여러 계획안들에서 이러한 그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오랜 공백기간 후에 완성된 슈투트가르트의 주립미술관 증축건물(그림9)은 1824년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쾰에 의해 계획된 알테스박물관의 공간구성에 기본을 둔 평면에 여러 건축적 과편들의 플라워로

디자인 되었다. 이 건물은 풍자와 플라워기법의 사용에 대한 그의 열정적 관심과 함께 공공적 공간의 창조와 형태의 다름에 있어서 원숙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그의 건축은 초기 대학건물들에서 보여주었던 건축요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즉 근대주의 건축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찰스 쟁크스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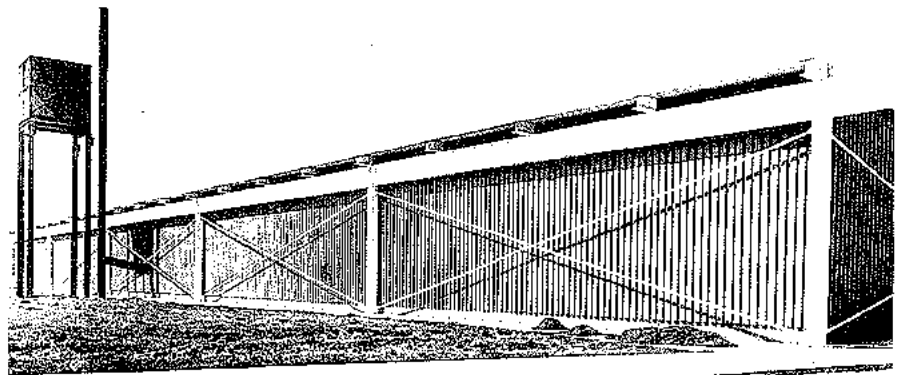


그림10 Reliance Controls 공장건물

비평가는 그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풍자적으로 사용된 그의 건축요소들이 과거의 예들로부터 인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근대주의건축의 구성원리에 기본을 둔 상태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는 여전히 근대주의 건축가였던 것이다.

5. 노만 포스터와 리처드 로저스 : 하이-테크 건축

엄격하고 교육적인 근대주의 전통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건축가들의 진로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건축, 감리, 공학 등 여러 전문분야가 집결된 아랍설계사무소(Arup Associates)의 등장, Richards MacCormac(1938-)와 Edward Cullinan(1938-)과 같이 실용적 근대주의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 그리고 포스터나 로저스같이 건축에서의 실험주의자들 등이 나타나면서 근대주의 건축은 1970년대부터 다양한 양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포스터와 로저스는 예일대학 대학원을 마친 후 1963년에 Team 4라는 모임으로 설계사무소를 함께 시작하였다. 그 이후 그들은 근대주의건축으로부터 파생되어 극도로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길을 따라가는 테마를 추구하였으며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이었고 산업시대의 영웅주의시절에 대한 향수로 가득차 있었다.

Team 4가 해체되기 직전에 완성된 Reliance Controls(1967, 그림10)의 새공장건물은 그들의 건축적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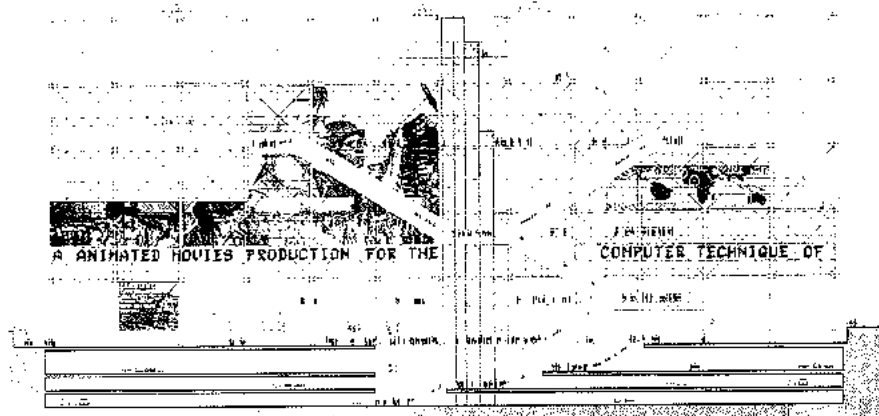


그림11. 풍피두 센터, 파리

보여주었다. 여기서 사용된 건축요소들은 그들의 후기경력에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였다. 장력을 이용한 금속부재의 사용은 포스터의 건물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적 버팀대의 외부표현은 로저스의 계속되는 건축요소가 되었다. 신발끈과 같은 구조물에 지어진 이 공장 건물은 당시 규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문명화된 노동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에서 돋보이는 건축집근이었다. 이 건물은 노동자를 위한 견해, 햇빛의 유입 그리고 정확하게 노출된 구조버팀대에 의한 우아한 외부형태 등에 의해 성공적이었다. 이처럼, 벽 높이와 같은 창문, 금속벽체, 구조적 디자인의 접근 등은 로저스와 포스터의 후기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건축요소들이었다.

1967년 Team 4의 해체후에 각자의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하였으며 1971년 로저스는 이탈리아 건축가인 Renzo Piano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 기술의 급진적 적용에 관하여 취향이 비슷한 이들은 파리에서 있었던 문화센터를 위한 공모전에 우연히 응모하게 되었으며 이 건물은 풍피두센터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림11) 이 건물은 미래주의, Archigram, 빅토리아시대의 공학에 관한 전통의 성공적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적 박물관의 전통에서 벗어나 로저스와 피아노는 하이-테크광장을 생각하였다. 즉 대중이 차들로 붐비는 도심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모여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내에서의 특별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주요 개념이었다. 이러한 개념하에 1977년에 완성된 풍피두센터는 예상을 초월하여 기록적인 방문객수를 보여주었으며 로저스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제공하고 있는 공간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 또한 신랄했다. Alan Colquhoun은 풍피두센터에 관한 글에서 “봉사하는 메카니즘으로서의 건축개념은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이다... 이 건물에서 건축은 그 자체의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것 외에 더이상의 과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라고 공간의 보편성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포스터는 1975년까지 사무소 건물, 학교, 상점, 공장건물 등의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들에 관여하였다. 비록 작은 규모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작품성을 돋보이게 한 것은 한가지 이상만을 추구하는 부단한 노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산업적 건축재료들을 숨쉴있게 사용하는 능력과 독단적이 아닌 세련된 우아함에 대한 열정에 의해 일상적이고 진부한 것을 변형시켰다.

Team 4 해체 후 포스터에게 주어진 비중있는 프로젝트는 런던의 Olsen선박터미널(1971, 그림12)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의 주관심사는 조선소의 노동자들과 관리인들간의 사회적 신분차를 디자인을 통하여 줄이는 작업이었다. 포스터는 이러한 개념에 관하여 “우리는 노동자와 관리인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앞쪽의 사무소공간과 노동자의 출입구 등의 구별을 없애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환경의 개선에 대한 그의 열정과 더불어 기술은 그의 또하나의 관심대상이었다. 기술은 건축가가 전통적인 문제해결 방법에서 탈피하여 완전히 새로운 건물형태를 재창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1975년에 주어진 입스위치시의 보험중계사인 Willis, Faber, Dumas의 행정본부 프로젝트는 포스터가 단순히 기술에만 관심있는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전후의 근대주의 건축에 의해 비인간적인 건축환경을 가지고 있던 도시. 입스위치에 또다시 거대한 사무소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대담한 시도였다. 포스터의 해결안은 1919년 미스의 베를린 고층사무소계획안을 연상하게 하는 불규칙한 평면을 가진 검은색 유리건물이었다. 고른 평면을 가진 유리에 물결치는 형태의 반영은 새건물을 기존 도시환경의 조용한 구성으로 슬그머니 집어넣는 듯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계획은 보다 큰 규모의 도시적 문제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실현되지 않은 BBC라디오 본부건물계획과 홍콩의 상하이 은행건물(그림13)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힘과 상상력을 농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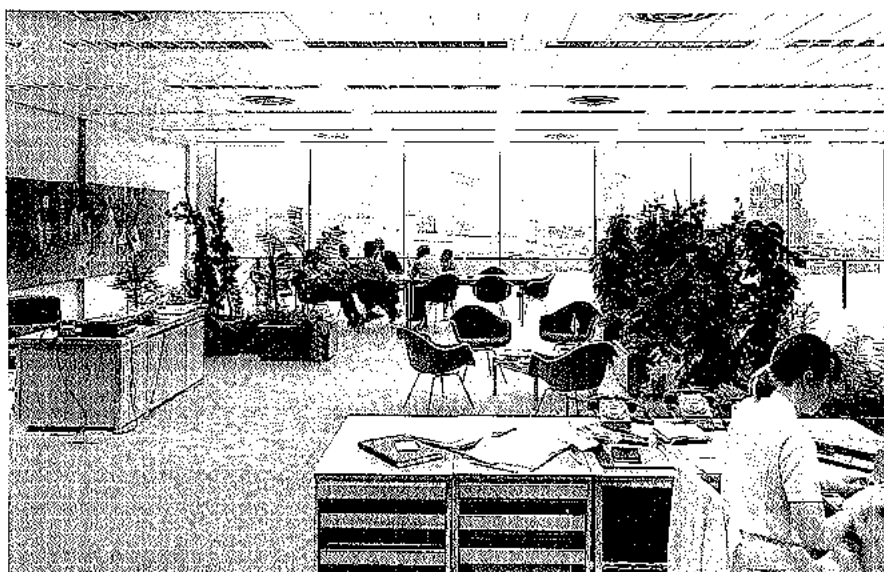


그림12 Olsen 선박터미널,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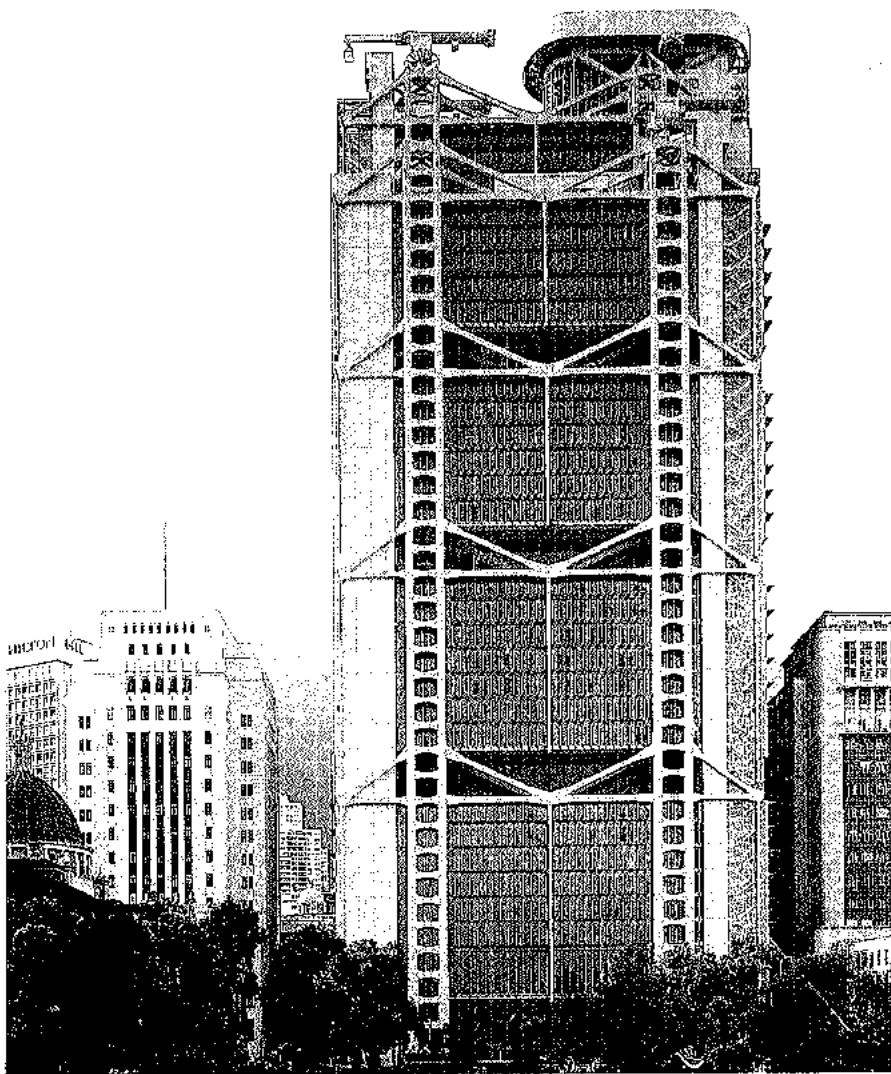


그림13 홍콩 상하이은행

포스터 세 사람의 건축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이 추구해오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주의건축의 계승은 포스트-모던건축의 발생과 소멸이후 세계의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세사람의 거장들 외에 영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건축가들, 즉, Terry Farrell, Michael Hopkins, Leon Krier, Richard MacCormac, John Outram 등을 비롯한 능력있는 건축가들은 어떤 특정한 건축양식에 의해서 활동하기보다는 각자의 독자적인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즉 다원적 건축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축은 대중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건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내에서의 건축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East Anglia 대학내 세인즈베리센터(1977, 그림14)는 도시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건물이다. 이 건물은 완벽하게 마감된 알루미늄으로 된 하나의 공예품으로 지방의 초원위에 놓여져 있으며 연약한 유리로 된 연결물로써 나머지 대학건물의 둔중한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있다.

포스터와 로저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하이-테크건축의 문제점은 비싸다는 것이다. 포스터의 상하이 은행은 이제까지 지어진 건물가운데 가장 비싼 건물로 기록되고 있다. 1980년대에 저렴한 하이-테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로저스와 포스터의 빈곤한 모방에 불과하였다. 고도로 숙련된 기능공과 고도의 절을 지닌 재료들의 사용이 필수였던 하이-테크건축에서 값싼 건축이란 성공하기가 힘든 일이었다. Michael Hopkins의 캠브리지근교에 있는 Schlumberger 연구실험건물(1985)과 런던에 있는 Lord

크리켓운동장의 스탠드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전후의 영국건축은 스텔링, 로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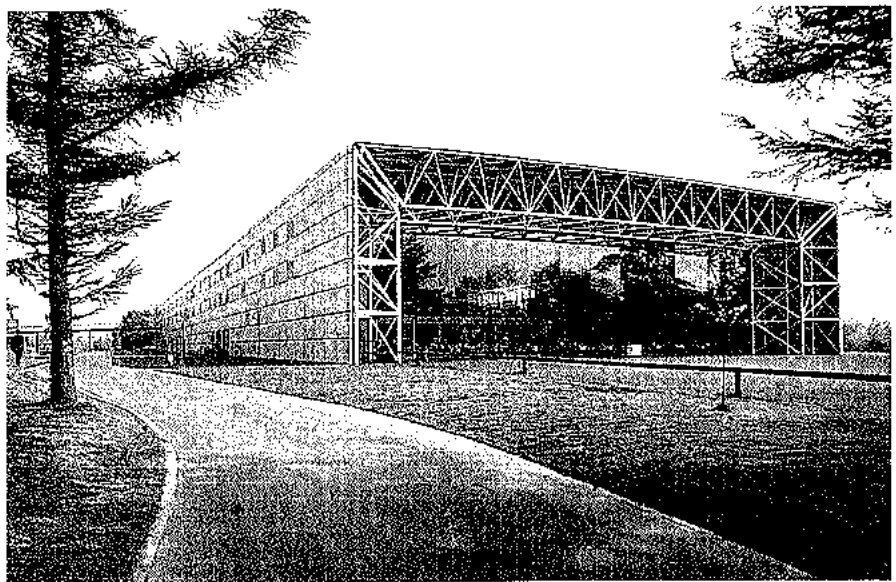


그림14 세인즈베리센터, East Anglia

중국의 풍수패턴에 대하여

Geomancy Pattern of Chinese

필자: 尚 廓(北京市遊旅建築設計所勤務)

역자: 韓東洙(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在學)

풍수는 전통적인 중국취락의 입지선정과 계획이론으로서 비록 미신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나, 합리적인 성분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초보적인 환경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풍수는 부음포양(負陰抱陽)과 배산면수(背山面水)를 기본적인 이론으로 하여, 건축적인 공간구성을 폐쇄형을 취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관계에 열는데 유의하고 있다. 이러한 풍수이론은 중국의 유교, 도교, 불교의 제반 철학과 미학의 영향을 받은 중국전통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선학들의 많은 연구로 풍수이론의 현대적인 설계에서 응용이라든가, 그것의 과학적인 측면 등에 관한 분석 등 적지 않은 업적이 누적되어 왔다. 이 글도 그와 유사한 논문의 하나로서 설계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풍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원문은 중국 천진대학건축과에서 펴낸 《景觀・建築・風水》라는 논문집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원서에는 풍수와 관계된 10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 5편의 번역문 등 모두 16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번역에는 대만의 地景出版社에서 1990년에 정자체로 다시 인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풍수의 용어들은 가급적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원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예를 들면 負陰抱陽이라든가, 背山面水, 少祖山 등과 같은 것으로 이는 우리의 풍수용어와 비교를 위한 것으로 독자들의 참고를 바란다.

장기간에 걸친 세심한 자연의 관찰과 실제생활의 경험에 의거하여 중국고대에는 주택과 촌락, 도시 등의 거주환경에 대한 입지선정과 계획이론에 관한 일종의 학설이 생겨났는데 이를 “풍수학(風水學)” 또는 “감역학(堪輿學)”이라고 부른다. 그 속에는 비록 현학적 성분과 미신적인 색채에 젖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질, 지문(地文), 수문(水文), 일조, 풍향, 기후, 기상, 경관 등 일련의 자연지리환경 요소에 대하여 우열의 평가와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길하고 상서롭지 못한 것을 피하고 길지를 구하는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양호한 환경의 창조와 하나의 거주지점의

형성발전 및 홍망성쇠는 지리, 경제, 정치, 문화, 역사 등 여러요소가 영향을 주어 결정되는 것이며, 각자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규율이 “풍수”의 이상적인 모식에 모두 귀납되거나 부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풍수의 이론에 부합한다고 해도 이른바 풍수에서 말하는 길흉화복의 효과를 모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풍수의 현학적이고 미신적인 부분들을 제거한다면 그 속에서 합리적인 성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밖의 풍수는 또 중국의 전통적인 우주관, 자연관, 환경관, 심미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통주택, 촌락, 도시의 입지선정 및 계획이론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과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풍수는 자연생태환경과 인위환경 및 경관적인 시각환경 등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풍수”는 중국고대에 이미 만들어진 일종의 환경설계이론이자 초보적인 환경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1. 풍수의 패턴과 생태환경

부음포양, 배산면수는 풍수의 관념 가운데 주택과 촌락, 도시의 입지선택에 있어서 기본원칙이자 기본패턴이다.

이른바 부음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의 후면에 주봉인 대룡산(來龍山)이 있고, 좌우를 보필하는 보조적인 봉우리나 혹은 낮은 구릉이 있으며, 그 산위에는 우거진 나무 숲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면에는 월아형(月牙形)의 연못(주택이나 촌락의 상황에서)이나 만곡의 하천(소도읍과 도시)이 있다. 또한 물의 맞은 편에는 대경산(對景山)인 하나의 안산(案山)이 있다.

축선의 방향으로 가장 좋은 것은 남향이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패턴에 부합하려고 한다면 축선은 때로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입지는 이러한 산수가 에워싸는 바로 정중앙에 위치하며, 지세가 평탄하여 일정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배산면수 입지의 기본패턴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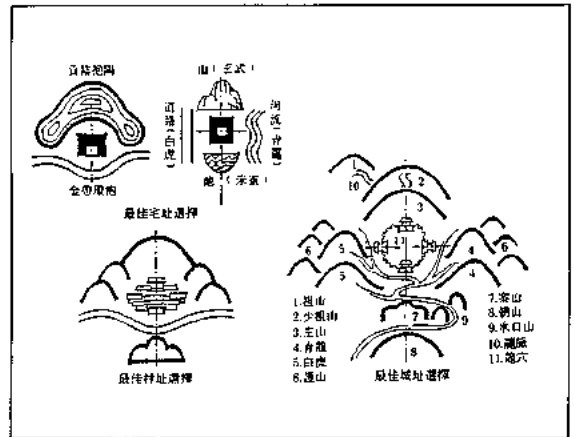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상적인 풍수의 패턴은 다음과 같은 지형산세를 갖추어야 하며, 그 각 산의 명칭과 상응하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 ①조산(祖山): 입지 배후산맥의 발원지가 되는 산.
- ②소조산(少祖山): 조산의 앞에 있는 산.
- ③주산(主山): 소조산의 앞, 입지의 뒤에 있는 주봉으로 내용산(來龍山)이라고도 한다.
- ④청룡(靑龍): 입지의 좌측에 있는 차봉이나 구룡으로 좌보(左輔), 좌견(左肩), 좌비(左臂)라고도 한다.
- ⑤백호(白虎): 입지의 우측에 있는 차봉이나 구룡으로 우필(右弼), 우견(右肩), 우비(右臂)라고도 한다.
- ⑥호산(護山): 청룡 및 백호의 외측에 있는 산.
- ⑦안산(案山): 입지의 앞에 있는 물에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산.
- ⑧조산(朝山): 입지의 앞에 있는 물과 안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
- ⑨수구산(水口山): 물이 흘러 나가는 곳의 좌우측에 있는 두개의 산으로 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자산과 코끼리산, 혹은 거북이산과 뱀산이라고 부른다.
- ⑩용맥(龍脈): 조산, 소조산 및 주산을 연결하는 맥락산임.
- ⑪용혈(龍穴): 입지선택에 가장 좋은 지점으로 주산의 앞에서 산수가 에워 싸는 중앙에 위치한다. 이곳은 만물정화인 "기(氣)"가 응결된 지점으로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복지(福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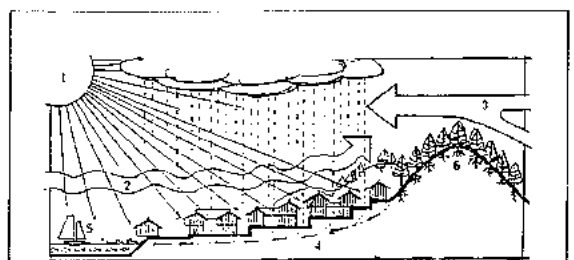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연환경과 이처럼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이 양호한 생태 및 국부적인 기후의 형성에 유리하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배산(背山)은 동절기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수면에 면하고 있는 것은 하절기 남쪽의 시원한 바람을 받아드릴 수 있게 한다. 햇빛을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은 양호한 일조를 가능하게 한다. 하천에 가까운 것은 편리한 수륙교통생활과 관개용수를 얻게할 뿐 만 아니라, 양식업에도 적합하다. 완만한 경사는 침수의 재난을 막을 수 있다. 나무는 토질 속의 수분을 유지하게 하여 국부적인 기후조절을 할 수 있다. 과수와 경제림은 경제적인 이익과 부분적으로 연료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결국 길지의 선택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의 여러가지 경영에 있어서 양호한 생태환경을 형성하여 자연도 하나의 길상복지로 변화하게 된다. (그림1, 2)

2. 풍수패턴의 공간구성

중국인은 옛부터 거주환경의 선택과 조직함에 있어서 폐쇄적인 공간을 채택하는 전통이 있다. 폐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종 다중적인 폐쇄방법을 채택하고



(그림1) 풍수의 관념중 宅·村·城의 가장 좋은 길지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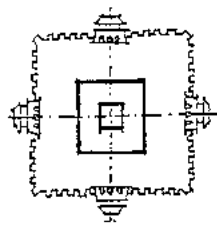
1. 양호한 일조
2. 하절기 남풍을 받음
3. 동절기의 차가운 바람을 막음
4. 양호한 배수
5. 수상교통과의 편리한 연계
6. 토양의 수분 함유를 유지함으로써 국부적인 기후의 조절

(그림2) 촌락의 입지선택과 생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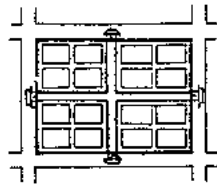
있다. 여러개의 정원으로 된 주택은 폐쇄적인 단계를 강화한다. 이방(里坊)은 주변의 담을 이용하여 수 많은 정원주택을 폐쇄적으로 만든다.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중앙에 있는 아서원(衙署院: 혹은 도성의 궁성)에서부터 내성에 이르기까지 또 관성에 이르기까지도 겹겹으로 둘러싼 다중적 폐쇄공간이다.

촌락이나 도시의 외부의 풍수의 패턴에 따라 입지의 후방에서 주산으로서 병풍을 삼는다. 산세는 좌우를 향하여 청룡, 백호산까지 이어져 좌우의 어깨를 감싸는 형세를 이루므로서 점차적으로 후방 및 좌우의 방향을 에워싸게 한다. 입지의 전방은 안산이 막고 있으며, 좌우의 용맥이 이어져 전방 역시 폐쇄적이 된다. 나머지 물이 흘러나가는 절구(缺口)에도 수구산의 파수병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폐쇄적인 권역을 형성한다. 만일 이 권역의 외부에서 주산 뒤의 소조산과 조산이 있다면 청룡, 백호산의 측면에는 호산이 있고 안산의 외부 멀리에는 조산이 있다. 이것은 바로 제2의 폐쇄적인 권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풍수의 패턴은 폐쇄적인 인위건축환경의 외부에 있는 또 한층의 천연적인 폐쇄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공간구성의 기본모델은 (그림3)과 (그림4)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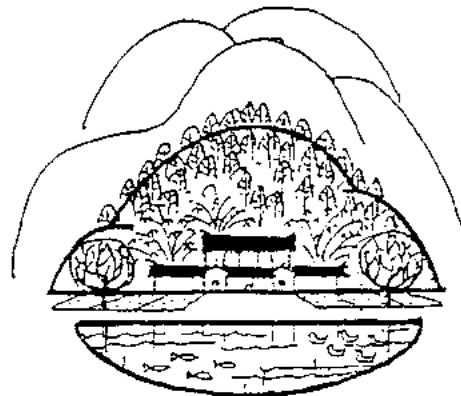


세 겹으로 둘러싸인
도시공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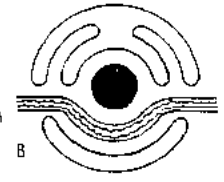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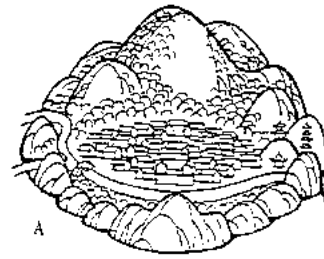


겹겹의 담으로 둘러싸인
里坊宅院의 공간단계

〈그림3〉여러 단계의 공간배치구조는 중국의 전통적인 설계계획 사상이다.



〈그림5〉풍수산과 풍수연못의 배경과 전경효과



〈그림4〉촌락 풍수패턴의 패쇄적 공간구성(A)과 기본모델(B)



三峰形：三尖山, 三臺山,
筆架山, 三峰山



雙峰形：天馬山, 馬鞍山



單峰形：華蓋山, 金星山, 寶鼎山



單尖形：文筆山, 錫帽山, 琅琊山, 文峰



扁平形：玉凡山

〈그림6〉對景山—자주 보이는 조산 혹은 안산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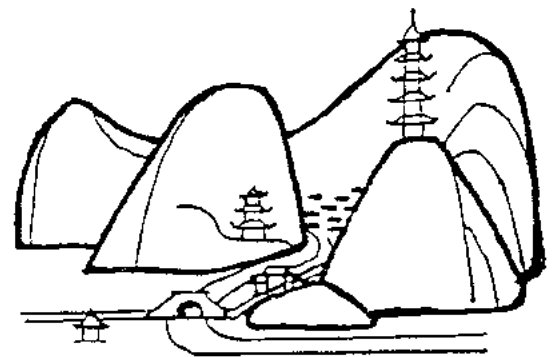
3. 풍수와 경관

풍수학설은 비록 ‘기(氣)’, ‘음양(陰陽)’, ‘사령(四靈)’, ‘오행(五行)’, ‘팔괘(八卦)’ 등의 풍수학설에 의거하여 고려된 것이지만 ‘천인합일(天人合一)’,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중국고대 철학사상에서 나온 사람과 자연이 취해야 할 일종의 조화의 관계라고 인식된다. 그러므로 일종의 우아하고 눈과 마음이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자연과 인위환경의 사상이 시종일관 풍수의 관념속에 내포되어 있다. 거주환경은 양호한 자연생태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연경관과 인위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술한 이상적 풍수입지에 의거하면 종종 다음과 같은 경관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주산, 소조산, 조산을 입지로 삼는 배경과 돌출된 산 외부에 있는 산으로 하여금 첩첩산중이 되게하여 여러단계의 입체운곽선을 형성하고 풍경의 심도감과 거리감을 증가시키게 한다.(그림5)

(2)하류와 연못으로 입지를 삼는 전경은 탁트인 평원의 시야를 형성한다. 물에서 떨어져 돌아다보면 생동하는 물결의 그림자가 있고 아름다운 화면을 조성한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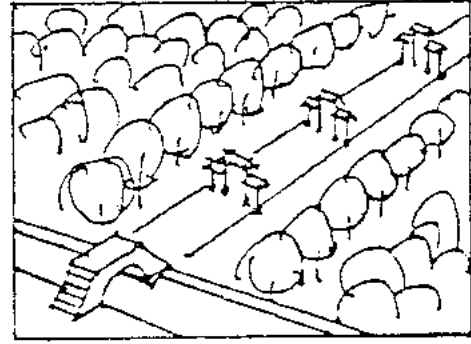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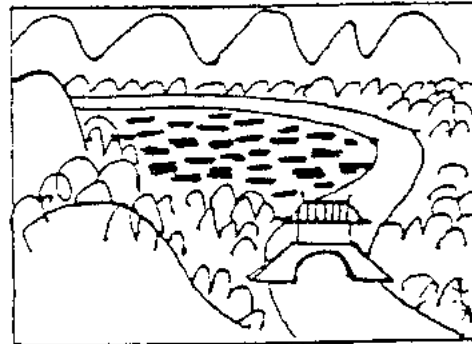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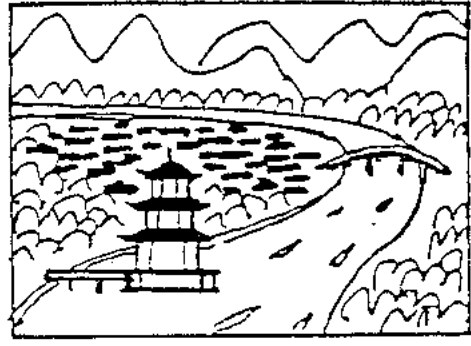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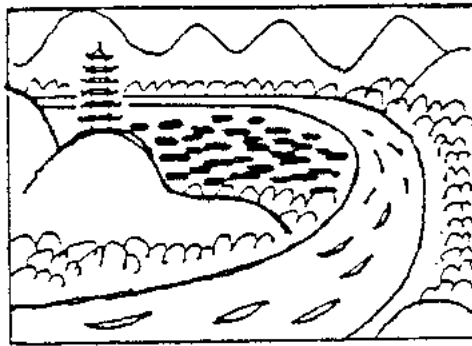
(3)안산과 조산으로 입지를 삼는 대경과 차경은 입지전방에 있는 원경의 구도중심을 형성하여 시선으로 하여금 귀속되게 한다. 중첩된 산은 풍부한 단계감과 심도감의 작용을 일으킨다.(그림6)



〈그림7〉水口山 및 부속건축의 경관

(4)수구산으로서 장벽을 삼는 것은 입지의 내외로 하여금 격리시키고, 공간 내비를 형성하게 하여 입지에 들어선 이후 시원스럽게 탁 트인 별천지와 같은 경관효과를 가지게 한다.(그림7)

(5)풍수지형을 보충하는 인공풍수 건축물, 예를 들어 보탑, 누각, 패방, 교량 등은 환경의 표지물, 조절점, 시선초점, 구도중심, 관상의 대상, 혹은 관상점의 자태를 나타내어 모두 식별성과 관상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창에 있는 동왕각의 위치선정은 삼강(三江)을 가슴에 품고 오호(五湖)를 거느리고 있는 임강(臨江)의 요충지이며, 무한에 있는 황학루, 항주의 육합탑 등도 모두 그 선정된 위치가 강산을 가리키는 조경과 풍경감상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풍수의 설치와 풍경설계가 통일적으로 고려된 것임을 설명해 준다.(그림8)



(그림) 풍수이론에 의거하여 산상에 탑을 세우고 수중에 누각을 지으며 하천위에 다리를 수축하거나 기타 풍수건축의 수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은 종종 촌락의 표지, 풍경구도의 중심, 혹은 경관점이 된다.

(6) 많은 나무와 과수를 식재하여 산상 및 평지위의 풍수림을 보호하고, 촌락어귀의 고목을 보호하는 것은 울창한 녹화지대와 식생을 형성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토양이 수분을 함유하도록 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 양호한 국부기후를 조성한다. 또한 새 소리와 꽃향기가 있으며, 아름답고 그림같은 풍경의 자연환경을 형성한다.

(7) 산형과 물 흐름에 결함이 있다면 '좋은 것을 길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수경(修景), 조경(造景), 첨경(添景) 등의 방법을 통하여 풍경화면이 완전한 조화에 이르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 출입구의 방향과 도로평면의 축선방향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쾌하지 못한 경관이나 전경을 피함으로써 시각 및 심리상의 평형을 얻는다. 이러한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제곡의 하류방향을 국부적으로 바꾸거나 지형을 개조하며, 산위에 풍수탑을 세운다. 또 물 위에는 풍수다리를 건설하고, 물 위에 풍수돈(風水墩)을 짓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명목상으로는 사악한 기운을 누르는 것이나, 실제로는 풍경의 결함 및 조경을 보수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지상 위의 팔경(八景), 십경(十景)의 일부가 되어 풍경점으로 변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풍수의 관념이 구성하는 경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위외하고 폐쇄된 경관 : 많은 산이 둘러싸서 스스로 별천지를 이루는 것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과 멀리 떨어진 도원(桃源)의 세계이다. 이것은 중국 도가의 자연회귀, 불교의 출세철학, 도연명식의 유토피아 사회이상과 그 미학관점 및 사대부의

은일사상과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중축대칭의 경관 : 주산-입지-안산-조산으로 이어지는 중축, 좌우에 있는 청룡, 백호의 양날개, 하류의 횡축은 좌우대칭의 풍경패턴 혹은 비절대대칭의 균형패턴을 형성한다. 이것은 또 중국 유가에서 말하는 중용의 도 및 예제관념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3) 단계감이 풍부한 경관 : 주산 뒤의 소조산과 조산, 안산 밖의 조산, 좌우에 있는 청룡, 백호산 외부의 호산은 모두 병풍처럼 에워싸는 풍경의 단계와 풍부한 심도감을 구성한다. 이러한 풍수패턴의 추구는 경관상 중국전통 회화이론의 산수화 구도기법에서 언급하는 '평원(平遠), 심원(深遠), 고원(高遠)' 등의 풍경의식과 조감투시의 화면효과에 부합한다.

(4) 곡선미와 동태미가 풍부한 경관 : 붓질이식의 기복이 있는 산과 구불구불한 하천은 모두 부드럽고 완만한 동태미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대청구도의 엄숙성을 타파하고, 풍경화면으로 하여금 유창, 생동, 활발함을 증가시킨다.

이상의 논술을 종합하면, 우리들은 현학미신의 장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설계를 하는 풍수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의 질 문제에 충분히 주목하고, 동시에 시각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경관의 질 문제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설계에 있어서 경관설계, 기능, 심미는 불가분의 통일체이다. 우리는 또 중국의 풍수관념이 중국의 전통적인 유, 불, 도교의 철학 및 중국전통비학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은 중국문화를 종합한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1천6십만3천8백7십9㎡ 보다 20.8%(2백2십만3천5백6십7㎡)증가 한 1천2백8십만7천4백4십6㎡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3월 누계 2천7백9십2만9천6백3십2㎡보다 45.0%(1천2백5

십7만7천9백6십8㎡)증가 한 4천5십만7천6백㎡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2월분 2천1백3십3만2천9백7십7㎡보다 40.0%(8백5십2만5천5백3십1㎡)감소 한 1천2백80만7천4백4십6㎡의 실적을 보임.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533,812	1,651,120	117,308	7.6%
	대구	394,336	903,460	509,124	129.1%
	광주	272,725	1,807,682	1,534,957	562.8%
	경기	2,577,668	2,764,087	206,419	8.1%
	강원	287,133	366,473	79,340	27.6%
	충남	438,556	812,957	374,401	85.4%
	경북	829,687	829,690	3	0.0%
	경남	924,048	1,274,504	350,456	37.9%
감소지역	부산	1,033,221	948,177	(85,044)	-8.2%
	인천	802,204	357,346	(444,858)	-55.5%
	대전	253,167	144,978	(108,189)	-42.7%
	충북	499,526	440,875	(58,651)	-11.7%
	전북	381,896	167,809	(214,087)	-56.1%
	전남	319,384	275,613	(43,771)	-13.7%
	제주	76,516	62,675	(13,841)	-18.1%
합	계	10,603,879	12,807,446	2,203,567	20.8%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 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용 도 별	2월분	3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1,482,969	1,331,087	(151,882)	-10.2%
다 세 대 주 택	555,083	444,827	(110,256)	-19.9%
연 립 주 택	211,348	349,801	138,453	65.5%
아 파 트	5,389,893	3,946,477	(1,443,416)	-26.8%
근린생활시설	3,630,564	2,207,620	(1,422,944)	-39.2%
종 교 시 설	229,424	165,271	(64,153)	-28.0%
의 료 시 설	51,284	31,980	(19,304)	-37.6%
교육연구시설	496,739	463,260	(33,479)	-6.7%
업 무 시 설	494,414	434,583	(59,831)	-12.1%
숙 박 시 설	469,438	199,950	(269,488)	-57.4%
공 장	2,128,459	2,033,539	(94,920)	-4.5%
기 타	6,193,362	1,199,051	(4,994,311)	-80.6%
계	21,332,977	12,807,446	(8,525,531)	-40.0%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 概況(3月分)

구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4,133	4,191	1,533,812	2,092	2,195	1,651,120	(2,041)	(1,996)	117,308	7.6%	
부산	1,071	1,348	1,033,221	1,901	2,077	948,177	830	729	(85,044)	-8.2%	
대구	1,371	1,436	394,336	1,807	2,029	903,460	436	593	509,124	129.1%	
인천	624	707	802,204	475	476	357,346	(149)	(231)	(444,858)	-55.5%	
광주	434	475	272,725	1,000	1,288	1,807,682	566	813	1,534,957	562.8%	
대전	472	502	253,167	211	224	144,978	(261)	(278)	(108,189)	-42.7%	
경기	2,217	2,715	2,577,668	2,303	2,716	2,764,087	86	1	206,419	8.1%	
강원	672	760	287,133	561	642	366,473	(111)	(118)	79,340	27.6%	
충북	802	1,013	499,526	551	671	440,875	(251)	(342)	(58,651)	-11.7%	
충남	533	572	438,556	583	615	812,957	50	43	374,401	85.4%	
전북	481	591	381,896	246	291	167,809	(235)	(300)	(214,087)	-56.1%	
전남	494	615	319,384	585	677	275,613	91	62	(43,771)	-13.7%	
경북	786	1,125	829,687	913	1,184	829,690	127	59	3	0.0%	
경남	1,240	1,504	924,048	1,399	1,774	1,274,504	159	270	350,456	37.9%	
제주	211	278	76,516	206	239	62,675	(5)	(39)	(13,841)	-18.1%	
합 계	15,541	17,832	10,603,879	14,833	17,098	12,807,446	(708)	(734)	2,203,567	20.8%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3月 合計分)

구분 건축사회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10,578	10,896	5,450,962	5,680	5,964	4,799,311	(4,898)	(4,932)	(651,651)	-12.0%	
부산	2,525	3,805	2,310,213	3,380	3,616	2,468,793	855	(189)	158,580	6.9%	
대구	3,416	3,740	1,870,411	4,096	4,630	2,224,509	680	890	354,098	18.9%	
인천	1,673	1,782	1,455,882	1,506	1,521	1,134,915	(167)	(261)	(320,967)	-22.0%	
광주	1,086	1,259	1,174,509	1,661	2,099	2,503,907	575	840	1,329,398	113.2%	
대전	1,023	1,129	838,618	1746	1,837	1,019,539	723	708	180,921	21.6%	
경기	5,838	6,838	5,935,312	7,639	8,954	8,025,652	1,801	2,116	2,090,340	35.2%	
강원	1,405	1,597	714,856	1,566	1,769	945,453	161	172	230,597	32.3%	
충북	1,851	2,364	1,442,961	2,266	2,759	1,796,205	415	395	353,244	24.5%	
충남	1,286	1,348	1,271,958	1,890	1,987	6,756,342	604	639	5,484,384	431.2%	
전북	863	1,094	737,522	1,246	1,489	1,631,876	383	395	894,354	121.3%	
전남	1,194	1,480	708,959	1,396	1,684	768,341	202	204	59,382	8.4%	
경북	1,795	2,534	1,618,563	2,548	3,406	2,630,234	753	872	1,011,671	62.5%	
경남	2,709	3,358	2,209,532	3,761	4,565	3,475,390	1,052	1,207	1,265,858	57.3%	
제주	380	503	189,374	715	775	327,133	335	272	137,759	72.7%	
합 계	37,622	43,727	27,929,632	41,096	47,055	40,507,600	3,474	3,328	12,577,968	45.0%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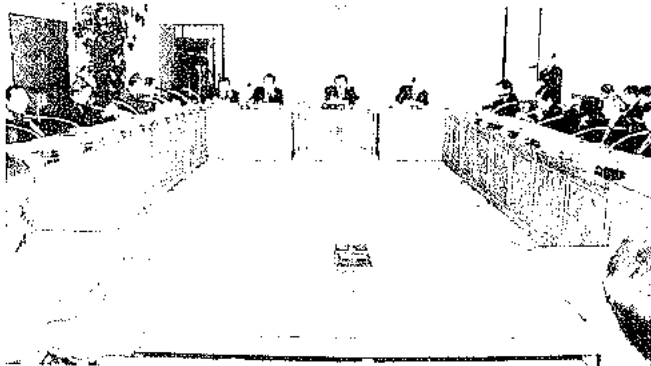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3月分)

구분 용도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7,170	7,325	1,376,924	5,826	5,959	1,331,087	(1,344)	(1,366)	(45,837)	-3.3%	
다세대주택	1,194	1,272	569,471	868	940	444,827	(326)	(332)	(124,644)	-21.9%	
연립주택	49	65	146,895	111	211	349,801	62	146	202,906	138.1%	
아파트	152	917	3,755,089	197	893	3,946,477	45	(24)	191,388	5.1%	
근린생활시설	4,338	4,564	1,672,892	4,935	5,092	2,207,620	597	528	534,728	32.0%	
종교시설	117	134	76,169	155	172	165,271	38	38	89,102	117.0%	
의료시설	18	20	36,663	21	21	31,980	3	1	(4,683)	-12.8%	
교육연구시설	89	128	379,491	105	138	463,260	16	10	83,769	22.1%	
업무시설	131	144	324,638	122	133	434,583	(9)	(11)	109,945	33.9%	
숙박시설	124	153	118,572	190	194	199,950	66	41	81,378	68.6%	
공장	681	1,014	938,553	890	1,443	2,033,539	209	429	1,094,986	116.7%	
기타	1,478	2,096	1,208,522	1,413	1,902	1,199,051	(65)	(194)	(9,471)	-0.8%	
합 계	15,541	17,832	10,603,879	14,833	17,098	12,807,446	(708)	(734)	2,203,567	20.8%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3월 合計分)

구분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16,809	17,271	3,387,529	14,765	15,034	3,580,347	(2,044)	(2,237)	192,818	5.7%	
다세대주택	3,311	3,531	1,577,649	2,425	2,652	1,247,003	(886)	(879)	(330,646)	-21.0%	
연립주택	142	166	261,124	286	447	654,642	144	281	393,518	150.7%	
아파트	424	2,435	10,491,966	537	2,228	10,653,238	113	(207)	161,272	1.5%	
근린생활시설	10,677	11,542	4,343,547	14,409	14,814	7,096,489	3,732	3,272	2,752,942	63.4%	
종교시설	308	377	317,105	458	531	493,935	150	154	176,830	55.8%	
의료시설	48	52	101,969	63	70	169,658	15	18	67,689	66.4%	
교육연구시설	229	340	783,983	320	405	1,141,482	91	65	357,499	45.6%	
업무시설	336	372	1,256,217	327	358	1,101,768	(9)	(14)	(154,449)	-12.3%	
숙박시설	349	380	370,384	557	584	768,981	208	204	398,597	107.6%	
공장	1,706	2,793	2,340,430	2,986	4,643	4,962,221	1,280	1,850	2,621,791	112.0%	
기타	3,283	4,468	2,697,729	3,963	5,289	8,637,836	680	821	5,940,107	220.2%	
합 계	37,622	43,727	27,929,632	41,096	47,055	40,507,600	3,474	3,328	12,577,968	45.0%	()=마이너스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본 협회는 주요당면과제 협의
를 위한 이사회를 지난 3월 22일
(9회), 3월 28일(10회), 4월 1일
(11회)에 각각 개최, 보고사항
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
의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9회

- 비상대책위원회 규칙제정
(안) 승인의 건
—유보하되, 제도위원회에서
재 정리하여 다음 의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94년도 제1회 임시총회 업무
분담에 대한 협의
—건축사 현장 감독은 오인준
검사가 하기로 하고, 나머
지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
장이 설명하고 필요시 담당
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기
로 협의함
- '환경보전과 건축디자인' 설
계 공모전 후원기관 위촉에 대
한 협의
—한국 태양 에너지 학회에서
주최하는 '환경보전과 건축
디자인' 설계 공모전 후원
기관 위촉을 수락하기로 협
의함.
- '94 한국 건축전 개최 계획
(안)에 대한 협의
—작품에 대한 사항은 설계위
원회가 전시장 및 디스플레이
하는 홍보위원회가 맡아서
'94 한국 건축전을 개최하
기로 협의함.

- 건설부 결의회신에 대한 협의
—시·도 건축사회 회장단과
같이하는 회의때 의논하기
로 협의함.

○제10회

- 비상대책위원회 규칙제정
(안) 승인의 건
—수정된 문안을 이종만 이사
가 최종검토하기로 하고 승
인함
- 결의문(안) 승인의 건
—수정하여 승인함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설계·공사 감리 표준 계약서
및 설계도서작성기준, 공사감
리업무 지침 용역 시행 승인
의 건
—과업지시서 작성을 설계·
감리 위원장 및 김인곤이사
에게 위임하고 시행은 승인
함
- 건축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본 협회 의견에 대한 협의
—'사용검사 신청서 및 사용
검사필증'서식중 일부를 수
정하여 건설부에 제출하기
로 협의함

○제11회

- 연수기재 구입에 따른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감리연
금회비 환부에 대한 협의
—시·도 건축사회 회장 연석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협의
함.

- 건축행정쇄신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협의
—법제 위원장에게 위임하기
로 협의함
- 신문발간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
—다음 이사회에 직원모집광
고 문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신문발간 준비
위원장과 협의 추진하기로
함.
- 자재시험소 설치추진에 대한

협의

- 자재시험소 설치준비위원
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준
비위원회 구성은 회장 및
김규태·이종만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협의함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협의
—신문에 성명서를 내기로 하
되, 문안은 이준상·이준현
이사에게 위임함.
- 공동주택 관리령중 개정령
(안)에 대한 협의
—원안대로 협의함

「바우하우스」특별 강연회 개최

본 협회는 주한 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는 5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본 협회 대강당
에서 바우하우스에 관한 특별강
연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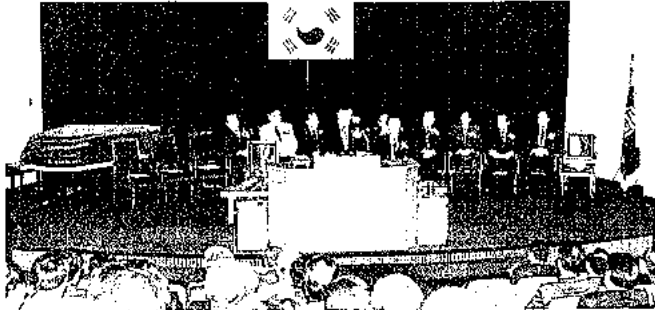
이번 강연회는 「바우하우스의
제조명과 한국의 건축교육」이란
주제로 열리며, 예정 행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일자	시간	행사내용
'94.5.24 (화)	13:30 14:00	(회장인사 및 연사소개)
	14:00 14:50	(강연Ⅰ) ○주제: 바우하우스의 역사적 발전 ○연사: 허영록 교수(강남대학)
	15:00 16:20	(강연Ⅱ) ○주제: 사상으로서의 바우하우스 ○연사: 헤르만 글리저 교수(독일 베르트분트회장)
	16:30 17:00	(질의응답)
'94.5.25 (수)	14:00 15:20	(강연Ⅲ) ○주제: 바우하우스와 그 이후의 건축교육 ○연사: 무치우스부르크하르트교수(독일 카셀대학)
	15:30 16:30	(강연Ⅳ) ○주제: 한국에서의 건축교육 ○연사: 이범계교수(단국대학)
	16:30 17:20	(종합토론회) ○주제: 바우하우스에서 오늘까지 ○좌장: 이선구 교수(숭실대학) ○토론자: 김성우 교수(연세대학) 이원호 교수(중앙대학)

94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1994年度 第1回 臨時總會

大韓建築士協會



총회 광경

본 협회는 지난 3월 29일(화) 본 협회 대강당에서 94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 '93회계년도 수지예산(안)처리와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안) 승인 등 상정안건을 처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석대의원 453명중 37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오웅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협회 위상 정립을 위해 회원 모두가 총 매진」할 것과 「야망을 갖고 우리 앞에 놓인 험난한 변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경제전쟁 시대에서 건축설계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부실공사 척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원안대로 처리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 안: 1993회계년도 일

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 안: 1993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 안: 1993회계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 안: 1993회계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5호의 안: 1993회계년도 건축사대회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6호의 안: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의 안: 1994회계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의 안: 「건축사신문」발간 사업계획 및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의 안: 실적회비 산출기준 개정(안) 승인의 건

—제10호의 안: 건축사연금 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이와 관련, 본 협회는 지난 4월 19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아울러 오웅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건설부를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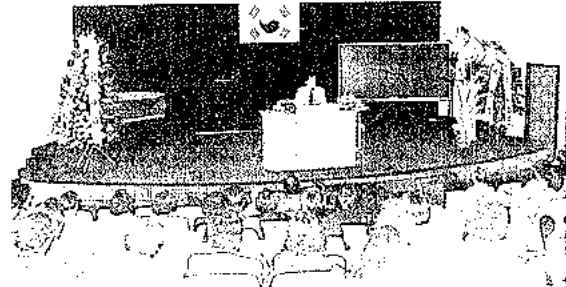
문, 건축기획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자제시험소 설치로 감리업무의 내실화에 기여코자 하는 등의 협회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이같은 법 개정은 건축사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단순한 법 개정으로 부실공사 방지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밝히고 이의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개강

1994年度 第1回 臨時總會

서울특별시건축사협회



강의 광경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지난 4월 11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기본 상식과 건축관련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시민 건축대학」을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총 12강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강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강좌	내용	강사
4.11	1강좌	풍수고전과 현대건축(우리환경과 건축)	박사익(도봉건축사사무소 대표)
4.18	2강좌	현대건축 소개(슬라이드 등)	김형우(중앙대 교수)
4.25	3강좌	도시 환경과 건축	양윤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5.2	4강좌	건축행정(건축법 결의응답)	최정일(종합건설사 대표)·정정지(합정건설사 대표)
5.9	5강좌	고궁 및 현대건축 현장답사(13:00~17:00)·문화에서 출발	김봉훈(문화재단)·박서홍(문화재단)
5.16	6강좌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김영수(본회 회장)
5.23	7강좌	심내계조방법과 보수(설비관리 방법)	이성기(에너지관리공단정보과장)
5.30	8강좌	건축물의 색채효과와 채광·열환경 관리	오인옥(경원대 교수)
6.13	9강좌	고건축 감상	김동원(문화재단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6.20	10강좌	건축재료 선정방법	장영준(종합건설사 동명대표)
6.27	11강좌	주거론	차순(건설종합건설사 대표)
7.4	12강좌	건외 및 결의사항 양자이탈을 라이드쇼(수료식)	회장 부회장 위원

본협회, 「주축법시행령개정안」 반대의사 표명

건설부는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감리를 감리전문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본 협회는 지난 4월 19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아울러 오웅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건설부를 방

서울건축사회, 「94 봄 토론회」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급변하는 건축환경에 대비하고 건축분야의 발전적 방향 모색과 제도개선을 위한 「94 봄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주제: 건축사와 건축사협회
- 부제: 개방화시대의 역할과 조직
- 일시: 1994. 5. 26(목) 오후 2시
- 장소: 대한건축사협회강당
- 예정 토론자

- 좌장/이영희(대한건축사협회 전회장)
- 주제발표자/김우성(건축사) 박경립(강원대 교수), 최영집(건축사)
- 토론자/최광수(건축사), 신범식(서울시립대교수), 조정상(건축사), 송평문(건축사), 조병수(미국건축사), 홍완기(건축사)

경기건축사회, 對관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 광경

경기건축사회 외정부건축사회(회장 안영준)에서는 지난 3월 25일 한국마사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소속 회원을 비롯한 건축사보, 건축관련 공무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민원 행정세신 및 건설화 추진

의 일환으로 건축사 업무 수행에 대한 실무교육 및 건축허가, 착공, 사용검사 처리 등 주민과 밀접히 관련된 건축관련업무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대관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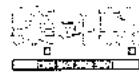
송파구청, 「송파21세기 구상전」 개최

송파구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송파구청내 6층 전실에서 「송파 21세기 구상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의 대상작품은 풍납토성 주변을 개성적으로 재

구성하여 계획(안)을 출품한 삼우설계(김창수+조주환+임상관)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잠실주공아파트 가로변 계획(안)을 출품한 경원대 건축과 김일수씨가 선정됐다.

제주 김유봉회원, 단행본 「築과軌」 발간



제주 김유봉 회원이 단행본 「築과軌」를 발간했다. 이책은 우주의 자연원리와 현대건축과의 상관관계를 풍수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단행본으로 건축전문

가, 풍수지리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실용서이다.

자신이 설립, 현재 대표로 있는 삼정건축사사무소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건축과 풍수 그리고 주거생활전반에 대해 연구해 오면서 보고 느낀 사실들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었다가 이번에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4월29일에는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출판기념행사를 가졌다.

서울 천년타임캡슐광장 설계경기, 이종상회원 당선

서울 6백년의 모습을 영구히 보존하고 남산골 제모습 찾기 일환으로 조성되는 「서울 천년 타임캡슐 광장」설계경기에서 이데아건축 이종상회원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총26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많은 관심을 보인 이번 타임캡슐 광장은 9월말까지 캡슐설계 제작을 마치고, 5월 착공, 10월말 경에 완공예정이다.

정도 6백년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민족건축미학연구소(회장 이왕기)에서는 오는 5월7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서울정도 4백년과 정도 6백년 그리고 미래 신도시의 건축철학」이란 주

제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문의: 도서출판 발언 (전화: 325-4472~3)

건축가협회, 5월 금요일 세미나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에서는 오는 5월 28일(토)과 29일(일) 양일간에 걸쳐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본 한국건축의 내차에 관한 탐방이란 주제로 5

월 금요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 신청마감 : 5월16일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전화 : 744-8050)
 • 일정

일 자	사 간	내 용
5/28(토)	08:40-09:00	집결(양재역앞 주차장)출발
	11:00	마곡사(공주)도착, 마곡사 관람
	12:30-13:30	점심
	14:30-15:30	송산리 고분(무녕왕릉~공주)도착, 관람
	15:30	출발
	19:00-19:50	합천 레인사 도착, 식사
	20:00-20:40	화엄사찰의 건축배치에 관하여(명지대 김홍식)
	20:50-21:30	동쪽마을에 내제된 주리, 주기사상에 관하여(동양공업전문대학 박명덕)
5/29(일)	08:00-09:00	식사
	09:00-10:00	해인사 관람
	11:00-12:00	성주한계마을(경북)도착, 관람
	12:30-13:30	묘골마을(경북 달성)도착, 관람
	13:30-14:30	점심
	14:30	묘골마을 출발
	19:30	서울도착 해산

한국 건축사 강좌

한국 문화재 보존 기술 진흥 협회에서는 삼성출판박물관과 함께 「한국건축사」강좌를 개설, 일반인들의 올바른 건축사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건축사를 기술사, 경제사, 외장사, 공장사, 건축지리 등으로 세분하여 정리

된 지침을 배우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시청각 자료를 동원, 현장감있게 마련한다.

• 일시 : 5월21~7월30일(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삼성출판박물관 3층 세미나실
 • 일정

일시	강좌명	강사	비고
5월21일	건축사 방법론(1)	신영훈	문화재 전문위원
5월28일	주거민속	김광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6월11일	목탑건축	황의수	문화재 보존 협회 이사
6월18일	한국건축의 상징성	황의수	문화재 보존 협회 이사
6월25일	풍수와 건축	이상혜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7월 2일	건축의 꾸밈	유문용	문화재전문위원
7월 9일	한국건축공정사	김동욱	경기대 건축과 교수
7월16일	건축사 방법론(2)	신영훈	문화재 전문위원
7월23일	궁원건축	문영변	문화재전문위원
7월30일	석조건축	손영식	문화재관리국 보수과장

공동주택 학생현상설계 공모전 실시

현대산업개발(주)은 건설회사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공동주택 학생현상설계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학 협동 및 설계 인재개발 차원에서 젊은 세대들의 주거형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설계 능력

표현의 기회를 부여키 위해 마련된다.

• 응모신청기간 : 1994년 3월15일~5월15일
 • 작품마감 : 1994년 6월15일
 • 문의 : 현대산업개발(주)계획설계부 공동주택 학생설계담당(전화 : 519-9371~4)

요코하마항 국제여객터미날, 설계공모

요코하마시 항만국은 요코하마항 오산바시의 국제 여객터미날(개축)의 건축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월8일 발표했다.

• 건축예정지/오산바시의 현 터미날 철거후 매립되는 약 33,000평방미터, 연면적 48,000평방미터
 • 건축예정개요/출입국관리소, 세관, 검역소, 송영대, 주차장, 다목적홀, 화랑, 레스토랑 등

• 개축일정/
 1)설계공모 등록 : 94년5월
 2)작품제출 : 94년 12월중순
 3)심사발표 : 95년 2월중순
 4)착공예정 : 96년도
 완공예정 : 98년도
 • 상금내용/
 1)최우수작품(1점) : 1천만엔
 2)우수작품(2점) : 각 5백만엔
 3)가작(5점) : 각각 1백만엔

승강기 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는 오는 6월 8일(수) 오전 10부터 한국종합전시장 4층 대회의실에서 승강기 제조 및 보수업체, 건축설계 종사자, 승강기 검사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접수기간 : '94.4.20~5.30
 • 문의 : 한국승강기관리원 지도과(전화 : 539-0547~9)
 • 주제 및 연사

주제	발표자	소속·직위	시간
1. 경시발행력 원인별 대책(승강기 전반)	임용기	한국승강기관리원 부산지원장	10:00~12:30
2. 승강기의 기동성 특성 실험(슬라이드 상영 등)	김철재	한국오티스(주)영남부	14:00~15:30
3. 승강기 전동·소음의 건축설계상의 대책	박성욱	금정산전주(주)지원실장	15:30~17:0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1994. 4. 8.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 조정의무를 명제하고,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허가대상구역의 범위를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활동상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 구역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2호)
- 나.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

물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 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공사도중 단열공사가 50% 진도에 나타르면 시·군·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단열공사의 진도에 따른 중간검사제도는 폐지함(안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 라.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에 영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대지의 여건상 조정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에 조정을 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마. 기계식주차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높이 6미터이하인 것에 한하여 공작물로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8미터이하인 것까지 공작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18조 제1항)
- 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에서 1994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함께 설치하는 시설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기까지 계속 건축이 가능하도록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 제5조제2항)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양측 100미터이내의”를 “양측 50미터 이내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4조제1항제3호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과 기타 대지에 영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정에 필요한 조치

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제1항중 “법 제47조”를 “법 제47조(제8호의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제8호중 “높이 6미터이하의”를 “높이 8미터이하의”로 한다.

부칙 제5조제2항중 “1994년 5월 31일”을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2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당해 대지로부터 500미터이내에 주차장이 허용되는 지역이 없는 곳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별표9제2호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마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표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0제2호 아목 내지 파목을 각각 자목 내지 하목으로 하고, 동표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1제2호마목중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을 “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5 위반건축물난중 제1호와 제1호에 해당하는 해당 법조문난중 “법 제14조”및 이행강제금의 금액난중 “과세시가표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이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생략)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 부터 는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등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3. (생략) ②·③(생략) 제11조(건축신고) ①(생략)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2. ~4. (생략) ③(생략) 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을 것으로 본다. 1. ~2. (생략) 3.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4. ~5. (생략) ②(생략) 제16조(중간검사) ①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될 때 가. (생략) 나. 단열시공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공정에 달하였을 때. 다만, 단열체가 사용된 벽·기둥·바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②~⑤(생략) 제27조(대지안의 조정)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읍·면의 자연농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석수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118조(용역 및 공작물등의 준용)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9조·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2항·법 제18조(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1항후단을 제외한다.·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4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5조제2항(건축물의 형태·식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법 제47조·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76조·법 제78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53조의 준용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준용한다. 1. ~7. (생략) 8.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블록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생략) ②·③(생략) 부칙 제5조(건축물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생략)	제8조(건축허가)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양측 50미터이내의..... 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신고) ①(현행과 같음) ②..... 1.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4조(용도변경)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4.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6조(중간검사) ①.....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삭제) 2. (현행과 같음) ②~⑤(현행과 같음) 제27조(대지안의 조정)①.....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석수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의 자연농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과 가터대지에 영문이 함유되어 있어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등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118조(용역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법 제47조(제8호의 기계식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1. ~7. (현행과 같음)..... 8. 높이 8미터이하의 9.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부칙 제5조(건축물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			개정안		
② 별표2 내지 별표7 및 별표9 내지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제정규격의 지형면적에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량 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량규격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2]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1. (생략)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마. (생략) (신설) [별표3]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8호 관련) 1. (생략)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나. (생략) (신설) 다. 군사시설 나.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바. 의료시설 사. 전시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다) 아. 방송·통신시설 [별표10]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9호 관련) 1. (생략)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사. (생략) (신설) 아. 방송·통신시설 자. 군사시설 차. 교정시설 카. 청소년수련시설 다. 동물관련시설 나. 의료시설 [별표11]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 제10호 관련) 1. (생략)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라. (생략) 마.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대학원·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바. ~약 (생략) 자. 판매시설(농·축·수산물판매 시설에 한한다) 차. ~버. (생략) [별표15]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제121조 관련)			1994년 5월 31일(관공선) 용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등 관광숙박 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 [별표2]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생략) 가. ~마. (현행과 같음) 바.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한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당해 대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이 허용되는 지역에 없는 곳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별표3]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제한(제65조제1항제8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판매시설(당해전용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별표10]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9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생략)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타. (생략) 파. (생략) 하. (생략) [별표11]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65조제1항제10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생략)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차. (생략) 카. (생략) 타. (생략) 파. (생략) 하. (생략) [별표15]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제121조 관련)		
일반건축물	해당법조문(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일반건축물	해당법조문(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별 제14조	과세시기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삭제〉	〈삭제〉
2. ~23. (생략)	(생략)	(생략)	2.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무 지 보 역 타 설 공 법

무지보 역타설(N.S.T.D.)공법은 기존의 모든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종래 역타설 공법의 굳은암층 선굴착, 콘크리트 붓기, 거푸집 받침 등바리 등 각종 작업(장애)이 필요하지 않고 토류벽의 얹지말뚝(H-PILE) 또는 건축구조물의 철골기둥(STEEL COLUMN)에 기 제작된 철골통(강재거푸집)을 설치하여 상, 하향 자유자재 이동하며 Con'c를 타설하는 공법이며 철골통이 강기둥(STEEL COLUMN)의 LIFT BLOCK에 의하여 매달려 있으므로 지하굴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굴토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종래 TOP DOWN 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 절감과 중장비 작업대기, 등바리, 거푸집 설치해체, 소운반품 등의 삭감이 15%의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무지보 역타설 (N.S.T.D.)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 지하굴토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원인을 억제하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 님

TEL: (02)594-8100 / 9

다양한 디자인

폭넓은 선택

고급 천정판-**금강** 마이톤

품질과 디자인에서 앞서갑니다.



흡음율
50% 이상

초고층,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는
 현대건축 천정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급 천정판 금강 마이톤—
 암면을 주원료로 만들어 흡음력이 뛰어나며
 가볍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한 금강 마이톤은
 실내분위기를 더욱 우아하게 연출합니다.

- 흡음력이 뛰어납니다.
-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 가볍고 시공, 보수가 간편합니다.

고급 흡음 천정판 —
 **마이톤**®
 MITONE